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Supply of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Areas of Korea

변필성 | 임상연 | 김명수



변필성(卞弼聖)

애리조나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2013)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2011)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2009)

임상연(林 詳軟)

도쿄대학교 도시공학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세종·공주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2014)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4)

김명수(金明秀)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전공 도시계획학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201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I II(2008, 2009)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2012)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Supply of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Areas of Korea

변필성, 임상연, 김명수

■ 연구진

연구책임 변필성 연구위원
임상연 책임연구원
김명수 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김상빈 (전)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임화진 KAIST 선임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병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조영국 협성대학교 교수

발간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머지않아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지역단위, 예를 들어 시·군 단위에서 살펴보면, 심각한 인구감소, 높은 고령화율 및 고령화의 급진전, 취약한 재정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군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군을 인구과소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대체로 수도권 밖에 입지하며 지방중심도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해,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지방중심도시에 해당되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이미 지역 단위에서는 인구감소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인구과소화 문제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인구과소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시설의 공급·활용이다. 주민복지의 관점(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공공시설 공급·활용은 과소화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과소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정부보조금,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운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공공시설 이용수요인 인구가 감소하였고 공간적으로도 산재해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인구과소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시설 공급자 측면에서 공공시설 공급·활용을 위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 등의 일부 공공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지자체로 소요재원 수반 없이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났고, 최근 들어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가 시설 운영 활성화의 의무를 지자체에 부과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과소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의 흐름, 그와 관련된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증대, 기초적 공간단위인 마을 수준에서의 공공시설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의 증가 등으로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있어 주민복지의 관점과 공공재원 지출이 효율성 관점 간의 절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인구과소지역에

서 군청소재 읍 등 중심지로의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 통행이 우세해졌고 동시에 면소재지 등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관점에서 는 과소지역내 다수의 중심지에 공공시설을 유지·설치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민복지 관점에서 보면 소수의 중심지로의 시설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과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초적 정주공간단위인 마을 단위 필수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와 같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인구과소지역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해당 지역의 현황(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일자리, 소득수준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공시설을 중심지(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등)와 연계하여 정의하였고 분석 대상도 설정한 후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였다. 둘째,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도 파악하였다. 셋째, 인구감소 또는 과소화에 대응하여 공공시설 공급 대책을 모색해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책제언 형태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대응방안은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설정(중심지 위계별 이용가능 시설,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 포함), 중심지-배후지(주변 마을)를 설정하는 공간계획 마련 및 지원시책 전개,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단위의 기초데이터 축적, 마을수준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재원 확충,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사례 수집·전파 등을 포괄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한 변필성 연구위원, 원내 연구진으로 참여한 김명수 연구위원, 임상연 책임연구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또한 원외 협동연구진으로 참여한 김상빈, 임화진 두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군청소재 읍 등 주요 중심지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주민의 통행이 우세하고,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지만, 마을단위 기초서비스시설 이용수요는 큼
- ②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해 마을로부터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주민복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면소재지에의 공급도 시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해야 함
- ③ 과소지역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예: 경로당)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게 지자체의 자원 확보와 지역커뮤니티의 관리·운영역량 강화가 필요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① 정부는 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 공공시설,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는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을 마련하되, 인구과소지역이 여건에 맞춰 지역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② 공공시설 공급 최소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에서 계층별 중심지-배후지를 설정하거나 과소지역 시·군내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등 법정 공간계획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③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사례를 정부차원에서 수집·전파하는 것이 필수적임
- ④ 인구과소지역 지자체가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정부는 지자체의 대응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단위에서 공공시설 공급, 이용 등 기초 현황 데이터도 축적해야 함

요약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인구과소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해왔고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속 국비보조금, 지방비 등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음
 - 인구감소라는 상황에서는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업무가 소요재원의 지방이양을 수반하지 않고 지자체로 이양됨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남
 - 또한 최근 들어 지자체가 국비보조를 받아 문화·체육 분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정부부처가 해당 지자체에게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문제와 함께, 과소지역내 공간구조 변화도 공공시설 공급·활용의 과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군청소재 읍 등 중심지로의 주민의 시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해졌고 그에 따라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등 과소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의 흐름이 다수의 중심지에의 공공시설 설치·확충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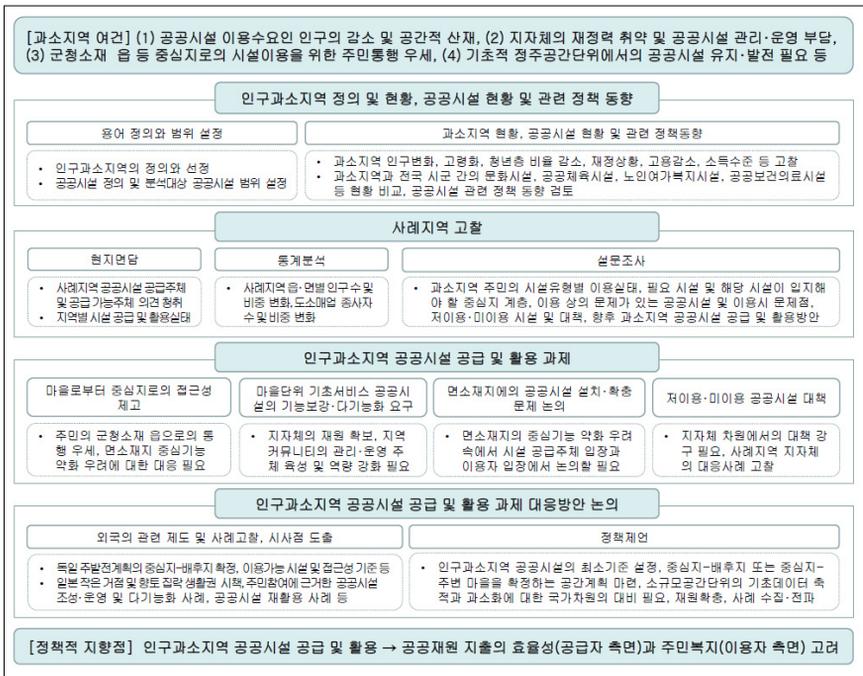
- 다른 한편으로는 과소지역 기초적 정주공간 단위인 마을 수준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인구의 감소 및 공간적 산재, 취약한 재정력, 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 마을단위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하여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관점(공급자 측면)과 주민복지 관점(이용자 측면)에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의 공급·활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의 중심지로의 접근거리가 늘어나더라도 지역내 소수 중심지에서의 공공시설 공급·활용이 공급자 관점에서는 각 시설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중심지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하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심지의 교통약자를 비롯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
 - 소수의 중심지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할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여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특히 시설 이용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접근성 문제와 함께,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이 주민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과소지역내 기초적 정주공간단위인 마을(행정리) 수준에서 필수적인 공공시설은 유지·발전시켜야 함

2) 연구의 목적

- 지역의 과소화와 관련된 이상의 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수행됨
 - 첫째,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과소지역의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설정하며 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과 관련 정책동향을 고찰하고자 함

- 둘째,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실태와 공급·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시설 공급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셋째,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그리고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을 통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흐름도]



2.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 우리나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역, 성장촉진지역 각각의 지정 지표 및 요건,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 지표 및 요건을 검토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 과소지역 요건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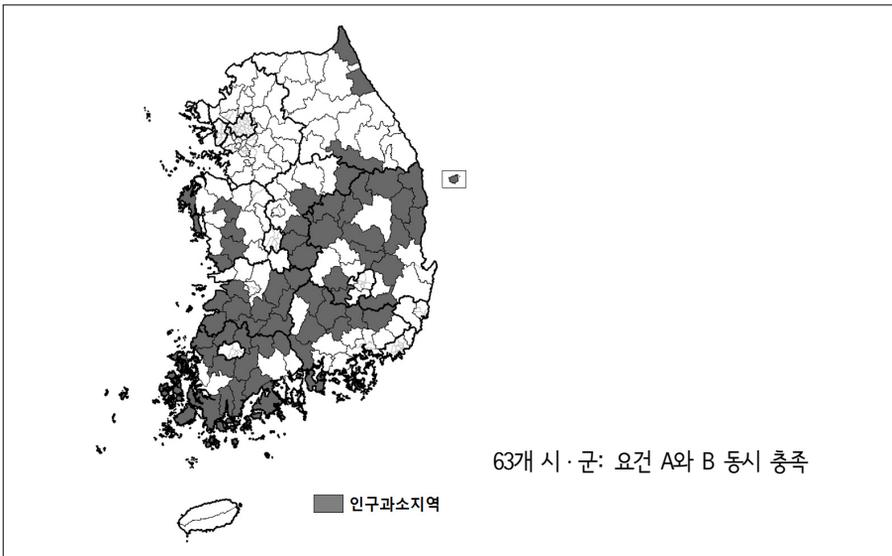
- 인구과소지역을 ‘① 심각한 인구감소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②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또는 ③ 노년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상승하거나 청년층(20~30대) 인구 비율이 낮고 저하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과소지역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인구과소지역 요건]

인구과소지역: 요건 A와 B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군

요건 A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1% 미만	
요건 B	세부요건 B-1, B-2, B-3 중에서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	
	세부요건 B-1	1) 재정력지수(2011~2013년 3개년 평균) 0.2 미만, 또는 2) 재정자립도(2011~2013년 3개년 평균) 15% 미만
	세부요건 B-2	1)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20% 초과, 그리고 2)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7.5%p 초과
	세부요건 B-3	1) 20~39세 인구비율(2010년) 20% 미만, 그리고 2)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7%p 미만

※ 인구는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의 상주인구를 사용함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인구과소지역 63개 시·군	요건 A	요건 B		
		세부요건 B-1	세부요건 B-2	세부요건 B-3
34개 시·군	○	○	○	○
24개 시·군	○	○	○	×
5개 시·군	○	×	○	○

주: ○는 충족; ×는 미충족

- 총 63개 시·군이 인구과소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 결과, 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재정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함
- 또한 과소지역 외 시·군에 비해 일자리(근무 취업인구)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높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낮음

2)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

- 공공시설을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주로 중심지(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중심마을 등)에 입지하고 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국비 또는 지방비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함
-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과소지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찰함
 -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수 대비 시설 수, 시설 입지 지자체 비율에 있어 과소지역이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을 대체로 하회하지만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지자체 평균 인구에서 나타나는 격차보다도 작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을 보면, 과소지역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시설 수, 65세 이상 1000인당 시설 수에서 모두 과소지역 평균이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의 평균을 상회함

- 공공보건의료시설에서도 통 및 행정리 100개소당 시설 수, 인구 1만 인당 시설 수에서 모두 과소지역 평균이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의 평균을 초과함
 - 이러한 결과는 과소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이용수요를 확보하기 힘들어 입지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자체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음
- 분석대상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을 법령, 예산회계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은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시설로서 국가, 지자체가 관계 법령 및 예산회계 지침에 따라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지원해왔음
 - 하지만 최근 들어 국비보조의 요건으로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또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거나 확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5개 군, 즉 괴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이용실태를 고찰함
- 사례지역내 읍·면을 선정하고 해당 읍·면의 마을주민 대표인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별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과소지역내 주요 중심지인 군청소재지 또는 읍소재지로의 시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함
 - 사례지역내 중심지체계의 이러한 변화는 해당 지역내 읍·면별로 인구수와 비중의 변화, 중심지 기능에 밀접한 산업부문인 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와 그 비중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 그리고 경로당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나타났으므로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과소지역에서 기초적인 정주공간 단위인 마을 수준의 핵심적인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었음
- 또한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일부 문화시설,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률이 낮을 우려가 있었음

2) 공공시설 공급·활용의 과제

- 사례지역 공공시설 관련 공무원 면담,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출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시설 공급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과소지역 주민의 군청소재 읍 등 주요 중심지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하고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차원에서 면소재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하기가 어렵다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마을로부터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
 - 둘째,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예: 경로당)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관리·운영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도 필요함
 - 셋째, 과소지역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면소재지에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주민복지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하는 것이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적절anz지를 논의해야 함
 - 넷째,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사례지역 지자체의 대응도 살펴봄
 - 사례지역 공공시설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서천군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희망택시 운행 지원, 청송군의 공중목욕장 면소재지 설치·운영, 순창군의 주민이용 체육시설의 체육대회 경기시설로의 다기능화, 괴산군의 지역내 대학과의 시설 상호이용 등을 파악함

4.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

1) 독일의 주민 생존배려를 위한 중심지체계 설정

- 독일 주정부가 균등한 생활여건, 기초서비스, 주민 생존배려를 보장하기 위해 주발전 계획(또는 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며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고찰함
 - 독일에서 중심지는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에 대해 공공시설 공급거점으로서 위상을 가짐
 - 독일 주발전계획은 모든 지역에서의 균등한 생활여건 보장이라는 독일 헌법의 원칙, 독일 공간발전의 이념상 중 하나인 기초서비스 보장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며, 구체화의 공간적 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중심지 및 중심지체계를 사용함
 - 독일 주발전계획은 중심지(고차, 중차, 저차)의 지정요건(인구, 고용 등), 중심지 및 배후지의 최소인구 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카탈로그를 통해 중심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도 제시하며, 중심지와 배후지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예: 최대 도달시간)도 마련함
 - 인구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별로 중심지의 계층 및 수, 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한 시설,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 등을 유연하게 조정해오고 있음
 - 게다가 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중심지 간의 기능조정 및 전문화, 게마인데 연합의 중심지로의 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중심지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2)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및 공공시설 공급·활용 사례

-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인 작은 거점 만들기 및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관한 시책을 살펴봄
 -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관련 시책은 과소지역의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 중심지에의 공공시설 집약화, 중심지와 주변마을 간의 접근성 확보를 도모함

- 과소지역 마을에서 의료시설, 상점 등이 폐쇄되었지만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 등이 늘어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공조를 통해 공공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왔던 마을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해체되고 있으며, 시·정·촌 합병 등으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공간범위와 분야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토집락생활권을 작은 거점과 연계하여 구성하는데,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작은 거점을 만들어 의료, 복지, 쇼핑 등의 일상생활 관련 시설을 집적화시키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접근수단을 통해 작은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킴으로써 형성됨
 -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관련 시책은 집락의 인위적 재배치를 통해 주민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는 공간축소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소지역에서 접근수단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집락소멸에 따른 환경문제 대처, 주민의 생활감각 유지 등을 지향하는 공간유지 전략에 가까움
- 주민참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작은 거점의 조성·운영과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사례, 공공성을 갖춘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를 고찰함
- 주민참여에 근거한 일본의 작은 거점인 기라메키광장·텍세이 조성·운영 사례, 미야마 후레아이 광장 조성·운영 사례를 살펴봄
 - 아마정의 공민관 등 공공시설 다기능화를 통한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사례, 공공성을 갖춘 역외기업의 아와에정에서의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도 살펴봄

5.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 공공시설이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며 중심지도 계층을 가지므로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해야 함
- 최소기준은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로 구성되는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이용을 위해 중심지로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도 포함해야 함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독일의 주발전계획과 같이 광역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계층별로 중심지를 설정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배후지를 설정하는 공간계획을 도입함
 - 예를 들어 현행 국토계획체계의 틀 내에서 도종합계획을 개편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종합계획에서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하고, 독일의 시설물 카탈로그에서처럼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목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춰 배후지 주민이 중심지로의 도달에 소요되는 시간(또는 거리)에 관한 접근성 기준을 도종합계획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근성 기준은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로 구성되는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이용을 위해 중심지로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몇 %의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몇 분 이내로 중심지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성을 가져야 함

2)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 과소지역내 기초적인 정주공간단위인 마을(면소재지 마을 포함)로부터 주요 중심지인 군청소재지(또는 인근 도시)까지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것은 과소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중심지인 군청소재읍으로 통행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면소재지 중심기능이 쇠퇴할 우려가 있으며, 면소재지의 공공시설 설치가 용이하지도 않다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임
- 마을에서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서 서천군의 희망택시와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지역개발제도의 국비지원 사업범위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환승시설, 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차량구입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게 확대시킬 필요도 있음

- 마을로부터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일본의 작은 거점 조성·운영과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참고하여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공간단위로 설정하여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공간계획, 예를 들어 국토계획체계에 있는 ‘국토기본법’의 시·군 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에 의해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계획에 중심지와 주변마을 간의 교통연계 대책 또는 주변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도 마련해야 함

3)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다기능화와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 지방사무로 전환된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다기능화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 게다가 과소지역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지역커뮤니티의 다수 구성원인 고령자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관리·운영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과소지역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군청소재지 등에 입지한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축구장 등 공공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다기능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주민참여,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 또는 다른 용도로의 재활용 등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과소지역의 대응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파시킬 필요가 있음

6. 결론 및 향후과제

1) 정책제언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특히 공공시설이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중심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해당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더 나아가 과소지역이 자체 여건에 맞는 지역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함

- 최소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일에서와 같이 광역단위에서 계층별 중심지-배후지를 설정하는 공간계획, 또는 일본의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과 같은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설정하는 공간계획을 마련해야 함
 - 그러한 맥락에서 국토계획체계에 있는 국토기본법의 도종합계획과 시·군 종합계획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위해 공공시설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의 재원조달, 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운영, 저이용·미이용 시설의 이용률 제고 또는 재활용, 지역커뮤니티 참여에 근거하는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례의 수집 및 전파가 필수적임
- 과소지역 지자체가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파악하고 해당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정부가 소요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읍·면·동 또는 그 이하 공간단위에서 공공시설 관련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도 축적해야 함
 -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과소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측과 그에 따른 대비도 요구됨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이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이 연구에서 수행한 인구과소지역 정의, 현황 고찰은 우리나라 낙후지역 정의 및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
 -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및 주민복지의 관점에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부합하게 낙후지역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이 과소지역 주요 중심지와 주변마을을 대중교통 서비스(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를 통해 연계시키는 하나의 생활권 형성·발전을 전제로 하므로 최근에 추진 중인 지역생활권을 보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구감소의 심화에 따른 한계마을의 증가 등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정책에 관한 미래지향적 논의의 장을 넓힐 것으로 기대됨
- 이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향후과제로서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설문조사, 현지면담, 사례고찰을 통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해 방향성 위주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과소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모색해야 할 것임
 -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재정력, 노년층 비율, 20~30대 비율 등에 관한 지표를 사용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읍·면·동 등 보다 작은 공간단위를 사용하여 과소지역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과소지역의 입지적 특성(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인근, 산간, 도서 등)에 따른 유형화도 필요함
 - 민간이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병·의원, 약국, 유통판매 시설 등), 그리고 선형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도로 등)을 향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이 연구의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 결과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인구과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대표인 이장이나 공공시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를 포괄하여 주민의 시설이용 실태,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도래할 인구감소시대에서 주요한 문제가 될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즉 재활용, 매각, 철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관련 국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전파시켜야 할 것임

차례

발간사	i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ii
요약	iv
제I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흐름	13
제II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 동향	15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17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17
2)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의 현황	30
2.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	41
1) 공공시설의 정의	41
2)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 설정	43
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44
4)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	61

제III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71
1. 사례지역 선정	73
2. 공공시설 이용실태	77
1) 시설별 이용실태	78
2) 사례지역 시설별 이용실태 고찰의 시사점	95
3.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	101
1) 설문조사 결과	102
2)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 논의	115
제IV장 외국의 관련제도 및 사례 고찰	131
1. 독일의 주민 생존배려를 위한 중심지체계 설정	133
1)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중심지체계 활용	134
2) 중심지체계 설정과 공공시설 공급	136
3) 중심지체계 유지를 위한 전략	142
4) 시사점	146
2.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및 공공시설 공급·활용 사례	148
1) 일본 과소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148
2)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	150
3) 작은 거점의 사례	153
4) 공공시설 활용 사례	157
5) 시사점	160
제V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163
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165
2.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167
3.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다기능화와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169
제VI장 결론 및 향후과제	17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73

1) 요약 및 결론	173
2) 정책제언	17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179
1) 연구의 성과	179
2) 향후과제	180
참고문헌	183
Summary	189
부록	191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요건	18
[표 2-2] 인구과소지역 요건	19
[표 2-3] 요건 A 충족 시·군	25
[표 2-4] 요건 B 충족 시·군	26
[표 2-5]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27
[표 2-6]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	29
[표 2-7] 과소지역 시·군 현황: 전국 및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	31
[표 2-8]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	41
[표 2-9] 문예회관 현황: 2012년 기준	48
[표 2-10]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현황: 2012년 기준	49
[표 2-11] 공립박물관 현황: 2012년 기준	50
[표 2-12] 공립미술관 현황: 2012년 기준	51
[표 2-13] 육상경기장(또는 종합운동장) 현황: 2012년 기준	52
[표 2-14] 축구장 현황: 2012년 기준	53
[표 2-15] 체육관 현황: 2012년 기준	54
[표 2-16] 구기·투기체육관 현황: 2012년 기준	54
[표 2-17] 생활체육관 현황: 2012년 기준	55
[표 2-18] 테니스장 현황: 2012년 기준	56
[표 2-19] 게이트볼장 현황: 2012년 기준	57
[표 2-20]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2년 기준	58
[표 2-21]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2012년 기준	60
[표 2-22]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62
[표 2-23] 광특회계의 문화·체육시설 지원 사업	63
[표 2-24] 문화시설 건립 관련 지원 사업 현황	64
[표 2-25]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67
[표 2-26]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69

[표 2-27] 보건진료소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70
[표 3-1] 사례지역: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74
[표 3-2] 사례지역별 설문조사 실시 읍·면 현황	76
[표 3-3]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 시설	78
[표 3-4] 보건의료시설 이용실태	79
[표 3-5] 유통판매시설 이용실태	82
[표 3-6] 공중위생 관계시설 이용실태	84
[표 3-7] 문화시설 이용실태	87
[표 3-8]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89
[표 3-9] 복지시설 이용실태	92
[표 3-10] 사례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2년 기준	94
[표 3-11] 괴산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97
[표 3-12] 봉화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98
[표 3-13] 서천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99
[표 3-14] 순창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00
[표 3-15] 청송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01
[표 3-16]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 관련 설문조사 대상 공공시설	102
[표 3-17]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이 최소한 입지해야 하는 중심지 계층	103
[표 3-18] 이용 상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	107
[표 3-19]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과 해당 시설에 대한 대책	111
[표 3-20] 과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115

[표 3-21] 사례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2년 기준	117
[표 3-22] 사례지역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2012년 기준	121
[표 4-1] 중차중심지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 카탈로그	135
[표 4-2] 중심지 위계별 전형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최소인구수	138
[표 4-3] 작센 주발전계획에서의 중심지체계	140
[표 4-4] 독일 주별 중심지체계 유연화 전략	144
[표 4-5] 독일 주별 중심지간 가능한 협력의 종류 또는 기능 분할	146
[표 4-6] 일본 과소지역 관련 법률의 변천	149
[표 6-1] 20년 후의 마을 모습 전망: 사례지역 설문조사	177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연평균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간의 상관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20
[그림 2-2] 요건 A 총족 시·군: 연평균 인구변화율	21
[그림 2-3] 세부요건 B-1 총족 시·군: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	22
[그림 2-4] 세부요건 B-2 총족 시·군: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	23
[그림 2-5] 세부요건 B-3 총족 시·군: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24
[그림 2-6] 인구과소지역 요건 총족 시·군	28
[그림 2-7]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 (2011~2013년)	32
[그림 2-8]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2011~2013년)	33
[그림 2-9]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 (2000~2010년)	34
[그림 2-10]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35
[그림 2-11]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 (2000~2010년)	36
[그림 2-12] 20~39세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37
[그림 2-13]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연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38
[그림 2-14]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1인당 지방소득세 3개년 평균(2011~2013년)	39
[그림 2-15]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 (2011~2013년)	40
[그림 2-16] 문화향유 관련 정책 목표(2013~2017년)	63

[그림 3-1] 사례지역 시·군 현지 면담	75
[그림 4-1] 작센 주 중차중심지 일자리 수(사회보험 가입 의무 종업원수)	142
[그림 4-2]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의 이미지	151
[그림 4-3] 기라메키광장·텃세이 전경	155
[그림 4-4] 기라메키광장·텃세이 시설 배치도	155
[그림 4-5] 아마정의 ‘섬 전체가 도서관’ 지도	158
[그림 4-6] 주식회사 아와에의 아와예정 사옥	159
[그림 6-1] 일본의 2005년 대비 2050년 인구증감 상황	177

chapter I

연구의 개요

연구의 개요

제1장에서는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배경으로 제시하였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목적으로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의 과제 및 대응방안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목적에 맞춰 진행된 구체적인 연구내용의 범위,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한 연구방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인구과소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해왔고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국비보조금, 지방비 등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라는 상황에서는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¹⁾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업무가 소요재원의 지방이양을 수반하지 않고 지자체로 이양됨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났다(하혜영 2014). 또한 최근 들어 지자체가 국비보조를 받아 문화·체육 분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정부부처가 해당 지자체에게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

1) 인구변화와 재정력 간의 상관도는 이 연구의 제2장 제1절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함께, 인구과소지역내 공간구조의 변화도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군청소재 읍 등 중심지로의 과소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해졌고 그에 따라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등 과소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의 흐름이 다수의 중심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소지역 기초적 정주공간 단위인 마을 수준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수요인 인구의 감소 및 공간적 산재, 취약한 재정력, 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 마을단위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 증대 등 인구과소지역이 직면해 있는 여건에 대응하여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관점(공급자 측면)과 주민복지 관점(이용자 측면)에서 공공시설의 공급·활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의 중심지 접근에 소요되는 거리가 늘어나더라도 지역내 소수의 중심지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활용하는 것이 공급자 관점에서는 각 시설의 최소 요구치(threshold)를 충족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Lonsdale & Enyedi 1984). 소수의 중심지에 공공시설을 공급·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간축소전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간축소전략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공공시설 공급에 요구되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인구를 지역내 거점에 집중시키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저하시키고자 한다(畑本 裕介 2013).²⁾

하지만 공간축소전략은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내 거점으로서의 이주라는 부담을 주게 되고, 특히 이주에 따른 주민의 생활양식에 갑작스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畑本 裕介 2013), 그러한 변화는 과소지역 주민의 상당수인 고령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변지역으로부터 주민의 이주로 인해 해당 지역 환경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畑本 裕介 2013).

2)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컴팩트 시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畑本 裕介 2013).

따라서 공간축소를 지향하지는 않더라도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중심지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심지로의 수요자 또는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소수의 중심지에서의 공공시설 공급·활용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여 이용하기가 힘들어지며, 특히 시설로부터의 서비스 이용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Lonsdale & Enyedi 1984). 무엇보다도 과소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접근성 문제와 함께,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이 주민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과소지역내 기초적인 정주공간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 단위에서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이용자인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지역커뮤니티 참여에 근거하는 시설 관리·운영도 요구된다.

지역의 과소화와 관련된 이상의 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우선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과소지역의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설정하며 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과 관련 정책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선정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실태와 공급·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특히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는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 공급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파악하였다.

셋째,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독일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첫째, 우리나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역, 성장촉진지역 각각의 지정 지표 및 요건,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 지표 및 요건을 검토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과소지역의 요건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요건의 주요 내용인 지표별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해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과소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노년층 비율 및 변화, 청년층 비율 및 변화, 재정력, 소득, 고용변화 등을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지표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공공시설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를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소지역내 중심지위제도 고려하였고, 고령화 수준이 높고 그 속도가 빠르다는 과소지역의 특성도 감안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과소지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 정부부처 발간 통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등을 수록한 지자체 발간 통계를 사용하여 공공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분석대상 공공시설, 즉 문화·예술, 공공체육, 노인여가복지, 공공보건 의료 분야의 공공시설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동향을 관계 법령, 예산회계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첫째, 인구과소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 중 괴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시설이용 실태와 시설이용을 위한 중심지로의 통행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지역 설문조사 대상인 읍·면을 선정하고 해당 읍·면의 마을주민 대표인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4년 9월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실태 조사결과가 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사례지역내 읍·면별로 인구수와 그 비중 변화, 중심지 기능에 밀접한 산업부문인 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와 그 비중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례지역내 중심지체계를 고찰하였다.

둘째, 사례지역 현지면담,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우선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필수적인 공공시설 및 해당 시설이 최소한 입지해야 하는 중심지 계층,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 및 이용 시 문제점,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 및 그에 대한 대책, 과소지역의 향후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실태, 그리고 시설의 공급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의 입장에서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4~5월에 사례지역 군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면담 결과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현지면담 과정에서 파악한, 해당 과제에 대한 사례지역 지자체 차원의 대응 사례, 즉 서천군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인 희망택시 운행 지원, 청송군의 공중목욕장 면소재지 설치·운영, 순창군의 주민이용 체육시설의 체육대회 경기시설로의 다기능화, 괴산군의 지역내 대학과의 시설 상호이용 등도 논의하였다.

셋째, 이러한 제반 과정을 거쳐 논의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① 과소지역 주민의 군청소재 읍으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하고 면소재지의 중심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되는 상황이므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차원에서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설치·확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마을로부터 군청소재 읍 등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② 경로당과 같은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관리·운영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③ 과소지역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면소재지에 건강관리, 보건의료 등 주민복지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공급주체의 입장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④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

원외 연구진과 협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구감소 또는 과소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주정부가 주민의 생존배려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가 주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배후지를 설정하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 주발전계획은 중심지(고차, 중차, 저차)의 지정요건과 중심지 및 배후지의 최소인구 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카탈로그를 통해 중심지에서 이용가능한 시설도 제시하며, 중심지와 배후지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최대 도달시간 또는 최대 도달 거리)도 마련한다. 독일 주발전계획은 독일 헌법의 모든 지역에서의 균등한 생활여건 보장이라는 원칙, 독일 공간발전의 이념상 중 하나인 기초서비스 보장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며, 그러한 구체화 작업을 위한 공간적 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중심지 및 중심지체계를 사용해왔다.

둘째,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중 하나인 작은 거점 만들기 및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관한 시책, 그리고 주민참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작은 거점의 조성·운영 또는 공공시설의 다기능화에 관한 사례, 공익성을 갖춘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향토집락생활권은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

한 장소에 작은 거점을 만들어 의료, 복지, 쇼핑 등의 일상생활 관련 시설을 집적화시키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접근수단을 통해 작은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생활권이다.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및 정책제언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 결과로부터 도출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논의 과정에서 독일 및 일본의 관련 제도 고찰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특히 공공시설이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중심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해당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과소지역 각각이 자체 여건에 맞는 지역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최소 기준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게 독일에서와 같이 광역적 공간단위에서 계층별 중심지-배후지를 설정하거나, 일본의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과 같은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재원조달, 시설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운영,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 또는 타 용도로의 재활용, 지역커뮤니티 참여에 근거하는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례의 수집 및 전파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소지역 지자체가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의 대응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읍·면·동 또는 그 이하 공간단위에서 공공시설 공급, 이용 등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과소화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예측과 그에 따른 대비도 요구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주요 선행연구로는 김정연·이상준(2013), 이중섭·송용호(2013), 송미령 외(2013)가 있다.

김정연·이상준(2013)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일반 농산어촌의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목적, 대상지, 대상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추진체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사업의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도농복합시 시청소재지, 군청소재지, 읍소재지, 면소재지가 농촌중심지에 해당되고 배후지 주민에게 일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통 결절지 또는 개발거점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해 직접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을 중심지 활성화 또는 중심지체계와 연계하여 모색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김정연·이상준(2013)으로부터 인구감소시대에 적합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방향, 즉 중심지의 압축적 개발 및 중심지 간의 연계·협력, 그리고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연계 강화 또는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중섭·송용호(2013)는 전라북도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생활 및 이용 시설)이 지역(시·군 또는 읍·면·동) 간에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시·군별 일정수준의 정원을 갖춘 필요시설수 추정, 현재의 시설 수와 비교, 기능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책임자와 경로당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동향 고찰, 기능조정사례 고찰,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특성화, 기능 복합 및 전환) 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시설만을 다루고 있으며 인구과소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기능조정 방안으로서

제시한 특성화, 기능 복합 및 전환은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송미령 외(2013)는 지자체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정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론 제시된 개선사례는 인구과소지역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논의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가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논의의 방향 모색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인구과소지역에 직접 초점을 맞춰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과소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설정하며 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과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도 고찰하였다. 둘째,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실태를 고찰하고, 시설 공급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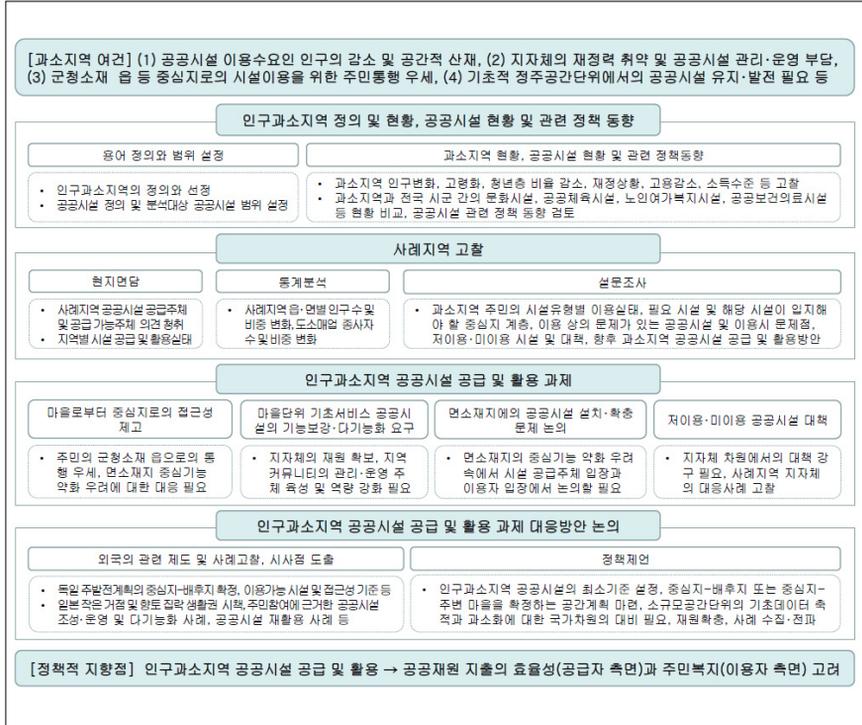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 정책의 방향(2013) 연구자: 김정연 · 이상준 연구목적: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일반농산어촌의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목적, 대상지, 대상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추진체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가능 재조정 방안 연구(2013) 연구자: 이중섭 · 송용호 연구목적: 전라북도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 시설)이 지역(시·군 또는 읍·면·동) 간에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시·군별 일정수준의 정원을 갖춘 필요시설수 추정, 현재의 시설 수와 비교 • 기능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동향 및 기능조정사례 고찰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특성화, 기능의 복합·전환) 방안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례(2013) 연구자: 송미령 외 연구목적: 지자체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노력을 살펴보고, 정부정책 개선방향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증진사례 •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례 • 교육 여건 개선 사례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례 • 치안·안전 개선 사례 • 문화·여가 개선 사례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과소지역의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설정하며 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과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을 고찰함 •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실태를 고찰하고,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논의함 •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정책제언을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 현지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공공시설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및 정책제언 	

4.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그림 1-1]에서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chapter II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 동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 동향

제2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낙후지역 또는 과소지역 관련 정의 및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과소지역 요건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의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고용변화 등을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과소지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되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게다가 분석대상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을 법령, 예산회계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인구과소지역은 '① 심각한 인구감소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②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또는 ③ 노년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상승하거나 청년층(20~30대) 인구 비율이 낮고 저하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신활력지역,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일본의 과소지역 각각의 정의와 지정요건을 참고한 것이다.³⁾

3) 신활력지역,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정의 및 지정요건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과소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과소지역은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에 근거하여 인구요건과 재정력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촌(市·町·村)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재정력이 취약함과 동시에,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났거나, 또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노년층 비율이 높거나 청년층 비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2-1]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요건

다음의 재정요건과 인구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정·촌이 과소지역으로 지정됨	
재정요건	2006~2008년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이 0.56 이하인 시·정·촌
인구요건	<p>다음의 ①, ②, ③, ④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시·정·촌</p> <p>① 1960~2005년 인구감소율 33% 이상</p> <p>② 1960~2005년 인구감소율 28% 이상과 2005년 고령자(65세 이상) 비율 29% 이상</p> <p>③ 1960~2005년 인구감소율 28% 이상과 2005년 청년층(15~29세) 비율 14% 이하</p> <p>※ ①, ②, 또는 ③을 충족하더라도 1980~2005년의 인구증가율이 10%이상인 시·정·촌은 과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음</p> <p>그 이외 ④ 1980~2005년 인구감소율이 17% 이상</p>

출처: 채성주(2010)

앞서 제시한 인구과소지역 정의를 토대로 이 연구의 인구과소지역 요건을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재정력 요건과 인구감소 요건만을 충족하는 시·군은 과소지역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본의 과소지역 요건과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노년층 비율과 청년층 비율뿐만 아니라 각 비율의 변화량도 요건에 포함시켰고, 일본의 과소지역 요건에 비해 청년층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일본 과소지역 요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밀도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국 160개 시·군(행정시 포함)을 대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림 2-1] 참조).

[표 2-2] 인구과소지역 요건

인구과소지역 : 요건 A와 B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군

요건 A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1% 미만	
요건 B	세부요건 B-1, B-2, B-3 중에서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	
	세부요건 B-1	1) 재정력지수(2011~2013년 3개년 평균) 0.2 미만, 또는 2) 재정자립도(2011~2013년 3개년 평균) 15% 미만
	세부요건 B-2	1)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20% 초과, 그리고 2)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7.5%p 초과
	세부요건 B-3	1) 20~39세 인구비율(2010년) 20% 미만, 그리고 2)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7%p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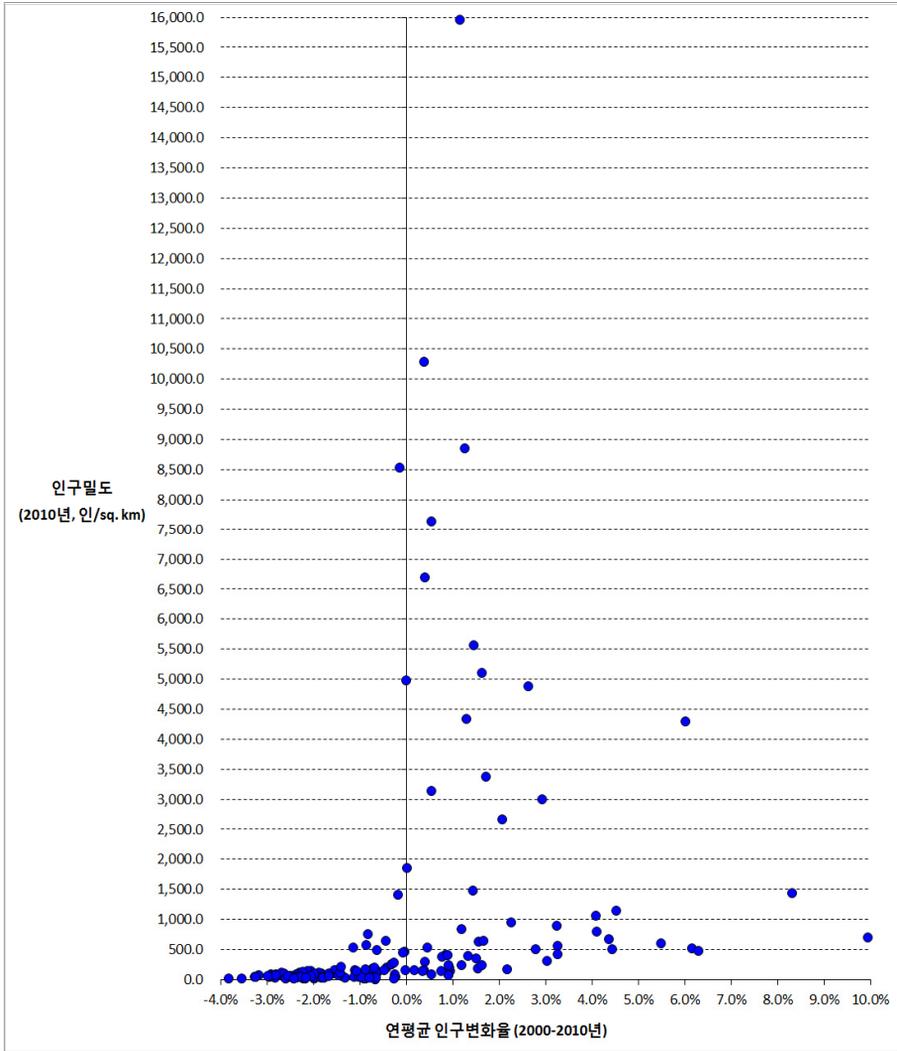
주: 인구는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의 상주인구를 사용함

[그림 2-1]은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0년에 인구가 감소한 시·군 대다수의 인구밀도(2010년)가 300인/km²미만이다. 2000~2010년에 인구가 감소한 105개 시·군 중 94개 지역의 인구밀도(2010년)가 300인/km²미만인 반면에, 같은 기간 인구가 늘어난 55개 시·군 중 인구밀도(2010년)가 300인/km²미만인 지역은 14개 시·군에 불과하다.

인구과소지역 요건에 제시된 지표 중 연평균 인구변화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산출에 인구주택 총조사의 상주인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기에는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간의 차이가 큰 시·군이 적지 않아 해당 시·군에 대해 산출된 인구변화 관련 지표 값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

4) 2000년과 2010년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의 상주인구(인구주택 총조사)와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본 결과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2-1] 연평균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간의 상관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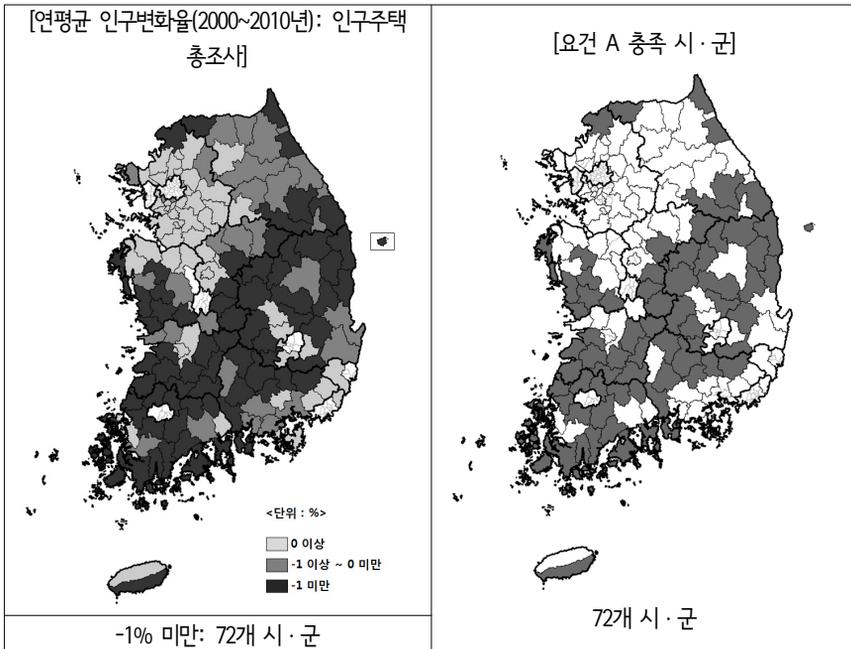
또한 요건에 제시된 지표별로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한 통계분석 결과를 지도화 시키면 [그림 2-2]~[그림 2-5]와 같으며, 각 도면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의 공간분포도 나타낸다.⁵⁾

5) 인구과소지역 지표별 각 시·군의 현황과 세부 요건별 충족 시·군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72개 시·군이 요건 A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와 [표 2-3] 참조). 그리고 69개 시·군이 세부요건 B-1, B-2, B-3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요건 B를 충족하였다([그림 2-3]~[그림 2-5]와 [표 2-4] 참조). 요건 B를 충족하는 69개 지역 중 36개 시·군이 세부요건 B-1, B-2, B-3을 모두 충족하는데, 해당 36개 지역 중 2개 군(평창군, 횡성군)만 요건 A(인구감소에 관한 요건)를 충족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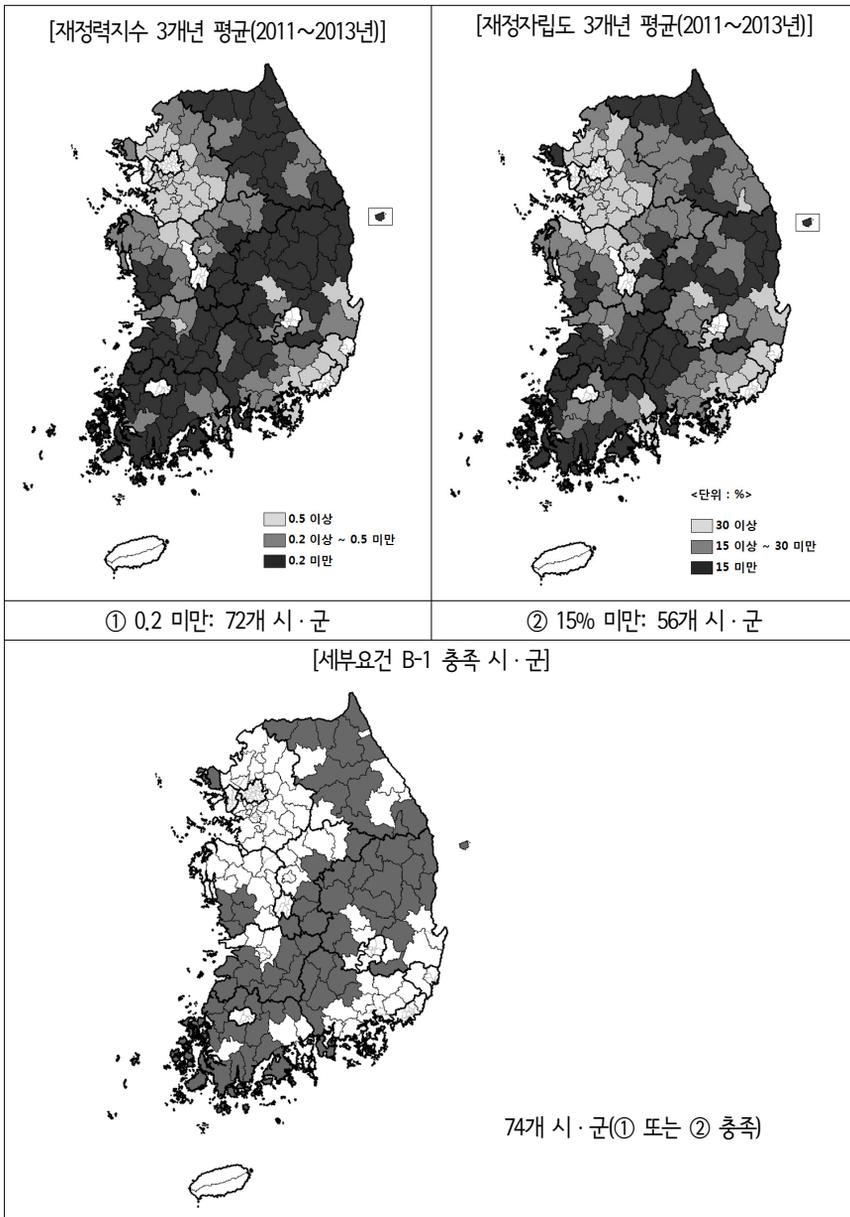
세부요건 B-1, B-2, B-3 중 두 가지만 충족하는 33개 지역 중 5개 시·군이 B-2(65세이상 비율 및 변화량에 관한 요건)와 B-3(20~39세 비율 및 변화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 A를 충족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 시·군이 세부요건 B-1(재정 요건)과 B-2를 충족하고, 해당 28개 시·군 중 4개 군(강화군, 금산군, 함양군, 홍천군)만 요건 A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림 2-2] 요건 A 충족 시·군: 연평균 인구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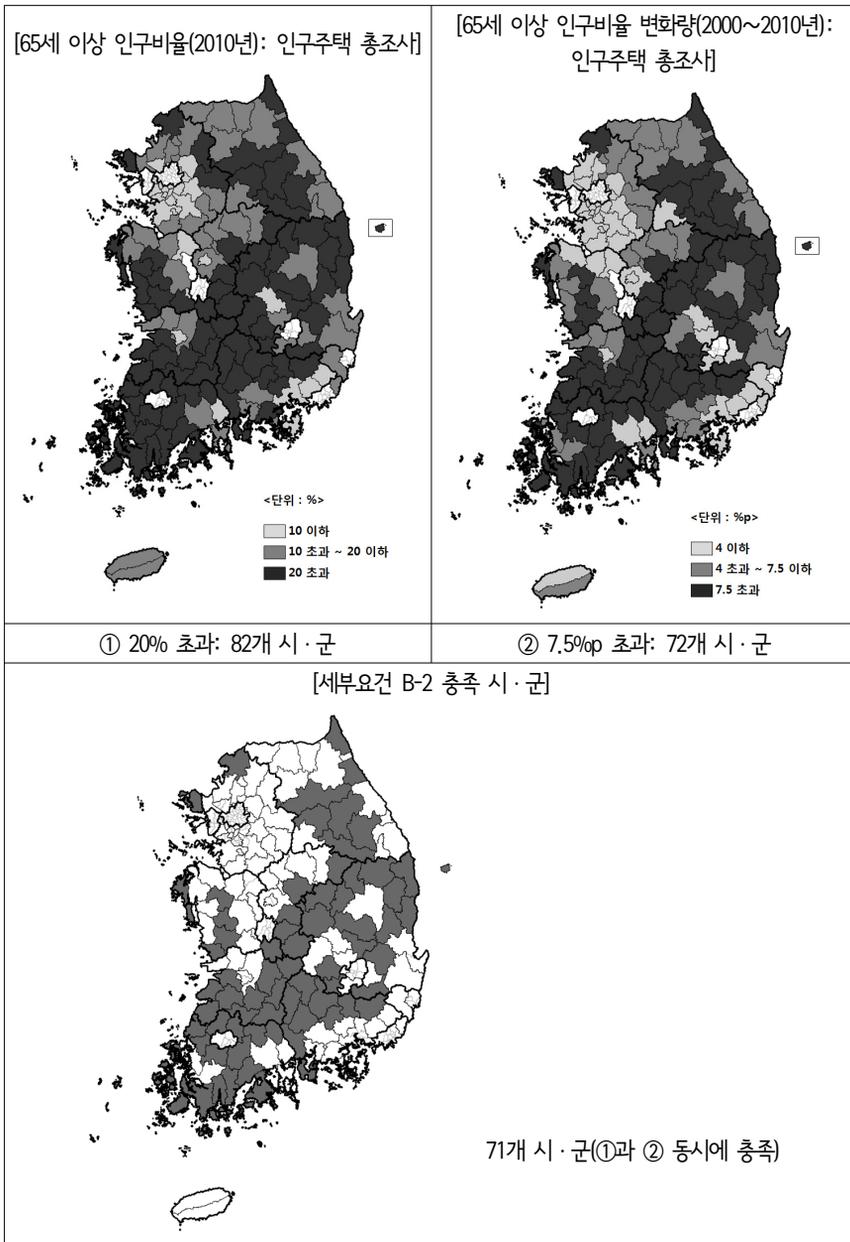
주: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의 경우,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시·군별 지표 값을 산출함

[그림 2-3] 세부요건 B-1 총족 시·군: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



- 주 1: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와 재정고(ofin.mospa.go.kr)로부터 각각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 통계를 사용하여 시·군별 값을 산출함
- 주 2: 자료구독상의 한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의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과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은 산출하지 못함
- 주 3: 재정력지수 = [기준 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
- 주 4: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

[그림 2-4] 세부요건 B-2 충족 시·군: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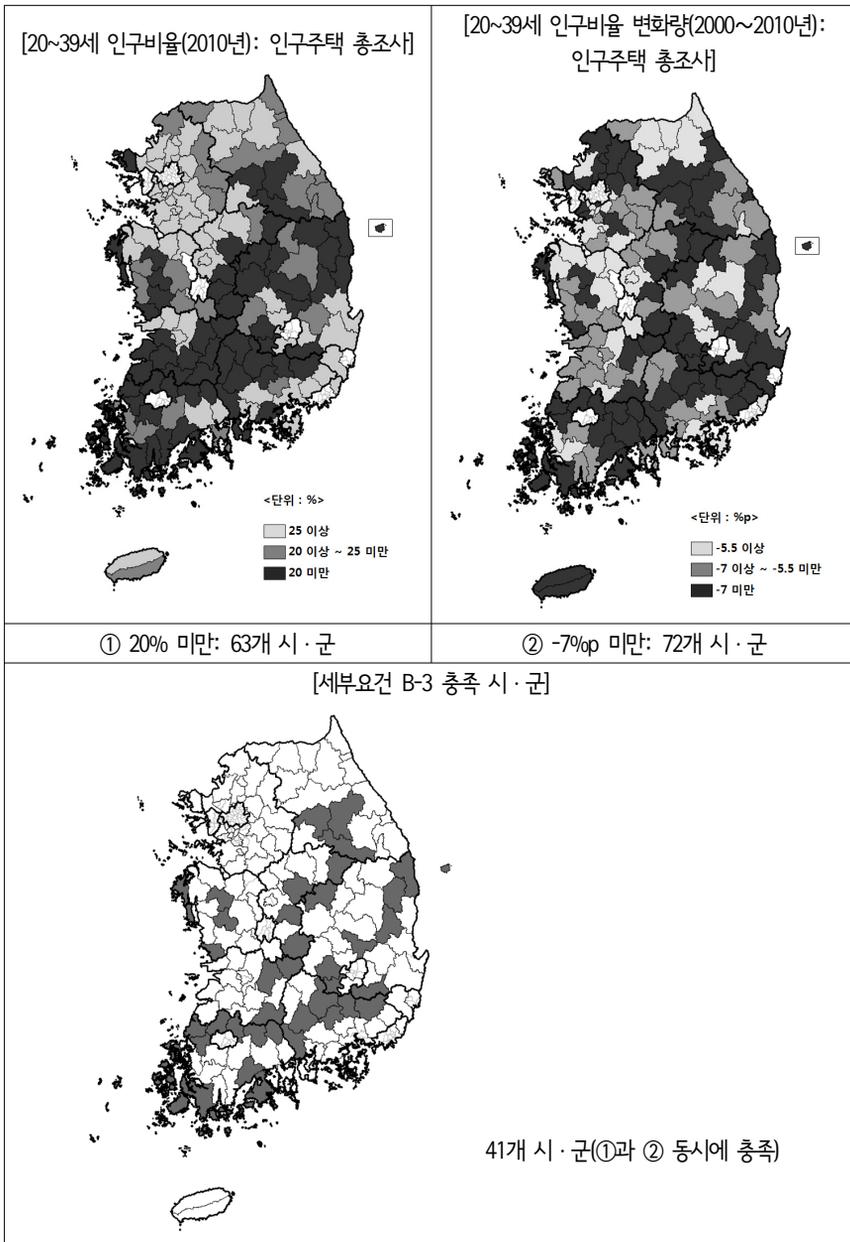


주 1: 인구주택 총조사의 상주인구를 사용하여 시·군별 값을 산출함

주 2: 65세 이상 인구는 한국인기준임

주 3: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의 시·군 평균은 7.17%p임

[그림 2-5] 세부요건 B-3 총족 시·군: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주 1: 인구주택 총조사의 상주인구를 사용하여 시·군별 지표 값을 산출함
 주 2: 20~39세 인구는 한국인기준임
 주 3: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의 시·군 평균은 -6.49%p임

[표 2-3] 요건 A 충족 시·군

시·군	요건 충족	시·군	요건 충족	시·군	요건 충족
전국	72개 시·군	양양군	1	강진군	1
기장군	0	청주시	0	해남군	1
달성군	0	충주시	0	영암군	0
강화군	0	제천시	0	무안군	0
용진군	0	청원군	0	함평군	1
울주군	0	보은군	1	영광군	1
수원시	0	옥천군	1	장성군	1
상남시	0	영동군	1	완도군	1
의정부시	0	진천군	0	진도군	1
안양시	0	괴산군	1	신안군	1
부천시	0	음성군	0	포항시	0
광명시	0	단양군	1	경주시	0
평택시	0	증평군	0	김천시	1
동두천시	0	천안시	0	안동시	0
안산시	0	공주시	0	구미시	0
고양시	0	보령시	1	영주시	1
과천시	0	아산시	0	영천시	1
구리시	0	서산시	0	상주시	1
남양주시	0	논산시	1	문경시	1
오산시	0	계룡시	0	경산시	0
사천시	0	금산군	0	군위군	1
군포시	0	부여군	1	의성군	1
의왕시	0	서천군	1	청송군	1
하남시	0	청양군	1	영양군	1
용인시	0	홍성군	0	영덕군	1
파주시	0	예산군	1	청도군	1
이천시	0	태안군	1	고령군	1
안성시	0	당진시	0	성주군	1
김포시	0	전주시	0	철곡군	0
화성시	0	군산시	0	예천군	1
광주시	0	익산시	0	봉화군	1
양주시	0	정읍시	1	울진군	1
포천시	0	남원시	1	울릉군	1
여주시	0	김제시	1	진주시	0
연천군	1	완주군	0	통영시	0
가평군	0	진안군	1	사천시	0
양평군	0	무주군	1	김해시	0
춘천시	0	장수군	1	밀양시	1
원주시	0	임실군	1	거제시	0
강릉시	0	순창군	1	양산시	0
동해시	0	고창군	1	창원시	0
태백시	0	부안군	1	의령군	1
속초시	0	목포시	0	함안군	0
삼척시	1	여수시	1	창녕군	1
홍천군	0	순천시	0	고성군(경남)	0
횡성군	0	나주시	1	남해군	1
영월군	1	광양시	0	하동군	1
평창군	0	담양군	1	산청군	1
정선군	1	곡성군	1	함양군	0
철원군	1	구례군	1	거창군	1
화천군	0	고흥군	1	함천군	1
양구군	0	보성군	1	계주시	0
인제군	0	화순군	1	서귀포시	1
고성군(강원)	1	장흥군	1	-	-

주: 1은 요건 충족; 0은 요건 미충족

[표 2-4] 요건 B 충족 시·군

시·군	요건 B 충족	충족 요건 수	시·군	요건 B 충족	충족 요건 수	시·군	요건 B 충족	충족 요건 수
전국	69개 시·군	-	양양군	1	2	강진군	1	2
기장군	0	0	청주시	0	0	해남군	1	3
달성군	0	0	충주시	0	0	영암군	0	0
강화군	1	2	제천시	0	0	무안군	0	1
용진군	0	0	청원군	0	0	함평군	1	3
울주군	0	0	보은군	1	3	영광군	1	3
수원시	0	0	옥천군	1	2	장성군	1	3
상남시	0	0	영동군	1	3	완도군	1	3
의정부시	0	0	진천군	0	0	진도군	1	3
안양시	0	0	괴산군	1	3	신안군	1	3
부천시	0	0	음성군	0	0	포항시	0	0
광명시	0	0	단양군	1	3	경주시	0	0
평택시	0	0	증평군	0	0	김천시	0	1
동두천시	0	0	천안시	0	0	안동시	0	1
안산시	0	0	공주시	0	0	구미시	0	0
고양시	0	0	보령시	0	1	영주시	1	2
과천시	0	0	아산시	0	0	영천시	1	2
구리시	0	0	서산시	0	0	상주시	1	2
남양주시	0	0	논산시	0	0	문경시	1	3
오산시	0	0	계룡시	0	0	경산시	0	0
시흥시	0	0	금산군	1	2	군위군	1	3
군포시	0	0	부여군	1	2	의성군	1	2
의왕시	0	0	서천군	1	3	청송군	1	3
하남시	0	0	청양군	1	3	영양군	1	3
용인시	0	0	홍성군	0	0	영덕군	1	2
파주시	0	0	예산군	1	2	청도군	1	3
이천시	0	0	태안군	1	2	고령군	1	2
안성시	0	0	당진시	0	0	상주군	1	3
김포시	0	0	전주시	0	0	철곡군	0	0
화성시	0	0	군산시	0	0	예천군	1	2
광주시	0	0	익산시	0	0	봉화군	1	2
양주시	0	0	정읍시	1	2	울진군	1	3
포천시	0	0	남원시	1	3	울릉군	1	3
여주시	0	0	김제시	1	2	진주시	0	0
연천군	0	1	완주군	0	0	통영시	0	0
가평군	0	0	진안군	1	3	사천시	0	0
양평군	0	0	무주군	1	3	김해시	0	0
춘천시	0	0	장수군	1	2	밀양시	1	2
원주시	0	0	임실군	1	2	거제시	0	0
강릉시	0	0	순창군	1	2	양산시	0	0
동해시	0	0	고창군	1	2	창원시	0	0
태백시	0	1	부안군	1	2	의령군	1	3
속초시	0	0	목포시	0	0	함안군	0	0
삼척시	0	1	여주시	0	0	창녕군	1	2
홍천군	1	2	순천시	0	0	고성군(경남)	0	0
횡성군	1	3	나주시	1	2	남해군	1	2
영월군	1	3	광양시	0	0	하동군	1	3
평창군	1	3	담양군	1	3	산청군	1	3
정선군	0	1	곡성군	1	3	함양군	1	2
철원군	0	1	구례군	1	3	거창군	1	2
화천군	0	1	고흥군	1	3	합천군	1	3
양구군	0	1	보성군	1	3	제주시	0	0
인제군	0	1	화순군	1	2	서귀포시	0	0
고성군(강원)	1	2	장흥군	1	2	-	-	-

주: 1은 요건 충족; 0은 요건 미충족; 충족 요건 수는 세부요건 B-1, B-2, B-3 중 충족하는 요건 수를 지칭함

종합하면 인구과소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은 63개 지역이다([그림 2-6]과 [표 2-5]와 [표 2-6] 참조). 그 중 34개 지역(54.0%=34/63)이 요건 A와 세부요건 B-1, B-2, B-3을 모두 충족하고, 24개 지역(38.1%=24/63)이 요건 A와 세부요건 B-1과 B-2만을 충족한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지역(7.9%=5/63)이 요건 A와 세부요건 B-2와 B-3만을 충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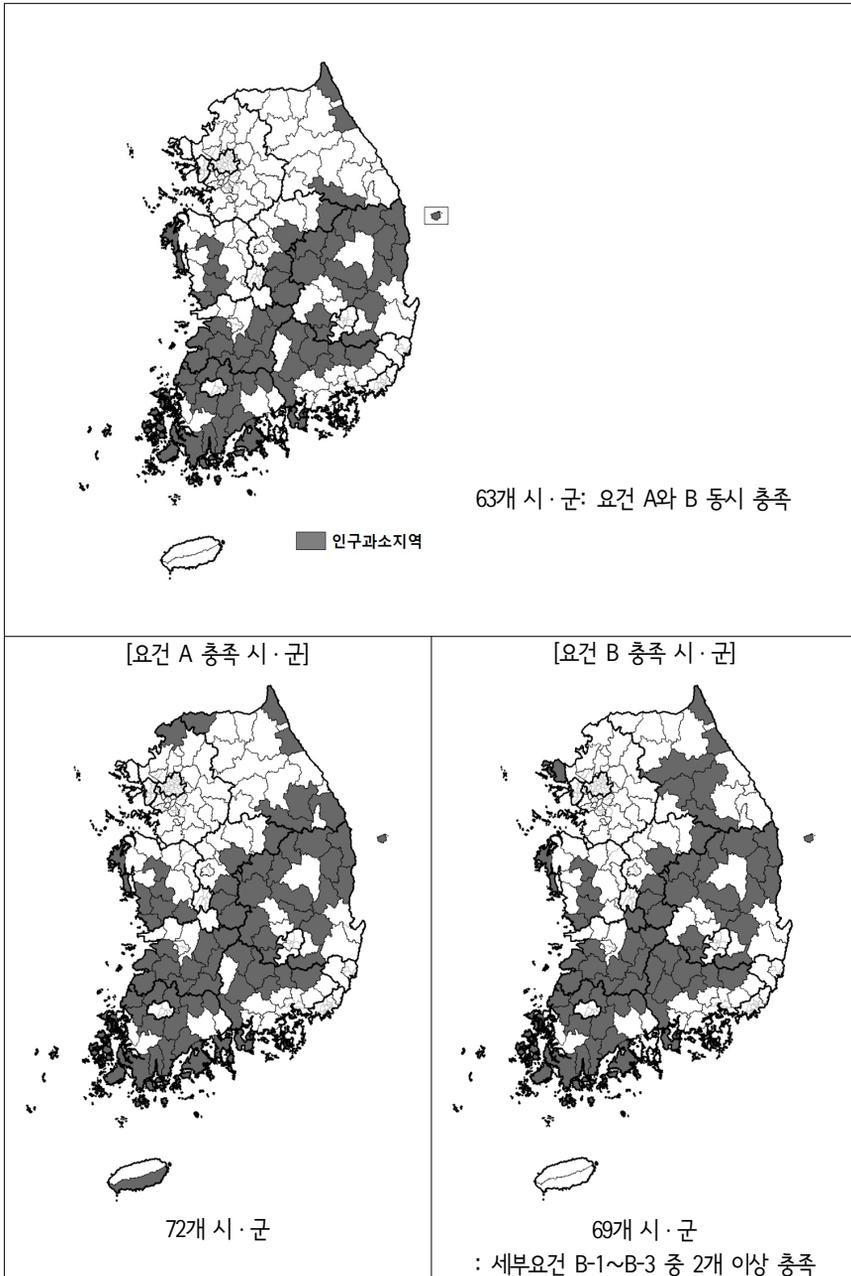
[표 2-5]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인구과소지역 63개 시·군	요건 A	요건 B	세부요건 B-1	세부요건 B-2	세부요건 B-3
34개 시·군	○	○	○	○	○
24개 시·군	○	○	○	○	×
5개 시·군	○	○	×	○	○

주: ○는 충족; ×는 미충족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과소지역 63개 시·군 중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연평균 1% 이상으로 감소하였고, 고령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초과)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 7.5%p 초과). 그리고 인구과소지역 중 거의 모든 지역(58개 시·군, 92.1%)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낮다(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 0.2미만 또는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15% 미만). 또한 약 62%에 해당되는 지역(39개 시·군)이 20~39세 비율이 비교적 낮고(20% 미만) 그 비율도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7%p 미만).

[그림 2-6]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



[표 2-6]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

시·군	요건 충족	시·군	요건 충족	시·군	요건 충족
전국	63개 시·군	양양군	1	강진군	1
기장군	0	청주시	0	해남군	1
달성군	0	충주시	0	영암군	0
강화군	0	제천시	0	무안군	0
용진군	0	청원군	0	함평군	1
울주군	0	보은군	1	영광군	1
수원시	0	옥천군	1	장성군	1
상남시	0	영동군	1	완도군	1
의정부시	0	진천군	0	진도군	1
안양시	0	괴산군	1	신안군	1
부천시	0	음성군	0	포항시	0
광명시	0	담양군	1	경주시	0
평택시	0	증평군	0	김천시	0
동두천시	0	천안시	0	안동시	0
안산시	0	공주시	0	구미시	0
고양시	0	보령시	0	영주시	1
과천시	0	아산시	0	영천시	1
구리시	0	서산시	0	상주시	1
남양주시	0	논산시	0	문경시	1
오산시	0	계룡시	0	경산시	0
사천시	0	금산군	0	군위군	1
군포시	0	부여군	1	의성군	1
의왕시	0	서천군	1	청송군	1
하남시	0	청양군	1	영양군	1
용인시	0	홍성군	0	영덕군	1
파주시	0	예산군	1	청도군	1
이천시	0	태안군	1	고령군	1
안성시	0	당진시	0	성주군	1
김포시	0	전주시	0	철곡군	0
화성시	0	군산시	0	예천군	1
광주시	0	익산시	0	봉화군	1
양주시	0	정읍시	1	울진군	1
포천시	0	남원시	1	울릉군	1
여주시	0	김제시	1	진주시	0
연천군	0	완주군	0	통영시	0
가평군	0	진안군	1	사천시	0
양평군	0	무주군	1	김해시	0
춘천시	0	장수군	1	밀양시	1
원주시	0	임실군	1	거제시	0
강릉시	0	순창군	1	양산시	0
동해시	0	고창군	1	창원시	0
태백시	0	부안군	1	의령군	1
속초시	0	목포시	0	함안군	0
삼척시	0	여수시	0	창녕군	1
홍천군	0	순천시	0	고성군(경남)	0
횡성군	0	나주시	1	남해군	1
영월군	1	광양시	0	하동군	1
평창군	0	담양군	1	산청군	1
정선군	0	곡성군	1	함양군	0
철원군	0	구례군	1	거창군	1
화천군	0	고흥군	1	함천군	1
양구군	0	보성군	1	계주시	0
인제군	0	화순군	1	서귀포시	0
고성군(강원)	1	장흥군	1	-	-

주: 1은 요건 충족; 0은 요건 미충족

2)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의 현황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의 현황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재정상황, 20~30대 연령층 비율, 소득, 일자리 변화 등 주요 지표별로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 비교해 보면 [표 2-7], [그림 2-7]~[그림 2-15]와 같다.⁶⁾

[그림 2-7]~[그림 2-10], 그리고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과소지역은 과소지역 외 시·군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일자리(근무취업인구)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높다.

그런데 과소지역이 전반적으로 과소지역 외 시·군에 비해 20~39세 비율은 낮지만, 20~39세 비율 변화량, 즉 해당 비율의 감소폭이 상당수 과소지역 외 시·군에서도 과소지역 시·군에 버금가는 수준을 나타낸다([그림 2-11]과 [그림 2-12] 참조). 이점은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지표에 비해 20~39세 비율 변화량(2000~2010년)에서 과소지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 간의 격차가 비교적 작다는 점과도 관련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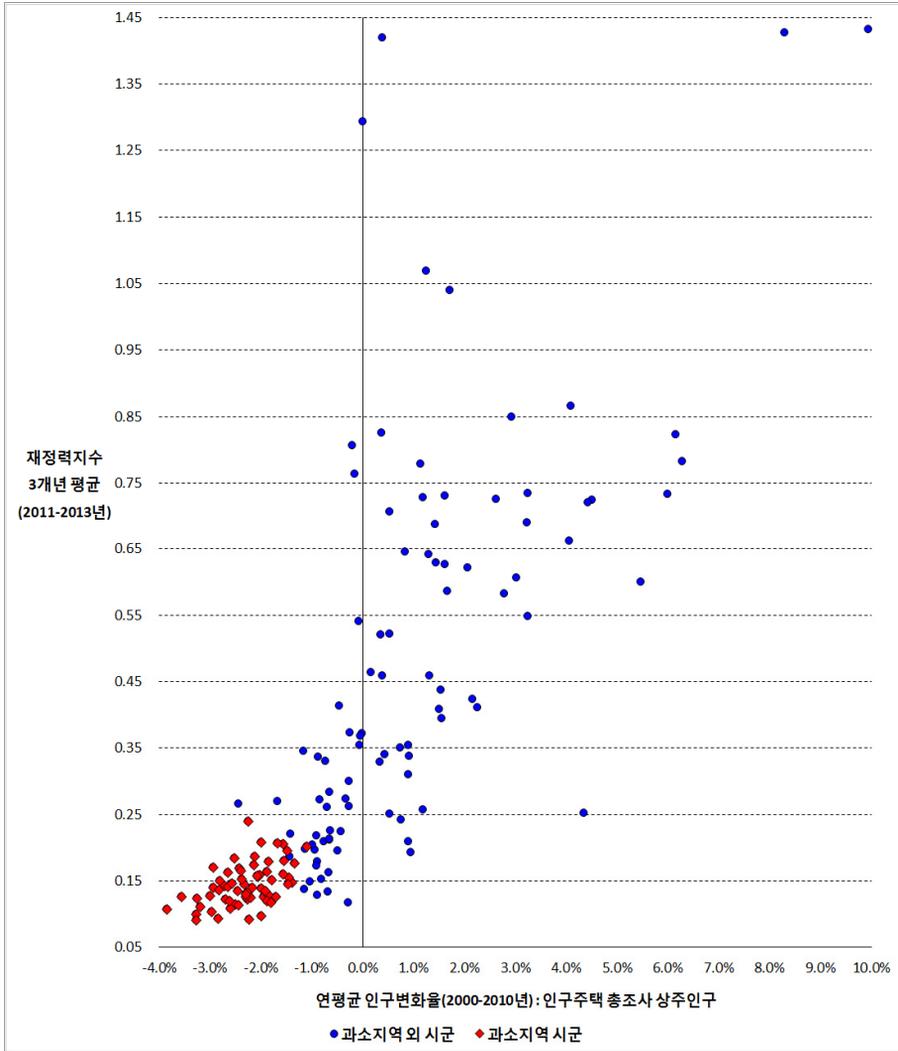
또한 과소지역에서 대체로 인구감소와 일자리감소가 과소지역 외 시·군에 비해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그림 2-14]와 [그림 2-15] 참조). 물론 상당수 과소지역 외 시·군에서도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총액 등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과소지역 평균이 과소지역 외 시·군의 평균과는 큰 격차를 갖는다.

6) 인구과소지역 등 전국 각 시·군의 지표별 현황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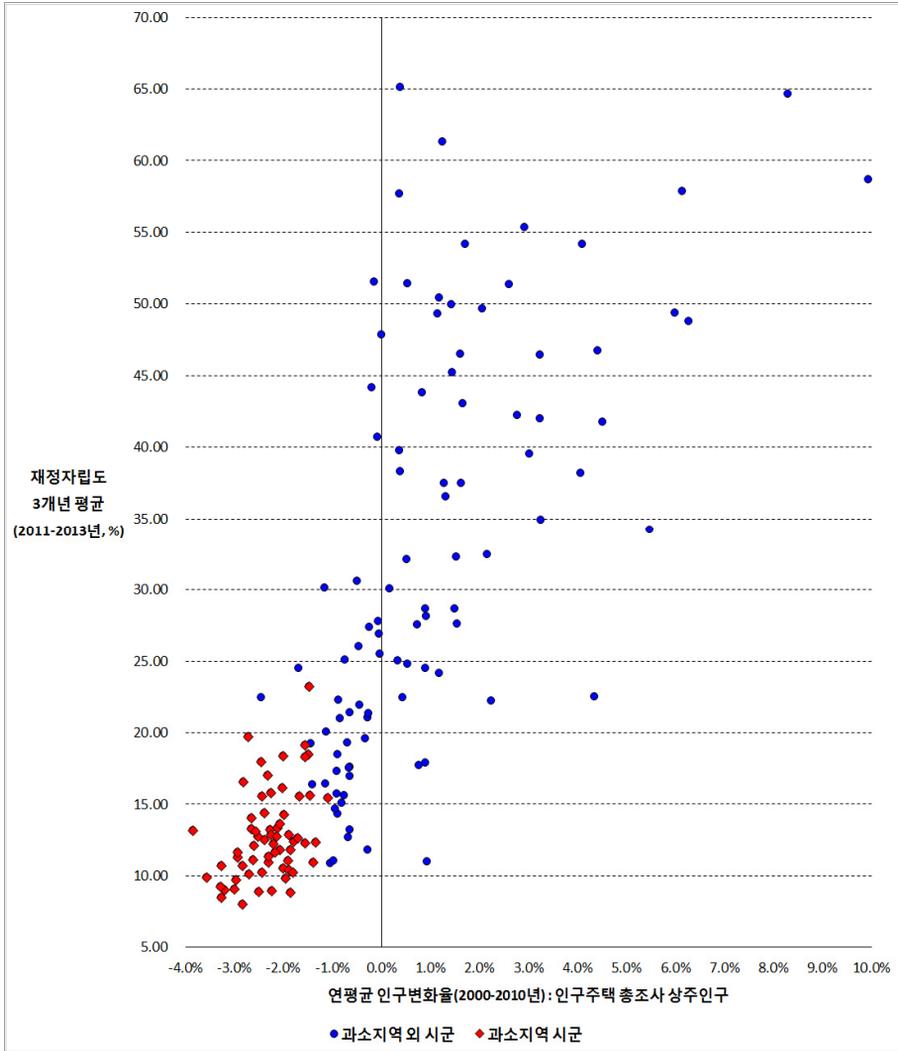
[표 2-기] 과소지역 시·군 현황: 전국 및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

		평균		
		전국 시·군 (160개)	과소지역 시·군 (63개)	과소지역 외 시·군(97개)
주요 지표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0.31%	-2.29%	0.97%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2011~2013년)	0.346	0.145	0.479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2011~2013년)	24.47%	12.85%	32.18%
	65세 이상 비율(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50%	30.38%	14.09%
	65세 이상 비율(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13.34%	19.05%	9.63%
	65세 이상 비율 변화량(2000~2010년)	7.17%p	11.33%p	4.47%p
	20~39세 비율(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2.81%	15.83%	27.33%
	20~39세 비율(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29.29%	23.62%	32.97%
	20~39세 비율 변화량(2000~2010년)	-6.49%p	-7.79%p	-5.64%p
	연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0.54%	-1.47%	1.84%
	1인당 지방소득세 3개년 평균(2010~2012년, 천원)	112.32	59.84	146.41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2010~2012년, 천원)	25,295,659.94	3,273,058.67	39,598,998.91
기타 지표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 합계 변화율(2000~2012년, 연평균)	0.07%	-1.52%	1.11%
	65세 이상 비율(2012년): 주민등록인구	18.99%	26.79%	13.91%
	65세 이상 비율 변화량(2000~2012년): 주민등록인구	7.21%p	10.59%p	5.02%p
	20~39세 비율(2012년): 주민등록인구	24.03%	19.53%	26.96%
	20~39세 비율 변화량(2000~2012년): 주민등록인구	-7.85%p	-8.24%p	-7.59%p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166,523,28인	45,959,32인	244,827,71인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 합계(2012년)	179,668,23인	52,434,79인	262,304,37인
	행정구역 면적	602.4km ²	666.0km ²	561.1km ²
	주민등록인구(2012년)	176,276,48인	51,780,05인	257,134,98인
	체류외국인(2012년)	3,391.75인	654.75인	5,169.39인
	인구밀도(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2010년	847.45인/km ²	73.53인/km ²	1,350.10인/km ²
	인구밀도(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 합계): 2012년	898.98인/km ²	84.48인/km ²	1,427.98인/km ²
	65세 이상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812,49인	13,272,81인	25,709,39인
65세 이상 인구(2012년): 주민등록인구	22,359,07인	13,450,38인	28,145,1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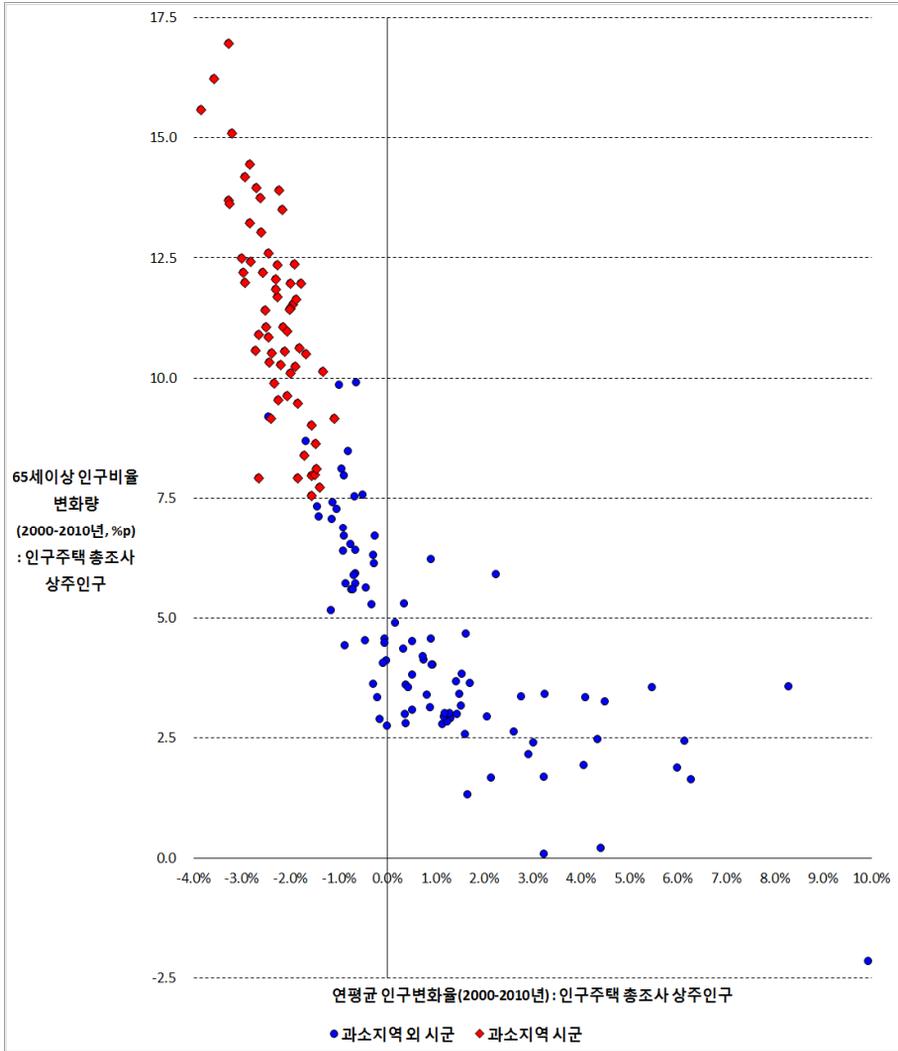
[그림 2-7]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201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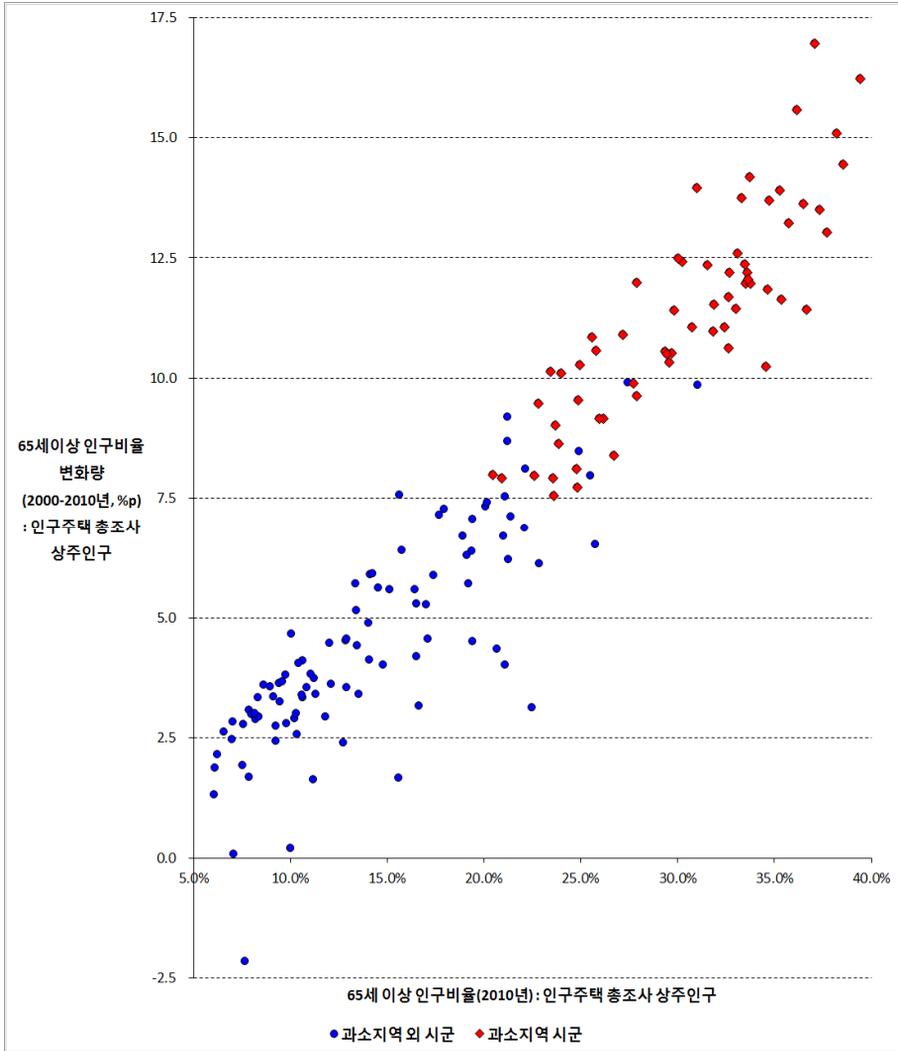
[그림 2-8]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201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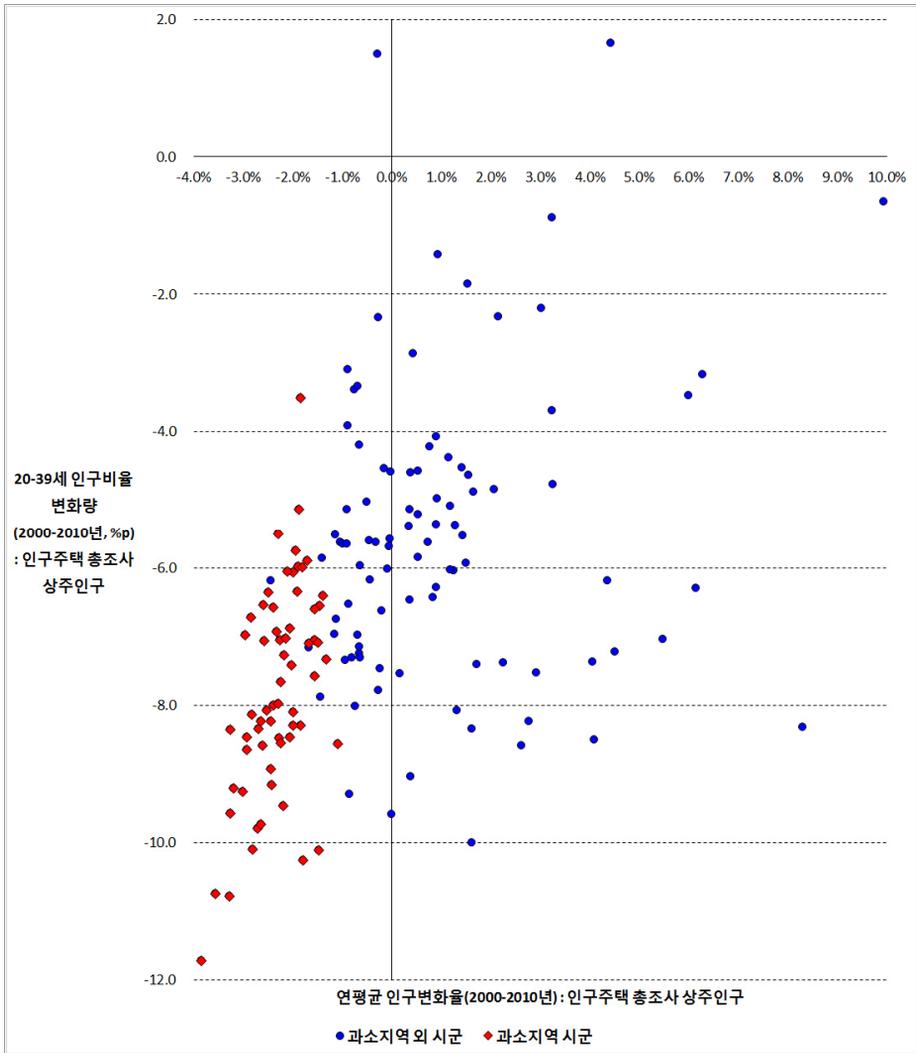
[그림 2-9]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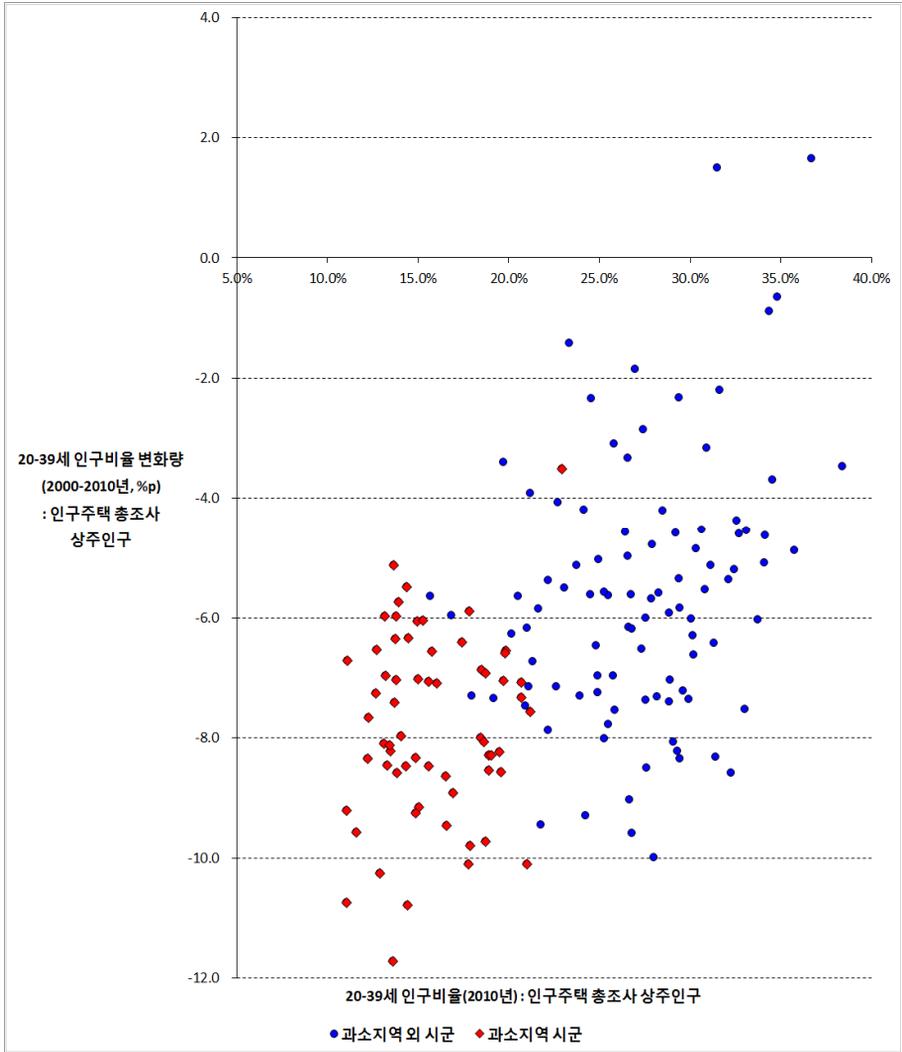
[그림 2-10]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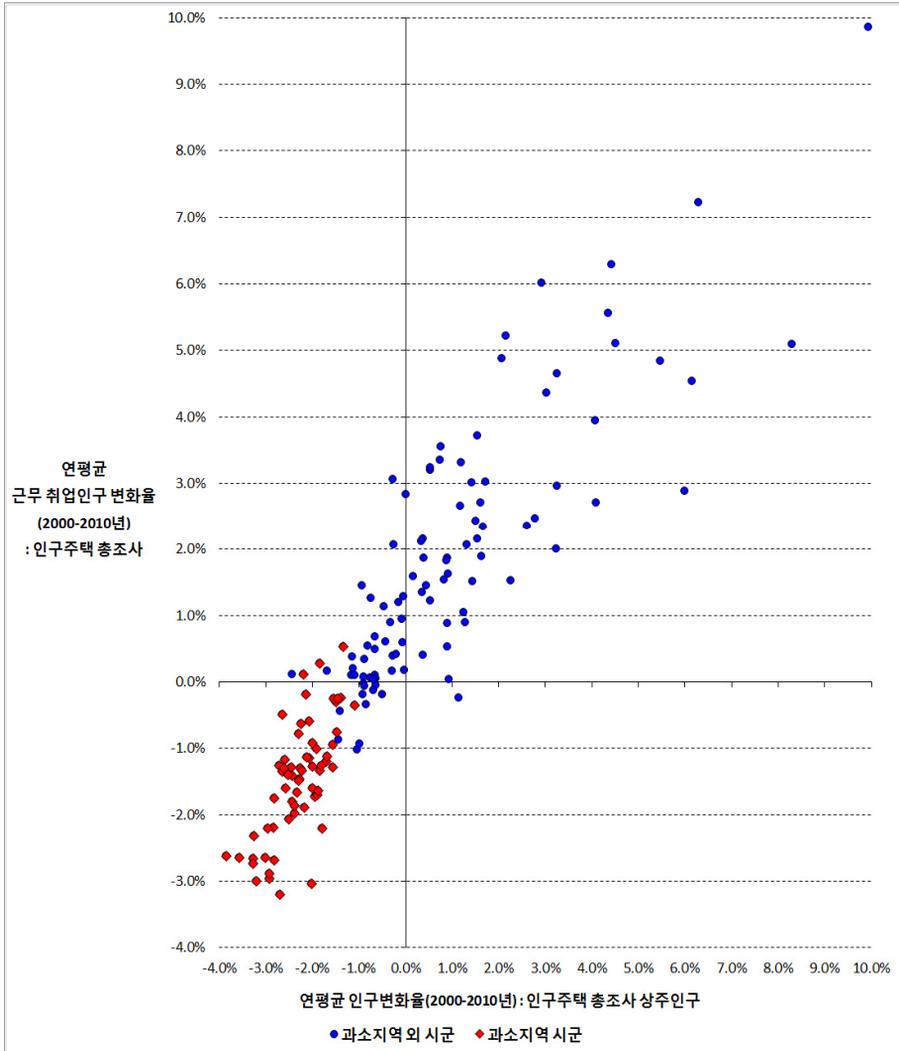
[그림 2-11]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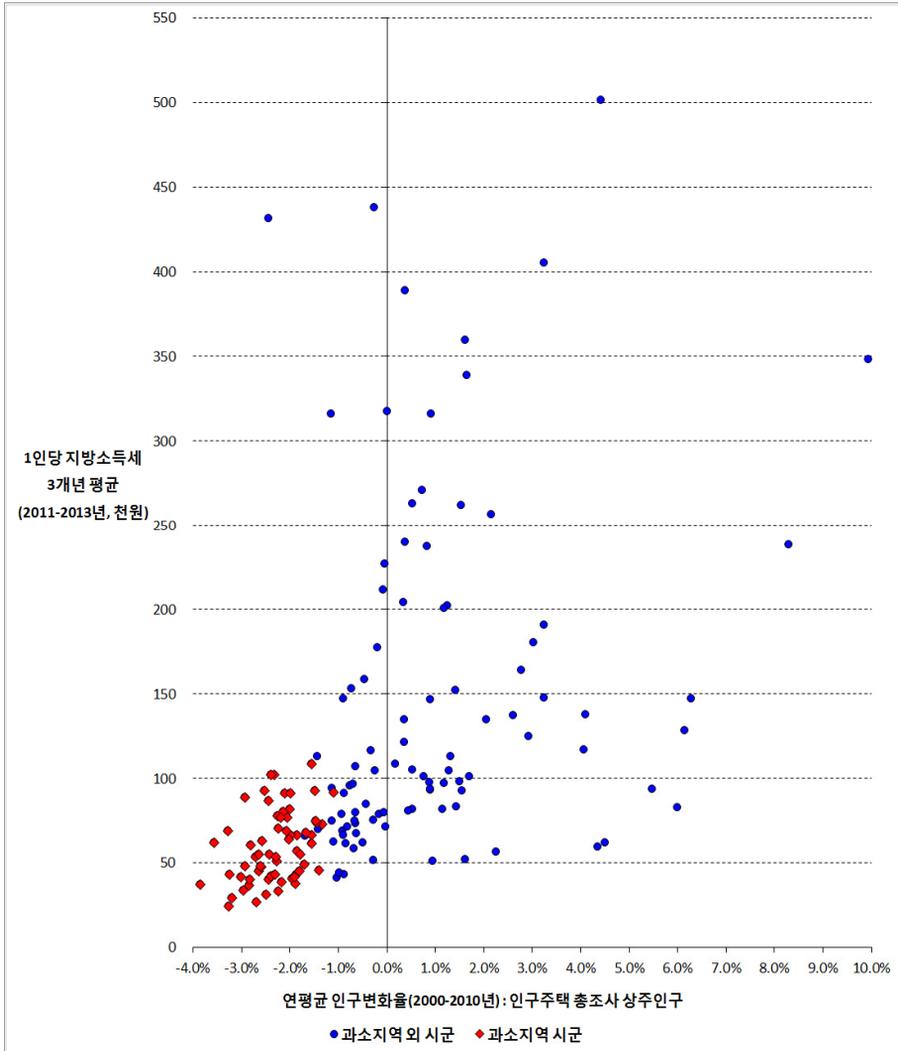
[그림 2-12] 20~39세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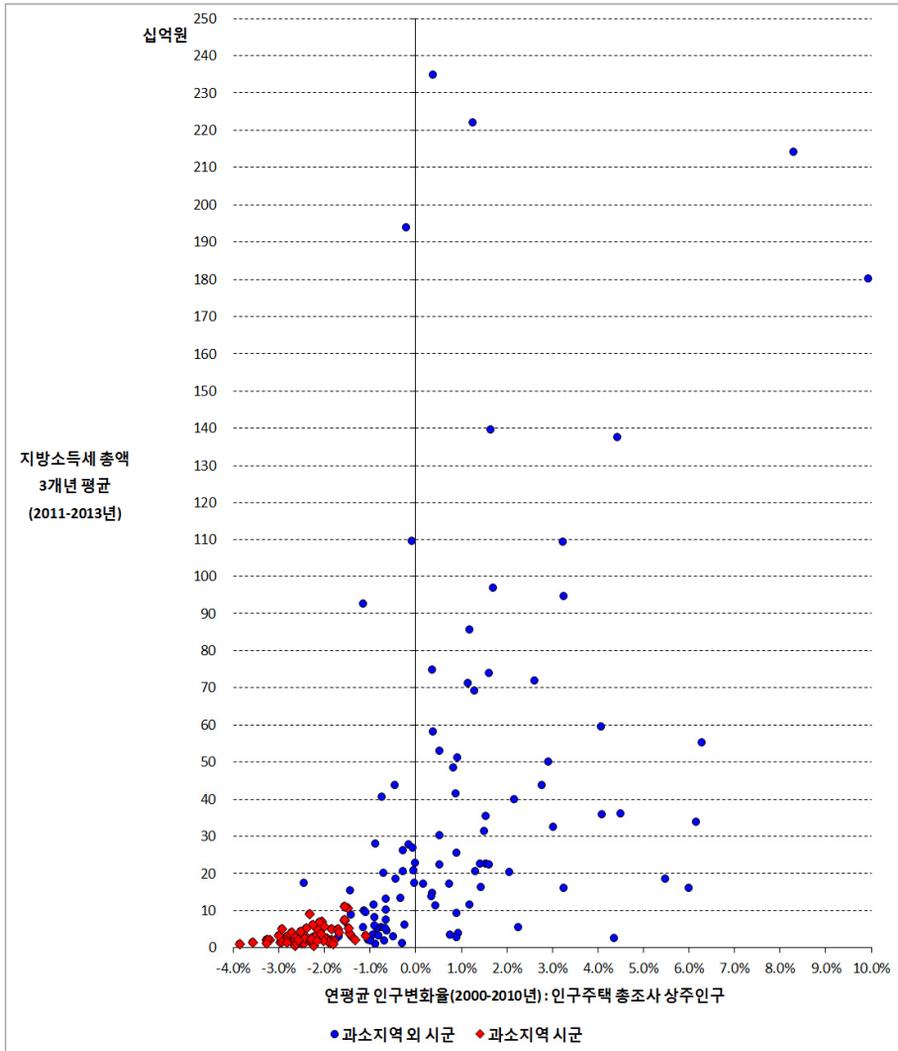
[그림 2-13]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연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그림 2-14]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1인당 지방소득세 3개년 평균(2011~2013년)



[그림 2-15]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2011~2013년)



2.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

1) 공공시설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을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주로 중심지(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중심마을 등)에 입지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국비 또는 지방비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⁷⁾ 그리고 이 연구는 공공시설의 공급·활용을 중심지와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하므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개별 이용자에게 또는 그 부근까지 설치되는 시설인 전기, 유선전화, 상하수도, 가스, 도로 등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시설은 선형의 기반시설로서 중심지에만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이 중심지로의 통행하여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주민이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는데, 정부 및 지자체 이외의 공공단체가 설치한 시설, 그리고 지자체 청사는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표 2-8]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

<p>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것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을 설립한다.2. 지방자치단체(다음의 제3항에 규정하는 지정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3.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p>• 지방자치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p> <p>①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 → 이용 자체가 복지증진에 결부된 시설이므로 유치장(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시설), 경륜장(수익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님</p>

7) 공공시설 관련 우리나라 법적 용어에 관한 내용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계속)

- ②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시설 → 공공시설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예를 들어 시청 및 시험연구소는 공공시설이 아님
 - ③ 당해 지자체 주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중 당해 지자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지만 주민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님(예를 들어 상품진열소는 공공시설이 아님). 여기서 주민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 범위에 한정된 주민이어도 무방함
 - ④ 공공시설은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임
 -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이외의 공공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니며, 이 경우 설치하는 반드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사용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에 당해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권한을 취득한 경우도 충분하다고 인정함
- 그리고 공공시설은 주로 다음의 표에 나타난 ‘공공용 재산’의 범주에 해당된다.

공공재산의 구분(일본 지방자치법 제238조)

행정재산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 用)으로 이용하는 재산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재산	청사, 시험연구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물 및 부지
		공공용재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산	공원, 도로, 하천, 학교, 도서관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부지
보통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매각용 토지,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

주: 공공재산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위함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아닌 주민자치조직이 직접 설치하더라도 관리·운영에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 지방자치법에서와 달리, 해당 시설도 공공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복지회관처럼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관청(예: 읍·면사무소)에 부속 건물로 설치된 경우도 많은데,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

2)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 설정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육상경기장(또는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공공체육시설’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 의료시설’로 한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 후 위탁 주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중목욕장과 같은 ‘공중위생 관련 시설’, 지자체가 대체로 설치 또는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체 시설’은 제3장(공공 시설 이용실태와 공급·활용 과제)의 설문조사 또는 현지면담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간(주민자치조직 제외)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시설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것은 민간 시설 특성상 공급·활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⁹⁾

공공시설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소지역 중심지 위계[마을(행정리) → 중심기능을 갖춘 (읍)면소재지 또는 군청(또는 시청) 소재지]를 반영하게 된다.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거나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가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과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중심기능을 갖춘 (읍)면소재지 또는 군청(또는 시청) 소재지 등 비교적 소수의 중심지에 입지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차서비스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과소지역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과소지역내 기초적인 정주공간 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별로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8) 이 연구에서는 마을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한다. 마을체육시설은 아파트단지, 마을공터, 둔치, 약수터, 등산로, 체육공원, 도시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운동시설(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등을 통칭한다.

9) 물론 주민이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시설, 즉 병·의원, 약국(이상 보건의료시설), 마트·슈퍼마켓, 편의점(이상 유통판매시설), 이·미용원, 세탁소(이상 공중위생 관계시설) 등을 주민의 시설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연구의 제3장 참조).

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수 대비 시설 수, 시설 입지 지자체 비율에 있어 과소지역이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을 대체로 하회하지만¹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지자체 평균 인구에서 나타나는 격차보다도 작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을 보면, 과소지역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시설 수, 65세 이상 1000인당 시설 수에서 모두 과소지역 평균이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의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시설에서도 통 및 행정리 10개소당 시설 수, 인구 1만 인당 시설 수에서 모두 과소지역 평균이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의 평균을 초과한다. 이것은 과소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이용수요를 확보하기 힘들어 입지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자체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2012년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 중 ‘문예회관’,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문화시설 중 공립미술관을 제외하면, 과소지역 대다수 시·군에 문예회관,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공립박물관이 구성되어 있다([표 2-9]~[표 2-11] 참조). 특히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은 모든 과소지역 시·군에 입지해 있다.

지자체수 대비 문예회관 수, 지자체수 대비 공공도서관 수(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지자체수 대비 공립박물관 수, 문예회관 입지 시·군 비율, 공립박물관 입지 시·군 비율 모두에서 과소지역이 전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에 미달한다. 그러나 과소지역과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 간의 이러한 격차는 지자체 평균 인구 격차보다는 작다.

10) 다만 게이트볼장의 경우 과소지역이 과소지역 외 시·군(전국 시·군)을 상회한다.

또한 문예회관,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각각의 1개소당 이용자 수(또는 관람인원) 평균은 과소지역 시·군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 각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 대비 과소지역 시·군의 지자체 평균 인구 비율보다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 대비 과소지역 시·군의 시설 1개소당 이용인구(평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수용능력, 세부기능 등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 제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에서 집계하는 시설 중 ‘육상경기장(또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체육관(구기, 투기, 생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고찰하였다. 육상경기장과 축구장은 각각 과소지역 시·군의 87%와 82% 정도의 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관(구기·투기 및 생활 체육관)과 테니스장은 각각 과소지역 시·군의 98% 정도에, 그리고 100%에 입지해 있다([표 2-13]~[표 2-18] 참조).

물론 지자체수 대비 상기 체육시설 수의 비율은 모두 과소지역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 각각의 수준을 하회한다. 하지만 과소지역과 과소지역 외 시·군(또는 전국 시·군) 간의 지자체수 대비 상기 체육시설 수의 비율 격차는 지자체 평균 인구 격차보다는 작다.

게이트볼장은 과소지역 시·군의 87% 정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자체수 대비 게이트볼장 면수가 근소하게나마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 각각을 초과한다([표 2-19] 참조).

□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복지시설의 경우, 과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으로 구성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12년 현재,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 각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비율 평균이 약 98% 이상이다 ([표 2-20] 참조).

특히 과소지역에서는 전국 시·군이나 과소지역 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마을단위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표 2-20] 참조). 통계수치상 과소지역 시·군에는 모든 통 및 행정리에 1개소 이상(1.18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국 시·군의 1개 통 및 행정리당 경로당 수는 0.95개소이고, 과소지역 외 시·군은 0.81개소이다. 그리고 과소지역 시·군의 65세 이상 1000인당 경로당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은 전국 시·군의 1.3배를 넘고 과소지역 외 시·군의 1.8배 정도가 된다. 과소지역 시·군이 26.22개소, 전국 시·군이 19.28개소, 과소지역 외 시·군이 14.77개소이다.

경로당이 과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마을단위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과소지역 시·군의 65세 이상 비율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은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 각각의 1.5배, 2.2배 정도가 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과소지역 시·군 평균이 30.38%, 전국 시·군 평균이 20.50%,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14.09%이다.

□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살펴보면, 지자체 수 대비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통 및 행정리 100개소 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평균, 인구 1만 인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평균에서 모두 과소지역 시·군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보다 양호하다([표 2-21] 참조). 지자체수 대비 공공보건의료시설 수의 경우, 과소지역 시·군 25.02개소, 전국 시·군 20.68개소, 과소지역 외 시·군 17.87개소이다. 통 및 행정리 100개소 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평균을 보면, 과소지역 시·군 9.36개소, 전국 시·군 7.05개소, 과소지역 외 시·군 5.56개소이다. 인구 1만 인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우, 과소지역 시·군 6.21개소, 전국 시·군 3.48개소, 과소지역 외 시·군 1.72개소이다.

이것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였거나 감소하고 있는 과소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이용수요를 확보하기 힘들어 입지하기가 곤란하고, 그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과소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지자체는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을 기초지자체별로 최소 1개소를, 그리고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1) 문화시설

□ 문예회관

과소지역 지자체수 대비 문예회관 수가 0.83(=52/63)이므로 전국 시·군(0.98)과 과소지역 외 시·군(1.08)에 모두 미달한다([표 2-9] 참조). 그러나 문예회관이 소재해 있는 과소지역 시·군 비율이 79.37%(=50/63)로서 전국 시·군(81.88%)과 과소지역 외 시·군(83.51%)에 미달하지만, 비교적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시·군민회관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2103년; 2012년 기준)에서 집계한 문예회관이 과소 집계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¹¹⁾ [표 2-9]에서 볼 수 있는, 과소지역이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 갖는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문예회관 1개소당 이용자 수 평균을 살펴보면,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각각 과소지역의 1.6배, 2배 정도가 된다. 그러나 문예회관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주민이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각각 과소지역 시·군의 3.6배, 5.3배이다. 물론 보다 자세하게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예회관의 수용능력, 세부기능 등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11) 예를 들어, 현지조사 지역이었던 청송군 청송읍에는 복지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통합된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이 위치해 있지만,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역시 현지조사 지역인 괴산군 괴산읍에도 ‘괴산군민회관’이 입지해 있지만,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표 2-9] 문예회관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문예회관 수	0.98	0.83	1.08	0.80
문예회관 입지 지자체비율	81.88%	79.37%	83.51%	68.57%
문예회관 입지 지자체수	131	50	81	48
문예회관 수	157	52	105	56
문예회관 수(이용자 통계 있음)	155	52	103	56
문예회관 1개소당 이용자수(평균)	89,974.04	55,483.96	111,530.34	165,530.39
문예회관 총 이용자 수	14,216,941	2,857,396	11,359,545	10,992,902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¹²⁾

지자체수 대비 공공도서관수는 과소지역이 1.95(=123/63)로 전국 시·군(3.52)과 과소지역 외 시·군(4.54)보다 낮다([표 2-10] 참조). 하지만 공공도서관 입지 지자체 비율은 과소지역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과 마찬가지로 100%이다.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이용자 수 평균을 보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이 각각 과소지역의 2배, 2.7배이고,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이용책수 평균은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이 각각 과소지역의 2.1배와 2.9배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주민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전국 시·군의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과소지역 외 시·군의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각각 과소지역 시·군의 3.6배, 5.3배 정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반영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전국적으로 20개소이며, 초·중·고교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공공도서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는 있다. 역시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수용능력, 세부기능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표 2-10]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공공도서관 수	3.52	1.95	4.54	3.50
공공도서관 입지 지자체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공공도서관 입지 지자체 수	160	63	97	70
공공도서관 수	563	123	440	245
공공도서관 수(이용통계 있음)	562	122	440	245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이용자 수(평균)	221,570.12	108,092.85	295,271.85	532,884.90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이용책수(평균)	109,185.21	50,888.57	147,047.97	210,635.09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163,565,071	13,162,554	150,402,517	120,695,729
공공도서관 총 이용책수	80,676,606	6,127,197	74,549,409	46,612,715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 공립박물관

지자체수 대비 공립박물관 수의 경우, 과소지역 시·군이 1.52(=96/63)로서 1을 상회하지만 전국 시·군(1.78)과 과소지역 외 시·군(1.94)보다는 낮다([표 2-11] 참조). 하지만 공립박물관이 입지해 있는 과소지역 시·군 비율은 79.37%(=50/63)로서 전국 시·군(80.00%)과 과소지역 외 시·군(80.41%)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공립박물관 1개소당 관람인원 평균을 보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이 각각 과소지역의 1.1배와 1.2배로서,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있어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이 각각 과소지역의 3.6배와 5.3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지자체 관할구역 주민이 공립박물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과소지역 시·군에서의 공립박물관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이러한 단순 비교를 벗어나 보다 정치한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수용능력, 세부기능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 2-11] 공립박물관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공립박물관 수	1.78	1.52	1.94	0.60
공립박물관 입지 지자체비율	80.00%	79.37%	80.41%	40.00%
공립박물관 입지 지자체 수	128	50	78	28
공립박물관 수	284	96	188	42
공립박물관 수(관람인원 통계 있음)	265	86	179	42
공립박물관 1개소당 관람인원(평균)	108,756.98	94,847.48	118,029.98	173,876.62
공립박물관 총 관람인원	34,452,044	9,055,982	25,396,062	7,321,123
임시 휴관 공립박물관 수	11	7	4	0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 공립미술관

지자체수 대비 공립미술관 수와 공립미술관 입지 지자체 비율을 보면, 과소지역은 각각 0.06(=4/63), 6.35%(=4/63)에 불과하고([표 2-12] 참조), 전국 시·군(0.19,

13.75%)과 과소지역 시·군(0.27, 18.56%)보다 모두 낮다. 사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0개 시·군 중 22개 지역에서만 30개소의 공립미술관이 설치·운영 중이다.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 각각의 공립미술관 1개소당 이용자 수 평균은 과소지역 시·군의 1.5배, 1.6배이다.

[표 2-12] 공립미술관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공립미술관 수	0.19	0.06	0.27	0.13
공립미술관 입지 지자체비율	13.75%	6.35%	18.56%	11.43%
공립미술관 입지 지자체 수	22	4	18	8
공립미술관 수	30	4	26	9
공립미술관 수(관람인원 통계 있음)	28	4	24	8
공립미술관 1개소당 이용자 수(평균)	98,224.52	65,456.75	105,934.59	408,773.75
공립미술관 총 관람인원	2,588,629	261,827	2,326,802	3,270,190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2) 공공체육시설

□ 육상경기장(또는 종합운동장)

지자체수 대비 육상경기장 수는 과소지역 시·군이 1.07(=67/63)로서 1을 상회하지만 전국 시·군(1.28) 및 과소지역 외 시·군(1.44)에 미치지 못한다([표 2-13] 참조). 그러나 지자체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과소지역

시·군과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 간의 격차보다는 크지 않다. 육상경기장 입지 지자체 비율은 과소지역이 87.30%(=55/63)이고 전국 시·군(89.38%) 및 과소지역 외 시·군(90.21%)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 과소지역 시·군에 육상경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표 2-13] 육상경기장(또는 종합운동장)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육상경기장 수	1.28	1.06	1.42	0.30
육상경기장 입지 지자체비율	89.38%	87.30%	90.72%	17.14%
육상경기장 수	205	67	138	21
육상경기장 입지 지자체 수	143	55	88	12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시킴

□ 축구장

과소지역 시·군의 지자체수 대비 축구장 면수, 축구장 입지 지자체 비율은 각각 3.44(=217/63), 82.54%(=52/63)로 모두 전국 시·군(4.39, 90.63%)과 과소지역 외 시·군(5.01, 95.88%)에 미치지 못한다([표 2-14] 참조). 지자체수 대비 축구장 면수, 축구장 입지 지자체 비율에서 나타나는 과소지역 시·군과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 간의 격차는 지자체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과소지역 시·군과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 간의 격차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소지역 대다수 시·군에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4] 축구장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축구장 면수	4.39	3.44	5.01	2.61
축구장 입지 지자체비율	90.63%	82.54%	95.88%	81.43%
축구장 면수	703	217	486	183
축구장 입지 지자체 수	145	52	93	57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시킴

□ 체육관

과소지역의 지자체수 대비 체육관 수는 2.16(=136/63)으로서 1은 초과하지만 전국 시·군(3.26)과 과소지역 외 시·군(3.97)보다 낮다([표 2-15] 참조). 이러한 격차는 지자체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있어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각각 과소지역 시·군의 3.6배, 5.3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격차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체육관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 비율은 과소지역 시·군이 98.41%(=62/63)이며, 전국 시·군(98.97%), 과소지역 외 시·군(98.90%)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160개 시·군 중 158개 지역에 구기·투기체육관 또는 생활체육관이 구성되어 있고, 1개 지역을 제외한 62개 과소지역 시·군에 구기·투기체육관 또는 생활체육관 1개소가 입지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소지역 중 구기·투기체육관 입지 시·군은 44개 지역이며, 생활체육관 입지 시·군도 44개 지역이므로([표 2-16]과 [표 2-17] 참조), 과소지역 중 18개 시·군에 구기·투기체육관과 생활체육관이 모두 입지해 있다.

[표 2-15] 체육관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체육관 수	3.26	2.16	3.97	2.81
체육관 입지 지자체비율	98.75%	98.41%	98.97%	90.00%
체육관 수	521	136	385	197
체육관 입지 지자체수	158	62	96	63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시킴

주 4: 체육관은 구기, 투기, 생활 체육관을 포괄함

[표 2-16] 구기·투기체육관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구기·투기체육관 수	1.83	1.11	2.30	0.71
구기·투기체육관 입지 지자체비율	82.50%	69.84%	90.72%	44.29%
구기·투기체육관 수	293	70	223	50
구기·투기체육관 입지 지자체 수	132	44	88	31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시킴

[표 2-17] 생활체육관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생활체육관 수	1.43	1.05	1.67	2.10
생활체육관 입지 지자체비율	77.50%	69.84%	82.47%	84.29%
생활체육관 수	228	66	162	147
생활체육관 입지 지자체 수	124	44	80	59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시킴

□ 테니스장

과소지역의 지자체수 대비 테니스장 면수는 10.54(=664/63)로서 10을 초과하지만 전국 시·군(15.21)과 과소지역 외 시·군(18.25)에 미달된다([표 2-18] 참조). 지자체 평균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있어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각각 과소지역 시·군의 3.6배, 5.3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수 대비 테니스장 면수에서 나타나는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전국 160개 시·군 중 158개 지역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테니스장(마을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은 제외)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 비율은 과소지역 시·군이 100.0%(=63/63)이다. 그리고 전국 시·군(98.75%), 과소지역 외 시·군(97.94%)을 다소 상회한다.

[표 2-18] 테니스장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테니스장 면수	15.21	10.54	18.25	9.23
테니스장 입지 지자체비율	98.75%	100.00%	97.94%	78.57%
테니스장 면수	2,434	664	1,770	646
테니스장 입지 지자체 수	158	63	95	55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시킴

□ 게이트볼장

과소지역의 지자체수 대비 게이트볼장 면수는 7.81(=492/63)로서 전국 시·군(7.59)과 과소지역 외 시·군(7.44)을 모두 근소하게 상회한다([표 2-19] 참조). 게이트볼장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 비율에서도 과소지역 시·군이 87.30%(=55/63)로서 전국 시·군(86.25%), 과소지역 외 시·군(85.57%)을 모두 초과한다. 게이트볼장(마을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은 제외)이 과소지역 시·군에서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과 비교하여 주요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9] 게이트볼장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수 대비 게이트볼장 면수	7.59	7.81	7.44	1.20
게이트볼장 입지 지자체비율	86.25%	87.30%	85.57%	30.00%
게이트볼장 면수	1,214	492	722	84
게이트볼장 입지 지자체 수	138	55	83	21
지자체 평균 인구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66,523.3	45,959.3	244,827.7	313,379.5
지자체 평균 인구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9,668.2	52,434.8	262,304.4	330,489.3
지자체 행정구역 평균 면적(km ²)	602.4	666.0	561.1	55.4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기초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에 한정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시설을 포함하며, 자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포함

(3)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자체 수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지자체 수 대비 경로당 수를 보면, 과소지역 시·군, 전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이 비슷한 수준이다([표 2-20] 참조). 지자체 수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과소지역 시·군, 전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이 각각 342.38, 334.05, 328.64이다. 그리고 지자체수 대비 경로당 수는 과소지역 시·군, 전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이 각각 338.37, 328.50, 322.09이다.

[표 2-20]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 수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334.05	342.38	328.64	154.89
지자체 수 대비 경로당 수	328.50	338.37	322.09	144.37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평균	0.97	1.19	0.82	0.38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경로당 수 평균	0.95	1.18	0.81	0.35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9.57	26.57	15.03	5.78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경로당 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9.28	26.22	14.77	5.42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	18.75	26.11	13.97	5.01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경로당 수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	18.48	25.78	13.74	4.69
65세 이상 인구비율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50%	30.38%	14.09%	10.51%
65세 이상 인구비율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	18.99%	26.79%	13.91%	11.38%
지자체수 대비 통 및 행정리 수	393.39	297.30	455.79	426.70
통 및 행정리 수	62,942	18,730	44,212	29,869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53,448	21,570	31,878	10,842
경로당 수	52,560	21,317	31,243	10,106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비율 평균	98.19%	98.55%	97.96%	92.50%
65세 이상 인구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812.49	13,272.81	25,709.39	29,923.84
65세 이상 인구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	22,359.07	13,450.38	28,145.12	34,322.99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시·도 통계연보(2012년 기준)에서 통 및 행정리 수,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구득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그러나 65세 이상 1000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65세 이상 1000인당 경로당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각각에서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과소지역 시·군 평균의 73.5~73.7% 수준, 56.3~56.6% 수준을 나타내므로 과소지역 시·군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반면 통 및 행정리 1개 소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경로당 수 각각에서는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이 과소지역 시·군 평균의 80.5~81.5%, 68.6~68.9% 수준으로 상승하여 격차가 작아진다. 과소지역 시·군의 통 및 행정리당 65세 이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또는 경로당 수에서 과소지역 시·군과 전국 시·군(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 간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평균 또는 경로당 수 평균은 과소지역 시·군에는 모든 통 및 행정리에 1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입지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표 2-20] 참조). 통 및 행정리 1개소당 경로당 수 평균을 보면, 과소지역 시·군이 1.18개소이고, 전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은 각각 0.95 개소와 0.81 개소이지만 1미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과소지역 시·군의 65세 이상 비율 평균이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 각각의 1.5배, 2.2배가량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4) 공공보건의료시설

인구수가 급속하게 감소하였거나 감소하고 있으므로 민간의료기관이 과소지역에 입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설치해왔다. 그 결과, 통 및 행정리 100개소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보건소·보건의료원 수, 보건지소 수, 보건진료소 수), 인구 1만 인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보건소·보건의료원 수, 보건지소 수, 보건진료소 수)에서 모두 과소지역 시·군의 평균이 전국 시·군 평균과 과소지역 외 시·군 평균을 상회한다([표 2-21] 참조). 또한 [표 2-21]은 지자체가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기초지자체별로 1개소를, 그리고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별로 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했음을 보여준다.

[표 2-21]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시·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자치구 및 세종시
지자체 수 대비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20.68	25.02	17.87	2.24
지자체 수 대비 보건소·보건의료원 수	1.14	1.00	1.23	1.00
지자체 수 대비 보건지소 수	8.01	9.65	6.95	0.83
지자체 수 대비 보건진료소 수	11.53	14.37	9.69	0.41
통 및 행정리 100개소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평균	7.05	9.36	5.56	0.63
통 및 행정리 100개소당 보건소·보건의료원 수 평균	0.42	0.46	0.40	0.28
통 및 행정리 100개소당 보건지소 수 평균	2.71	3.54	2.17	0.23
통 및 행정리 100개소당 보건진료소 수 평균	3.92	5.37	2.98	0.12
인구 1만 인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3.48	6.21	1.72	0.13
인구 1만 인당 보건소·보건의료원 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0.18	0.28	0.11	0.05
인구 1만 인당 보건지소 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35	2.36	0.69	0.05
인구 1만 인당 보건진료소 수 평균(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1.96	3.56	0.92	0.03
인구 1만 인당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3.01	5.31	1.52	0.11
인구 1만 인당 보건소·보건의료원 수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0.15	0.24	0.10	0.04
인구 1만 인당 보건지소 수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17	2.02	0.61	0.04
인구 1만 인당 보건진료소 수 평균(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1.70	3.05	0.82	0.02
지자체수 대비 통 및 행정리 수	393.39	297.30	455.79	426.70
통 및 행정리 수	62,942	18,730	44,212	29,869
공공보건의료시설 수	3,309	1,576	1,733	157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수	182	63	119	70
보건지소 수	1,282	608	674	58
보건진료소 수	1,845	905	940	29
지자체 수	160	63	97	70

주 1: 시·도 통계연보(2012년 기준)에서 통 및 행정리 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계를 구득하여 사용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지자체 수 대비 보건소·보건의료원 수는 과소지역 시·군과 과소지역 외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160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이 입지해 있음을 제시한다. 자치구 및 세종시의 경우, 각각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이 입지해 있다. 지자체 수 대비 보건진료소 수를 보면, 과소지역 시·군이 9.65개소로서 전국 시·군(8.01개소)을 상회한다. 비교적 민간의료기관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과소지역 외 시·군은 6.95개소이고, 자치구 및 세종시는 0.8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지자체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오기 위해 노력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표 2-21] 참조). 지자체 수 대비 보건진료소 수를 살펴보면, 과소지역 시·군이 14.37개소로서 전국 시·군(11.53개소)보다 많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지역 외 시·군의 경우 9.69개소이고, 자치구 및 세종시는 0.41개소에 불과하다.

4)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은 지역사회 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계 법령 및 예산회계 지침에 따라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 및 체육시설의 국비보조의 요건으로서 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거나 확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1) 문화·체육시설 정책동향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즉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민 또는 지역주민이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표 2-22] 참조).

[표 2-22]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내용	법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런데 국가는 지자체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를 보조하지만, 운영 및 관련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체육진흥시설지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예정)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에 시설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표 2-23] 광특회계의 문화·체육시설 지원 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국비보조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박물관건립지원, 공공도서관건립지원, 공립미술관건립지원, 문예회관건립지원,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등	40%(용지매입비 제외) ※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지방체육시설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0%(용지매입비 제외)

주 1: 국민체육기금 보조사업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과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이 2014년부터 지방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이관됨

주 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국민체육기금에서 광특회계로 2014년부터 이관되어 추가된 내역사업임

그리고 문화시설의 공급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3대 국정방향 중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하고 문화시설 공급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그림 2-16) 참조). 시설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문화융성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시설의 형태는 생활문화시설과 창작공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설치 방법 측면에서는 신규 공간보다는 지역내 유휴시설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를 강조한다(김효정 2014). 대다수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화시설 건립 관련 지원 사업 현황은 [표 2-24]와 같다.

[그림 2-16] 문화향유 관련 정책 목표(2013~2017년)

문화향유	2013년	2014년	2017년
문화예술 관람률	69.6%	73.69%	80%
생활체육 참여율	45.5%	49.9%	60%
문화기반 시설 수	2,299개	2,430개	2,992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15만 명	260만 명	33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235만 명	1,450만 명	1,496만 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표 2-24] 문화시설 건립 관련 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공공박물관 건립지원	1996년 ~계속	2012년까지 2100억 원	2013년: 11개소 (계속 5, 신규 6)	국비 40%, 지방비 60% 2009년 이전에 착수된 계속사업은 30% 국비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991년 ~계속	2012년까지 4233억 원	2013년: 47개소 (계속 24, 신규 23)	국비 40%, 지방비 60%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국비 80%까지 최대 16억 원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1999년 ~계속	2012년까지 2276억 원 2013년 1918억 원	2013년 8개소 (계속 5, 신규 3) 2014년: 7개소	국비 40%, 지방비 60%
문예회관 건립지원	1997년 ~계속	2012년까지 2936억 원	2013년 : 19개소 (계속 8, 신규 11)	정액보조, 1개관 20억 원 이내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1989년 ~계속	2013년 304억 원	2013년: 7개소 (계속 4, 신규 3)	국비 40%, 지방비 60%
문화예술인 기념시설조성	2002년 ~계속	2012년까지 290억 원	2013년: 4개소 (계속 2, 신규 2)	국비 40%, 지방비 60% 2009년 이전에 착수된 계속사업은 30% 국비지원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	2008년 ~계속	2012년까지 1조 779억 원 2013년 1214억 원 (국비 323억 원, 지방비 891억 원)	2013년: 25개소 (계속 25)	국비 40%, 지방비 60% 2009년 이전에 착수된 계속사업은 30% 국비지원

출처: 김효정(2014)

하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가 문화 및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2014년부터 지자체가 문화 및 체육시설 신규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를 광특회계에 요청할 경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출받은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해야 한다(기획재정부 2013). 이러한 제도가 생긴 이유는 광특회계의 집행으로 지자체가 사업별로 보조금을 배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을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지급해왔다는 지적(김홍규·김규원 2011)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기적으로 광특회계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은 문화 및 체육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건립 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광특회계 문화 및 체육시설 관련 동일 내역사업에 신규사업을 3년간 반영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13). 그리고 지자체가 신규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를 거친 후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가 국비보조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기획재정부 2013).

따라서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문화·체육 분야 공공시설을 국비를 보조받아 설치하고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운영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어떻게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이거나 또는 어떻게 관리·운영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문화·체육 분야 공공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에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주민 밀착형 소규모 체육시설인 작은 체육관 확충, 소통이 있는 융복합의 세대통합형 체육시설 조성,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위한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 등 체육시설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첫째, 작은 체육관은 경로당, 농촌지역 폐교, 도시지역의 폐쇄된 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소통공간으로 조성한다. 둘째, 세대통합형 체육시설 조성은 어르신, 어린이, 가족들이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운동하고 소통하는 세대 간의 어울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노인), 리틀야구장(유소년), 티볼장(여성) 등을 하나의 공간에 집적화시킨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에게 부족한 문화향유 및 건강증진,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인프라 공간을 조성한다. 셋째,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위한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체육시설로의 접근시간을 시설배치의 기준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2) 노인여가복지시설 정책동향

보건복지부는 인구과소지역의 기초적인 정주공간 단위 즉 마을 수준에서 중요한 공공시설인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고,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관리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비 정산 시 민원 최소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내 경로당 수 및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적정 경로당 설치총량을 산출하여 경로당 설치규모 관리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자인 노인의 안전을 전제로 취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급식·위생관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설치할 수 있고 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실상 지자체의 업무영역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경로당 운영, 경로당활성화 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 또는 교부세 등을 사용하여 경로당 관련 노인여가복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인여가복지에만 해당 재원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상황 그리고 과소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경로당의 신축·개보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경로당 관리·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로당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경로당 운영은 지방사무이므로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경로당 운영경비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왔다.¹³⁾ 따라서 경로당 냉·난방비 등 운영비

13)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 원이 최초로 확보된 이후 2010년 411억 원, 2011년 436억 원, 2012년 539억 원이 배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2월 노인복지법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운영비 절약분에 대한 국가 반납이 아니라 경로당의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표 2-25]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내용	법령
<p>“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 제3항</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노인복지법’ 제37조의 2</p>
<p>“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노인복지법’ 제37조의 3 제2항</p>

개정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정례화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노컷뉴스 2012년 10월 7일).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45.8% 늘지만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60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하고 국회가 다시 편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4년 10월 18일).

(3) 공공보건의료시설 정책동향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보건의료원¹⁴⁾ 및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는 원칙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설치해오에 따라 2012년말 현재 전국 160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 총 182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69개 자치구와 세종시 각각에도 보건소가 1개소씩 입지해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읍·면(보건소가 입지해 있는 읍·면은 제외)당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원칙 등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해왔고, 그 결과 2012년말 현재 전국 160개 시·군 중 13개 일반시를 제외한 147개 지역에서 1282개소의 보건지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69개 자치구 중 38개 지역과 세종시에 총 58개의 보건지소가 입지해 있다.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라는 틀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의사를 계속 배치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2012년말 현재 1845개의 보건진료소가 전국 160개 시·군 중 19개 일반시를 제외한 141개 지역에 입지해 있다. 69개 자치구 중 10개 지역과 세종시에 총 2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입지해 있다.

국가는 지자체의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19조는 국가가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국가가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등의 이전·신

14)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제8조)

축에 사업비의 2/3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보건소 신축의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

[표 2-26]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내용	법령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1조
“①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2조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①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19조

[표 2-27] 보건진료소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내용	법령
<p>“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p>
<p>“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p>
<p>“①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p> <p>“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p>
<p>“① 국가·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p>

chapter III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제3장은 제2장에서 정의한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시설 이용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 현지면담,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해당 논의는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시설 공급 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의 입장에서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사례지역 지자체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1. 사례지역 선정

제2장에서 제시한 인구과소지역 요건에 맞는 시·군 중 5개 군, 즉 괴산군(충청북도), 서천군(충청남도), 순창군(전라북도), 봉화군, 청송군(이상 경상북도)을 선정하였다([표 3-1] 참조). 사례지역 모두 인구과소지역 요건 A를 충족하고, 세부요건 B-1, B-2, B-3 중 최소한 B-1과 B-2를 충족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인구과소지역 요건에 맞는 63개 시·군의 92.1% 정도인 58개 지역이 요건 A를 충족함과 동시에 요건 B 중에서 최소한 세부요건 B-1과 B-2를 충족하는데, 사례지역 5개 군이 해당 58개 지역에 포함된다.

사례지역 중 봉화군과 순창군이 모두 세부요건 B-3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 지역 모두 20~39세 인구비율(2010년)이 20%미만으로 세부요건 B-3의 일부를 충족하지만,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이 각각 -6.06%p와 -5.13%p로서

기준인 -7%p를 다소 상회함으로 인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이다.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실태와 과제를 시설의 공급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사례지역 군청의 문화체육시설, 농촌 및 지역개발, 주민복지·사회복지, 민생경제, 기획 분야 공무원, 그리고 면사무소 공무원(면장, 부면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2014년 4~5월에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 주민대표라 할 수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4년 9월에 실시하여 주민의 시설이용 실태, 이용자 관점에서의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파악하였다.

[표 3-1] 사례지역: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괴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
요건 A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1% 미만	-1.99%	-2.00%	-2.14%	-1.88%	-2.62%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요건 B	세부요건 B-1, B-2, B-3 중 2개 이상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세부요건 B-1] 재정력지수(2011~2013년 3개년 평균) 0.2 미만, 또는 재정자립도(2011~2013년 3개년 평균) 15% 미만	0.139 14.29%	0.097 10.53%	0.174 12.72%	0.120 10.40%	0.120 11.08%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세부요건 B-2]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20% 초과,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7.5%p 초과	33.53% 11.96%p	33.01% 11.44%p	30.74% 11.06%p	35.38% 11.63%p	33.32% 13.75%p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세부요건 B-3] 20~39세 인구비율(2010년) 20% 미만, 그리고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7%p 미만	13.12% -8.10%p	14.94% -6.06%p	15.02% -7.02%p	13.65% -5.13%p	13.83% -8.58%p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인구과소지역 요건] 요건 A와 요건 B(세부요건 B-1, B-2, B-3 중 2개 이상 충족)를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그림 3-1] 사례지역 시·군 현지 면담



□ 사례지역 설문조사 실시 읍·면 선정

전술했듯이 사례지역에서 주민대표인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이 연구가 제시한 인구과소지역 요건의 지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응용함으로써 사례지역별로 조사 대상 읍·면을 선정하였다([표 3-2] 참조).

다만 읍·면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행정시 제외)에서만 산출되는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는 사용하지 못했고, 그 대신 행정리가 과소지역내 기초적인 정주공간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리 수 대비 상주인구를 사용하였다([표 3-2] 참조).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의 대체지표로서 65세 미만 인구비율 및 변화량을 사용하였다.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65세 미만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20~39세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을 산출하기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사용하였고, 행정리 수 대비 상주인구(2010년)를 산출하기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와 사례지역 군 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읍·면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사례지역 5개 군별로 지표 각각에 대해 읍·면 값을 표준화시켰고,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후 각 군의 읍·면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사용한 읍·면별 표준화 값 종합점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읍·면의 표준화값 종합점수} &= (\text{연평균 인구변화율 } Z\text{-score}) \times 1 \\
&+ (65\text{세 미만 인구비율 } Z\text{-score}) \times 0.5 \\
&+ (65\text{세 미만 인구비율 변화량 } Z\text{-score}) \times 0.5 \\
&+ (20 \sim 39\text{세 인구비율 } Z\text{-score}) \times 0.5 \\
&+ (20 \sim 39\text{세 인구비율 변화량 } Z\text{-score}) \times 0.5 \\
&+ (\text{행정리수 대비 상주인구 } Z\text{-score}) \times 1
\end{aligned}$$

[표 3-2] 사례지역별 설문조사 실시 읍·면 현황

		읍·면내 행정리 수	설문조사 실시 행정리 수	표준화 값 종합점수	연평균 인구변화율 (2000~2010년)	65세 미만 인구 비율 (2010년)	65세 미만 인구 비율 변화량 (2000~2010년)	20~39세 인구 비율 (2010년)	20~39세 인구 비율 변화량 (2000~2010년)	행정리 수 대비 상주인구 (2010년)	
(11) 괴산군	상위	괴산읍	24	15	8.64	-1.10%	81.2%	-6.7%p	20.4%	-9.2%p	349.5인
		소수면	19	2	0.40	-2.22%	62.4%	-9.6%p	10.3%	-7.0%p	83.2인
	하위	감물면	22	22	-2.87	-2.68%	55.9%	-17.8%p	8.8%	-7.4%p	72.9인
	읍·면 평균					-2.20%	62.8%	-13.5%p	11.4%	-8.0%p	114.3인
	읍·면 표준편차					0.48%	6.6%	3.0%p	3.6%	1.4%p	78.6인
(10) 봉화군	상위	봉화읍	25	20	6.40	-1.43%	75.8%	-8.4%p	19.3%	-7.0%p	400.2인
		하위	재산면	9	7	-2.41	-2.43%	62.3%	-11.7%p	9.6%	-9.5%p
		상운면	12	10	-2.31	-2.53%	55.4%	-14.7%p	9.7%	-4.5%p	300.9인
	읍·면 평균					-2.20%	63.7%	-12.7%p	13.3%	-6.0%p	194.1인
	읍·면 표준편차					0.33%	8.3%	3.1%p	4.9%	17%p	91.1인
(13) 서천군	상위	서천읍	29	20	7.11	-0.22%	81.3%	-5.4%p	19.1%	-7.6%p	453.2인
	하위	시초면	17	17	-4.60	-3.62%	45.3%	-20.9%p	6.2%	-8.4%p	74.3인
	읍·면 평균					-2.52%	60.9%	-14.5%p	11.6%	-6.4%p	167.3인
	읍·면 표준편차					0.86%	10.8%	4.3%p	4.2%	1.7%p	153.4인
(13) 순창군	상위	순창읍	46	18	9.01	-0.25%	80.4%	-6.2%p	20.3%	-6.9%p	207.1인
	하위	적성면	23	19	-3.27	-3.48%	48.8%	-20.3%p	7.7%	-5.7%p	48.6인
	읍·면 평균					-2.56%	56.9%	-15.7%p	10.6%	-5.2%p	74.6인
	읍·면 표준편차					0.88%	8.8%	3.9%p	3.6%	1.7%p	44.6인
(8) 청송군	상위	청송읍	14	11	3.88	-2.34%	76.4%	-10.4%p	17.0%	-9.7%p	355.4인
		현동면	10	9	1.68	-1.42%	59.8%	-15.2%p	10.7%	-7.0%p	184.6인
	하위	부남면	17	16	-3.31	-2.98%	57.9%	-18.4%p	6.9%	-9.6%p	129.5인
		파천면	18	1	-2.79	-3.00%	52.4%	-18.2%p	9.4%	-6.1%p	93.6인
	읍·면 평균					-2.48%	56.9%	-14.7%p	11.5%	-7.8%p	177.3인
읍·면 표준편차					0.62%	8.8%	2.7%p	4.5%	1.7%p	91.1인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사례지역 내 읍·면수임

계산식에 사용된 지표별 가중치로서 인구변화 지표인 연평균 인구변화율, 고령화 수준 및 속도 지표인 65세 미만 인구비율 및 변화량, 청년층 비율 및 그 변화 지표인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행정리 수 대비 상주인구 각각에 균등하게 1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65세 미만 인구비율 및 변화량 각각에 0.5를,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각각에 0.5를 균등하게 부여하였다.

사례지역별로 종합점수가 최상위인 읍·면(모두 군청소재지), 최하위인 면을 각각 선정한 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다만 선정된 읍·면에서 설문부수가 15부를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설문조사 대상 행정리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읍·면(최상위로부터 2위, 최하위로부터 2위)도 선정하여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상위그룹은 5개 사례지역 군청소재 읍 위주로, 하위그룹은 사례 군별 표준화 값 종합점수 최하위 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설문조사 실시 읍·면을 구분하여 선정한 것은 과소지역 내 상위그룹 읍·면과 하위그룹 읍·면간에 시설이용의 차이,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그리고 시설별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고찰에서 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합한 전체 응답결과와 하위그룹만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상위그룹이 군청소재 읍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응답 중 주민이 주로 군청소재지의 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우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상위그룹을 제외한 하위그룹에서도 그러한 응답패턴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설문응답자는 주민대표인 이장으로서 총 187명인데, 그 중 상위그룹 읍·면이 95명, 하위그룹 읍·면이 92명이었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남자가 176명, 여자가 11명이며, 50대가 60명, 60대가 81명, 70대 이상이 23명으로 50대 이상이 87.7%(164명)이었다.

2. 공공시설 이용실태

사례지역 5개 군에서 선정된 읍·면의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시설에는 주민들이 자자체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주민자치조직 제외)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시설, 즉 병·의원, 약국, 마트·슈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원, 세탁소 등도 포함시켰다([표 3-3] 참조).

[표 3-3]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 시설

	공공시설(민간 소유·관리·운영 시설 포함)
보건의료시설	병·의원, 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국
유통판매시설	백화점·쇼핑센터, 마트·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공중위생 관계시설	공중목욕장, 이·미용원, 세탁소
문화시설	영화관, 문예회관·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종합복지관

주민의 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항목은 ‘지난 1년간 시설별로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용시설 소재지’(군청소재지 또는 읍소재지, 면소재지,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현재 거주하는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등), ‘주민들의 이용이유’ 등을 포함하였다.¹⁵⁾

1) 시설별 이용실태¹⁶⁾

□ 보건의료시설

거의 모든 설문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주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소재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3-4] 참조). 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위그룹만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볼 수 있다.

15) 설문조사 항목에는 시설 이용 시 만족도가 포함되었지만, 설문응답 결과가 각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설 이용 시 만족도를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16) 시설별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중 상위그룹에 관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설문응답자(187명)의 85.0%(159명)가 보건의료원·보건소를 지난 1년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 해당 시설 이용을 위해 주민들이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를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00%이다([표 3-4] 참조). 하위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건의료원·보건소 이용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보건의료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 하위그룹			
		병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이용여부	이용함	185	159	87	185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2	28	100	2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164	159	0	155
	면소재지	2	0	61	28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7	1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19	0
	인근 시·군	18	0	0	1
	기타	1	0	0	0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114	100	74	136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65	21	2	29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73	9	2	20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이 저렴하다	17	112	62	18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50	45	13	64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36	57	40	37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57	32	5	86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8	7	4	9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6	2	0	8
	모름	0	0	0	1

(계속)

		하위그룹			
		병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이용여부	이용함	90	64	76	90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2	28	16	2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80	64	0	70
	면소재지	0	0	50	18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7	1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19	0
	인근 시·군	10	0	0	1
	기타	0	0	0	0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43	38	63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41	11	2	11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38	5	2	10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이 저렴하다	6	42	53	8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22	16	12	27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9	16	31	11
	이용하려 할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34	23	3	50
	이용하려 할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3	3	3	5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6	0	0	8
	모름	0	0	0	1

그리고 하위그룹이 면지역이고 보건의료원·보건소가 입지하지 않는 읍·면에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입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하위그룹 설문응답자 대다수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지난 1년간 주민이 이용한 적이 있고 주로 읍·면소재지가 아닌 마을 또는 면소재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주민들의 이용이유 중 ‘거주지 인근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보건의료시설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보건의료원·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경우, 시설 특성상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이 저렴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4 참조). 게다가 병·의원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가, 그리고 약국의 경우 ‘이용하려 할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가 해당 시설 각각을 이용했다는 응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이용이유에 대한 하위그룹 설문조사 결과도 이상의 결과와 유사하다.

□ 유통판매시설

거의 모든 설문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마트·슈퍼마켓, 재래시장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주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했다(표 3-5 참조). 하위그룹만을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만 하위그룹이 면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마트·슈퍼마켓, 재래시장 각각을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아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체 설문응답자(187명)의 23%와 24%만이 백화점·쇼핑센터, 편의점을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 인근 대도시의 백화점·쇼핑센터,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표 3-5 참조). 이와 유사한 결과가 하위그룹에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그룹의 10% 정도만이 백화점·쇼핑센터 또는 편의점을 주민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난 1년간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거의 모든 설문응답자가 응답한 마트·슈퍼마켓

과 재래시장의 이용이유를 보면, 각각 ‘거주지 인근이다’,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는 순으로 해당 시설 각각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 대해 갖는 비중이 높다([표 3-5] 참조). 이용이유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응답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하위그룹에서도 나타났다.

[표 3-5] 유통판매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 하위그룹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이용여부	이용함	43	187	45	184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44	0	142	3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0	131	43	156
	면소재지	0	51	2	26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3	0	0
	인근 시·군	0	2	0	2
	기타(인근 대도시)	43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1	147	36	131
이용 이유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30	99	12	128
	물건의 품질이 좋다	21	23	0	24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	17	74	1	97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2	35	12	34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품질이 낮지만, 기본적인 물건은 구입할 수 있다	0	27	17	13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32	43	1	36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0	5	2	12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1	0	1	1
	모름	0	1	0	0

(계속)

		하위그룹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이용여부	이용함	9	92	10	89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83	0	82	3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0	48	9	72
	면소재지	0	41	1	16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3	0	0
	인근 시·군	0	0	0	1
	기타(인근 대도시)	9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1	66	8	57
이용 이유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3	54	4	67
	물건의 품질이 좋다	2	10	0	8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	6	40	1	55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0	12	3	12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품질이 낮지만, 기본적인 물건은 구입할 수 있다	0	14	3	5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6	28	1	24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0	1	0	3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0	0	0	1
	모름	0	1	0	0

□ 공중위생 관계시설

이·미용원의 경우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거의 모든 설문응답자가, 그리고 세탁소의 경우 전체 설문응답자의 대다수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했다 (표 3-6 참조). 하위그룹만을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이·미용원, 세탁소 각각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70%대에서 60%대로 다소 낮아진다는 차별성은 있다.

지난 1년간 공중목욕장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0%에 약간 미달하고, 그 중에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조금 초과하였다([표 3-6] 참조). 하위그룹의 응답결과를 보면, 공중목욕장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40%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유사점이 있고, 면소재지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을 근소하게 상회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3-6] 공중위생 관계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 하위그룹		
		공중목욕장	이·미용원	세탁소
이용여부	이용함	73	184	147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14	3	40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40	137	114
	면소재지	29	40	31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1	1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2	2	0
	인근 시·군	1	4	2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50	127	110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2	9	7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4	10	6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8	19	12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34	77	68
이용 이유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36	56	44
	이용하려 할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8	53	51
	이용하려 할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6	15	10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0	9	6

(계속)

		하위그룹		
		공중목욕장	이·미용원	세탁소
이용여부	이용함	36	89	57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56	3	35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16	54	35
	면소재지	17	29	21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1	1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2	2	0
	인근 시·군	0	3	1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20	55	44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1	5	1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2	7	2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6	9	7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6	34	26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18	24	11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16	30	26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2	5	1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0	8	6

상기의 공중위생 관계시설 각각을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응답 중에서 이용이유로서 ‘거주지 인근이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비중도 비교적 높다([표 3-6] 참조). 공중관계 위생시설 이용이유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응답결과가 하위그룹 응답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문화시설

영화관,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을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187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에 미치지 못하고 10%대이지만, 그 중 대다수가 인근 시·군 및 대도시의 영화관, 그리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표 3-7] 참조). 하위그룹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이용 양상을 보이지만,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박물관·미술관을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아져 면소재지의 박물관·미술관을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약간 작다.

지난 1년간 문예회관·군민회관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이고, 그 중에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문예회관·군민회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00%이다([표 3-7] 참조). 하위그룹의 응답결과도 비슷한 이용 양상을 보여주는데, 문예회관·군민회관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하위그룹 응답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

문예회관·군민회관을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중에서 ‘거주지 인근이다’라는 이용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이외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군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7] 참조). 이상과 같은 응답결과는 하위그룹의 문화시설 이용이유에 대한 응답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표 3-7] 문화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 하위그룹			
		영화관	문예회관 /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용여부	이용함	30	99	36	25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57	88	151	162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0	99	35	16
	면소재지	0	0	0	9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인근 시·군	17	0	1	0
	기타(인근 대도시)	13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2	63	27	11
이용 이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	8	6	4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21	4	6	7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0	10	10	15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	10	10	14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0	13	17	8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3	9	2	1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0	58	2	7
	기타: 군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	0	32	0	1
	기타	1	0	1	0
	모름	0	5	2	1

(계속)

		하위그룹			
		영화관	문예회관 /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용여부	이용함	8	41	12	7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84	51	80	85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0	41	12	3
	면소재지	0	0	0	4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인근 시·군	8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2	30	8	4
이용 이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4	1	0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1	2	1	0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0	4	1	3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	4	1	2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0	8	8	5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6	7	1	1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0	27	1	2
	기타: 군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	2	8	0	1
	기타	0	0	0	0
	모름	0	0	0	0

□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을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187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50%미만(종합운동장 46.0%, 실내체육관 38.5%, 축구장 15.0%)이지만, 그 중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00%이거나 그에 육박한다([표 3-8] 참조). 하위그룹에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 응답에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3-8]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 하위그룹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용여부	이용함	86	72	28	52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01	115	159	135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86	71	27	21
	면소재지	0	0	0	26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1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4
	인근 시·군	0	1	1	0
	거주지 인근이다	66	54	18	47
이용 이유	다양한 운동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10	11	10	16
	운동시설·장비의 질적 수준이 높다	2	6	3	7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15	12	5	4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21	20	7	14
	시설·장비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도 낮지만, 기초적 수준의 시설장비는 이용할 수 있다	19	16	12	17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4	3	0	2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64	47	14	22
	기타: 군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	29	19	1	0
	모름	4	2	0	0

(계속)

		하위그룹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용여부	이용함	36	32	12	30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56	60	80	62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36	32	12	2
	면소재지	0	0	0	24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4
	인근 시·군	0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26	22	8	29
이용 이유	다양한 운동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4	6	4	10
	운동시설·장비의 질적 수준이 높다	1	2	1	4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3	4	2	4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0	9	5	5
	시설·장비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도 낮지만, 기초적 수준의 시설장비는 이용할 수 있다	9	7	3	8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	1	0	1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24	17	7	10
	기타: 군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	15	10	1	0
	모름	0	0	0	0

그리고 지난 1년간 게이트볼장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설문응답자의 27.8%(52명)를 차지하여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그 중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게이트볼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40.4%이고 면소재지의 게이트볼장을 이용했다는 응답비율(50%)보다는 낮다([표 3-8] 참조). 하위그룹의 응답결과를 보면 다소 상이한데,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은 하위그룹

응답자의 30%를 조금 상회하고, 그 중에서 대다수(80%)가 면소재지에서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이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각각의 이용이유를 살펴보면, ‘거주지 인근이다’,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가 각각의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표 3-8] 참조). 이상의 결과는 하위그룹의 이용이유 응답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전체 설문응답자(187명) 중 50%미만(노인복지관 44.9%, 종합복지관 26.7%)을 차지하지만, 그 중 대다수 또는 모두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이다([표 3-9] 참조). 하위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용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30%미만으로 낮아졌다(노인복지관 28.3%, 종합복지관 12.0%).

지난 1년간 경로당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설문응답자의 10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 중에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경로당을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응답과 현재 거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의 경로당을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응답이 모두 45%내외를 차지한다([표 3-9]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군청소재 읍 위주로 구성된 상위그룹의 응답에서 군청소재지가 대다수를 차지한 점뿐만 아니라 군청소재지라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다수의 행정리로 구성될 정도로 설정하기에 애매할 수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가 진행된 사례지역 5개 군에서 경로당이 행정리(즉 마을)당 1개 또는 그 이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표 3-10] 참조)을 감안하면, 군청소재 읍에 포함되는 행정리로부터 주민들이 군청소재지 경로당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하위그룹의 응답결과만을 보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하위그룹 응답자의 100%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을 나타내지만, 그 중 대다수가 군청소

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닌 현 거주 마을에서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다.

이용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경로당의 경우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거주지 인근이다’가 경로당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거주지 인근이다’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이러한 전체 설문응답자의 이용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하위그룹의 이용이유에 관한 응답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표 3-9] 복지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 하위그룹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 포함)	종합복지관
이용여부	이용함	84	182	50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03	5	137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68	81	50
	면소재지	16	18	0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83	0
	인근 시·군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52	153	36
이용 이유	다양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59	23	34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12	5	8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38	13	9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2	10	22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4	26	5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5	4	2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20	156	13

(계속)

		하위그룹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 포함)	종합복지관
이용여부	이용함	26	90	11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66	2	81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21	0	11
	면소재지	5	17	0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73	0
	인근 시·군	0	0	0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21	80	9
	다양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18	18	7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3	3	2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9	0	0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3	4	4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2	8	2
	이용하려 할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	2	0
	이용하려 할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6	75	2

[표 3-10] 사례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2년 기준

	과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전국 시·군
행정리 수	279	156	315	305	136	297.30	455.79	393.39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327	226	323	370	192	342.38	328.64	334.05
행정리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1.17	1.45	1.03	1.21	1.41	1.19	0.82	0.97
경로당 수	326	229	314	368	194	338.37	322.09	328.50
행정리당 경로당 수	1.17	1.47	0.997	1.21	1.43	1.18	0.81	0.95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비율	99.69%	96.90%	97.21%	99.46%	96.88%	98.55%	97.96%	98.19%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31.34	22.03	19.59	41.73	24.08	26.57	15.03	19.57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012년, 주민등록인구)	30.79	22.67	19.59	41.89	24.07	26.11	13.97	18.75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경로당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31.25	22.32	19.05	41.50	24.33	26.22	14.77	19.28
65세 이상 인구 1000인당 경로당 수(2012년, 주민등록인구)	30.69	22.97	19.04	41.67	24.32	25.78	13.74	18.48
65세 이상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10,433	10,261	16,485	8,867	7,974	13,272.81	25,709.39	20,812.49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33.53%	33.01%	30.74%	35.38%	33.32%	30.38%	14.09%	20.50%
65세 이상 인구(2012년): 주민등록인구	10,621	9,971	16,491	8,832	7,977	13,450.38	28,145.12	22,359.07
65세 이상 인구비율(2012년): 주민등록인구	28.16%	29.38%	27.99%	29.39%	30.12%	26.79%	13.91%	18.99%

주 1: 시·도 통계연보(2012년 기준)에서 행정리 수,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구득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의 시설 수는 각 그룹의 지자체수 대비 시설 수입.

주 4: 그 이외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의 수치는 각 그룹의 평균값임

주 5: 시급 지자체의 경우, 행정리 수에 통 수도 포함시킴

2) 사례지역 시설별 이용실태 고찰의 시사점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첫째, 과소지역내 주요 중심지인 군청소재지 또는 읍소재지로의 시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함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보건의료원·보건소, 백화점·쇼핑센터, 문화시설(영화관, 문예회관·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게이트볼장 제외), 복지시설(경로당 제외)은 군청소재지, 읍소재지 또는 그 이상의 고차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소재지를 비롯한 역외 고차중심지로 이용자가 통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후지에 충분한 인구가 존재한다면, 상대적으로 면소재지 등 저차중심지에도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즉 병·의원, 약국, 마트·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공중목욕장, 이·미용원, 세탁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군청소재지 또는 읍소재지)로의 통행이 우세하였다([표 3-4], [표 3-5], [표 3-6] 참조).

군청소재 읍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위그룹을 제외하고,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위그룹만을 대상으로 시설이용에 관한 응답 결과만을 보더라도 이상과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의원, 약국, 마트·슈퍼마켓, 재래시장, 이·미용원, 세탁소 각각의 경우, 주민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하위그룹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중이 최소 62.0%이며, 그러한 응답 중에서 이용을 위해 군청소재지로 통행한 비율이 최소 52.2%이다([표 3-4], [표 3-5], [표 3-6] 참조).

둘째, 경로당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나타났다. 즉 경로당은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과소지역에서 기초적인 정주공간 단위인 마을 수준의 핵심적인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위그룹에서는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그 중 81.1%가 이용시설 소재지가 현재 거주하는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이고 나머지가 면소재지이다([표 3-9] 참조). 군청소재 읍 위주인 상위그룹에서도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그 중 88.0%가 군청소재지이지만, 전술했듯이 군청소재지라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다수의 행정리(마을)로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사례지역

5개 군에서 경로당이 군청 소재읍의 행정리까지 포함하여 행정리당 1개 또는 그 이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일부 문화시설,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률이 낮을 우려가 있었다.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설문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미만으로 비교적 낮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이러한 응답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3-7]과 [표 3-8], 부록 참조).

□ 과소지역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 우려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한 사례지역 시설별 이용실태 고찰의 시사점 중 하나가 시설이용을 위해 과소지역내 주요 중심지인 군청소재지 또는 읍소재지로의 통행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과소지역 면소재지 중심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례지역 중 청송군, 괴산군, 서천군, 봉화군에서 이미 관할구역내 버스요금이 단일체제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군청소재지로의 비용거리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품구매, 서비스 이용을 위한 면소재지로의 주민 통행이 감소하여 면소재지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소지역 주민은 인구 및 기능의 밀도가 낮다는 지역의 특성상 다목적 통행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간의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지역내 군청소재지와 거점 읍·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중심도시 또는 대도시로의 통행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청송군 안덕면사무소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청송군내 버스요금이 1200원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주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상품구매, 서비스이용 등을 위한 목적지로서 군청소재 읍뿐만 아니라 대구, 안동, 영천, 포항까지 통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천군청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서천군내 5일장이 서천읍에 서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점도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를 살펴보기 위해, 중심지기능에 밀접한 산업부문인 도매 및 소매업을 대상으로 사례지역 읍·면별로 사업체 종사자수 및 비중 변화,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3-11)~[표 3-15] 참조). 도매 및 소매업은 그 특성상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읍·면별로 해당 산업부문 사업체 종사자의 비중 및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읍·면소재지의 중심기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과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사용하였고, 그 시계열에 맞출 수 있는 인구통계인 2000년과 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하였다.

[표 3-11] 과산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괴산읍	660	549	47.76%	50.32%	-1.52%	10,541	9,684	23.75%	25.68%	-0.70%
감물면	23	19	1.66%	1.74%	-1.58%	2,433	1,984	5.48%	5.26%	-1.69%
장연면	66	85	4.78%	7.79%	2.13%	2,398	1,978	5.40%	5.24%	-1.59%
연풍면	90	57	6.51%	5.22%	-3.73%	3,289	2,501	7.41%	6.63%	-2.26%
칠성면	74	65	5.35%	5.96%	-1.07%	3,405	2,994	7.67%	7.94%	-1.07%
문광면	17	11	1.23%	1.01%	-3.56%	2,375	2,099	5.35%	5.57%	-1.02%
청천면	226	122	16.35%	11.18%	-5.01%	6,033	5,129	13.59%	13.60%	-1.34%
청안면	74	50	5.35%	4.58%	-3.21%	4,296	3,402	9.68%	9.02%	-1.93%
사리면	59	41	4.27%	3.76%	-2.99%	3,726	2,959	8.40%	7.85%	-1.90%
소수면	29	28	2.10%	2.57%	-0.29%	2,206	1,984	4.97%	5.26%	-0.88%
불정면	64	64	4.63%	5.87%	0.00%	3,678	2,999	8.29%	7.95%	-1.69%
괴산군	1,382	1,091	100.0%	100.0%	-1.95%	44,380	37,713	100.0%	100.0%	-1.35%

[표 3-12] 봉화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봉화읍	571	522	41.74%	49.39%	-0.74%	12,672	10,670	29.56%	31.44%	-1.42%
물야면	67	45	4.90%	4.26%	-3.26%	4,361	3,359	10.17%	9.90%	-2.15%
봉성면	53	71	3.87%	6.72%	2.47%	3,061	2,375	7.14%	7.00%	-2.09%
법전면	77	33	5.63%	3.12%	-6.82%	2,840	2,226	6.63%	6.56%	-2.01%
춘양면	247	210	18.06%	19.87%	-1.34%	6,393	4,892	14.91%	14.42%	-2.21%
소천면	118	56	8.63%	5.30%	-6.02%	3,067	2,451	7.16%	7.22%	-1.85%
석포면	83	41	6.07%	3.88%	-5.71%	2,132	1,697	4.97%	5.00%	-1.88%
재산면	58	32	4.24%	3.03%	-4.84%	3,004	2,328	7.01%	6.86%	-2.10%
명호면	47	30	3.44%	2.84%	-3.67%	2,596	1,901	6.06%	5.60%	-2.56%
상운면	47	17	3.44%	1.61%	-8.13%	2,739	2,035	6.39%	6.00%	-2.45%
봉화군	1368	1057	100.0%	100.0%	-2.13%	42,865	33,934	100.0%	100.0%	-1.93%
봉화읍 + 춘양면	818	732	59.80%	69.25%	-0.92%	19,065	15,562	44.48%	45.86%	-1.68%

사례지역 5개 군의 모든 읍·면에서 2000~2012년에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대다수 읍·면에서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종사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청송군을 제외하면, 사례지역 군청소재 읍의 주민등록인구 비중과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 또한 군청소재 읍 또는 중심기능을 갖춘 거점 읍·면(서천군의 장항읍, 봉화군의 춘양면, 청송군의 진보면)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비중을 합하면, 모든 사례지역에서 2012년 현재 50.32%(괴산군 괴산읍)~72.77%(서천군 서천읍+장항읍)의 범위를 나타내어 절반을 초과한다.

[표 3-13] 서천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서천읍	1,244	1,302	41.73%	48.76%	0.38%	18,025	13,157	19.77%	24.90%	-0.12%
장항읍	730	641	24.49%	24.01%	-1.08%	14,876	14,670	23.95%	22.33%	-2.59%
마서면	127	84	4.26%	3.15%	-3.39%	8,048	5,956	10.69%	10.11%	-2.48%
화양면	74	29	2.48%	1.09%	-7.51%	3,886	2,675	5.16%	4.54%	-3.06%
기산면	28	24	0.94%	0.90%	-1.28%	2,771	1,954	3.68%	3.32%	-2.87%
한산면	224	99	7.51%	3.71%	-6.58%	4,361	3,001	5.79%	5.09%	-3.07%
마산면	36	6	1.21%	0.22%	-13.87%	2,266	1,622	3.01%	2.75%	-2.75%
시초면	20	9	0.67%	0.34%	-6.44%	2,066	1,372	2.75%	2.33%	-3.35%
문산면	28	15	0.94%	0.56%	-5.07%	1,974	1,423	2.62%	2.42%	-2.69%
판교면	114	93	3.82%	3.48%	-1.68%	3,262	2,381	4.33%	4.04%	-2.59%
중천면	57	36	1.91%	1.35%	-3.76%	3,241	2,332	4.31%	3.96%	-2.71%
비인면	157	180	5.27%	6.74%	1.15%	4,607	3,516	6.12%	5.97%	-2.23%
서면	142	152	4.76%	5.69%	0.57%	5,876	4,861	7.81%	8.25%	-1.57%
서천군	2,981	2,670	100.0%	100.0%	-0.91%	75,259	58,920	100.0%	100.0%	-2.02%
서천읍 +장항 읍	1,974	1,943	66.22%	72.77%	-0.13%	32,901	27,827	43.72%	47.23%	-1.39%

사례지역에서는 군청소재지 또는 거점 읍·면소재지 중심기능의 상대적 강화, 나머지 면소재지 중심기능의 상대적 약화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주민이 대체로 상품구매, 서비스이용을 위해 군청소재 읍 위주로 통행하는 패턴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순창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순창읍	937	614	69.25%	70.17%	-3.46%	10,512	10,211	30.39%	33.97%	-0.24%
인계면	8	9	0.59%	1.03%	0.99%	2,095	1,746	6.06%	5.81%	-1.51%
동계면	87	56	6.43%	6.40%	-3.60%	2,814	2,302	8.14%	7.66%	-1.66%
적성면	43	8	3.18%	0.91%	-13.08%	2,247	1,996	5.29%	4.70%	-2.13%
유등면	7	14	0.52%	1.60%	5.95%	2,233	1,839	4.94%	4.55%	-1.84%
풍산면	17	6	1.26%	0.69%	-8.31%	1,963	1,705	6.50%	6.64%	-0.98%
금과면	27	7	2.00%	0.80%	-10.64%	2,773	2,319	6.46%	6.12%	-1.60%
팔덕면	26	14	1.92%	1.60%	-5.03%	3,130	2,454	5.68%	5.67%	-1.17%
복흥면	77	39	5.69%	4.46%	-5.51%	1,828	1,412	9.05%	8.17%	-2.01%
쌍치면	59	70	4.36%	8.00%	1.43%	1,708	1,366	8.02%	7.72%	-1.48%
구림면	65	38	4.80%	4.34%	-4.37%	3,284	2,705	9.49%	9.00%	-1.60%
순창군	1,353	875	100.0%	100.0%	-3.57%	34,587	30,055	100.0%	100.0%	-1.16%

[표 3-15] 청송군 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변화율(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2000~2012년 변화율(연평균)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2000년	2012년	
청송읍	336	254	22.92%	21.38%	-2.30%	6,940	5,513	20.26%	20.82%	-1.90%
부동면	94	106	6.41%	8.92%	1.01%	2,405	1,997	7.02%	7.54%	-1.54%
부남면	75	53	5.12%	4.46%	-2.85%	3,152	2,567	9.20%	9.69%	-1.70%
현동면	102	160	6.96%	13.47%	3.82%	2,344	2,186	6.84%	8.25%	-0.58%
현서면	141	63	9.62%	5.30%	-6.49%	3,238	2,588	9.45%	9.77%	-1.85%
안덕면	127	97	8.66%	8.16%	-2.22%	3,552	2,780	10.37%	10.50%	-2.02%
파천면	33	17	2.25%	1.43%	-5.38%	2,606	1,948	7.61%	7.36%	-2.40%
진보면	558	438	38.06%	36.87%	-2.00%	10,011	6,902	29.23%	26.06%	-3.05%
청송군	1,466	1,188	100.0%	100.0%	-1.74%	34,248	26,481	100.0%	100.0%	-2.12%
청송읍 + 진보면	894	692	60.98%	58.25%	-2.11%	16,951	12,415	49.49%	46.88%	-2.56%

3.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5개 사례지역(괴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해당 군청의 문화·체육시설, 농촌 및 지역개발, 주민·사회복지, 민생경제, 기획 담당 공무원, 그리고 면사무소 공무원(면장, 부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는 사례지역별로 선정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인 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설치·운영해야 하는

중심지계층(군청소재 읍에만, 면소재지까지, 또는 마을[행정리]까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시설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설이용 상의 문제점’,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과소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3-16]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 관련 설문조사 대상 공공시설

	공공시설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위생 관계시설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문화시설	문예회관, 군민회관, 복지회관,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종합사회복지관
공동체시설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커뮤니티센터

1) 설문조사 결과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 및 해당 시설이 최소한 입지해야 하는 중심지계층

공공시설별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187명)에 대해 갖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보건의료원/보건소,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이 각각 48.7%, 43.9%, 36.4%로서 비교적 높다([표 3-17] 참조). 하위그룹 설문응답자(92명)에 대한 비중은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보건의료원/보건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위그룹 설문응답자(95명)에 대한 비중은 보건의료원/보건소,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7]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이 최소한 입지해야 하는 중심지 계층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설치·운영해야 함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상위그룹 + 하위그룹		
				군청소재지에만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	군청소재지와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마을(행정리)까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54	28	82	0	70	12
보건지소	3	4	7	0	2	5
보건진료소	0	14	14	0	2	12
공중목욕장 (지자체 설치·운영)	31	37	68	4	42	22
문예회관	8	10	18	12	3	3
군민회관	8	5	13	3	10	0
복지회관	7	2	9	1	5	3
공공도서관	2	2	4	0	3	1
공립미술관	5	2	7	4	3	0
공립박물관	0	0	0	0	0	0
종합운동장	5	6	11	8	3	0
실내체육관	1	4	5	0	4	1
축구장	0	1	1	0	1	0
게이트볼장	3	3	6	0	5	1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45	46	91	0	0	91
노인복지관	12	1	13	1	8	4
종합사회복지관	5	3	8	4	3	1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6	12	18	6	0	12
커뮤니티센터	12	7	19	7	8	4
기타: 주차시설	0	9	9	0	0	9
기타: 운동시설	3	2	5	1	2	2
기타	5	3	8	5	1	2

(계속)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설치·운영해야 함		
				상위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군청소재지에만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	군청소재지와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마을(행정리)까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54	28	82	0	45	9
보건지소	3	4	7	0	0	3
보건진료소	0	14	14	0	0	0
공중목욕장 (지자체 설치·운영)	31	37	68	4	22	5
문예회관	8	10	18	6	1	1
군민회관	8	5	13	2	6	0
복지회관	7	2	9	1	4	2
공공도서관	2	2	4	0	2	0
공립미술관	5	2	7	3	2	0
공립박물관	0	0	0	0	0	0
종합운동장	5	6	11	4	1	0
실내체육관	1	4	5	0	0	1
축구장	0	1	1	0	0	0
게이트볼장	3	3	6	0	3	0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45	46	91	0	0	45
노인복지관	12	1	13	1	7	4
종합사회복지관	5	3	8	4	1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6	12	18	6	0	0
커뮤니티센터	12	7	19	4	5	3
기타: 주차시설	0	9	9	0	0	0
기타: 운동시설	3	2	5	1	2	0
기타	5	3	8	3	1	1

(계속)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설치·운영해야 함		
				하위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군청소재지에만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	군청소재지와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마을(행정리)까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54	28	82	0	25	3
보건지소	3	4	7	0	2	2
보건진료소	0	14	14	0	2	12
공중목욕장 (지자체 설치·운영)	31	37	68	0	20	17
문예회관	8	10	18	6	2	2
군민회관	8	5	13	1	4	0
복지회관	7	2	9	0	1	1
공공도서관	2	2	4	0	1	1
공립미술관	5	2	7	1	1	0
공립박물관	0	0	0	0	0	0
종합운동장	5	6	11	4	2	0
실내체육관	1	4	5	0	4	0
축구장	0	1	1	0	1	0
게이트볼장	3	3	6	0	2	1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45	46	91	0	0	46
노인복지관	12	1	13	0	1	0
종합사회복지관	5	3	8	0	2	1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6	12	18	0	0	12
커뮤니티센터	12	7	19	3	3	1
기타: 주차시설	0	9	9	0	0	9
기타: 운동시설	3	2	5	0	0	2
기타	5	3	8	2	0	1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 100%가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마을(행정리)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17] 참조). 이러한 응답패턴은 군청소재 읍 위주인 상위그룹과 면으로 구성된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원/보건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대다수(85.4%)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최소한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 나타나는 패턴과도 유사하다.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 중 약 62%가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군청소재 읍 위주로 구성된 상위그룹에서는 비중이 70%대로 높아지는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50%대로 낮아진다. 그리고 하위그룹에서 마을(행정리)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대 중반을 차지하였다.

□ 이용 상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 및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은 무엇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중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26.7%, 보건의료원/보건소,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각각이 21.4% 순으로 높다([표 3-18] 참조). 그리고 하위그룹 응답자에 대한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비중이 33.7%로 올라가 제일 높으며, 나머지 공공시설의 비중은 모두 20%미만이다. 상위그룹의 경우, 보건의료원/보건소 29.5%,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 각각 28.4%, 경로당 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이용 상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			시설 이용 시 문제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상위그룹 + 하위그룹												
				거리가 멀다	시설로부터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이용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	이용가능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다	냉·난방비 등 시설 관리·운영 재원이 부족하다	관리·운영 주체가 미흡하다	이용요금 비싸다	이용자 또는 주민 간에 불화가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기타: 주민들이 연료하여 관심이 부족하다	기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28	12	40	21	8	0	1	17	17	1	10	0	0	0	0	
보건지소	0	2	2	1	1	0	0	0	1	0	0	0	0	0	0	
보건진료소	1	8	9	5	1	1	0	1	1	1	0	0	0	0	0	
공중목욕장 (자차체 설치·운영)	6	15	21	12	3	4	3	3	1	3	4	5	0	0	0	
문예회관	2	0	2	2	0	0	0	2	0	0	0	0	0	0	0	
군민회관	2	7	9	5	3	1	1	8	2	0	2	0	0	1	0	
복지회관	1	7	8	5	2	1	2	5	0	1	3	0	0	0	0	
공공도서관	27	13	40	39	28	1	0	36	5	0	0	0	1	4	0	
공립미술관	15	12	27	26	15	0	1	27	2	0	0	0	0	8	0	
공립박물관	27	13	40	39	20	0	1	40	5	0	0	0	0	10	0	
종합운동장	4	1	5	2	2	0	0	4	1	0	1	0	0	0	0	
실내체육관	2	5	7	6	4	0	0	7	0	0	0	0	0	1	0	
축구장	14	9	23	22	9	0	0	23	1	0	0	0	0	6	0	
게이트볼장	13	9	22	21	5	0	0	17	1	0	0	0	0	2	0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19	31	50	1	15	18	9	2	5	17	3	0	1	0	1	
노인복지관	10	4	14	10	2	2	0	9	1	1	0	0	0	0	0	
종합사회복지관	2	5	7	5	0	0	0	5	1	1	1	0	0	0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9	14	23	0	8	6	7	0	5	10	2	0	1	1	1	
커뮤니티센터	1	0	1	0	0	0	0	0	0	0	1	0	0	0	0	
기타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계속)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			시설 이용 시 문제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상위그룹											
				거리가 멀다	시설로부터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이용자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	이용가능서비스의 질적수준이 낮다	냉난방비 등 시설관리운영비용이 부족하다	관리운영주체가 미흡하다	이용요금이 비싸다	이용자 또는 주민간에 불화가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기타: 주민들이 연로하여 관심이 부족하다	기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28	12	40	14	5	0	0	12	16	0	10	0	0	0	0
보건지소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보건진료소	1	8	9	0	1	0	0	0	0	0	0	0	0	0	0
공중목욕장 (지자체 설치·운영)	6	15	21	5	0	1	0	2	0	0	0	4	0	0	0
문예회관	2	0	2	2	0	0	0	2	0	0	0	0	0	0	0
군민회관	2	7	9	2	0	0	0	2	1	0	0	0	0	1	0
복지회관	1	7	8	1	0	0	0	1	0	0	0	0	0	0	0
공공도서관	27	13	40	26	21	0	0	25	2	0	0	0	0	4	0
공립미술관	15	12	27	14	7	0	1	15	1	0	0	0	0	6	0
공립박물관	27	13	40	26	13	0	1	27	3	0	0	0	0	8	0
종합운동장	4	1	5	2	1	0	0	3	0	0	1	0	0	0	0
실내체육관	2	5	7	1	0	0	0	2	0	0	0	0	0	1	0
축구장	14	9	23	13	4	0	0	14	1	0	0	0	0	5	0
계이트볼장	13	9	22	12	3	0	0	12	0	0	0	0	0	2	0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19	31	50	1	6	8	3	2	3	4	2	0	0	0	1
노인복지관	10	4	14	7	1	2	0	7	1	1	0	0	0	0	0
종합사회복지관	2	5	7	1	0	0	0	2	0	0	0	0	0	0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9	14	23	0	4	2	2	0	2	3	1	0	0	1	0
커뮤니티센터	1	0	1	0	0	0	0	0	0	0	1	0	0	0	0
기타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계속)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			시설 이용 시 문제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하위그룹											
				거리가 멀다	시설로부터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이용자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	이용가능서비스의 질적수준이 낮다	냉·난방비 등 시설관리·운영 재원이 부족하다	관리·운영 주체가 미흡하다	이용요금이 비싸다	이용자 또는 주민 간에 불화가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기타: 주민들이 연로하여 관심이 부족하다	기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28	12	40	7	3	0	1	5	1	1	0	0	0	0	0
보건지소	0	2	2	1	1	0	0	0	1	0	0	0	0	0	0
보건진료소	1	8	9	5	0	1	0	1	1	1	0	0	0	0	0
공중목욕장 (자차체 설치·운영)	6	15	21	7	3	3	3	1	1	3	4	1	0	0	0
문예회관	2	0	2	0	0	0	0	0	0	0	0	0	0	0	0
군민회관	2	7	9	3	3	1	1	6	1	0	2	0	0	0	0
복지회관	1	7	8	4	2	1	2	4	0	1	3	0	0	0	0
공공도서관	27	13	40	13	7	1	0	11	3	0	0	0	1	0	0
공립미술관	15	12	27	12	8	0	0	12	1	0	0	0	0	2	0
공립박물관	27	13	40	13	7	0	0	13	2	0	0	0	0	2	0
종합운동장	4	1	5	0	1	0	0	1	1	0	0	0	0	0	0
실내체육관	2	5	7	5	4	0	0	5	0	0	0	0	0	0	0
축구장	14	9	23	9	5	0	0	9	0	0	0	0	0	1	0
게이트볼장	13	9	22	9	2	0	0	5	1	0	0	0	0	0	0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19	31	50	0	9	10	6	0	2	13	1	0	1	0	0
노인복지관	10	4	14	3	1	0	0	2	0	0	0	0	0	0	0
종합사회복지관	2	5	7	4	0	0	0	3	1	1	1	0	0	0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9	14	23	0	4	4	5	0	3	7	1	0	1	0	1
커뮤니티센터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이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이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6.0%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냉·난방비 등 시설 관리·운영 재원이 부족하다' 34.0%, '시설로부터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18] 참조). 이상과 같은 경로당 이용의 세 가지 문제점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상위 3위 이내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보건의료원/보건소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 중 주민들이 인식하는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이 '거리가 멀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5%와 42.5%로 1위와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이용가능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다'의 비중도 42.5%로서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표 3-18] 참조). 보건의료원/보건소 이용 상의 문제점 중 이상과 같은 접근성 문제 모두가 하위그룹에서 상위 2위 이내에 들어가고, 보건의료원/보건소가 보통 입지하는 군청 소재 읍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위그룹에서도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었다.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각각의 응답자 중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에 관한 응답을 보면, '거리가 멀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 등 접근성 문제와 '시설로부터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가 상위 3위 이내에 들어간다([표 3-18] 참조).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이 보통 군청 소재 읍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위그룹에서도 비슷한 응답결과가 나왔으며, 하위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을 보면, 공립박물관, 게이트볼장, 공공도서관, 축구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박물관 비율이 36.4%이고, 나머지 세 가지 공공시설이 20%대 비율을 나타냈다([표 3-19] 참조). 하위그룹에서는 공립박물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모두 20%대이다. 상위그룹에

서는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공립미술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박물관과 공공도서관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각각 44.2%와 30.5%이고, 나머지 3개 시설은 20% 이상의 비율을 가진다.

[표 3-19]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과 해당 시설에 대한 대책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			시설에 대한 대책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지자체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지자체가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수요가 많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기관에게 매각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기관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위탁시켜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기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0	0	0	0	0	0	0	0	0	0
보건지소	1	1	2	0	1	1	0	0	0	0
보건진료소	1	0	1	0	0	0	0	0	1	0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1	0	1	0	0	0	0	0	1	0
문예회관	2	4	6	0	0	2	0	1	3	0
군민회관	8	1	9	2	0	4	0	2	1	0
복지회관	1	4	5	1	0	0	0	3	1	0
공공도서관	29	15	44	2	0	3	2	4	32	1
공립미술관	19	12	31	4	0	7	3	2	15	0
공립박물관	42	26	68	3	0	9	3	7	45	1
종합운동장	11	5	16	1	0	0	0	5	9	1
실내체육관	9	4	13	0	0	0	0	3	9	1
축구장	20	19	39	1	0	3	0	6	28	1
게이트볼장	25	22	47	2	0	0	1	6	36	2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2	0	2	0	0	0	0	0	2	0
노인복지관	2	5	7	1	1	2	0	0	3	0
종합사회복지관	4	1	5	0	0	0	1	0	4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1	0	1	1	0	0	0	0	0	0
커뮤니티센터	0	0	0	0	0	0	0	0	0	0
기타	1	1	2	0	0	0	0	0	1	1

(계속)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			시설에 대한 대책						
				상위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지자체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지자체가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수요가 많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기관에게 매각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기관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위탁시켜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기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0	0	0	0	0	0	0	0	0	0
보건지소	1	1	2	0	0	1	0	0	0	0
보건진료소	1	0	1	0	0	0	0	0	1	0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1	0	1	0	0	0	0	0	1	0
문예회관	2	4	6	0	0	0	0	0	2	0
군민회관	8	1	9	2	0	4	0	1	1	0
복지회관	1	4	5	0	0	0	0	1	0	0
공공도서관	29	15	44	0	0	2	2	1	23	1
공립미술관	19	12	31	2	0	5	3	0	9	0
공립박물관	42	26	68	1	0	6	3	3	28	1
종합운동장	11	5	16	0	0	0	0	4	7	0
실내체육관	9	4	13	0	0	0	0	2	7	0
축구장	20	19	39	0	0	2	0	3	15	0
게이트볼장	25	22	47	0	0	0	1	3	19	2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2	0	2	0	0	0	0	0	2	0
노인복지관	2	5	7	0	0	0	0	0	2	0
종합사회복지관	4	1	5	0	0	0	0	0	4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1	0	1	1	0	0	0	0	0	0
커뮤니티센터	0	0	0	0	0	0	0	0	0	0
기타	1	1	2	0	0	0	0	0	0	1

(계속)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			시설에 대한 대책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 하위 그룹	하위그룹						
				지자체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지자체가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수요가 많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기관에게 매각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기관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위탁시켜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기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0	0	0	0	0	0	0	0	0	0
보건지소	1	1	2	0	1	0	0	0	0	0
보건진료소	1	0	1	0	0	0	0	0	0	0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1	0	1	0	0	0	0	0	0	0
문예회관	2	4	6	0	0	2	0	1	1	0
군민회관	8	1	9	0	0	0	0	1	0	0
복지회관	1	4	5	1	0	0	0	2	1	0
공공도서관	29	15	44	2	0	1	0	3	9	0
공립미술관	19	12	31	2	0	2	0	2	6	0
공립박물관	42	26	68	2	0	3	0	4	17	0
종합운동장	11	5	16	1	0	0	0	1	2	1
실내체육관	9	4	13	0	0	0	0	1	2	1
축구장	20	19	39	1	0	1	0	3	13	1
게이트볼장	25	22	47	2	0	0	0	3	17	0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	2	0	2	0	0	0	0	0	0	0
노인복지관	2	5	7	1	1	2	0	0	1	0
종합사회복지관	4	1	5	0	0	0	1	0	0	0
마을회관(마을회관 전용)	1	0	1	0	0	0	0	0	0	0
커뮤니티센터	0	0	0	0	0	0	0	0	0	0
기타	1	1	2	0	0	0	0	0	1	0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으로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공립박물관,

게이트볼장, 공공도서관, 축구장 각각의 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모두 2/3를 초과하였다(표 3-19 참조). 이와 유사한 결과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나타났다. 그런데 상위그룹의 경우, 공립미술관 응답자 중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반면에, ‘수요가 많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기관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26%를 넘는다는 차별성은 보였다.

□ 향후 과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과소지역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각각의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 합계를 살펴보면 [표 3-20]과 같다. 해당 합계가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을 보면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71.7%),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46.5%), ‘군청소재지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2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응답패턴이 상위그룹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그룹의 경우,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75.0%),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5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방안은 10%대 이하이다.

1순위 응답만을 보면,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52.4%),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1.9%)는 순으로 전체 1순위 응답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방안의 비율은 10% 미만이다(표 3-20 참조). 하위그룹의 응답결과도 이상과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였다. 상위그룹에서도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의 비율이 제일 높다. 그 다음으로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과

‘군청소재지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과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상위그룹 + 하위그룹			상위그룹			하위그룹		
	계	1순위	2순위	계	1순위	2순위	계	1순위	2순위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7	41	46	36	18	18	51	23	28
시·군 간에 대규모 공공시설(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6	6	10	10	5	5	6	1	5
군청소재지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39	18	21	29	14	15	10	4	6
면소재지는 공공시설의 추가 설치 없이 공공행정 및 긴급 대응 서비스 거점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22	10	12	10	6	4	12	4	8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134	98	36	65	44	21	69	54	15
마을이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4	9	15	14	5	9	10	4	6
기타: 기존 시설물의 내실을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11	3	8	4	2	2	7	1	6

2)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관한 과제 논의

(1)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시설

은 공립박물관, 게이트볼장, 공공도서관, 축구장 순으로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19] 참조). 하위그룹에서는 공립박물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순으로, 상위그룹에서는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시설별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각각을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설문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으로 비교적 낮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의 설문응답자도 비슷한 응답패턴을 보였다([표 3-7]과 [표 3-8], 부록 참조)

이상에서 논의한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은 대체로 군청소재지와 같은 지역내 주요 중심지 위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체 설문응답자 또는 상위그룹 응답자 중 향후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으로서 ‘군청소재지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표 3-20] 참조). 그리고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으로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한 갖는 비율은 공립박물관, 게이트볼장, 공공도서관, 축구장 각각에서 모두 2/3를 초과한다([표 3-19] 참조).

한편 사례지역 현지면담 결과, 지자체의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과 관련하여 순창군, 괴산군, 서천군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또는 해당 시설 관리·운영부담 저하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⁷⁾ 순창군은 주민이용 체육시설의 체육경기대회 개최공간으로의 다기능화를 추진하여 시설 이용률을 제고해왔다. 그러나 순창군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지속적으로 체육경기대회,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해 있다.

괴산군은 지역 소재 대학과 지자체 간의 체육시설을 상호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관리·운영에 부담이 큰 시설을 지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소지역에 대학이 입지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괴산군의 사례를 과소지역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17) 순창군, 괴산군, 서천군에서 전개해온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제고 또는 해당 시설 관리·운영부담 저하 노력에 관한 내용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표 3-21] 사례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2년 기준

	과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전국 시·군
문예회관 수			1	1		0.83	1.08	0.98
문예회관 1개소 당 이용자 수			35,000	37,089		55,483.96	111,530.34	89,974.04
공공도서관(교육청, 지자체 설립) 수	1	1	2	1	2	1.95	4.54	3.52
공공도서관(교육청, 지자체 설립) 1개소당 이용자 수	109,775	76,900	92,352	67,850	38,290	108,092.85	295,271.85	221,570.12
공공도서관(교육청, 지자체 설립) 1개소당 이용책수	26,877	41,949	27,614	30,667	21,879	50,888.57	147,047.97	109,185.21
공립박물관 수	1	2		2	1	1.52	1.94	1.78
공립박물관 1개소당 관람인원	3,520	27,939		114,719	2,427	94,847.48	118,029.98	108,756.98
공립미술관 수					1	0.06	0.27	0.19
공립미술관 1개소당 관람인원					5,911	65,456.75	105,934.59	98,224.52
육상경기장 수	1	1		1	1	1.06	1.42	1.28
축구장 면수	3	1		2	1	3.44	5.01	4.39
체육관 수	1	2	2	5	2	2.16	3.97	3.26
구기·투기체육관 수		2	1	3	1	1.11	2.30	1.83
생활체육관 수	1		1	2	1	1.05	1.67	1.43
테니스장 면수	5	8	8	21	11	10.54	18.25	15.21
게이트볼장 면수	7		6	6	2	7.81	7.44	7.59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31,392	31,242	53,914	25,241	24,008	45,959.3	244,827.7	166,523.3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2012년)	38,316	34,183	59,836	30,343	26,697	52,434.8	262,304.4	179,668.2
면적(km ²)	841.9	1,201.5	358.1	495.9	846.06	666.0	561.1	602.4

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2012년 기준) 통계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3년; 2012년 기준)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함

주 2: 공공체육시설에는 마을체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 3: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의 시설 수는 각 그룹의 지자체수 대비 시설수임

주 4: 그 이외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의 수치는 각 그룹의 평균값임

서천군은 자율적으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의 규모를 건립 단계에서부터 최소화시킴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건설소요비용, 특히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과소지역

시·군 중 육상경기장(또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실내체육관이 입지해 있는 비율이 각각 87.3%, 82.5%, 98.4%이므로([표 2-13], [표 2-14], [표 2-15] 참조) 서천군의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관리·운영 부담 저하가 이용률 제고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서천군의 사례는 기존 시설 이용률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

□ 순창군: 주민이용 체육시설의 체육경기대회 개최공간으로의 다기능화

순창군은 주민이 이용하는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코트를 테니스·정구 등 다양한 종목의 공식적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장소로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즉 해당 체육시설이 주민이용 공공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수 및 임원 등 역외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의 상품으로서도 기능하게 되었다.

물론 주민이용 체육시설을 선수 및 임원이 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이용하게 하더라도 사용료가 사실상 면제이므로,¹⁸⁾ 지자체의 수입이 창출되기 보다는 오히려 시설 관리·운영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창군 공무원에 따르면, 체육경기대회 기간 중에 선수 및 임원이 순창군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소규모 대회의 경우 선수 및 임원이 200~300명 정도이고, 대규모 대회의 경우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체육경기대회 유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순창군이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숙박시설 확보도 현안이다. 특히 순창군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종목인 테니스·정구의 경우, 양구군, 김천시, 문경시, 안성시에서도 테니스·정구 경기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테니스·정구 경기대회를 개최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장으로도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순창군 인근의

18)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10조에 따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 단체에 위임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다.

남원시도 56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중에 테니스코트(4면)를 개관할 예정인 것으로 현지면담 중에 파악되었다.

□ 괴산군: 지역내 대학과의 체육시설 상호이용

괴산군의 경우, 지역 대학과 지자체 간의 체육시설 상호 이용을 통해 지자체는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설치·운영에 부담이 큰 시설을 지양할 수 있었다. 괴산군이 비교적 관리·운영 비용부담이 큰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를 교부받았으나, 괴산군 소재 대학인 중원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관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영장을 다른 용도의 생활체육시설로 변경한 후 교부받은 국비를 집행하면서 시설을 설치 중이다.

그리고 괴산군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중원대학교가 행사나 수업에 이용하며, 공설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양궁장도 중원대 양궁부가 사용한다. 괴산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괴산군 양궁장은 외국 선수단이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 서천군: 조성단계에서 시설규모 축소

서천군은 공공체육시설의 건설소요비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운영부담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해당 시설의 규모를 건립 단계에서부터 최소화시켰는데, 종합운동장과 서천국민체육센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천읍에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보상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모두 서천읍에서 5~6km 정도 떨어진 마서면 소재 군유지에 입지시켰다. 물론 장항읍에 서천군민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마서면 소재 서천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설 과잉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서천군은 국민체육센터를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한 규모로 축소하여 건립하였고, 군유지를 사용함으로써 보상비를 절감하였다. 그리고 2015년 완공예정인 종합운동장에는 스탠드가 아니라 잔디언덕을 조성할 예정이며 본부석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2) 과소지역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설치·확충 논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주민복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시설을 주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면소재지에 설치하거나 확충하는 것이 시설 공급주체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논의는 다음과 같이 과소지역 면소재지에의 보건의료원/보건소, 또는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 보건의료원/보건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보건의료원/보건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187명)에 대해 갖는 비율은 43.9%로 공공시설 중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표 3-17 참조). 상위그룹에서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보건의료원/보건소의 비율이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원/보건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85.4%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최소한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17 참조). 이와 유사한 응답패턴이 군청소재 읍 위주인 상위그룹과 면으로 구성된 하위그룹에서도 나타났다.

다른 과소지역 시·군과 마찬가지로 사례지역 5개 군 모두 보건의료원/보건소를 1개소씩 보유하고 있는데(표 3-22 참조), 이것은 시·군·구별(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제외)로 보건의료원/보건소 1개소씩 설치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시행 결과, 보건의료원/보건소 설치 읍·면을 제외하면, 괴산군 10개 면에 12개의 보건지소가, 봉화군 9개면에 9개의 보건지소가, 서천군 12개 읍·면(장항읍 포함)에 10개의 보건지소가, 순창군 10개 면에 10개의 보건지소가, 청송군 7개 면에 6개의 보건지소가 소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2] 사례지역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2012년 기준

	과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	과소지역 시·군	과소지역 외 시·군	전국 시·군
행정리 수	279	156	315	305	136	297.30	455.79	393.39
보건소·보건의료원 수	1	1	1	1	1	1.00	1.23	1.14
보건지소 수	12	9	10	10	6	9.65	6.95	8.01
보건진료소 수	17	7	17	17	12	14.37	9.69	11.53
행정리 100개소당 보건소·보건의료원 수	0.36	0.64	0.32	0.33	0.74	0.46	0.40	0.42
행정리 100개소당 보건지소 수	4.30	5.77	3.17	3.28	4.41	3.54	2.17	2.71
행정리 100개소당 보건진료소 수	6.09	4.49	5.40	5.57	8.82	5.37	2.98	3.92
인구 1만 인당 보건소· 보건의료원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0.32	0.32	0.19	0.40	0.42	0.28	0.11	0.18
인구 1만 인당 보건지소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3.82	2.88	1.85	3.96	2.50	2.36	0.69	1.35
인구 1만 인당 보건진료소 수(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5.42	2.24	3.15	6.74	5.00	3.56	0.92	1.96
인구 1만 인당 보건소·보건의료원 수(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0.26	0.29	0.17	0.33	0.37	0.24	0.10	0.15
인구 1만 인당 보건지소 수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3.13	2.63	1.67	3.30	2.25	2.02	0.61	1.17
인구 1만 인당 보건진료소 수 (2012년, 주민등록인구+체류외국인)	4.44	2.05	2.84	5.60	4.49	3.05	0.82	1.70

주 1: 시·도 통계연보(2012년 기준)에서 행정리 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계를
구득함

주 2: 전국 시·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시킴

주 3: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의 시설 수는 각 그룹의 지자체수 대비 시설 수임

주 4: 그 이외 과소지역, 과소지역 외, 전국 시·군의 수치는 각 그룹의 평균값임

주 5: 시급 지자체의 경우, 행정리 수에 통 수도 포함시킴

이러한 제반 현황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보건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이 인식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당 응답 중에서

도 보건의료원/보건소를 지자체가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응답자가 보건의료원/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혼동했을 수 있다. 둘째, 보건지소 보다는 보건의료원/보건소 급의 시설이 면소재지까지는 최소한 입지해 있어야 한다는 주민의 실제 수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보건소가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21.4%로 공동 2위를 차지하고, 그러한 응답 중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이 접근성에 관련되는 응답(‘거리가 멀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52.5%와 42.5%로 1위와 공동 2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표 3-18] 참조).

그러나 상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원/보건소의 설치 기준을 벗어나 보건의료원/보건소를 면소재지까지 설치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은 36.4%로 공공시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표 3-17] 참조). 하위그룹에서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공중목욕장(지자체 설치·운영)의 비율이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공중목욕장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 중 61.8%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최소한 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17] 참조). 군청소재 읍 위주로 구성된 상위그룹에서는 그 비중이 71.0%로 높아지는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54.1%로 낮아지는 대신에 마을(행정리)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를 차지하였다([표 3-17] 참조).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관리시설인 공중목욕장의 공급주체가거나 공급가능 주체인 사례지역 군청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면소재지에의 공중목욕장 설치·운영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면소재지의 중심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주민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이용을 위해 주로 군청소재지(또는 인근 도시)까지 통행하게 되고 그에 맞춰 생활권도 형성되고 있으므로, 공중목욕장을 면소재지에 설치할 경우 이용객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중된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문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공중목욕장(민간 소유 또는 관리·운영시설 포함)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0%, 그 중에서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54.8%이다([표 3-6] 참조). 하위그룹에서도 지난 1년간 공중목욕장을 주민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9.1%로 비슷하지만, 면소재지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47.2%)이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44.4%)을 조금 상회하면서 절반에 미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표 3-6] 참조).

둘째, 일단 설치되면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위한 시설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적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더라도 지자체가 수익성을 위해 공중목욕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설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도 계속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더라도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주체 또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목욕쿠폰 배부, 또는 지자체 관할구역내 버스요금 단일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등을 통한 군청소재지로의 접근성 제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3) 경로당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과소지역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므로, 경로당이 마을(행정리) 수준에서

핵심적 공공시설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운영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고,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관리·운영 주체 및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례지역에는 모두 1개의 행정리에 거의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경로당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참조). 게다가 사례지역 현지면담 결과, 고령화로 인해 마을회관의 상당수가 경로당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송군에는 2014년 현재 순수한 의미의 마을회관은 42개에 불과하고, 청송군 안덕면의 경우 21개 행정리 중 2개 리에만 마을회관이 있으며 마을회관의 대다수가 경로당과 겸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순창군 동계면의 37개 경로당 중 33개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부터 전환되어 마을회관과 겸용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187명)에 대해 갖는 비율이 48.7%로 제일 높았다([표 3-17] 참조). 하위그룹 설문응답자(92명)에 대한 비율은 50%에 달했고, 상위그룹 설문응답자(95명)에 대한 비율은 47.4%로서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한 비율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경로당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응답자 모두가 해당 시설을 지자체가 최소한 마을(행정리)까지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17] 참조). 이것은 전체, 상위그룹, 하위그룹 설문응답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응답결과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경로당이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핵심적인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공공시설 공급·활용 관련 경로당의 과제

공공시설 공급·활용과 관련되는 경로당의 현안은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운영지원이다. 경로당이 상호배려 또는 공동 돌봄의 공간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상의 공동주거로서도 기능하므로, 급식시설,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동공간,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찜질방 등의 설치·확충 등 물리적 투자를 수반하는 시설 다기능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¹⁹⁾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을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노인공동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왔다(보건복지부 2014).

그리고 사례지역 지자체는 모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다기능화도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와 제37조의3이라는 법적 틀 속에서 경로당에 대한 양곡,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경로당의 활성화도 지원해오고 있다([표 2-25] 참조).

특히 서천군은 거점 경로당에 식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비 5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거점 경로당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인 ‘어메니티 건강교실’(11~3월, 주 4회 운영)과 ‘행복경로당’(4~10월, 주1회 운영)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어메니티 건강교실, 그리고 행복경로당이라는 프로그램은 거점경로당에서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사무소의 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현지면담 결과, 청송군은 2014년에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그룹홈 경로당’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비와 군비가 3:7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에서 공동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게다가 청송군은 ‘찾아가는 행복경로당’(문화경로당 포함)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간 5천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80여개 경로당에서 주 1~2회 프로그램(건강관리, 노래교실, 요리교실, 기타 취미활동 등)을 개최하는데, 행복경로당의 경우 오전·오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문화경로당은 오후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마을회관 겸용 포함)은 경로당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26.7%로서 설문조사 대상 공공시설 중에서 제일 높았다([표 3-18] 참조). 하위그룹에서는 해당 비율이 33.7%로 올라가고 역시 설문조사 대상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도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

1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7에서 규정하는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 정원 20명 이상(읍·면의 경우 10명 이상)이고, 화장실, 전기시설, 20㎡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 중 경로당 이용 시 문제점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36.0%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냉·난방비 등 시설 관리·운영 재원이 부족하다’가 34.0%, ‘시설로부터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가 30.0%이었다(표 3-18] 참조).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상위 3위 이내에 들어갔다.

또한 과소지역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각각의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 합계가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7%로 가장 높고, 1순위 응답 비율만 보더라도 52.4%이고 가장 높았다(표 3-20] 참조). 이러한 응답패턴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경로당 관련 요구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경로당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를 추진하거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요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경로당 관리·운영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에 의해서도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이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도 지향하므로 이용자인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커뮤니티 참여에 근거하는 시설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 지자체의 재원 확보

지자체가 공공시설 공급·활용 관련 경로당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특화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과소지역 고령화의 급진전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경로당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봉화군과 서천군의 공무원 면담결과에서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 요구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같은 다른 사업의 예산 일부를 경로당(또는 경로당으로 전환된 마을회관) 개보수에 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창군에서도 2014년 3개의 경로당이 신축되는데 모두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봉화군 기획담당 공무원은 관할구역에서 전개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또는 기능보강에 더 많은 국비를 투입했을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예산 중 국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는 주로 방문객 및 체험객 유치를 위한 시설,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시설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서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예: 요양원), 노인주거복지시설(예: 양로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보수, 기능보강 등에는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로당이 마을단위의 핵심적인 공공시설로서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경로당에 전문화된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로당에 특화된 정부의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경로당 관리·운영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자체가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경로당 관리·운영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자칫 고령자의 의존적 습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로서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공시설이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포함)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 중 경로당 이용 시 문제점으로서 ‘냉·난방비 등 시설 관리·운영 재원이 부족하다’가 34.0%를 차지하여 2위이며, 하위그룹에서는 41.9%를 차지하여 1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표 3-18] 참조).

게다가 공공시설 공급자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자 효율성도 지향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인 지역커뮤니티의 참여에 근거하는 경로당 관리·운영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이 주민 간의 의사소통 거점을 조성하고 보다 활기찬 공공공간 형성에도 기여한다는 점과 함께, 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착을 높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 및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Dax 2006)을 인식해야 한다.

고령화·인구감소시대에서 경로당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는데, 주민의 다수가 노인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무형자산이 지역사회에 전승되게 하는 등 재능기부, 역할부여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은 노인의 재능기부 및 역할부여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충효의 훈장님’과 ‘시니어 리더스 양성’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충효의 훈장님은 65세 이상의 한학에 정통한 노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송군 휴양림에서 1박2일 코스로 진행되며 연간 32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고, 시니어 리더스 양성은 훈장 후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관리·운영 주체 확보 또는 역량 제고, 특히 노인의 역량 강화가 얼마나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송군에서 2년간 시행한 시범경로당 특성화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은 읍·면별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고추, 콩, 쌀농사 및 수확 농산물 판매)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군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자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지지부진했고, 결국 사업 시행한지 2년 후에 종료되었다.

(4) 마을로부터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과소지역 주민의 군청소재 읍으로의 통행이 우세하고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차원에서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설치·확충이 어렵다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마을(대중교통 사각지대 포함)로부터 군청소재지 등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가 더욱 필요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소지역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 각각의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 합계가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을 보면,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가 46.5%로 두 번째로 높고, 1순위 응답비율만을 보더라도 두 번째로 높다([표 3-20] 참조). 이상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응답패턴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에서도 볼 수 있었다.

마을(행정리)에서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주민의 접근성 문제(Dax 2006)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주민, 특히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과소지역 주민의 군청소재 읍 등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 다목적 통행을 뒷받침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중심지의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수요응답형 대중 교통서비스 운영이 요구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원/보건소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응답자 중 주민들이 인식하는 해당 시설 이용 시 문제점이 접근성에 관련된 ‘거리가 멀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2.5%와 42.5%로 1위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표 3-18] 참조). 보건의료원/보건소 이용 상의 문제점 중 접근성 관련 두 가지 문제의 비중은 모두 하위그룹에서 상위 2위 이내에 들어가고, 보건의료원/보건소가 보통 입지하는 군청 소재 읍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위그룹에서도 상위 3위 이내에 들어갔다([표 3-18] 참조).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을 이용 상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설로서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각각의 응답자 중에서 ‘거리가 멀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는 불편하다’ 등 접근성 문제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해당 시설 이용 상의 문제점으로서 2위 이내에 들어갔다([표 3-18] 참조).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이 보통 군청 소재 읍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위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하위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게,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이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해 갖는 비율이 각각 23.5%와 36.4%로서 3위와 1위를 차지하였다([표 3-19] 참조). 하위그룹 설문응답자에서는 공립박물관이 28.3%로 1위를 차지하고, 상위그룹에서는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이 각각 44.2%와 30.5%로서 1위와 2위이다.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인 마을로부터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사례지역 중 서천군이 운영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희망택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천군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희망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은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로서 희망택시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택시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회하여 법령상 근거 규정을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방자치법’ 등에서 희망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확인하게 됨 - 또한 희망택시 시행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운수업체 재정지원 사무에 관한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마을택시운행계통의 문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 ‘공직선거법’(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기부행위)의 관련 규정 위반 소지 등을 해결함 -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5월말에 제정함 - 희망택시가 운행되는 마을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2km이상 되며, 주민이 20세대 이상인 마을로서 서천군내 총 26개 마을임 - 이상의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26개의 희망택시를 운행하게 하되, 면소재지까지 운행 시에는 요금이 100원이고, 읍소재지까지는 서천군 버스요금(단일요금)에 준하여 1300원으로 요금을 설정함 - 그리고 서천군이 택시기사에게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8천만 원인데, 담당 공무원은 해당 마을에 버스 운행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 2억 5천만 원 이상(버스 2대 운행시)이 소요될 것이므로 희망택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복지를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서천군이 부담하는 비수익 또는 벽지 버스노선 운행명령에 따른 버스업자 손실보상액은 연간 2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됨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택시가 대기하며, 1회 운행 시 2~3명 정도가 탑승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만 4000여명이 이용하였다고 함

chapter IV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

제4장은 인구감소 또는 과소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정부가 주민의 생존배려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가 주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배후지를 설정하고 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 시설과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인 작은 거점 조성 및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관한 시책, 그리고 주민참여에 근거한 작은 거점의 조성·운영 또는 공공시설의 다기능화에 관한 사례, 공익성을 갖춘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1. 독일의 주민 생존배려를 위한 중심지체계 설정²⁰⁾

2000년대 이후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공간정비의 관점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균등한 생활여건의 보장이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독일의 ‘기본법’(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과 ‘국토공간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법의 원칙인 균등한 생활여건의 보장을 위한 실천수단으로서 중심지체계를 국토공간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인프라 공급, 특히 기초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기초서비스 공급이 중심지체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독일의 중심지체계에 관한 논의 과정과 최근 정책을 살펴보고, 작센 주를 사례로

20) 원외 협동연구진인 김상빈 박사가 작성한 외부원고를 수정·가필하였다.

주발전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심지 및 중심지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 설정, 중심지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과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의 설정 등을 고찰하였다.

1)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중심지체계 활용

독일에서 기초서비스 공급을 위해 중심지체계를 활용한 것은 1960년대까지 올라간다. 농촌지역 중심지와 배후지의 기초서비스를 보장할 목적으로 1960년대 주발전계획과 지역계획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중심지체계를 구상하였다. 중심지는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공공시설의 공급 거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계획체계를 통해 중심지를 설정하고 중심지 계층별로 공공시설을 차별화하여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독일에서 중심지체계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공간정비 구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주발전계획과 지역계획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63년에 출판된 독일 연방정부의 공간정비보고서(Raumordnungsbericht)는 농촌지역에서 정주구조의 취약과 공공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후 1965년 독일 국토공간정비법은 “낙후한 생활여건을 가진 지역에서 적합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행정시설을 포함하여 중심지적 의미를 보유한 게마인데²¹⁾”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즉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비와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심지체계를 도입하였다(Blotevogel 2005).

1968년 2월 8일 MKRO(공간정비주무장관회의)는 고차, 중차, 저차 그리고 소중심지(Ober-, Mittel, Unter- und Kleinzentren)의 4단계로 중심지체계를 통일할 것을 의결하였다. 저차중심지는 농촌지역 중심지와 배후지에 기초서비스를 공급하며, 중차중심지는 그러한 공간영역을 넘어서는 상위수요에 대응하고, 고차중심지는 국제적인 기능과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도록 기능을 차별화시켰다.

시기별로 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도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저차중심지에 정책적 관심을 두었지만, 1970년대에는 중차중심지, 1980년대에는 고차중심지

21)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에 해당된다.

로 정책적 관심이 이동하였다. 정책적 관심이 이동하게 된 원인으로는 개인 교통의 발달에 의한 주민들의 활동 공간 확대, 저차중심지 공간정비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문제를 들 수 있다.

[표 4-1] 중차중심지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 카탈로그

<p>I. 교육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의 입학으로 이어지는 학교 - 여러 교육과정 등을 보유한 직업학교 의무를 충족하는 학교 - 학습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 - 세분화된 성인교육 시설/시민대학(Volkshochschule) - 독서실을 갖춘 공공 도서관(주민 1인당 장서 1권)
<p>II. 의료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전문분야(외과, 내과, 산부인과)를 보유한 급성환자 치료병원(중심지와 배후지의 인구가 적을 경우 2개의 전문분과) - 다양한 분야의 의원(전문외)
<p>III. 스포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드경기와 육상을 위한 메인 스타디움을 보유한 대형 스포츠 시설(400m 트랙)과 부대시설 - 최소한 27m×45m의 실내체육관 - 다목적 풀을 갖춘 실내 수영장(10m×25m) - 물을 가열할 수 있는 노천 풀 (21m×50m) - 특수스포츠 시설(가령, 테니스장)
<p>IV. 상업-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면적인 쇼핑 가능성, 예를 들면 건축적으로 통합된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혹은 상점 내지 비교 가능한 상품·서비스를 갖춘 전문 상점 - 도매센터 - 상위 수요를 위한 다층적인 수작업 서비스 공급 - 다수의 대형 신용(금융)기관
<p>V. 교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도로망에 직접 연결 - 철도망에 연결, 모든 중차중심지는 가능하다면 급행열차 정차역이어야 함

주: 1972년 6월 15일 MKRO 의결 사항에서 발췌

출처: Blotevogel(2005); Bundesregierung, Raumordnungsbericht 1972 der Bundesregierung, Anhang 2d, BT-Drucksache VI/3793 in Kistenmacher, H., 1982, Grundriss der Raumordnung, Hannover: Curt R. Vincentz Verlag, S.255로부터 재인용

1970년대에는 중차중심지를 공공시설 공급의 핵심지역으로 설정하고 공급해야 할 공공시설 카탈로그를 제시하였으며,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적인 입지로서 중차중심지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는 고차중심지의 공간정비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고차중심지는 공공시설의 공급기능 이외에도 지역노동시장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교통시설 등 인프라 공급 기능도 담당한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차중심지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한계를 보였고, 중심지체계를 통한 공간정비가 경직된 모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독일의 통일과 유럽공간발전의 역동성으로 인해 중심지체계의 유용성이 다시 부각되어 르네상스가 전개되었다. 중심지체계는 구 연방주(구 서독지역)의 모델에 따라 신 연방주(구 동독지역)의 프로그램과 계획에 적용되었고, 특히 인프라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여했다(Blotevogel 2005).

독일의 중심지체계가 실질적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정책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시설 공급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다. 특히 공적 영역의 인프라(특히, 병원, 학교 등) 공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중심지체계 설정과 공공시설 공급

(1) 중심지체계 설정

중심지체계 설정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공간정비 수단 중의 하나이며, 1960년대에 구 서독지역에서 시행되었고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중심지체계 설정은 먼저 계층별로 중심지를 지정하고 서비스를 공급할 배후지를 결정한 후, 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카탈로그,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중심지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하여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한 균등한 생활여건 보장, 국토공간정비법에서 규정한 기초서비스 공급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차중심지와 중차중심지는 주계획을 통해 설정되며, 저차중심지는 (광역)지역계획을 통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중심지 설정의 행정구역 단위는 일반적으로 게마인데

이며, 예외적으로 오르츠타일(Ortsteil, 게마인데의 일부) 또는 여러 게마인데로 구성되는 게마인데 연합(Städteverbände)을 중심지로 설정할 수도 있다. 독일 작센 주 발전계획에 포함된 중심지체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센 주 발전계획과 중심지체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기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균등한 생활여건 보장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적 수단으로서 중심지체계가 중요하고, 균등한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중심지체계는 공간적 기본 틀로 작용하며, 3단계 중심지 계층(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²²⁾의 균형적인 형성을 추구함 • 1994년의 작센 주발전계획의 중심지 구상에서는 1564개의 게마인데가 대상이었으며, 2003년 계획에서는 527개의 게마인데가 대상이었음 • 작센 주의 경우 주발전계획에서 고차중심지 및 중차중심지가 설정되고, 지역계획에서 저차중심지들이 설정되는데, ‘2013년 작센 주 발전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관련 목표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중심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함 - 2) 상위단계 중심지는 하위단계 중심지의 기능도 수행함 - 3) 다른 중심지의 효율성을 해치는 계획은 지양함 - 4) 배후지 거주 주민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함 - 5) 게마인데 연합에 의한 중심지와 게마인데 사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함 - 6) 고차중심지는 지역을 넘어서는 경제, 혁신, 교육 및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야 함 - 7) 중차중심지는 지역의 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특히 농촌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고 강화해야 함 - 8) 저차중심지는 공공시설의 공급과 정주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함

출처: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2013)

중심지 위계별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에는 차이가 있다. 독일의 대다수 주에서는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라는 3단계의 중심지 계층이 일반적이는데,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 발전계획의 시설물 카탈로그(Ausstattungskataloge)에서 규정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공공시설 공급기준이다. 중심지에서의 공공시설 공급은 주변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과 인접지역의 시설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BSR 2012). 무엇보다도 중심지는 포괄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유지해야 하며(독일 기본법 28조 2항 1), 특히 수많은 생존배려 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22) 2003년 작센 주 발전계획에서는 1994년과 달리 소중심지를 철폐하여 중심지 계층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고, 중차중심지 수도 축소하였다.

공적 생존배려의 서비스를 전달한다.²³⁾ 독일에서 중심지 위계별로 전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일반적인 중심지 및 배후지의 최소인구수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BBSR 2012).

[표 4-2] 중심지 위계별 전형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최소인구수

중심지 위계	전형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최소인구 수(중심지 + 배후지)
고차중심지 (Oberzentrum)	전문상점, 대형 은행 및 신용기관, 전문대학/대학, 전문병원, 학술도서관, 스타디움, 간선역	장거리영역(Oberbereich) (20만~30만 명)
중차중심지 (Mittelzentrum)	상점, 병원, 전문의원, 숙박시설, 양로원(노인구호시설), 극장, 박물관, 청소년시설, 중고등학교, 도서관, 대형스포츠시설, 기차역	중거리영역(Mittelbereich) (3만~4만 명)
기초중심지/소중심지 (Grundzentrum/ Kleinzentrum)	우체국지점, 은행, 소매상, 일반의원, 치과, 약국, 유치원, 초등학교, 스포츠시설	근거리영역(Nahbereich) (7000~1만 명)

출처: BBSR(2012, S.33)

(2)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중심지 기능유지와 접근성 개선 노력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 이민자 유입 등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심지체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심지 축소 또는 통합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그리고 중심지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구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노동, 주거, 교통, 급양 등)를 충족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은 필수적이며 병원, 학교, 유치원, 문화·여가 시설 등도 제공받아야 한다. 지역 간의 균등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기준을 공공부문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다.

23) 유치원, 성인교육시설, 청소년 여가시설, 극장, 박물관, 스포츠시설, 수영장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는 공공이 책임지고, 은행, 상점, 전문병원 등은 민간에서 공급한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는 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구당 인구 감소, 외국인 증가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에서 양적 및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공공시설의 설치보다는 재생(용도의 전환, 복합적 활용 등)을 통해 이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 공공시설 자체의 질적 수준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도 중요하므로 시설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이외에도 공공시설이 입지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며, 수요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인구의 87%는 중차중심지까지 승용차로 15분 이내에 도달하지만,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3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중차중심지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주민이 32%, 주민의 3%는 60분 이상 소요된다. 즉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성 보장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수요가 없는 지역의 공공시설이 통폐합될 때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근거리 대중교통 공급이 필요하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민참여와 공동체에 의한 교통서비스 공급 등이 유망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BBSR 2012).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하고 중심지에 공공시설을 입지시키는 전략의 전제는 배후지에서 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작센 주의 경우,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발전계획에서 근거리 공공 대중교통을 도입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시간비용을 고려한 대안적 교통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보장과 함께, 공공 근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상위의 중심지로의 접근성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작센 주는 접근성 기준으로서 공공교통을 통해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차중심지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최대 45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고차중심지²⁴⁾까지 최대 90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2013).

24) 작센 주의 고차중심지는 드레스덴(Dresden), 라이프치히(Leipzig), 켐니츠(Chebnitz), 츠비카우(Zwickau), 플라우엔(Plauen)이며, 게마인데 연합 형태의 고차중심지로서 바우첸(Bautzen/Budyšin)-괴르리츠(Görlitz/Zhorjelc)-호이어스베르다(Hoyerswerda/Wojerecy)가 있다.

[표 4-3] 작센 주발전계획에서의 중심지체계

중심지 구분	기능	특징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고차중심지	경제·교육·행정의 중심지이며 고품질의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인프라와 공공시설이 입지하기 때문에 초지역적 그리고 주 전체 혹은 국제적인 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5만 명의 인구 - 초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연계축과 발전축의 교차점에 위치함 - 중차중심지의 통상적인 배후지를 넘어섬 - 2만개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일자리, 1만명 이상의 통근자 - 경제의 중심(적어도 제조업에서 40개 이상, 2010년 제조업 전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 	상급 교육시설(대학, 전문대학, 직업 아카데미), 국제적인 철도교통망 및 고속도로망, 문화 및 스포츠시설(극장, 스타디움, 다목적 홀), 쇼핑센터, 법원과 경찰의 상급시설, 고급 의료시설
중차중심지	합리적인 거리에서 보다 높은 가치의 생존배려 서비스를 보장하고 고차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며, 중차중심지와 배후지에 공공시설을 공급하여 서비스의 질을 보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는 최소 1만 5000명(2010년 12월 기준), 농촌지역 중심지의 경우 최소 1만 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함 - 일자리 수(2010년 6월 기준) 최소 5000개, 농촌지역 중심지의 경우 최소 3000개임 - 중심지와 배후지 인구 최소 4만 5000명(2010년)임 	감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 직업학교, 특수학교, 성인 교육 시설, 스타디움, 체육관, 도서관, 병원, 장애인 시설, 전문의원, 다양한 과목의 노인 간병 및 배려 서비스(예: 장애인과 노인에 적합한 주택), 경찰서와 재판소, 인접 고차중심지로 신속한 교통연계를 위한 인프라
저차중심지	고차중심지와 중차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기초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핵심공간이며, 공공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써 기능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차중심지는 인구기준은 고밀도지역에서는 중심지와 배후지를 합하여 최소 1만 5000명(농촌지역에서는 최소 7000명)임 - 작센 주에서 저차중심지의 설정은 지역계획을 통해 이루어짐 - 작센 주에서는 지역계획에 의해 총 80개의 저차중심지(게마인데 연합 포함)를 설정했음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급시설(슈퍼마켓과 전문 상점), 의료시설, 약국, 노인을 위한 배려 서비스 시설, 탁아시설, 초등학교, 청소년 여가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근거리 공공 대중교통에 연계, 스포츠 및 여가시설, 금융기관(마을금고, 은행, 보험), 우체국지점/소방서

출처: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2013)의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함

작센 주 발전계획에 포함된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의 기능과 특징,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목록은 [표 4-3]과 같다. 고차중심지는 광역적 서비스 제공과 국제적인 기능을, 중차중심지는 고차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고차서비스 공공시설을 제공하며, 저차중심지는 기초서비스의 공급기능을 담당한다.

(3) 중심지체계의 성과와 과제(작센 주 사례)

2003년도 작센 주 발전계획은 농촌지역에서 주민의 생존배려를 위해 중심지체계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차중심지 6개소와 중차중심지 38개소(그 중 고밀도 지역 소재 12개소, 농촌지역 소재 10개소), 저차중심지 80개소(그 중 12개소는 계마인데 연합 형태의 저차중심지)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 공급에 기여했다.

중심지의 인구비중에 변화가 있었는데,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차중심지에 37.8%, 중차중심지에 21.8%, 저차중심지에 16.6%가 분포하며, 고차중심지의 인구는 약간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약간 감소했다. 작센 주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고차중심지 41%, 중차중심지 21%, 기초중심지 14.5%로 고차중심지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Inner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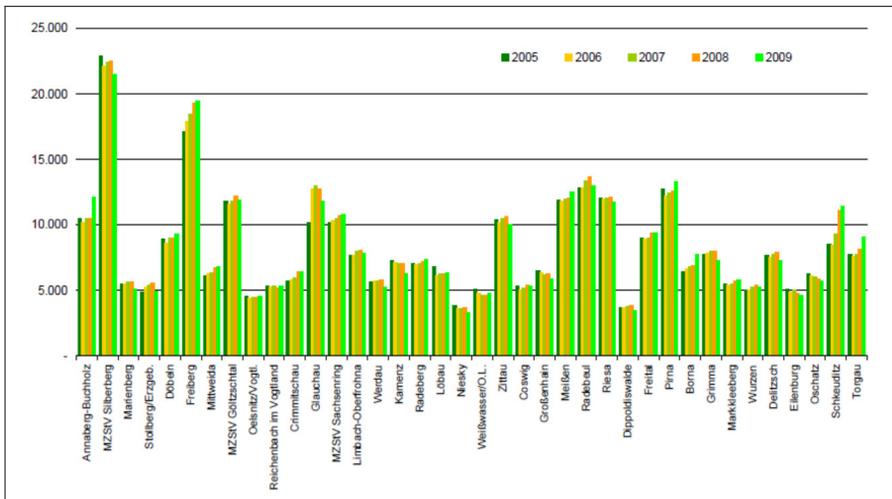
또한 같은 위계의 중심지 내에서도 인구와 면적의 편차가 심하다. 작센 주 중차중심지를 살펴보면 중차중심지의 인구규모는 1만 168명(니에스키 Niesky)에서 4만 1701명(프라이베르크 Freiberg)(2009년 12월 31일 기준)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면적이 가장 넓은 중차중심지는 그로벤하인(Gro Benhain)으로서 130.24km²이고, 가장 작은 중차중심지는 코스비히(Coswig)로서 25.85km²이다.

2003년도 작센 주 발전계획에서 설정된 38개소 중심지 중에서 22개소가 2009년 말 현재 중차중심지 설정 기준을 충족한다. 38개소 중차중심지 중 18개소는 2005년 말에서 2009년 말 사이에 인구가 5%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에 비해 중차중심지 중 21개소는 2009년에 일자리 증가하여 경제적 기능은 안정화되고 있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Innern 2011).

2003년에 주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중차중심지 설정이 공공시설 공급 측면에 거둔 성과는 첫째, 38개소의 중차중심지 중에서 34개소에서 통상적 치료를 위한 병원

이용이 가능했고 둘째, 모든 중차중심지에 김나지움이 입지해 있고, 5개소를 제외하면 적어도 하나의 직업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3년도 작센 주 계획에서 설정한 중차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은 승용차 이용시 소요시간 60분인데, 모든 게마인데에서 충족되었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Innern 2011).

[그림 4-1] 작센 주 중차중심지 일자리 수(사회보험 가입 의무 종업원수)



출처: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Innern(2011, S. 36)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공급 감소, 원거리 이동비용 증가, 인구 희박 농촌지역의 공공 교통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중심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함께, 접근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3) 중심지체계 유지를 위한 전략

독일에서는 기본법이 규정하는 균등한 생활상태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공간정비법에 근거하여 중심지체계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공간정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지체계는 거의 50년 동안 조금씩 편차는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감소, 고령화, 세계화 등으로 요약되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중심지체계 유지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BMVBS und BBR 2007).

□ 중심지체계의 유연화와 적응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존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지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간 연계와 취약의 집중을 통해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별로 중심지체계의 유연화와 적응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BMVBS und BBR 2007).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cklenburg-Vorpommern) 주는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여 인프라의 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중심지 계층도 3단계로 축소시켰다([표 4-4] 참조).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는 중심지를 공공시설 공급의 핵심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는 장기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중차중심지를 주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핵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센 주는 중심지 계층을 3단계로 축소하되, 중차중심지의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 다양한 전략

주별로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주는 중심지의 수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한 주들은 대개 중심지 계층 간소화와 중심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추구한다. 중심지 계층을 축소함에 따라 대다수 주정부에서 중심지가 세 개의 위계를 갖게 되었다.

[표 4-4] 독일 주별 중심지체계 유연화 전략

	브란덴부르크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데니부르크	니더작센
중심지 계층	2단계로 축소 (기초중심지 철폐)	유지	유지	3단계로 축소	중간단계 확대
중심지 수	전체적으로 축소, 중차중심지 확대	증가	증가	-	증가
중심지 기능의 확대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시설물 카탈로그 사용	예	예	예	-	예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중심지 계층	유지	유지	3단계로 축소, 중차중심지 세분화 가능	유지	3단계로 축소
중심지 수	축소 계획 중	유지; 향후에 검토	축소	검토 계획 중	증가
중심지 기능의 확대	-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지역발전 기능의 강화
시설물 카탈로그 사용	예	예	예	-	예

출처: BMVBS und BBR(2007, S. 9)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중심지 수를 축소하거나 또는 증대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차중심지가 지역발전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또한 중심지 위계별 공공시설 최소공급 기준을 시설물 카탈로그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만, 주별로 처해 있는 여건에 맞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심지와 배후지를 포함한 인구기준은 주별로 차이가 많으며, 특히 중차중심지와 배후지의 인구기준은 세력권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대다수 주에서 3만 명으로 기준을 설정했지만, 작센 주는 4만 5000명, 작센-안할트 주는 7만 5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접근성 기준은 거리(라인란트-팔츠와 바이에른 주) 또는 시간(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소요시간)로 표시된다. 중차중심지 기준으로 30분(자를란트), 45분(튀링겐), 60분(헤센, 라인란트-팔츠, 작센, 작센-안할트) 등으로 설정되며, 저차중심지의 경우 30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만 예외적으로 45분을 적용한다. 그리고 학교의 입지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거리에서 결정하는데, 보통 저차중심지에 초등학교, 중차중심지에 김나지움이 입지하고, 고차중심지에 직업학교가 입지한다. 예외적으로 작센 주에서는 중차중심지에 직업학교가 입지할 수 있다. 모든 주발전계획에서 균등한 의료의 보장은 중요한 목표이며, 다른 기준에 비해 덜 구속적인데, 의료시설이 주로 중차중심지와 고차중심지에 입지한다(BMVB und BBR 2007).

□ 지자체간 또는 지역간 협력의 확대

지자체간 또는 지역간 협력을 위해서는 기능의 조정과 배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자체간 기능조정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 공급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은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간정비전략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자체간 협력은 거의 모든 연방주에서 공공시설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며, 시설설치의 경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행정구역의 통합 또는 게마인데 연합을 통한 중심지지정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간 협력의 형태는 중심지 간의 기능 분담 및 전문화, 게마인데 연합에 의한 중심지설정, 배후지역의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중심지 간의 기능 조정, 도시와 배후지의 협력과 조율, 도시네트워크와 비중심지들의 협력, 지역컨퍼런스와 같은 비공식적 협력,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 등 다양하다.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공간정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공동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혹은 계획단체를 통한 지자체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발전계획에서 고차와 중차 수준에서 협력적 중심지를 설정하고, 협력해야 할 중심지의 명칭과 범위를 결정한다. 중심지 간의 협력은 주

계획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된다. 중심지 간의 기능 분담은 공간정비 계약 또는 건축법 § 204, 205에 따라 공동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하다 (BMVBS und BBR 2007).

[표 4-5] 독일 주별 중심지간 가능한 협력의 종류 또는 기능 분할

	브란덴부르크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중심지 간의 협력	중차중심지의 기능분할	이중 혹은 다중중심지	이중 혹은 다중 중심지	이웃한 중심지 간의 기능적 보완	고차 혹은 중차중심지 간의 협력, 공동의 중심지	중심지연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샬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겐
중심지 간의 협력	-	협력공간	이웃한 중심지들 간의 협력, 도시네트워크	도시연합, 고차 혹은 중차 중심지 주변의 기능공간	이웃한 중심지 간의 기능분할	-	기능 분할적 중심지

출처: BMVBS und BBR(2007, S. 15)

4) 시사점

□ 중심지체계를 공공시설 공급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

독일은 1960년대 이후 공간정비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심지체계를 일관되게 사용해왔다. 중심지 계층과 중심지 수의 변화는 있었지만, 고차, 중차, 저차의 중심지를 주로 주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설정하였고, 시설물 카탈로그를 통해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공급기준을 규정하였다.

중심지체계는 연방주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설정된다. 공간정비주무장관회의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지만, 주마다 처해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중심지의 위계와 수, 시설물 카탈로그를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 명확한 기준에 의한 중심지로의 접근성 확보

중심지가 공공시설 공급의 거점이므로 공공시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주발전계획에서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된 배후지가 설정되면,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한다. 접근성 기준은 보통 중심지까지의 도달에 소요되는 시간(또는 소요되는 거리)으로 명확하게 설정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근거리 대중교통 공급, 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시민참여와 공동체에 의한 교통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주 발전계획에 의한 중심지의 설정

중심지의 설정은 법령에 의한 경직된 결정구조가 아니라 계획에 의한 융통성 있는 결정 구조를 가진다. 고차중심지와 중차중심지는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 발전계획에 의해 설정하며, 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인 게마인데는 중심지 지정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저차중심지는 기초서비스(의료 육아 및 교육, 교통, 여가, 금융, 우편, 소방 등)를 공급하며, 작센 주의 경우처럼 지역계획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독일은 지난 50년 동안 계획에 의한 중심지체계 설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계획체계(주발전계획, 지역계획)를 통해 고차와 중차, 저차중심지를 설정하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중심지체계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공급(학교, 병원, 체육시설 등)에 기여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한 대응

인구변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중심지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해 왔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중심지 계층을 축소하거나, 중심지 수를 줄이거나, 또는 다수의 게마인데 연합을 중심지로 지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구에 비해 과도한 공공시설의 공급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심지에서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공급 기준과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여 달성하려고 한다.

2.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및 공공시설 공급·활용 사례²⁵⁾

1) 일본 과소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1) 과소지역²⁶⁾ 현황

일본의 과소지역은 앞서 제2장의 인구과소지역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정·촌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 1820개 시·정·촌 중 과소지역은 739개(40.6%)였고, 2014년에는 1719개 시·정·촌 중 797개(46.4%)이다. 2006년과 2014년 사이에 시·정·촌 합병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소지역의 숫자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2) 과소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

일본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 중에 대도시권 외 전국 각지에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가 전체가 팽창하듯 성장하는 시대를 경험하였다. 당시에는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결과의 균등을 중요시하는 강력한 지역격차 완화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장기적 경기침체 그리고 고령화를 겪으면서 전국을 균등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격차 완화정책은 점점 지지기반이 약해졌다.

한편 과소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조건이 불리한 과소지역과 중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초점을 맞춘 공공정책이 추진되었다.

25) 원외 협동연구진인 임화진 박사가 작성한 원고를 수정·가필하였다.

26) 과소지역은 일본 총무성이 지정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과소지역, 중산간지역, 섬지역을 폭 넓게 포괄하는 조건불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토교통성에서 지정하는 조건불리지역으로는 호설지역, 특별호설지역, 섬지역, 반도지역, 진흥산촌 등이 있고, 농림수산성에서 지정하는 중산간지역은 대부분 과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과소지역과 중산간지역에 관한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 추진된다(国土交通省 2005).

[표 4-6] 일본 과소지역 관련 법률의 변천

법률명	과소대책 긴급조치법	과소지역진흥특별 조치법	과소지역활성화 특별조치법	과소지역자립촉진 특별조치법	과소지역자립촉진 특별조치법(안정법)
기간	1970~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년~
배경	도시지역으로 급격히 신규 졸업자 등 인구 흡수	주민의 취업기회 및 의료서비스 확보	계2차 오일쇼크를 극복한 새로운 도쿄 일극 집중	자연감소 비중이 늘어나고 고령화 진행과 계속되는 젊은 층 유출	알자리 부족, 생활교통 확보 문제, 의사부족, 전통문화의 손실, 집락 소멸
	897개 시·정·촌에서 10% 이상, 117개 시·정·촌에서 20% 이상, 36개 시·정·촌에서 30% 이상 인구감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원	고령화, 산업, 공공시설 정비 측면에서 새로운 과소문제 발생	농림수산업의 현저한 정체 집락의 존속위기	
정책 기초	긴급대책	과거의 인구감소로 기능이 저하된 지역사회의 생활수준과 생활기능개선	진흥 및 활성화 도모	활성화에서 자립촉진으로 전환	과소문제의 해결을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과제로 인식한 대책
	생활환경의 내셔널 미니엄 확보	종합적 또는 계획적 진흥시책에 따라 주민복지 향상, 고용증대 및 격차완화	지역의 개성을 살려 지역 정체성과 정의적 노력을 기본 축으로 삼는 지역만들기 중시	전국적 관점에서 본 과소지역의 새로운 가치 공익적 기능 중시	
	개발가능한 지역에 산업기반 등 정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한 종합적 지역발전 중시	개성을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인구의 과도한 감소, 지역사회 붕괴 시·정·촌 재정미달 방지				
주요 조치		과소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부세 조차율 인상(57%⇒70%) 지역산업진흥시설, 관광레크리에이션 시설 추가	대행제도 확충(하수도) 고령자생활복지센터 등 추가	고령자 복지향상, 지역 문화진흥시설 추가	과소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가 자연에너지이용시설 추가
	시·정·촌도로 개량률 9% ⇒ 22.7% 포장률 2.7% ⇒ 30.6% 집회시설 정비 80% 1975년도 인구감소 둔화 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여 효력을 잃음	시·정·촌도로 개량률 39% 포장률 55.7%	교통통신체계 정비를 위한 지출비중을 낮추고 산업진흥, 고령자 등의 보건·복지, 생활환경 정비 비중 증대	시·정·촌도로 개량률 51.2% 포장률 68.6%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개성있는 지역형성(관광객 수 증대)	

출처: 総務省(2011a, pp.28~29)

그러나 2000년대 과소지역정책은 한계집락론²⁷⁾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27) 한계집락론은 1980년대 말 사회학자 오노 아키라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집락을 연령구성에 따른 양적 규정과 사회적 공동생활의 유지라는 질적 규정에 따라 4개의 상태로 구분하여 집락의 한계성이 고령화율의 상승과 함께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이 멈추지 않으면 집락이 소멸된다는 것이다(山下 祐介 2012).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집락²⁸⁾ 문제에 관한 관점도 역시 주거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의 활력 또는 기본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2)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

(1) 작은 거점의 도입 배경

과소지역 마을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의료시설, 상점 등이 마을로부터 철수하였고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나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의 공조를 통해 공공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왔던 마을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점차 해체되고 있으며, 시·정·촌 합병 등으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분야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과소지역 여건이 점점 열악해져 가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작은 거점’이 2010년 1월 국토심의회 집락과제검토 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 그리고 일본재생계획(2012년 7월 각의결정)의 ‘국토·지역활력전략’에 작은 거점의 형성 촉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국토 및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작은 거점을 만들어야 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 시책의 추진

작은 거점은 집락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의료, 복지, 소풍 등의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기능을 미치노에키(道の駅)²⁹⁾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집약시켜 거점을 조성·운영하는 전략이다. 작은 거점의 역할은 생활서비스의 원스톱 거점, 주민 방범 거점, 지역활동 및 고용촉진 등을 통한 지역 내 다세대 교류 거점 형성, 역외로부터의 새로운 인재수용 거점 등이다.

28) 집락은 주민이 상호 공조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생활공조기능과 농림어업 등 지역의 생활활동을 유지·향상시키는 생산보완기능, 지역고유의 자원과 문화 등 지역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기능을 가진 지역단위이다. 일본의 집락은 대략 우리나라의 행정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9) 일본 국토변에 자리 잡은 휴게소를 ‘미치노에키’라고 한다. 미치노에키에는 특산물 직매장, 문화공간 등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치노에키에 시설을 설치하며 운영은 주로 민간이 담당한다.

살펴보면,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8900만 엔(전년도 5500만 엔), 집락활성화추진사업에 3억 3000만 엔(전년도 2억 9000만 엔)이 책정되어 있다(国土交通省 2014a).

2014년에는 ‘생활권 형성 프로그램 수립 조사’를 실시하여,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분야를 횡단적으로 집합시킨 ‘생활권 형성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구체화하였다³¹⁾. 작은 거점 만들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집락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타 정부부처와 협력하는 등 해당 계획 등에서 언급한 새로운 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지역은 ① 과소지역 등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마을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초등학교구 등, ② 작은 거점 만들기를 위한 합의 형성 플랜 수립에 의욕적이고 2014년에 합의형성 플랜 만들기의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한 지역 등이다.

향후 모니터링 조사지역을 15개소 정도 선정할 예정이며, ① 작은 거점 만들기 검토를 위한 시스템(협의회 등) 구축, ② 취락의 생활서비스, 지역활동 실태 파악, 주민 요구 파악, ③ 작은 거점 만들기 계획(활동내용, 장소·시설 운영 방법, 구체화 방법 등) 검토, ④ 작은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커뮤니티 버스, 과소지역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검토, ⑤ 기타 작은 거점 만들기를 위한 합의 형성 노력 파악, ⑥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실제상황에 대하여 2회 정도 조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니터링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예산 범위에서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며, 상기 ①~⑥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로 1건당 최대 300만 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은 거점의 정책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작은 거점 사례의 수집·정리,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졌고, 2013년~2020년에는 과소지역 마을에서 일상생활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작은 거점 형성을 촉진하고 관계 정부부처 간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활성화 정책과 달리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며 계획을 만드는 단계로서 집락에 작은 거점 형성 추진비를 지급하여 집락의 생활서비스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3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03_hh_000068.html]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이후 집락활성화추진사업을 통해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거점시설을 정비하고 도서관 및 공민관³²⁾ 기능 등을 집약하여 지역활동을 유지·발전 시키며 공공서비스 공급의 원스톱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관련 시책은 집락의 인위적 재배치를 통해 주민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는 공간축소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소지역에서 접근수단 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집락소멸에 따른 환경문제 대처, 주민의 생활감각 유지 등을 지향하는 공간유지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작은 거점의 사례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작은 거점은 이미 훨씬 오랜 전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져 왔던 과소화 대책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이다. 따라서 작은 거점 만들기 정책에서는 기존 우수사례들을 발굴·보급하려는

32) 공민관은 1946년에 문부과학성이 전쟁 후 국가 재건의 거점으로서 지역의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정한 후 교육기본법(1946년), 사회교육법(1949년)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민관의 역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도시민, 농촌주민이 지방개발운동 및 사회교육실시를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것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인보관(隣保館), 노동복지회관 등으로 불린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후 이러한 시설의 명맥을 이어가는 시설 중 공민관이라고 불리는 시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1923년 이와테현 미즈사와정(현재 오슈시)에 고도우 신페이 기념 공민관(後藤新平記念公民館)이 세워지고 1941년에는 이를 공민관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공민관의 유래와 함께 전쟁 후 시민교육시설로서 법제화시킨 공민관이 통합되어 현재의 공민관을 구성하게 되었다. 공민관은 시·정·촌이 유일한 설치 주체인데 공민관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기만 하면 설치하는 가능하다. 공민관은 크게 ① 정기강좌 개설, ② 토론회, 강연회, 강습회, 실습회, 전시회 등 개최, ③ 도서, 기록, 모형, 자료 등 구비 및 그 이용 도모, ④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집회 개최, ⑤ 각종 단체, 기관 등과의 연락, ⑥ 주민 집회 또는 공공이용 등 여섯 개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민관을 평생학습센터, 교류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이 일본 공민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야자키현 홈페이지 [http://www.sun.pref.miyazaki.lg.jp/downloads/public/guidance/01.pdf], 공민관의 존재감 홈페이지 [http://www.pi-lt.com/01/001.html]).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하의 사례가 작은 거점 만들기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기존의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다.

(1) 오카야마현 니이미시 텃세이지역 기라메키 광장 · 텃세이(岡山県 新見市 哲西 地域 きらめき広場 · 哲西)

텃세이정은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2011년 현재 인구 약 3000명, 고령화율 38%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과소지역이다. 니이미시에 합병되기 전 텃세이정에서는 1997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国土交通省 2014a; 深井 正 2010; NPOきらめき広場事務局 2012).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설들은 진료소(66.2%), 청사(34%), 온수풀(24.5%), 보건복지센터(20.2%), 도서관(16.0%), 문화홀(7.9%) 순으로 나타났다. 텃세이정은 이러한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2001년에 ‘개방된 중심집락에 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폭넓은 연령대간 교류 및 지역 내외간 교류 실시’를 목적으로 한 기라메키광장을 조성하였다. 기라메키광장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60회 이상의 설계회의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건설계획을 확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시·정·촌 합병 이전의 대형 하드웨어적 사업이었으나 완성 후에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방침이 변경되었다.

기라메키광장은 지역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역내 공공시설을 집중시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역외 주민과의 교류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에너지 절약형 건물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기라메키광장의 건설 및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텃세이정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사업비 21.7억 엔 중 18.6억 엔을 지방채로 조달하였고, 시설유지비는 연간 3천만 엔 정도 소요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총무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세 개 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가 까다롭고 보조금 집행 후 잔액 처리가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그림 4-3] 기라메키광장·텃세이 전경



출처: NPOきらめき広場事務局(2012, p.7)

[그림 4-4] 기라메키광장·텃세이 시설 배치도



출처: NPOきらめき広場事務局(2012, p.8)

기라메키광장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특정비영리법인³³⁾을 설립하여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지역정보지 발행, 육아살롱 개설, 복지 유상운송, 시민단체 지원 사업과 함께, 시민단체 등과 협동하는 활동으로서 지역포괄케어 추진활동, 지역안전활동, 지역 2대 이벤트 개최, 자연환경보호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업무로는 시립도서관 관리와 육아광장의 운영 등이 있다. 기라메키 광장은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조직이 운영함으로써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틈새 없는 공공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민관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라메키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기초생활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주민 간 교류기회 확대, 작은 거점을 매개로 한 상호공조기능과 자치능력 강화, 공공시설의 집중을 통한 편의성 증대 등이 있다. 텃세이정은 향후 시설과 인접한 곳에 상업시설과 체험관광시설을 겸비한 미치노에키를 조성하여 공공시설과 연계할 계획이다.

(2) 미치노에키 미야마 후레아이광장(道の駅 みやま ふれあい広場)

교토부 난탄시(京都市 南丹市)에 위치한 미야마정(美山町)은 인구 4500명 정도인 지역으로, 미야마정 전국협동조합연합회(JA, Jen-Noh) 점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JA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거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주민 87명의 뜻에 따라 공동출자 점포를 운영하는 유한회사인 ‘네트워크 히라야’를 설립하였고, 미야마정은 주민 지원을 위해 과소채로 재원을 조달하여 JA로부터 점포시설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이후 네트워크 히라야가 ‘후랏토 미야마’³⁴⁾라는 점포를 개점한 후, 2005년에는 농업진흥종합센터, 고령자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을 포함한 ‘미야마 후레아이광장’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미야마 후레아이광장 근처에는 미야마진료소 및 보건복지센터가 인접해 있어 자연스럽게 생활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되었다. 미야마

33)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현재 정회원수는 63명, 협력회원이 336명이다.

34) 후랏토 미야마 홈페이지 [http://www.fmiyama.com/index.html]

후레이아광장은 미야마정 뿐만 아니라 역내·외 교류거점으로도 기능할 정도로 광역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미야마 후레이아광장은 쇼핑, 행정창구, 의료, 보건복지, 금융(ATM), 교류, 관광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로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어 커뮤니티버스와 온디맨드버스를 통해 접근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흑자를 유지해 오며 따라 2010년도 매출 1.6억 엔에 연간 이용자 수가 13만 명에 달한다. 또한 미치노에키 연락 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변의 제설활동에 관한 규범을 만드는 등 주변 환경 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공공시설 활용 사례

(1) 공공시설 다기능화: 시마네현 아마정(鳥根県 海士町)

시마네현의 섬 중 하나인 아마정에서는 섬 내에 공민관,³⁵⁾ 보건복지센터, 여객터미널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을 도서관 분관으로 이용하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공민관에는 중앙도서관을 두어 섬 전체 도서관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09). 특히 공민관은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文部科学省 2009). 주민들은 ‘섬 전체가 도서관(島まるごと図書館)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서관 사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관련 간부, 학교장, 관광협회대표, 마을만들기 그룹, 민생위원장, 공민관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3명의 임시직 직원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5) 공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3년 6월 6일 문부과학성 고지 제 112호)은 공민관의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다(제7조). 구체적으로는 사회교육법 제 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민관장과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hakusho/nc/k19591228001/k19591228001.html])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서배치, 환경정비,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 진행, 도서관 분관 개설, 인재육성, 도서실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과소대책 사업채(소프트웨어 사업)를 통해 400만 엔의 재원과 함께 총 1200만 엔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장서 수 1만 4509권, 6151명 방문, 주민 1명당 대출 도서수 3.3권, 주민 수 대비 장서 수 6.2권 등의 실적을 보였다.

아마정의 공공시설 다기능화 사례는 새로운 모델은 아니지만 인구과소지역에서 하나의 도서관에 서비스를 집중시키기 보다는 주민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시설에 도서를 배치하거나, 도서관 분관을 설치하는 보다 현실적인 도서관 이용모델과 관련된다. 동시에 타 공공시설에 도서관 기능을 부여하는 다기능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재와 자금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 등 외부에서의 인재 유입,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등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5] 아마정의 '섬 전체가 도서관' 지도



출처: 아마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town.amashimane.jp/nkpage/hyozai_editor.php?sid=6]

(2) 공공시설 재활용: 도쿠시마현 아와에정(徳島県 美波町) (주)아와에(あわえ)³⁶⁾
 도쿠시마현 아와에정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와에'는 IT벤처기업 '사이퍼텍'이 지역 기반 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다양한 지역과제를 인식하고 지역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아와에의 대표는 아와에정이 바다, 산, 강이 모두 모여 있어 다양한 생활이 가능하며 풍부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주변지역의 명소들에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이 크다는 점도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아와에정은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이 양호하여 디자인 및 클라우드 관련 기업 등 6개 벤처기업들이 이미 오피스를 개설한 바가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그림 4-6] 주식회사 아와에의 아와에정 사옥



출처: 주식회사 아와에 홈페이지

[http://www.awae.co.jp/img/info/awae_newsrelease_20140922.pdf]

36) 주식회사 아와에 홈페이지 [<http://www.awae.co.jp>]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outsu/shikoku/ict-jirei/chuumoku11.html>]

주식회사 아와에의 주요 사업 분야는 지역 문화자산의 보호계승, 지역산업 보호진흥, 지역커뮤니티 보호진흥 등이다. 첫째, 지역 문화자산의 보호계승 차원에서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풍경 및 자료 등을 잃어버리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 디지털화하고 보존·관리·이용하는 사진스톡 서비스를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 단순히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소유자와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인 조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진과 함께 첨부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사진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등 여러 분야에 사용한다. 둘째, 지역산업의 보호진흥을 위해, 농수산물·특산품의 브랜드화와 패키지 디자인 등을 통해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역내·외 고객을 유치하고, SNS를 이용한 홍보 및 회원모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지역커뮤니티 보호진흥 차원에서, 젊은 층의 유출로 균형이 무너진 인구구조를 적정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위성오피스 및 기업가의 유치, 청년층 정착 지원, 공가 및 폐쇄된 시설 등 유희 부동산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전체를 새로 디자인하고 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 특히 주식회사 아와에는 지역에 이주한 청년들이나 도교권에 거주하면서 1개월 중 반 정도를 아와예정에서 근무하는 두 지역 거주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회사 아와에는 아와예정 소재 공중목욕장을 회사 사옥으로 재활용하였고, 사옥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다용도 공간으로 개방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5) 시사점

첫째,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의 기본기능 유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설공급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감소를 막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감소를 정책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상태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의 공공기능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과거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일변도의 시설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확충하고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 관련 시책의 추진으로 중심지예의 공공시설 집약화, 중심지와 주변 마을 간의 접근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작은 거점 정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에서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기능을 집약한 작은 거점을 미치노에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만드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작은 거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일본 정부는 작은 거점 형성 추진비를 지급하여 집락예의 생활서비스 공급을 도모할 수 있는 노하우 축적과 전파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집락과의 교통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추진 중이다. 2014년 10월 현재, 향토집락생활권에 대한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하여 기초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상태이므로 향후 생활권 관련 시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있어 기초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정부 각 부처는 일관성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민간과 다양한 주체들의 운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은 거점의 사례인 기라메키광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이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특수비영리법인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후레이이광장도 주민이 직접 출자한 유한회사 네트워크를 모체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시설의 다기능화와 관련되는 아마정 ‘섬 전체가 도서관’ 프로젝트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지자체의 업무를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위탁받아 직접 섬 곳곳에 도서관 분관을 개설하거나 도서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공급·활용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상의 사례들은 특수비영리법인, 민간기업, 지역주민, 사업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역외기업 유치를 통하여 공공시설 재활용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인구과소 지역에서 기업 유치는 일본과 한국 모두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지만, 도쿠시마현 아와에정의 주식회사 아와에의 사례는 기업이 인구과소지역에서 공공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식회사 아와에는 지역의 공중목욕장을 개조하여 회사사옥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도 다용도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도를 높였다. 또한 주식회사 아와에의 주요 사업 분야가 지역자원 보전·활용 및 사업화, 지역커뮤니티 유지·발전을 위한 귀촌 청년 지원 등인데, 주식회사 아와에 사례는 한국의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등에게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hapter V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 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5장은 제3장의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으로부터 도출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제4장의 독일 및 일본의 관련 제도와 사례 고찰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종합하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결과는 이 연구 결론부의 정책제언과 연결된다.

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공공시설이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며 중심지도 계층을 가지므로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기준은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로 구성되는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이용을 위해 중심지로 통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균등한 생활여건, 기초서비스, 주민의 생존배려를 보장하기 위해 주발전계획(또는 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를 설정하는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 주발전계획에서는 중심지의 요건(인구, 일자리 등), 중심지 및 배후지의 최소인구기준, 중심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시설물 카탈로그)을 제시하며, 특히 배후지 주민의 중심지로의 접근성(중심지 도달 시간 또는 거리) 기준도 제시한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에 개정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 8개 부문 31개 항목(2013년 9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변경)별로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목표치(2014년도 목표치)를 설정해오고 있다. 해당 기준과 목표치가 이 연구에서 정의한 인구과소지역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차해 있는 특수한 지역여건에 맞춰 지역화된 기준과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중심지(예: 읍·면 소재지)에 주민이용 공공시설이 주로 입지한다는 점,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중심지로 통행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현행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자동차로 ○○분 이내에 ○○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지역 보급률이 ○○%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주민의 중심지 통행에 따른 중심지와 배후지(주변 마을) 간의 기능적 연계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생활권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독일의 주발전계획에서와 같이 광역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계층별로 중심지를 설정하고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배후지를 설정하는 공간계획을 도입하되, 현행 국토계획체계의 틀 내에서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을 개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종합계획에서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하고, 독일의 시설물 카탈로그에서처럼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목록, 즉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후지 주민이 중심지로의 도달에 소요되는 시간(또는 거리)에 관한 접근성 기준을 광역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춰 도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 기준은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로 구성되는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이용을 위해 중심지로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몇 %의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몇 분 이내로 중심지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광역지자체가 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생활권을 광역적 시각에서 폭넓게 고려하여 위계별로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심지와 그것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배후지 각각을 설정하는 공간계획을 현행 국토계획체계에 도입하더라도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용하

는 공간단위는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단위이어야 한다. 이것은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행정구역 면적을 감안했을 때, 시·군을 공간단위로 사용하게 되면 군청소재지, 읍소재지, 면소재지 등 저차 또는 중차 중심지를 간과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광역단위 계획을 통해 중심지체계를 설정하더라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거점, 해당 거점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해당 거점에서의 도달 거리 및 시간에 관한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여 중심지로서 더 이상 설정할 수 없을 경우, 독일의 게마인데 연합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지 설정에서처럼, 기능분담을 전제로 인근의 중심지와 연계하여 중심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독일의 주민 생존배려를 위한 중심지 설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 공간계획체계에 도입한다는 것은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간의 공간적 절충이라는 틀 내에서 인구과소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공공시설 공급을 계획을 통해 규정함을 의미한다.

2.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과소지역내 기초적인 정주공간단위라고 볼 수 있는 마을(면소재지 마을 포함)로부터 군청소재지(또는 인근 도시)까지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과소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중심지인 군청소재 읍으로 통행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면소재지 중심기능이 쇠퇴할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면소재지의 공공시설 설치가 용이하지도 않다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과소지역에서는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식료품 점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만 식료품을 구득할 수밖에 없는 없지만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노인이 ‘쇼핑난민’ 또는 ‘쇼핑약자’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김응규 2013; 한주성 2014).³⁷⁾ 정부, 지자체, NPO가 쇼핑난민인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을공동체 버스, 합승택시 운영 등 쇼핑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응규 2013).³⁸⁾

마을에서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서 서천군의 희망택시와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구과소지역을 비롯한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³⁹⁾ 해당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공모 절차를 거쳐 총 13개 시·군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사업을 선정하였고,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2014b). 게다가 현행 지역개발제도의 국비지원 사업범위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환승시설, 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차량구입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게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마을로부터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일본의 작은 거점 조성·운영과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참고하여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공간단위로 설정하여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작은 거점을 미치노에키(국도변 휴게소)와 같은 접근성이 양호한

37) 쇼핑난민 또는 쇼핑약자는 신선식품 등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인 ‘식품사막’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데, 인구감소로 인해 식품점포의 폐업이 속출하고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쇼핑난민 또는 쇼핑약자가 늘어나고 있다(김응규 2013).

38) 일본 정부, 지자체, NPO는 쇼핑난민인 고령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마을공동체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쇼핑난민 거주지 인근에 빈 점포를 재활용하여 점포를 개점하거나, 또는 쇼핑난민의 집까지 식료품을 배달하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응규 2013).

39)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지점에 만들어 의료, 복지, 쇼핑 등의 일상생활 관련 시설을 집적시키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통해 작은 거점과 주변의 집락을 묶어 하나의 향토집락 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과소지역내 주요 중심지가 군청소재 읍인 경우가 많은데, 군청소재 읍이 대체로 고속도로 IC와 근접해 있거나 간선도로인 국도 또는 지방도가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마을로부터 군청소재 읍과 같은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에서 추진 중인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공간계획, 예를 들어 현행 국토계획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국토기본법’의 시·군 종합계획,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에 의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해당 공간계획에서 중심지와 주변마을 간의 교통연계 대책 또는 주변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복수의 시·군으로 구성되는 현행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 시·군 간의 연계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을 참고하더라도 일본과의 차별성,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의 평균 면적 또는 평균 인구규모, 인구감소율, 고령화의 수준 및 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다기능화와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지방사무로 전환된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다기능화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과소지역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지역커뮤니티의 다수 구성원인 고령자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관리·운영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과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마을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인 경로당에 그룹홈 및 기타 생활시설을 지자체가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지만, 지자체가 소요재원을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마을수준 공공시설 관리·운영 주체가 미흡하고 역량도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근거한 일본 오카야마현 니이미시의 작은 거점인 기라메키광장·텍세이 조성·운영 사례, 교토부 미야마정의 작은 거점인 미야마 후레이이 광장 조성·운영 사례, 시마네현 아마정의 공민관 등 공공시설 다기능화를 통한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사례 등을 참고할 만하다. 첫째, 기라메키광장·텍세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수비영리법인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둘째, 미야마 후레이이광장도 주민이 직접 출자한 유한회사 네트워크를 모체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셋째,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한 아마정의 ‘섬 전체가 도서관’ 프로젝트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지자체의 업무를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위탁받아 시행하였다.

한편 과소지역내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군청소재지 등에 입지한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축구장 등 공공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활성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파시킬 필요도 있다.

앞서 보았듯이, 지역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역외기업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와에가 공중목욕장을 재활용하여 회사 사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다용도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도쿠시마현 아와예정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식회사 아와에는 ICT 벤처기업인 사이퍼텍이 아와에정에 설립하였는데, ICT를 사용하여 각종 지역재생 지원 사업(문화자원 보호·계승, 지역산업 보호·진흥, 지역커뮤니티 보호·진흥 등)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아마정의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사례도 공민관 등 지역내 기존 공공시설에 도서관 또는 분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도서관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다기능화를 통해 기존의 공공시설의 이용도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정부가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다기능화를 위한 자원조달 및 주민참여,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 또는 다른 용도로의 재활용 등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대응사례를 수집하여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

chapter VI

결론 및 향후과제

결론 및 향후과제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부로서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였고, 특히 해당 내용 중 제5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성과를 기술함과 동시에, 이 연구가 갖는 한계를 향후과제로서 제시하였다.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먼저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고 요건을 설정하였는데, 전국 160개 시·군 중 총 63개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 결과, 과소지역 시·군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일자리(근무 취업인구)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낮다.

둘째,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 또는 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과소지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대상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을 법령, 예산회계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인구과소지역 중 선정된 사례지역 5개 군(괴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을 대상으로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이용실태를 고찰하였고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시설 공급주체 또는 공급가능 주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파악하였다. 게다가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사례지역 지자체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실태 고찰 결과와 관련하여 중심지 체계 변화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는 사례지역내 읍·면별로 인구수와 비중의 변화, 중심지 기능에 밀접한 산업부문인 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와 그 비중의 변화를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출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① 과소지역 주민의 군청소재 읍으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하고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차원에서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설치·확충이 어렵다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마을로부터 지역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②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예: 경로당)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관리·운영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③ 과소지역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면소재지에 보건 의료, 건강관리 등 주민복지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하는 것이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공급주체의 입장에서도 적절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④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넷째, 인구감소 또는 과소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주정부가 균등한 생활여건, 기초서비스, 주민의 생존배려를 보장하기 위해 주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배후지를 설정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며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인 작은 거점 만들기 및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관한 시책, 그리고 주민참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작은 거점의 조성·운영과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사례, 공익성을 갖춘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다섯째,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으로부터 도출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독일 및 일본의 관련 제도와 사례 고찰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종합하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관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다기능화와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 정책제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정리하였다.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설정

제5장에서 제시했듯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몇 명당 몇 개소’, ‘군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의 이용가능 비율 몇 %’, ‘읍·면당(시·군당) 몇 개소’, 또는 ‘월(주, 일) 몇 회’라는 식의 기준보다는 공간적 측면, 특히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기능적 연계뿐만 아니라 중심지 및 주변마을이 묶이는 생활권도 반영하는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을 정부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

먼저 공공시설이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가지며 중심지도 계층을 가지므로, 독일의 주발전계획에서와 같이,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되는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최소한 몇 %가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몇 분 이내로 시설 이용을 위해 중심지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성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기준은 정부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되 지역별로 처한 여건에 맞춰 조정하여 지역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화된 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과소지역 각각이 노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정부가 기준 달성 성과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

□ 중심지-배후지, 중심지-주변마을을 설정하는 공간계획 마련

앞서 논의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독일에서와 같이 광역단위의 계획 수립을 통해 계층별 중심지-배후지를 설정하거나, 일본의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과 같은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계획

수립을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심지-배후지를 단위로, 또는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과소지역 지원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국토계획체계 내에서 국토기본법의 도종합계획과 시·군 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에 의해 중심지-배후지를 설정하거나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시설물 카탈로그와 같은 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한 시설 목록,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도 해당 법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정부차원에서의 읍·면·동 또는 그 이하 공간단위의 기초 데이터 축적

정부차원에서 읍·면·동 또는 그 이하 공간단위의 기초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앞서 제시한 중심지-배후지 설정, 중심지-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 설정,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한 시설,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 등) 설정 및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시·군 단위의 과소지역 정의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게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할 수 있어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과소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측과 대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소지역 지자체가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읍·면·동 또는 그 이하 공간단위의 기초 데이터가 해당 공간단위별 인구,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시설이용 실태(통행패턴, 통행의 주요 목적지, 통행수단, 소요시간 등), 공공시설 공급실태(규모, 세부 시설내역, 이용료, 이용 프로그램, 관리·운영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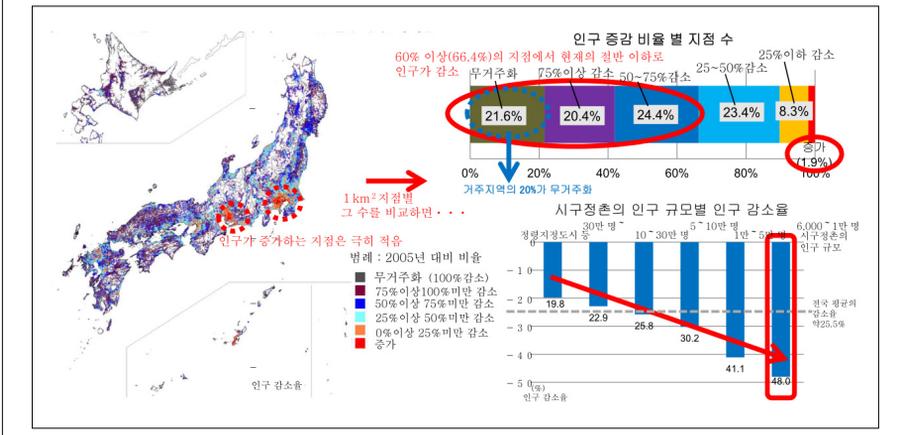
□ 지역의 과소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과소화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예측과 그에 따른 대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4년에 발간한 ‘신 국토 그랜드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2005년 대비 2050년의 인구증감 상황 전망(国土交通省 2014b)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신 국토 그랜드디자인(2014년)'에서의 2050년 인구감소 및 무거주 지역 예측

- 2050년까지 일본 국토에서 인구 저밀화 및 지역적 편재가 동시에 진행될 것임
 - 일본 전국을 1km² 메쉬로 나뉘보면, 전국의 인구감소율(25.5%)을 상회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즉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메쉬가 증가할 것이고, 특히 인구가 절반 이하가 되는 지점이 현 거주지역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임
- 시·구·정·촌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아질 것임
 - 2050년 일본 국토에서 21.6%가 무거주화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6.4% 이상의 지점에서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시·구·정·촌의 인구규모별 인구감소율을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시·구·정·촌일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아져, 인구 6000~1만 명인 경우 전국의 인구감소율인 25.5%를 초과하는 48.0%의 감소율을 보일 것임

[그림 6-1] 일본의 2005년 대비 2050년 인구증감 상황



[표 6-1] 20년 후의 마을 모습 전망: 사례지역 설문조사

	상위그룹 + 하위그룹	상위그룹	하위그룹
마을의 주민 수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23	12	11
마을의 주민 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42	19	23
마을의 주민 수가 감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절반 수준 이상은 될 것이다	64	32	32
마을의 주민 수가 감소할 것이고, 현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54	30	24
마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4	2	2
총계	187	95	92

한편 이 연구의 사례지역 설문조사에서 현재 거주하는 마을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전체 설문응답자(187명)의 63.1%(118명)가 ‘마을 주민의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또는 현재의 절반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6-1] 참조). 하위그룹 응답자의 60.9%(92명 중 58명), 상위그룹 응답자의 65.3%(95명 중 62명)가 마을 주민의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또는 절반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마을수준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재원 확충

과소지역 고령화 급진전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마을수준의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중 핵심인 경로당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특화된 별도의 재원을 지자체가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지자체가 타 용도로 교부받은 국비를 해당 용도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현지면담 결과, 지자체가 경로당을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 광특회계 국비보조 지역개발 사업의 예산 일부를 해당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 경로당(또는 경로당으로 전환된 마을회관)의 개보수에 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사례 수집·전파

정부가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 또는 타 용도로의 재활용, 시설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지역커뮤니티 참여에 근거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지자체 또는 주민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소지역내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1) 연구의 성과

첫째, 이 연구에서 수행한 인구과소지역 정의, 현황 고찰은 우리나라 낙후지역 정의 및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해오고 있는데, 성장촉진지역이 법적 정의로 보면 낙후지역 또는 인구과소지역에 가깝지만, 일부 지역(특수상황지역 일부)에는 지정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의 인구과소지역은 그러한 한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및 주민복지의 관점에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낙후지역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간 외생적 또는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대체로 역외로부터의 산업·인구 유치, 관광객·소비자 확보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중심지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의 공급·활용 방안을 중심지(군청소재지)와 배후지(주변마을)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민생활에 부합하게 낙후지역 정책의 내실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방안이 군청소재 읍과 같은 과소지역내 주요 중심지와 주변마을을 대중교통 서비스(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를 통해 연계시키는 하나의 생활권 형성 또는 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생활권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되었거나 감소 중이며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과소지역의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군청소재 읍 등 지역내 중심지에 입지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서는 중심지와 주변마을 간의 교통연계 또는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역생활권은 중심시·군과 주변시·군 간의 연계협력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구감소의 심화에 따른 한계마을의 증가 등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정책에 관한 미래지향적 논의의 장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과제

우선 이 연구는 설문조사, 현지면담, 사례고찰을 통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논의하였고 그에 대해 방향성 위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해당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은 향후 연구과제로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모색과정은 과소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재정력, 노년층 비율 및 그 변화, 20~30대 비율 및 그 변화에 관한 지표를 사용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읍·면·동 등 보다 작은 공간단위를 사용하여 과소지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소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도 필요하다. 과소지역을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인근, 산간, 도서 등 입지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시킨 후 유형별로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논의를 시·군내 존재할 수 있는 격차를 감안하여 읍·면·동 또는 그 이하 공간단위에서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이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병·의원, 약국, 유통판매시설 등), 그리고 선형의 기반시설(전기, 유선전화, 상·하수도, 가스, 도로 등)을 향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이 연구는 민간이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주민의 시설별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는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체로 공공시설을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서 주로 중심지(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중심마을 등)에 입지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시설로 한정하였다. 또한 중심지에만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서비스 공급을 위해 개별 이용자에게 또는 그 부근까지

설치되어 주민이 중심지로의 통행하여 이용하는 시설도 아닌, 전기, 유선전화, 상하수도, 가스, 도로 등도 이 연구의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향후에는 조사·분석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 결과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인구과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시설이용 실태,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조사도 요구된다. 또한 조사대상도 주민대표인 이장이나 공공시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넓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래할 인구감소시대에서 주요한 문제가 될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 대책을 장기적 차원에서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활용, 매각, 철거 등 다양하게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관련 국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전파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4.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발표자료 2014년 3월 12일).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2013.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2013년 4월 30일).
- 김병문. 1998. 인구과소지역에 발생한 폐교의 재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의 경우. 「관광개발논총」 9: pp.7-44.
- 김응규. 2013. 일본의 '쇼핑난민' 현황과 대응 동향. 「NHERI 주간 브리프」 (2013년 7월 1일): pp.8-10.
- 김정연·이상준. 2013.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정책의 방향. 「제12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자료집(2013년 12월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97-224.
- 김정연·이상준. 2014. 농촌중심지로서 소도시의 재생방향과 추진과제. 「국토연구원·시도연구원 도시재생정책 세미나(2014년 1월)」: pp.197-224.
- 김주원. 2006. 일본 닷토리현의 인구과소화지역 대응사례 - 지역보건의료체계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 295: pp.99-106.
- 김홍규·김규원. 2011.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효정. 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2014a.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설명회' 자료(2014년 2월 26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2014b. '2014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대상지 13개 시·군 선정'(2014년 4월 29일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료.
- 박상원·채성주. 2011.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2(1): pp.115-135.
- 박상필. 2011.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의 조건. 「BDI 포커스」제127호(2011년 11월 14일).
- 변필성·윤영모. 2011.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국토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보건복지부.
- 부혜진. 2011. 일본 과소산촌에서의 지역자치조직 재편과 주민자치 - 히로시마현 아키타키타시 이케쿠와지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5): pp.608-625.
- 송미령 외. 2013.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기욱. 1999. 중산간지역 노인복지 활성화의 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 福岡縣 失部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 2(1): pp.195-215.
- 이동희. 2006. 고령자 생활지원하우스 이용특성의 지역별 상이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오이타현 과소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2(12): pp.133-142.
- 이원호 외. 2009.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개선방안 연구」(국토해양부 수탁과제).
- 이중섭·송용호. 201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임상연·변필성. 2014.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 작은 거점 만들기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2014년 12월 8일).
- 채성주. 2010. 일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방침과 자립촉진계획. 「충북 Focus」 제17호 (2010년 9월 17일).

- 충남발전연구원. 2014. 인구감소시대의 공공서비스 효율화 방안. 「CDI 세미나 2014-15」 (2014년 3월 6일).
- 하혜영. 2014.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논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856호. 국회 예산정책처.
- 한주성. 2014.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의 소매판매 활동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17(3): pp.538-553.
- BBSR. 2012. *Raumordnungsbericht 2011*. Bonn.
- Blotevogel, H. H. 2005. Zentrale Orte. in ARL(Hrsg.), *Handwörterbuch der Raumordnung*. Hannover. S.1307-1315.
- BMVBS und BBR. 2007. Strategien der Landes- und Regionalplanung zur Bewältigung des demografischen Wandels. *Werkstatt Praxis Heft 49*.
- Dax, Thomas. 2006. Delivering services to sparsely populated regions. Investment Priorities for Rural Development. OECD/Scottish Executive Conference. The Hub, Edinburgh, Scotland, October 19-20. 2006.
- Lonsdale, Richard E. & György Enyedi (eds). 1984. *Rural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Comparisons*. Westview Press: Boulder, USA.
-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2013. *Landesentwicklungsplan 2013*. S. 29-37.
-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Innern. 2011. *Landesentwicklungsbericht*. S.35-38.
- Spangenberg, Martin. Providing Public Services to Rural Areas in Germany in Light of Changing Demographic Conditions[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BBSR) within the Federal Office for Building and Regional Planning(BBR), Bonn, Germany].(연도 미상)
- NPOきらめき広場事務局. 2012. 「公共事業を通じて住民意識が変わった!」.
- 国土交通省. 2002. 「平成12年度 集落の衰退による地域の社会基盤等への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国土交通省. 2005. 「被災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中山間地域まちづくり推進調査」.
- 国土交通省. 2007. 「国土形成計画策定のための集落の状況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国土交通省. 2012. 「日常生活サービス機能が集約した「小さな拠点」事例集」.
- 国土交通省. 2013. 「平成26年度国土政策局関係予算概算要求概要」.
- 国土交通省. 2014a. 「集落地域の大きな安心と希望をつなぐ「小さな拠点」づくりガイドブック」.
- 国土交通省. 2014b. 「新たな「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 日本.
- 文部科学省. 2009. 「地域の図書館サービス充実支援事業」に関する調査結果報告書」.
- 民間主体のまちづくりによる地方都市活性化研究会. 2007. 「地方都市における官民連携によるまちづくりの推進方策の検討中間とりまとめ」.
- 山下 祐介. 2012. 「限界集落の真実」. 筑摩書房.
- 三原市. 2010. 「三原市過疎地域自立促進計画書」.
- 柴田 裕一. 2013. 「岐阜県の過疎の状況と対策」.
- 深井 正. 2010. “「小さな拠点」きらめき広場・哲西の取組”. 「人と国土21」. 国土計画協会.
- 畑本 裕介. 2013. “地域空間の縮小か維持か：地方都市の空間生産についての論点整理と展望”, 「山梨県立大学人間福祉学部紀要」 8号.
- 中国経済連合会・日本政策投資銀行 中国支店. 2011. 「中山間地域において低下懸念のある公共サービスの維持・向上に向けた官民協働による取組方策調査報告書」.
- 総務省. 2001. 「平成12年度 過疎地域等における集落再編成の新たなあり方に関する調査報告書」.
- 総務省. 2011a. 「過疎対策の現状と課題」.
- 総務省. 2011b. 「過疎対策におけるソフト事業に関する調査報告書」.
- 総務省. 2013a. 「過疎債を活用したソフト事業例」.
- 総務省. 2013b. 「改正過疎法の評価及び今後の過疎対策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

総務省. 2014a. 「過疎対策の沿革」.

総務省. 2014b. 「過疎地域等における集落対策に関する総務省の取組」.

공민관의 존재감 홈페이지 [<http://www.pi-lt.com/01/001.html>]

미야자키현 홈페이지 [<http://www.sun.pref.miyazaki.lg.jp>]

아마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town.ama.shimane.jp>]

이가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hanzou.or.jp/>]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주식회사 아와에 홈페이지 [<http://www.awae.co.jp>]

후랏토 미야마 홈페이지 [<http://www.fmiyama.com/index.html>]

SUMMARY

Keywords: Depopulated Area, Public Facility Supply

This study examines real pictures of the supply and use of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areas (hereafter, DAs) of Korea. And the study finds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within DAs in terms of suppliers and users. Additionall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ounteractive schemes and related policy measures to tackle the problems. The discussion takes efficiency in the expenditure of public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welfare for the residents of DAs into consideration.

First, we conceptually define and spatially delimit DAs in Korea. Compared to non-DAs, almost all of the DAs have witnessed the decrease and rapid aging of population. Furthermore, our research finds that each DA is generally faced with low fiscal capacity, employment decrease, high percentage of old-aged residents, and relatively low-level income.

Second, this work explores the DAs' public facilit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ulture, sports, the leisure for senior citizens, and public health-care, by comparing the DA's related conditions with those of non-DAs or of all the local jurisdictions (cities, counties, and wards). In addition, the exploration encompasses trends in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s policies, laws/ordinances, and budget guideline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The third part of this study performs case studies of 5 DAs (Goe-san, Bong-hwa, Seo-cheon, Soon-chang, and Choeng-song Counties) by employing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The case studies deal with patterns in the residents' use of public facilities in the 5 DAs. Significantly, challenges confronting public facility supply in such areas are grasped: ①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to core towns

(e.g. towns where local government offices are located) from peripheral villages ② functional better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providing basic services to residents, especially senior citizens, at the level of a village, ③ discussion of issues (e.g. efficiency vs. welfare) concerning the public facility supply for residents' welfare in the DAs' semi-core villages which have witnessed decline in centripetal functions, and ④ counterbalancing actions to unused or infrequently used public facilities within DAs.

The fourth part of our work discusses the German and Japanese experience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in the middle of depopulation in order to secur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The discussion of the German experiences focuses on 'Landesentwicklungsplan'(statewide development plan) which each state government legally establishes for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ving conditions across Germany. The plan delimits cores and their functionally linked peripheral areas within boundary of each state, catalogues public facilities that can be used at every rank of core, and establishes the standard of accessibility to cores. And our discussion of the Japanese experiences in tackling depopulation-related problems focuses on a small-hub and the village-based living area which has not only a small-hub but the peripheral villages with public transport linkages to the hub. Moreover, we look into the relevant cases in the Japanese depopulated areas. Such cases include the public facilities' functional diversification which is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recycling use of a facility by an ex-local company pursuing public benefits.

Finally, we present the counteractive schemes and related policy measures to tackle the challenges facing public facility supply in depopulated areas. The schemes and measures include ① set-up of regionalized/localized minimum standards for public facility supply, ②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to core towns having centripetal functions from peripheral villages, ③ functional betterment and expansion of the public facilities providing basic services to residents, and ④ revitalization/recycle of unused or rarely used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conditions, etc.

부록

1. 성장촉진지역, 신활력지역,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

성장촉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제2조 제6호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⁴⁰⁾”이라고 정의한다.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2009년에 최초로 ‘성장촉진지역’이 지정되었고, 지정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표 1]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지정지표별로 각 시·군의 지표 값을 산출한 후 ① 지표 값 표준화, ②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군별 낙후도 종합점수 산출, ③ 낙후도 종합점수에 따른 순위화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특수상황 지역(접경지역) 6개 군을 제외하고 낙후도 상위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40)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균특법 제2조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행정시 포함)와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부표 1]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2009년)

지정지표	내역
① 인구밀도	2008년 인구를 시·군의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눔으로써 산출
② 연평균 인구변화율	1998년~2008년의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계산
③ 소득세할주민세	2005~2007년의 소득세할 주민세(現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값으로 산출
④ 재정력 지수	2006~2008년의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값으로 계산
⑤ 지역접근성	시·군과 기준이 되는 광역대도시 각각의 인구를 곱한 값을 해당 시·군과 광역대도시 간의 이격거리에 교통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눔으로써 산출 ※ 이격거리와 교통소요시간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www.roadplus.co.kr)로부터 구득

출처: 이원호 외(2009, p.69)

‘신활력지역’은 2004년 당시 균특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지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4개 지정지표를 사용하여 2004년 현재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전도가 하위 30%이내에 해당되는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제1기)으로 지정하였다.

[부표 2] 신활력지역(제1기) 지정지표(2004년)

지표	내역
① 인구밀도	2003년도 인구 ÷ 행정구역 면적 ※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② 연평균 인구변화율	1970~2000년의 연평균 인구변화율 ※ 인구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상주인구임
③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2001~2003년의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3개년 평균
④ 재정력 지수	2002~2004년의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

출처: 이원호 외(2009, p.30)

2007년에 70개의 제2기 신활력지역을 지정하였는데, 제1기 신활력지역 중 성과가 미흡한 10개 시·군을 제외하였으며 낙후도가 개선된 4개 지역 중 3개 지역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13개 시·군 대신에 낙후도 차순위 13개 시·군을 제2기 신활력지역에 포함시켰다(이원호 외, 2009).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시·군에 지정되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중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임과 동시에, ②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중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시·군에 지정되었다.

[부표 3]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지표

지표	내역
① 인구밀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지방자치단체 주요통계에 따라 최근 연도 인구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 연평균 인구변화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지방자치단체 주요통계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변화율
③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최근 3년간 부과세액의 총합으로 산정
④ 재정력 지수	안전행정부 재정고(lofin.mopas.go.kr)가 제공하는 시·군별 재정력지수의 최근 3년간 평균값
⑤ 노령화 지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이 제공하는 해당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⑥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통계청이 작성한 시·군 주요통계(최근 자료)의 총사업체 종사자수를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로 나눈 비율
⑦ 도로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이 제공하는 통계와 해당 시·군의 법정도로 연장을 인구나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비율 ※ 도로율 = $\frac{\text{기준연도 법정도로 연장}}{\sqrt{\text{기준연도 인구} \times \text{행정구역면적}}} \times 100$
⑧ 지역접근성	광역 대도시와 해당 시·군 간의 인구를 곱한 값을 양 지점간 이적거리와 접근에 필요한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 ※ 지역접근성 = (기준 광역 대도시 인구 × 해당 시·군 인구) / (두 지점간 거리 × 두 지점간 소요시간) ※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제공하는 통계, 이적거리와 접근에 필요한 시간은 한국도로공사교통정보(www.roadplus.co.kr)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각각 사용함

출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2013)

상대적 개념의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또는 신활력지역(제1기)이 전국 시·군 중에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으로 지정규모를 한정된 반면에,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는 해당 시·군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되는 방식이다.

2. 시·군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2000년과 2010년을 대상으로 시·군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부표 4]와 같다.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에 격차가 나타난다. 그에 따라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과 주민등록인구 변화율(2000~2010년, 연평균) 간의 격차가 큰 시·군도 적지 않다.

[부표 4]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2000년과 2010년

시·군	상주인구 (2000년) [A]	상주인구 (2010년) [B]	주민등록 인구 (2000년) [C]	주민등록 인구 (2010년) [D]	[C/A]	[D/B]	상주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E]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F]	[F-E]
전국 시·군 평균	151,613	166,523	157,194	173,544	106.9%	109.5%	-0.31%	-0.08%	0.23%p
가평군	52,147	50,879	56,111	58,890	107.6%	115.7%	-0.25%	0.48%	0.73%p
강릉시	228,232	218,471	233,121	218,503	102.1%	100.0%	-0.44%	-0.65%	-0.21%p
강진군	44,055	34,204	49,254	41,624	111.8%	121.7%	-2.50%	-1.67%	0.83%p
강화군	60,368	56,633	67,100	67,104	111.2%	118.5%	-0.64%	0.00%	0.64%p
거제시	168,022	231,271	174,981	228,355	104.1%	98.7%	3.25%	2.70%	-0.55%p
거창군	65,963	57,323	69,744	63,421	105.7%	110.6%	-1.39%	-0.95%	0.45%p
경산시	228,206	266,036	213,821	240,708	93.7%	90.5%	1.55%	1.19%	-0.35%p
경주시	275,842	256,150	290,149	267,098	105.2%	104.3%	-0.74%	-0.82%	-0.09%p
계룡시	27,122	41,528	27,505	43,088	101.4%	103.8%	4.35%	4.59%	0.24%p
고령군	35,517	31,817	37,587	34,678	105.8%	109.0%	-1.09%	-0.80%	0.29%p
고성군(강원)	32,245	26,753	35,391	30,112	109.8%	112.6%	-1.85%	-1.60%	0.25%p
고성군(경남)	55,808	51,703	63,423	57,231	113.6%	110.7%	-0.76%	-1.02%	-0.26%p
고양시	763,971	905,076	797,597	950,115	104.4%	105.0%	1.71%	1.77%	0.06%p
고창군	64,936	53,333	74,104	60,861	114.1%	114.1%	-1.95%	-1.95%	0.00%p
고흥군	87,738	63,392	100,989	73,924	115.1%	116.6%	-3.20%	-3.07%	0.13%p
곡성군	38,042	27,272	41,149	31,886	108.2%	116.9%	-3.27%	-2.52%	0.76%p
공주시	130,376	122,153	135,589	124,930	104.0%	102.3%	-0.65%	-0.82%	-0.17%p
광주시	125,943	228,747	139,339	249,789	110.6%	109.2%	6.15%	6.01%	-0.14%p
괴산군	38,396	31,392	44,380	36,827	115.6%	117.3%	-1.99%	-1.85%	0.15%p
구례군	28,705	22,419	33,588	27,375	117.0%	122.1%	-2.44%	-2.02%	0.42%p
구리시	160,839	185,550	169,417	196,398	105.3%	105.8%	1.44%	1.49%	0.05%p
구미시	341,550	402,607	336,914	404,920	98.6%	100.6%	1.66%	1.86%	0.20%p
군산시	272,715	260,546	277,491	272,601	101.8%	104.6%	-0.46%	-0.18%	0.28%p
군위군	28,747	19,993	32,637	24,736	113.5%	123.7%	-3.57%	-2.73%	0.83%p
군포시	263,760	278,083	270,151	287,833	102.4%	103.5%	0.53%	0.64%	0.11%p
금산군	57,929	52,952	64,515	56,555	111.4%	106.8%	-0.89%	-1.31%	-0.41%p
기장군	68,095	93,783	74,324	102,557	109.1%	109.4%	3.25%	3.27%	0.02%p
김제시	102,589	83,302	115,865	94,346	112.9%	113.3%	-2.06%	-2.03%	0.03%p
김천시	147,855	127,889	149,864	136,136	101.4%	106.4%	-1.44%	-0.96%	0.48%p

(계속)

시·군	상주인구 (2000년) [A]	상주인구 (2010년) [B]	주민등록 인구 (2000년) [C]	주민등록 인구 (2010년) [D]	[C/A]	[D/B]	상주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E]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F]	[F-E]
김포시	150,194	224,350	162,997	238,339	108.5%	106.2%	4.09%	3.87%	-0.22%p
김해시	331,979	494,510	343,617	503,348	103.5%	101.8%	4.07%	3.89%	-0.17%p
나주시	99,533	78,679	108,459	90,118	109.0%	114.5%	-2.32%	-1.84%	0.49%p
남양주시	340,932	529,898	358,396	564,141	105.1%	106.5%	4.51%	4.64%	0.13%p
남원시	94,926	78,770	103,571	87,775	109.1%	111.4%	-1.85%	-1.64%	0.21%p
남해군	53,144	43,919	59,762	49,328	112.5%	112.3%	-1.89%	-1.90%	-0.01%p
논산시	137,452	119,222	142,390	127,507	103.6%	106.9%	-1.41%	-1.10%	0.31%p
단양군	36,094	28,165	40,000	31,817	110.8%	113.0%	-2.45%	-2.26%	0.19%p
달성군	148,552	169,227	154,281	178,899	103.9%	105.7%	1.31%	1.49%	0.18%p
담양군	54,597	41,027	55,089	47,808	100.9%	116.5%	-2.82%	-1.41%	1.41%p
당진시	117,652	137,006	122,495	144,903	104.1%	105.8%	1.53%	1.69%	0.16%p
동두천시	73,502	91,828	75,529	95,653	102.8%	104.2%	2.25%	2.39%	0.14%p
동해시	96,679	90,574	103,654	95,236	107.2%	105.1%	-0.65%	-0.84%	-0.19%p
목포시	250,480	249,960	245,492	245,422	98.0%	98.2%	-0.02%	0.00%	0.02%p
무안군	62,352	68,462	70,212	74,475	112.6%	108.8%	0.94%	0.59%	-0.35%p
무주군	27,462	21,827	29,207	25,578	106.4%	117.2%	-2.27%	-1.32%	0.95%p
문경시	90,846	69,021	89,900	77,391	99.0%	112.1%	-2.71%	-1.49%	1.22%p
밀양시	115,962	99,128	124,574	110,479	107.4%	111.5%	-1.56%	-1.19%	0.36%p
보령시	109,535	97,770	118,504	107,346	108.2%	109.8%	-1.13%	-0.98%	0.15%p
보성군	55,924	40,166	61,329	48,792	109.7%	121.5%	-3.26%	-2.26%	0.99%p
보은군	38,332	30,509	43,245	34,956	112.8%	114.6%	-2.26%	-2.11%	0.15%p
봉화군	38,238	31,242	42,865	34,567	112.1%	110.6%	-2.00%	-2.13%	-0.13%p
부안군	64,691	50,814	74,716	60,138	115.5%	118.3%	-2.39%	-2.15%	0.24%p
부여군	83,687	67,584	92,667	75,029	110.7%	111.0%	-2.11%	-2.09%	0.03%p
부천시	761,389	853,039	775,815	875,204	101.9%	102.6%	1.14%	1.21%	0.07%p
사천시	111,078	107,524	119,326	114,148	107.4%	106.2%	-0.32%	-0.44%	-0.12%p
산청군	38,190	31,898	40,997	35,591	107.4%	111.6%	-1.78%	-1.40%	0.38%p
삼척시	75,647	67,454	82,177	72,046	108.6%	106.8%	-1.14%	-1.31%	-0.17%p
상주시	116,493	98,103	124,674	105,607	107.0%	107.6%	-1.70%	-1.65%	0.06%p
서귀포시	145,896	130,713	163,606	153,716	112.1%	117.6%	-1.09%	-0.62%	0.47%p
서산시	143,154	156,843	150,028	160,468	104.8%	102.3%	0.92%	0.67%	-0.24%p
서천군	66,929	53,914	75,259	60,085	112.4%	111.4%	-2.14%	-2.23%	-0.09%p
성남시	914,590	949,964	924,390	980,190	101.1%	103.2%	0.38%	0.59%	0.21%p
성주군	47,134	36,859	51,104	45,289	108.4%	122.9%	-2.43%	-1.20%	1.23%p
속초시	87,985	80,791	90,032	84,302	102.3%	104.3%	-0.85%	-0.66%	0.19%p
수원시	946,704	1,071,913	948,065	1,077,535	100.1%	100.5%	1.25%	1.29%	0.04%p
순창군	30,515	25,241	34,587	30,209	113.3%	119.7%	-1.88%	-1.34%	0.54%p
순천시	265,930	258,670	270,345	272,620	101.7%	105.4%	-0.28%	0.08%	0.36%p
사흥시	305,268	407,090	318,083	403,797	104.2%	99.2%	2.92%	2.41%	-0.51%p
신안군	46,315	33,222	53,150	45,428	114.8%	136.7%	-3.27%	-1.56%	1.71%p
아산시	180,763	278,676	184,191	265,191	101.9%	95.2%	4.42%	3.71%	-0.71%p
안동시	182,098	166,197	183,903	167,886	101.0%	101.0%	-0.91%	-0.91%	0.00%p
안산시	562,920	728,775	566,912	714,891	100.7%	98.1%	2.62%	2.35%	-0.27%p
안성시	133,421	179,782	136,590	177,937	102.4%	99.0%	3.03%	2.68%	-0.35%p
안양시	580,544	602,122	581,166	621,714	100.1%	103.3%	0.37%	0.68%	0.31%p
양구군	21,165	19,363	23,420	21,843	110.7%	112.8%	-0.89%	-0.69%	0.19%p
양양군	29,130	25,475	30,141	27,929	103.5%	109.6%	-1.33%	-0.76%	0.57%p

(계속)

시·군	상주인구 (2000년) [A]	상주인구 (2010년) [B]	주민등록 인구 (2000년) [C]	주민등록 인구 (2010년) [D]	[C/A]	[D/B]	상주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E]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F]	[F-E]
양산시	191,975	252,507	193,552	260,239	100.8%	103.1%	2.78%	3.00%	0.23%p
양주시	110,299	187,911	117,319	196,706	106.4%	104.7%	5.47%	5.30%	-0.17%p
양평군	75,706	82,802	82,773	95,833	109.3%	115.7%	0.90%	1.48%	0.58%p
여주시	303,233	269,937	323,913	293,488	106.8%	108.7%	-1.16%	-0.98%	0.17%p
여주시	97,612	101,203	103,622	109,250	106.2%	108.0%	0.36%	0.53%	0.17%p
연천군	49,483	41,770	52,786	45,177	106.7%	108.2%	-1.68%	-1.54%	0.14%p
영광군	65,529	48,663	72,780	57,362	111.1%	117.9%	-2.93%	-2.35%	0.58%p
영덕군	44,172	36,428	51,131	41,377	115.8%	113.6%	-1.91%	-2.09%	-0.19%p
영동군	60,468	46,231	58,627	50,523	97.0%	109.3%	-2.65%	-1.48%	1.17%p
영암군	60,343	58,748	65,268	60,082	108.2%	102.3%	-0.27%	-0.82%	-0.56%p
영양군	20,735	16,540	22,805	18,451	110.0%	111.6%	-2.24%	-2.10%	0.14%p
영월군	43,767	35,050	48,393	40,407	110.6%	115.3%	-2.20%	-1.79%	0.41%p
영주시	126,507	108,888	131,175	113,926	103.7%	104.6%	-1.49%	-1.40%	0.09%p
영천시	111,392	95,256	119,639	103,190	107.4%	108.3%	-1.55%	-1.47%	0.08%p
예산군	97,669	77,830	101,432	87,002	103.9%	111.8%	-2.24%	-1.52%	0.72%p
예천군	54,291	43,015	59,885	47,049	110.3%	109.4%	-2.30%	-2.38%	-0.08%p
오산시	102,697	183,890	105,933	182,516	103.2%	99.3%	6.00%	5.59%	-0.41%p
옥천군	57,586	49,730	60,798	54,025	105.6%	108.6%	-1.46%	-1.17%	0.28%p
웅천군	13,308	14,550	14,008	18,739	105.3%	128.8%	0.90%	2.95%	2.06%p
용인시	386,124	856,765	392,133	876,550	101.6%	102.3%	8.30%	8.38%	0.08%p
완도군	61,517	46,777	66,978	54,269	108.9%	116.0%	-2.70%	-2.08%	0.62%p
완주군	79,137	83,408	84,009	85,119	106.2%	102.1%	0.53%	0.13%	-0.40%p
울릉군	10,150	7,764	10,241	10,701	100.9%	137.8%	-2.64%	0.44%	3.08%p
울진군	60,011	47,108	66,298	52,430	110.5%	111.3%	-2.39%	-2.32%	0.07%p
의령군	31,395	25,602	34,490	30,162	109.9%	117.8%	-2.02%	-1.33%	0.69%p
의성군	68,353	51,247	76,327	58,832	111.7%	114.8%	-2.84%	-2.57%	0.27%p
임실군	30,799	23,663	37,514	30,593	121.8%	129.3%	-2.60%	-2.02%	0.58%p
울주군	160,984	189,038	164,761	201,000	102.3%	106.3%	1.62%	2.01%	0.39%p
원주시	268,352	311,449	270,009	314,678	100.6%	101.0%	1.50%	1.54%	0.04%p
음성군	84,433	84,088	87,956	91,093	104.2%	108.3%	-0.04%	0.35%	0.39%p
의왕시	117,821	144,501	121,292	147,443	102.9%	102.0%	2.06%	1.97%	-0.09%p
의정부시	355,380	417,412	361,131	431,801	101.6%	103.4%	1.62%	1.80%	0.18%p
이천시	179,719	195,175	183,605	202,595	102.2%	103.8%	0.83%	0.99%	0.16%p
익산시	323,687	296,366	334,324	307,289	103.3%	103.7%	-0.88%	-0.84%	0.04%p
인제군	30,807	28,765	33,618	31,842	109.1%	110.7%	-0.68%	-0.54%	0.14%p
장성군	49,703	38,507	55,986	46,514	112.6%	120.8%	-2.52%	-1.84%	0.68%p
장수군	23,316	19,424	30,051	23,386	128.9%	120.4%	-1.81%	-2.48%	-0.67%p
장흥군	48,305	35,763	53,392	42,394	110.5%	118.5%	-2.96%	-2.28%	0.68%p
전주시	616,468	649,728	620,521	641,525	100.7%	98.7%	0.53%	0.33%	-0.19%p
정선군	46,080	35,980	50,572	41,045	109.7%	114.1%	-2.44%	-2.07%	0.38%p
정읍시	129,152	110,352	152,022	122,000	117.7%	110.6%	-1.56%	-2.18%	-0.62%p
제주시	367,364	401,192	378,762	417,539	103.1%	104.1%	0.88%	0.98%	0.09%p
제천시	143,710	134,698	147,950	137,264	103.0%	101.9%	-0.65%	-0.75%	-0.10%p
증평군	29,233	31,531	32,286	33,533	110.4%	106.3%	0.76%	0.38%	-0.38%p
진도군	38,459	28,565	42,229	33,743	109.8%	118.1%	-2.93%	-2.22%	0.71%p
진안군	30,276	20,446	31,273	27,543	103.3%	134.7%	-3.85%	-1.26%	2.59%p
진주시	339,791	337,896	341,822	335,037	100.6%	99.2%	-0.06%	-0.20%	-0.14%p

(계속)

시·군	상주인구 (2000년) [A]	상주인구 (2010년) [B]	주민등록 인구 (2000년) [C]	주민등록 인구 (2010년) [D]	[C/A]	[D/B]	상주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E]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변화율 (2000~2010년) [F]	[F-E]
진천군	57,559	61,915	60,121	62,094	104.5%	100.3%	0.73%	0.32%	-0.41%p
창녕군	65,369	55,189	73,019	61,714	111.7%	111.8%	-1.68%	-1.67%	0.01%p
창원시	1,079,359	1,058,021	1,086,209	1,090,181	100.6%	103.0%	-0.20%	0.04%	0.24%p
천안시	417,835	574,623	421,418	557,673	100.9%	97.1%	3.24%	2.84%	-0.40%p
철원군	48,008	43,271	53,190	48,928	110.8%	113.1%	-1.03%	-0.83%	0.20%p
청도군	48,229	38,228	52,497	44,391	108.8%	116.1%	-2.30%	-1.66%	0.63%p
청송군	31,302	24,008	34,248	26,715	109.4%	111.3%	-2.62%	-2.45%	0.16%p
청양군	38,601	29,755	41,025	32,541	106.3%	109.4%	-2.57%	-2.29%	0.28%p
청암군	116,129	143,762	123,984	152,944	106.8%	106.4%	2.16%	2.12%	-0.04%p
청주시	586,700	666,924	580,861	655,971	99.0%	98.4%	1.29%	1.22%	-0.07%p
춘천시	252,547	276,232	251,212	269,950	99.5%	97.7%	0.90%	0.72%	-0.18%p
충주시	217,927	203,212	217,305	208,481	99.7%	102.6%	-0.70%	-0.41%	0.28%p
칠곡군	101,549	114,246	103,537	119,087	102.0%	104.2%	1.19%	1.41%	0.22%p
태백시	54,196	51,558	57,023	50,864	105.2%	98.7%	-0.50%	-1.14%	-0.64%p
태안군	65,928	53,888	68,746	63,247	104.3%	117.4%	-2.00%	-0.83%	1.17%p
통영시	123,842	129,366	136,864	140,297	110.5%	108.4%	0.44%	0.25%	-0.19%p
파주시	178,434	328,128	191,726	355,632	107.4%	108.4%	6.28%	6.37%	0.09%p
평택시	345,306	388,508	356,103	419,457	103.1%	108.0%	1.19%	1.65%	0.47%p
평창군	41,210	37,522	47,125	43,622	114.4%	116.3%	-0.93%	-0.77%	0.16%p
포천시	138,654	140,997	145,981	158,658	105.3%	112.5%	0.17%	0.84%	0.67%p
포항시	515,714	511,390	515,977	514,755	100.1%	100.7%	-0.08%	-0.02%	0.06%p
하남시	120,513	138,829	123,366	150,479	102.4%	108.4%	1.42%	2.01%	0.58%p
하동군	51,583	41,862	59,556	51,509	115.5%	123.0%	-2.07%	-1.44%	0.63%p
함안군	58,755	60,794	64,846	67,207	110.4%	110.5%	0.34%	0.36%	0.02%p
함양군	41,943	38,002	46,376	41,197	110.6%	108.4%	-0.98%	-1.18%	-0.20%p
함평군	41,292	30,995	45,232	36,702	109.5%	118.4%	-2.83%	-2.07%	0.76%p
합천군	54,344	43,639	61,255	51,092	112.7%	117.1%	-2.17%	-1.80%	0.37%p
해남군	89,603	66,042	99,230	79,579	110.7%	120.5%	-3.00%	-2.18%	0.82%p
홍성군	90,658	82,811	95,369	88,078	105.2%	106.4%	-0.90%	-0.79%	0.11%p
홍천군	67,210	62,888	74,461	69,893	110.8%	111.1%	-0.66%	-0.63%	0.03%p
화성시	189,467	488,758	191,444	505,838	101.0%	103.5%	9.94%	10.20%	0.26%p
화순군	72,162	62,219	78,610	69,368	108.9%	111.5%	-1.47%	-1.24%	0.23%p
화천군	22,761	22,119	25,188	24,364	110.7%	110.1%	-0.29%	-0.33%	-0.05%p
횡성군	40,990	37,798	45,961	44,254	112.1%	117.1%	-0.81%	-0.38%	0.43%p

3. 주요 지표별 전국 시·군 현황,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군

전국 시·군별로 인구과소지역 요건에 이용된 인구변화, 재정상황, 고령화, 20~30대 연령층 비율을 비롯한 주요 지표를 살펴본 결과와 인구과소지역 요건 각각의 충족 시·군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표 5]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전국	0.52%	양양군	-1.33%	강진군	-2.50%
기장군	3.25%	청주시	1.29%	해남군	-3.00%
달성군	1.31%	충주시	-0.70%	영암군	-0.27%
강화군	-0.64%	재천시	-0.65%	무안군	0.94%
용진군	0.90%	청원군	2.16%	함평군	-2.83%
울주군	1.62%	보은군	-2.26%	영광군	-2.93%
수원시	1.25%	옥천군	-1.46%	장성군	-2.52%
상남시	0.38%	영동군	-2.65%	완도군	-2.70%
의정부시	1.62%	진천군	0.73%	진도군	-2.93%
안양시	0.37%	괴산군	-1.99%	신안군	-3.27%
부천시	1.14%	음성군	-0.04%	포항시	-0.08%
광명시	-0.15%	단양군	-2.45%	경주시	-0.74%
평택시	1.19%	증평군	0.76%	김천시	-1.44%
동두천시	2.25%	천안시	3.24%	안동시	-0.91%
안산시	2.62%	공주시	-0.65%	구미시	1.66%
고양시	1.71%	보령시	-1.13%	영주시	-1.49%
과천시	-0.0003%	아산시	4.42%	영천시	-1.55%
구리시	1.44%	서산시	0.92%	상주시	-1.70%
남양주시	4.51%	논산시	-1.41%	문경시	-2.71%
오산시	6.00%	계룡시	4.35%	경산시	1.55%
시흥시	2.92%	군산군	-0.89%	군위군	-3.57%
군포시	0.53%	부여군	-2.11%	의성군	-2.84%
의왕시	2.06%	서천군	-2.14%	청송군	-2.62%
하남시	1.42%	청양군	-2.57%	영양군	-2.24%
파주시	8.30%	홍성군	-0.90%	영덕군	-1.91%
이천시	0.83%	예산군	-2.24%	청도군	-2.30%
안성시	3.03%	태안군	-2.00%	고령군	-1.09%
김포시	4.09%	당진시	1.53%	성주군	-2.43%
화성시	9.94%	전주시	0.53%	철곡군	1.19%
광주시	6.15%	군산시	-0.46%	예천군	-2.30%
양주시	5.47%	익산시	-0.88%	봉화군	-2.00%
포천시	0.17%	정읍시	-1.56%	울진군	-2.39%
여주시	0.36%	남원시	-1.85%	울릉군	-2.64%
연천군	-1.68%	김제시	-2.06%	진주시	-0.06%
가평군	-0.25%	완주군	0.53%	통영시	0.44%
양평군	0.90%	진안군	-3.85%	사천시	-0.32%
춘천시	0.90%	무주군	-2.27%	김해시	4.07%
원주시	1.50%	장수군	-1.81%	밀양시	-1.56%
강릉시	-0.44%	임실군	-2.60%	거제시	3.25%
동해시	-0.65%	순창군	-1.88%	양산시	2.78%
태백시	-0.50%	고창군	-1.95%	창원시	-0.20%
속초시	-0.85%	부안군	-2.39%	의령군	-2.02%
삼척시	-1.14%	목포시	-0.02%	함안군	0.34%
홍천군	-0.66%	여수시	-1.16%	창녕군	-1.68%
횡성군	-0.81%	순천시	-0.28%	고성군(경남)	-0.76%
영월군	-2.20%	나주시	-2.32%	남해군	-1.89%
평창군	-0.93%	광양시	0.38%	하동군	-2.07%
정선군	-2.44%	담양군	-2.82%	산청군	-1.78%
철원군	-1.03%	곡성군	-3.27%	함양군	-0.98%
화천군	-0.29%	구례군	-2.44%	거창군	-1.39%
양구군	-0.89%	고흥군	-3.20%	함천군	-2.17%
인제군	-0.68%	보성군	-3.26%	제주시	0.88%
고성군(강원)	-1.85%	화순군	-1.47%	세귀포시	-1.09%
		장흥군	-2.96%	-1% 미만	72개 시·군

주: 인구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제공되는 상주인구임

[부표 6]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2011~2013년)

시·군	지수	시·군	지수	시·군	지수
전국 시·군 평균	0.346	양양군	0.177	강진군	0.115
기장군	0.548	청주시	0.641	해남군	0.127
달성군	0.458	충주시	0.261	영암군	0.300
강화군	0.226	계천시	0.213	무안군	0.193
용진군	0.209	청원군	0.423	함평군	0.136
울주군	0.731	보은군	0.133	영광군	0.170
수원시	1.068	옥천군	0.156	장성군	0.184
상남시	1.420	영동군	0.142	완도군	0.122
의정부시	0.626	진천군	0.351	진도군	0.140
안양시	0.825	괴산군	0.139	신안군	0.090
부천시	0.779	음성군	0.368	포항시	0.540
광명시	0.764	단양군	0.135	경주시	0.330
평택시	0.728	증평군	0.242	김천시	0.186
동두천시	0.410	천안시	0.691	안동시	0.172
안산시	0.726	공주시	0.212	구미시	0.586
고양시	1.040	보령시	0.198	영주시	0.195
과천시	1.293	아산시	0.721	영천시	0.180
구리시	0.628	서산시	0.338	상주시	0.126
남양주시	0.724	논산시	0.221	문경시	0.142
오산시	0.733	계룡시	0.252	경산시	0.394
사흥시	0.849	금산군	0.179	군위군	0.126
군포시	0.707	부여군	0.186	의성군	0.093
의왕시	0.621	서천군	0.174	청송군	0.120
하남시	0.689	창양군	0.146	영양군	0.092
용인시	1.427	홍성군	0.218	영덕군	0.135
파주시	0.783	예산군	0.240	청도군	0.130
이천시	0.645	태안군	0.208	고령군	0.202
안성시	0.606	당진시	0.437	성주군	0.169
김포시	0.866	전주시	0.522	칠곡군	0.258
화성시	1.432	군산시	0.413	예천군	0.126
광주시	0.823	익산시	0.336	봉화군	0.097
양주시	0.600	정읍시	0.160	울진군	0.165
포천시	0.464	남원시	0.128	울릉군	0.162
여주시	0.520	김제시	0.156	진주시	0.354
연천군	0.270	완주군	0.251	통영시	0.340
가평군	0.373	진안군	0.107	사천시	0.274
양평군	0.354	무주군	0.122	김해시	0.661
춘천시	0.311	장수군	0.117	밀양시	0.206
원주시	0.408	임실군	0.108	거제시	0.734
강릉시	0.225	순창군	0.120	양산시	0.582
동해시	0.284	고창군	0.126	창원시	0.807
태백시	0.195	부안군	0.153	의령군	0.159
속초시	0.272	목포시	0.371	함안군	0.329
삼척시	0.137	여수시	0.346	창녕군	0.207
홍천군	0.162	순천시	0.262	고성군(경남)	0.209
횡성군	0.153	나주시	0.145	남해군	0.164
영월군	0.125	광양시	0.459	하동군	0.158
평창군	0.196	담양군	0.150	산청군	0.151
정선군	0.266	곡성군	0.099	함양군	0.204
철원군	0.148	구례군	0.114	거창군	0.148
화천군	0.117	고흥군	0.110	함천군	0.139
양구군	0.129	보성군	0.123	제주시	-
인제군	0.134	화순군	0.145	서귀포시	-
고성군(강원)	0.179	장흥군	0.104	0.2미만	72개 시·군

주: 재정력지수 = [기준 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료를 구득하지 못함

[부표 7]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2011~2013년)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시·군 평균	24.47	양양군	12.34	강진군	8.86
기장군	34.95	청주시	37.50	해남군	9.08
달성군	36.55	충주시	19.32	영암군	21.35
강화군	13.22	계천시	21.39	무안군	10.99
용진군	17.88	청원군	32.44	함평군	8.01
울주군	46.48	보은군	12.86	영광군	11.28
수원시	61.33	옥천군	15.62	장성군	12.77
상남시	65.11	영동군	14.06	완도군	10.11
의정부시	37.52	진천군	27.55	진도군	11.61
안양시	57.66	괴산군	14.29	신안군	8.45
부천시	49.32	음성군	26.90	포항시	40.73
광명시	51.52	단양군	17.95	경주시	25.10
평택시	50.44	증평군	17.74	김천시	19.25
동두천시	22.20	천안시	46.43	안동시	15.72
안산시	51.35	공주시	16.95	구미시	43.06
고양시	54.19	보령시	20.08	영주시	18.49
과천시	47.84	아산시	46.73	영천시	18.30
구리시	45.21	서산시	28.12	상주시	12.63
남양주시	41.78	논산시	16.35	문경시	19.73
오산시	49.37	계룡시	22.50	경산시	27.62
사흥시	55.37	금산군	18.50	군위군	9.87
군포시	51.41	부여군	13.34	의성군	10.72
의왕시	49.64	서천군	12.72	청송군	11.08
하남시	49.99	창양군	13.08	영양군	8.92
용인시	64.64	홍성군	17.32	영덕군	11.07
파주시	48.81	예산군	15.82	청도군	11.33
이천시	43.80	태안군	18.36	고령군	15.42
안성시	39.55	당진시	32.28	성주군	15.54
김포시	54.16	전주시	32.11	철곡군	24.15
화성시	58.70	군산시	26.04	예천군	10.95
광주시	57.87	익산시	22.26	봉화군	10.53
양주시	34.22	정읍시	12.26	울진군	14.37
포천시	30.07	남원시	8.83	울릉군	13.29
여주시	39.78	김제시	11.82	진주시	27.77
연천군	24.50	완주군	24.78	통영시	22.45
가평군	27.36	진안군	13.17	사천시	19.57
양평군	24.50	무주군	13.23	김해시	38.19
춘천시	28.69	장수군	10.23	밀양시	19.15
원주시	28.65	임실군	12.11	거제시	41.98
강릉시	21.96	순창군	10.40	양산시	42.26
동해시	17.60	고창군	9.85	창원시	44.17
태백시	30.59	부안군	12.52	의령군	16.11
속초시	21.02	목포시	25.52	함안군	25.02
삼척시	16.42	여수시	30.15	창녕군	15.57
홍천군	17.57	순천시	21.03	고성군(경남)	15.61
횡성군	15.06	나주시	17.04	남해군	12.85
영월군	12.24	광양시	38.30	하동군	13.60
평창군	14.67	담양군	16.57	산청군	12.41
정선군	22.47	곡성군	9.24	함양군	11.06
철원군	10.86	구례군	10.26	거창군	10.95
화천군	11.82	고흥군	9.02	함천군	11.66
양구군	14.34	보성군	10.70	제주시	-
인제군	12.70	화순군	23.23	서귀포시	-
고성군(강원)	11.82	장흥군	9.69	15%미만	56개 시·군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료를 구득하지 못함

[부표 8]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11.30%	양양군	23.45%	강진군	32.40%
기장군	13.54%	청주시	8.15%	해남군	30.04%
달성군	10.21%	충주시	15.13%	영암군	22.85%
강화군	27.41%	제천시	15.76%	무안군	21.09%
용진군	22.46%	청원군	15.58%	함평군	35.75%
울주군	10.35%	보은군	32.62%	영광군	27.89%
수원시	7.04%	옥천군	24.77%	장성군	29.82%
상남시	8.64%	영동군	27.16%	완도군	31.00%
의정부시	10.05%	진천군	16.53%	진도군	33.71%
안양시	8.01%	괴산군	33.53%	신안군	37.08%
부천시	7.57%	음성군	17.09%	포항시	10.43%
광명시	8.19%	단양군	25.57%	경주시	16.43%
평택시	10.29%	증평군	14.07%	김천시	20.10%
동두천시	14.13%	천안시	7.86%	안동시	19.33%
안산시	6.55%	공주시	19.21%	구미시	6.07%
고양시	9.40%	보령시	20.16%	영주시	20.45%
과천시	9.25%	아산시	10.00%	영천시	23.71%
구리시	8.06%	서산시	14.80%	상주시	26.70%
남양주시	9.48%	논산시	21.39%	문경시	25.78%
오산시	6.09%	계룡시	6.99%	경산시	11.05%
시흥시	6.25%	괴산군	25.48%	군위군	39.43%
군포시	7.87%	부여군	29.34%	의성군	38.54%
의왕시	8.39%	서천군	30.74%	청송군	33.32%
하남시	9.59%	청양군	32.65%	영양군	35.28%
용인시	8.97%	홍성군	22.10%	영덕군	33.46%
파주시	11.20%	예산군	24.85%	청도군	33.63%
이천시	10.62%	태안군	23.98%	고령군	26.15%
안성시	12.75%	당진시	16.63%	성주군	29.59%
김포시	10.65%	전주시	9.77%	철곡군	11.83%
화성시	7.65%	군산시	12.88%	예천군	34.64%
광주시	9.28%	익산시	13.44%	봉화군	33.01%
양주시	10.87%	정읍시	23.62%	울진군	25.97%
포천시	14.05%	남원시	23.56%	울릉군	20.93%
여주시	16.50%	김제시	27.91%	진주시	12.02%
연천군	21.20%	완주군	19.43%	통영시	12.91%
가평군	21.02%	진안군	36.17%	사천시	17.03%
양평군	21.24%	무주군	31.54%	김해시	7.54%
춘천시	12.90%	장수군	32.61%	밀양시	22.59%
원주시	11.33%	임실군	37.71%	거제시	7.08%
강릉시	14.54%	순창군	35.38%	양산시	9.14%
동해시	14.27%	고창군	31.88%	창원시	8.31%
태백시	15.62%	부안군	29.67%	의령군	36.64%
속초시	13.37%	목포시	10.65%	함안군	20.68%
삼척시	19.43%	여수시	13.41%	창녕군	29.45%
홍천군	21.10%	순천시	12.09%	고성군(경남)	25.76%
횡성군	24.91%	나주시	27.71%	남해군	34.55%
영월군	24.97%	광양시	9.81%	하동군	31.85%
평창군	22.14%	담양군	30.25%	산청군	33.77%
정선군	21.20%	곡성군	34.73%	함양군	31.03%
철원군	17.93%	구례군	33.09%	거창군	24.82%
화천군	19.10%	고흥군	38.19%	함천군	37.33%
양구군	18.92%	보성군	36.48%	계주시	11.25%
인제군	17.38%	화순군	23.84%	서귀포시	17.70%
고성군(강원)	22.79%	장흥군	33.58%	20% 초과	82개 시·군

주: 65세 이상 인구는 한국인 기준임

[부표 9] 65세 이상 인구 비율(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7.33%	양양군	13.32%	강진군	21.34%
기장군	10.14%	청주시	5.14%	해남군	17.55%
달성군	7.31%	충주시	9.55%	영암군	16.72%
강화군	17.50%	제천시	9.35%	무안군	17.06%
용진군	19.33%	청원군	13.91%	함평군	22.53%
울주군	7.77%	보은군	20.93%	영광군	15.91%
수원시	4.21%	옥천군	16.65%	장성군	18.41%
성남시	5.04%	영동군	16.26%	완도군	17.04%
의정부시	5.39%	진천군	12.34%	진도군	19.54%
안양시	5.03%	괴산군	21.57%	신안군	20.12%
부천시	4.79%	음성군	12.53%	포항시	6.38%
광명시	5.29%	담양군	14.72%	경주시	10.84%
평택시	7.28%	증평군	9.94%	김천시	12.78%
동두천시	8.23%	천안시	6.18%	안동시	12.97%
안산시	3.93%	공주시	13.50%	구미시	4.76%
고양시	5.76%	보령시	12.75%	영주시	12.46%
과천시	6.51%	아산시	9.80%	영천시	14.69%
구리시	5.06%	서산시	10.78%	상주시	18.30%
남양주시	6.23%	논산시	14.27%	문경시	15.21%
오산시	4.21%	계룡시	4.52%	경산시	7.22%
시흥시	4.10%	금산군	17.51%	군위군	23.21%
군포시	4.79%	부여군	18.79%	의성군	24.09%
의왕시	5.44%	서천군	19.68%	청송군	19.57%
하남시	5.92%	청양군	20.46%	영양군	21.38%
용인시	5.40%	홍성군	15.22%	영덕군	21.10%
파주시	9.58%	예산군	15.31%	청도군	21.59%
이천시	7.22%	태안군	13.87%	고령군	17.00%
안성시	10.36%	당진시	13.46%	성주군	19.25%
김포시	7.31%	전주시	5.96%	철곡군	8.89%
화성시	9.80%	군산시	8.36%	예천군	22.79%
광주시	6.84%	익산시	9.02%	봉화군	21.58%
양주시	7.31%	정읍시	16.07%	울진군	16.80%
포천시	9.16%	남원시	15.63%	울릉군	13.00%
여주시	11.21%	김제시	18.28%	진주시	7.54%
연천군	12.52%	완주군	14.92%	통영시	9.36%
가평군	14.31%	진안군	20.60%	사천시	11.75%
양평군	15.03%	무주군	19.19%	김해시	5.61%
춘천시	8.34%	장수군	21.99%	밀양시	14.62%
원주시	7.91%	임실군	24.68%	거제시	7.01%
강릉시	8.92%	순창군	23.75%	양산시	5.78%
동해시	8.35%	고창군	20.35%	창원시	4.97%
태백시	8.05%	부안군	19.16%	의령군	25.21%
속초시	7.66%	목포시	6.54%	함안군	16.32%
삼척시	12.36%	여수시	8.26%	창녕군	18.94%
홍천군	13.56%	순천시	8.48%	고성군(경남)	19.23%
횡성군	16.44%	나주시	17.82%	남해군	24.31%
영월군	14.69%	광양시	7.01%	하동군	20.88%
평창군	14.03%	담양군	17.83%	산청군	21.80%
정선군	12.01%	곡성군	21.04%	함양군	21.17%
철원군	10.65%	구례군	20.50%	거창군	17.09%
화천군	12.79%	고흥군	23.11%	함천군	23.83%
양구군	12.22%	보성군	22.86%	제주시	7.51%
인제군	11.50%	화순군	15.21%	서귀포시	10.54%
고성군(강원)	13.32%	장흥군	21.39%	20% 초과	29개 시·군

주: 65세 이상 인구는 한국인 기준임

[부표 10]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량(2000~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전국	3.97%p	양양군	10.14%p	강진군	11.06%p
기장군	3.40%p	청주시	3.01%p	해남군	12.49%p
달성군	2.91%p	충주시	5.58%p	영암군	6.13%p
강화군	9.91%p	제천시	6.41%p	무안군	4.02%p
용진군	3.13%p	청원군	1.66%p	함평군	13.22%p
울주군	2.58%p	보은군	11.69%p	영광군	11.99%p
수원시	2.84%p	옥천군	8.11%p	장성군	11.41%p
상남시	3.59%p	영동군	10.91%p	완도군	13.96%p
의정부시	4.66%p	진천군	4.19%p	진도군	14.18%p
안양시	2.98%p	괴산군	11.96%p	신안군	16.96%p
부천시	2.79%p	음성군	4.56%p	포항시	4.05%p
광명시	2.89%p	담양군	10.85%p	경주시	5.59%p
평택시	3.01%p	증평군	4.12%p	김천시	7.32%p
동두천시	5.90%p	천안시	1.68%p	안동시	6.38%p
안산시	2.62%p	공주시	5.71%p	구미시	1.31%p
고양시	3.64%p	보령시	7.41%p	영주시	8.00%p
과천시	2.74%p	아산시	0.20%p	영천시	9.01%p
구리시	2.996%p	서산시	4.02%p	상주시	8.40%p
남양주시	3.25%p	논산시	7.12%p	문경시	10.57%p
오산시	1.88%p	계룡시	2.47%p	경산시	3.83%p
사흥시	2.15%p	군산군	7.97%p	군위군	16.22%p
군포시	3.08%p	부여군	10.55%p	의성군	14.44%p
의왕시	2.94%p	서천군	11.06%p	청송군	13.75%p
하남시	3.68%p	청양군	12.20%p	영양군	13.90%p
용인시	3.57%p	홍성군	6.88%p	영덕군	12.36%p
파주시	1.62%p	예산군	9.54%p	철도군	12.05%p
이천시	3.39%p	태안군	10.11%p	고령군	9.16%p
안성시	2.40%p	당진시	3.17%p	성주군	10.34%p
김포시	3.34%p	전주시	3.81%p	철곡군	2.94%p
화성시	-2.15%p	군산시	4.52%p	예천군	11.84%p
광주시	2.44%p	익산시	4.41%p	봉화군	11.44%p
양주시	3.56%p	정읍시	7.55%p	울진군	9.17%p
포천시	4.89%p	남원시	7.93%p	울릉군	7.93%p
여주시	5.29%p	김제시	9.63%p	진주시	4.48%p
연천군	8.68%p	완주군	4.51%p	통영시	3.55%p
가평군	6.71%p	진안군	15.57%p	사천시	5.28%p
양평군	6.21%p	무주군	12.35%p	김해시	1.93%p
춘천시	4.56%p	장수군	10.62%p	밀양시	7.97%p
원주시	3.42%p	임실군	13.04%p	거제시	0.07%p
강릉시	5.62%p	순창군	11.63%p	양산시	3.36%p
동해시	5.92%p	고창군	11.53%p	창원시	3.34%p
태백시	7.57%p	부안군	10.51%p	의령군	11.42%p
속초시	5.71%p	목포시	4.11%p	함안군	4.35%p
삼척시	7.07%p	여수시	5.15%p	창녕군	10.51%p
홍천군	7.54%p	순천시	3.61%p	고성군(경남)	6.52%p
횡성군	8.47%p	나주시	9.89%p	남해군	10.24%p
영월군	10.27%p	광양시	2.80%p	하동군	10.98%p
평창군	8.11%p	담양군	12.43%p	산청군	11.97%p
정선군	9.20%p	곡성군	13.69%p	함양군	9.86%p
철원군	7.28%p	구례군	12.59%p	거창군	7.73%p
화천군	6.31%p	고흥군	15.08%p	함천군	13.50%p
양구군	6.70%p	보성군	13.62%p	제주시	3.73%p
인제군	5.88%p	화순군	8.63%p	서귀포시	7.16%p
고성군(강원)	9.48%p	장흥군	12.19%p	7.5%p 초과	72개 시·군

주: 65세 이상 인구는 한국인 기준임

[부표 11] 20~39세 인구 비율(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29.98%	양양군	20.69%	강진군	13.74%
기장군	27.91%	청주시	32.13%	해남군	14.86%
달성군	29.07%	충주시	25.74%	영암군	24.53%
강화군	16.85%	제천시	23.95%	무안군	23.35%
용진군	22.70%	청원군	29.41%	함평군	13.43%
울주군	27.99%	보은군	13.78%	영광군	16.53%
수원시	33.73%	옥천군	19.85%	장성군	18.65%
성남시	32.69%	영동군	18.71%	완도군	14.87%
의정부시	29.45%	진천군	26.73%	진도군	13.29%
안양시	31.12%	괴산군	13.12%	신안군	11.60%
부천시	32.57%	음성군	25.25%	포항시	27.57%
광명시	33.13%	단양군	16.93%	경주시	25.25%
평택시	30.09%	증평군	28.49%	김천시	22.16%
동두천시	27.56%	천안시	34.56%	안동시	23.77%
안산시	32.25%	공주시	24.16%	구미시	35.75%
고양시	28.85%	보령시	21.34%	영주시	20.69%
과천시	26.77%	아산시	36.72%	영천시	21.20%
구리시	30.81%	서산시	26.55%	상주시	17.84%
남양주시	29.62%	논산시	21.64%	문경시	17.86%
오산시	38.42%	계룡시	26.77%	경산시	34.15%
시흥시	33.03%	금산군	21.20%	군위군	11.05%
군포시	32.43%	부여군	15.25%	의성군	11.12%
의왕시	30.35%	서천군	15.02%	청송군	13.83%
하남시	30.63%	청양군	15.58%	영양군	12.25%
용인시	31.43%	홍성군	20.52%	영덕군	14.45%
파주시	30.90%	예산군	18.90%	철도군	14.08%
이천시	31.34%	태안군	19.05%	고령군	19.56%
안성시	31.63%	당진시	26.95%	성주군	15.03%
김포시	27.58%	전주시	29.46%	철곡군	34.12%
화성시	34.80%	군산시	28.29%	예천군	14.36%
광주시	30.17%	익산시	27.34%	봉화군	14.94%
양주시	28.89%	정읍시	19.79%	울진군	18.47%
포천시	25.85%	남원시	18.88%	울릉군	19.46%
여주시	24.84%	김제시	18.51%	진주시	27.89%
연천군	22.63%	완주군	26.44%	통영시	27.42%
가평군	20.93%	진안군	13.61%	사천시	25.49%
양평군	20.15%	무주군	15.60%	김해시	29.95%
춘천시	29.40%	장수군	13.77%	밀양시	19.72%
원주시	28.87%	임실군	12.70%	거제시	34.37%
강릉시	26.62%	순창군	13.65%	양산시	29.30%
동해시	24.93%	고창군	13.94%	창원시	30.20%
태백시	24.96%	부안군	15.76%	의령군	13.72%
속초시	24.25%	목포시	29.23%	함안군	22.19%
삼척시	23.05%	여수시	24.90%	창녕군	16.05%
홍천군	21.12%	순천시	25.47%	고성군(경남)	19.72%
횡성군	17.95%	나주시	18.73%	남해군	13.17%
영월군	16.58%	광양시	26.65%	하동군	14.32%
평창군	19.15%	담양군	17.78%	산청군	12.89%
정선군	21.02%	곡성군	14.42%	함양군	15.66%
철원군	24.49%	구례군	13.46%	거창군	17.43%
화천군	31.49%	고흥군	11.05%	함천군	12.67%
양구군	25.80%	보성군	12.24%	계주시	28.18%
인제군	26.57%	화순군	21.00%	서귀포시	21.76%
고성군(강원)	22.93%	장흥군	13.21%	20%미만	63개 시·군

주: 20~39세 인구는 한국인 기준임

[부표 12] 20~39세 인구 비율(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35.28%	양양군	28.02%	강진군	20.09%
기장군	32.68%	청주시	37.49%	해남군	24.11%
달성군	37.15%	충주시	32.71%	영암군	26.87%
강화군	22.81%	제천시	31.25%	무안군	24.77%
용진군	26.77%	청원군	31.73%	함평군	21.55%
울주군	37.99%	보은군	20.82%	영광군	25.18%
수원시	39.76%	옥천군	26.40%	장성군	26.72%
성남시	37.28%	영동군	28.43%	완도군	23.20%
의정부시	37.79%	진천군	32.35%	진도군	21.74%
안양시	36.25%	괴산군	21.21%	신안군	21.17%
부천시	36.94%	음성군	30.82%	포항시	33.57%
광명시	37.66%	담양군	25.85%	경주시	33.25%
평택시	36.11%	증평군	32.70%	김천시	30.03%
동두천시	34.93%	천안시	38.26%	안동시	28.90%
안산시	40.84%	공주시	28.35%	구미시	40.63%
고양시	36.24%	보령시	28.08%	영주시	27.77%
과천시	36.36%	아산시	35.06%	영천시	28.77%
구리시	36.34%	서산시	31.52%	상주시	23.73%
남양주시	36.83%	논산시	27.49%	문경시	27.65%
오산시	41.89%	계룡시	32.95%	경산시	38.78%
시흥시	40.55%	금산군	25.12%	군위군	21.79%
군포시	37.63%	부여군	21.30%	의성군	17.84%
의왕시	35.20%	서천군	22.04%	청송군	22.41%
하남시	35.16%	청양군	22.64%	영양군	19.90%
용인시	39.74%	홍성군	26.16%	영덕군	20.79%
파주시	34.06%	예산군	27.45%	청도군	22.05%
이천시	37.76%	태안군	27.34%	고령군	28.13%
안성시	33.83%	당진시	28.80%	성주군	24.19%
김포시	36.08%	전주시	35.30%	철곡군	39.20%
화성시	35.46%	군산시	33.88%	예천군	19.86%
광주시	36.46%	익산시	33.85%	봉화군	21.00%
양주시	35.92%	정읍시	26.39%	울진군	26.47%
포천시	33.38%	남원시	27.18%	울릉군	27.70%
여주시	31.30%	김제시	25.38%	진주시	33.57%
연천군	29.79%	완주군	31.00%	통영시	30.27%
가평군	28.39%	진안군	25.33%	사천시	31.11%
양평군	26.42%	무주군	24.07%	김해시	37.31%
춘천시	34.75%	장수군	19.75%	밀양시	26.77%
원주시	34.80%	임실군	19.24%	거제시	35.25%
강릉시	32.78%	순창군	18.78%	양산시	37.52%
동해시	32.17%	고창군	19.68%	창원시	36.82%
태백시	29.98%	부안군	22.32%	의령군	21.13%
속초시	33.54%	목포시	33.82%	함안군	27.57%
삼척시	28.56%	여수시	31.86%	창녕군	23.15%
홍천군	28.26%	순천시	33.26%	고성군(경남)	23.11%
횡성군	25.25%	나주시	25.66%	남해군	19.14%
영월군	26.04%	광양시	35.68%	하동군	22.78%
평창군	26.50%	담양군	27.88%	산청군	23.14%
정선군	27.20%	곡성군	25.20%	함양군	21.31%
철원군	30.10%	구례군	21.69%	거창군	23.83%
화천군	29.99%	고흥군	20.26%	함천군	19.93%
양구군	28.89%	보성군	20.60%	계주시	35.50%
인제군	29.91%	화순군	31.10%	서귀포시	31.21%
고성군(강원)	26.44%	장흥군	20.18%	20% 미만	9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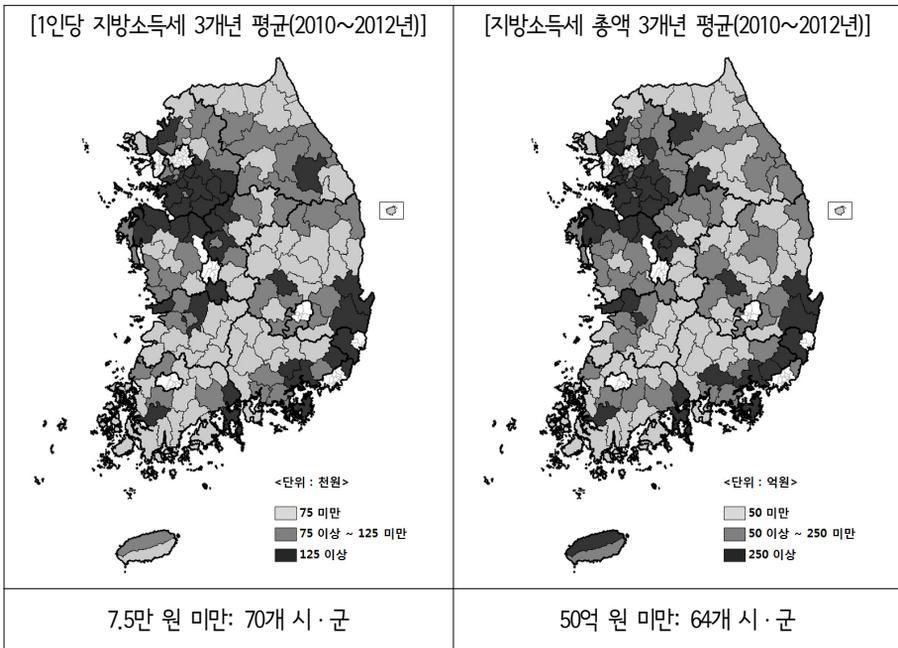
주: 20~39세 인구는 한국인 기준임

[부표 13] 20~39세 인구 비율 변화량(2000~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전국	-5.30%p	양양군	-7.32%p	강진군	-6.35%p
기장군	-4.77%p	청주시	-5.36%p	해남군	-9.25%p
달성군	-8.07%p	충주시	-6.97%p	영암군	-2.34%p
강화군	-5.96%p	제천시	-7.30%p	무안군	-1.42%p
용진군	-4.07%p	청원군	-2.33%p	함평군	-8.13%p
울주군	-9.99%p	보은군	-7.04%p	영광군	-8.64%p
수원시	-6.03%p	옥천군	-6.55%p	장성군	-8.07%p
상남시	-4.59%p	영동군	-9.73%p	완도군	-8.34%p
의정부시	-8.34%p	진천군	-5.62%p	진도군	-8.46%p
안양시	-5.13%p	괴산군	-8.10%p	신안군	-9.57%p
부천시	-4.37%p	음성군	-5.57%p	포항시	-6.00%p
광명시	-4.54%p	단양군	-8.92%p	경주시	-8.01%p
평택시	-6.02%p	증평군	-4.21%p	김천시	-7.87%p
동두천시	-7.37%p	천안시	-3.70%p	안동시	-5.13%p
안산시	-8.59%p	공주시	-4.19%p	구미시	-4.88%p
고양시	-7.40%p	보령시	-6.74%p	영주시	-7.08%p
과천시	-9.59%p	아산시	1.65%p	영천시	-7.57%p
구리시	-5.53%p	서산시	-4.98%p	상주시	-5.89%p
남양주시	-7.21%p	논산시	-5.85%p	문경시	-9.79%p
오산시	-3.47%p	계룡시	-6.18%p	경산시	-4.63%p
시흥시	-7.52%p	군산군	-3.92%p	군위군	-10.74%p
군포시	-5.20%p	부여군	-6.04%p	의성군	-6.72%p
의왕시	-4.84%p	서천군	-7.02%p	청송군	-8.58%p
하남시	-4.52%p	청양군	-7.06%p	영양군	-7.66%p
용인시	-8.31%p	홍성군	-5.64%p	영덕군	-6.34%p
파주시	-3.16%p	예산군	-8.55%p	철도군	-7.97%p
이천시	-6.42%p	태안군	-8.29%p	고령군	-8.56%p
안성시	-2.20%p	당진시	-1.85%p	성주군	-9.16%p
김포시	-8.50%p	전주시	-5.84%p	철곡군	-5.08%p
화성시	-0.65%p	군산시	-5.59%p	예천군	-5.49%p
광주시	-6.29%p	익산시	-6.52%p	봉화군	-6.06%p
양주시	-7.03%p	정읍시	-6.59%p	울진군	-8.00%p
포천시	-7.54%p	남원시	-8.29%p	울릉군	-8.23%p
여주시	-6.47%p	김제시	-6.87%p	진주시	-5.68%p
연천군	-7.15%p	완주군	-4.57%p	통영시	-2.86%p
가평군	-7.46%p	진안군	-11.72%p	사천시	-5.62%p
양평군	-6.27%p	무주군	-8.47%p	김해시	-7.36%p
춘천시	-5.35%p	장수군	-5.98%p	밀양시	-7.05%p
원주시	-5.93%p	임실군	-6.54%p	거제시	-0.89%p
강릉시	-6.16%p	순창군	-5.13%p	양산시	-8.22%p
동해시	-7.25%p	고창군	-5.74%p	창원시	-6.62%p
태백시	-5.02%p	부안군	-6.57%p	의령군	-7.41%p
속초시	-9.29%p	목포시	-4.59%p	함안군	-5.38%p
삼척시	-5.51%p	여수시	-6.96%p	창녕군	-7.10%p
홍천군	-7.14%p	순천시	-7.78%p	고성군(경남)	-3.39%p
횡성군	-7.30%p	나주시	-6.93%p	남해군	-5.98%p
영월군	-9.46%p	광양시	-9.04%p	하동군	-8.47%p
평창군	-7.34%p	담양군	-10.10%p	산청군	-10.25%p
정선군	-6.18%p	곡성군	-10.78%p	함양군	-5.64%p
철원군	-5.61%p	구례군	-8.23%p	거창군	-6.40%p
화천군	1.50%p	고흥군	-9.20%p	함천군	-7.26%p
양구군	-3.09%p	보성군	-8.35%p	제주시	-7.31%p
인제군	-3.33%p	화순군	-10.10%p	서귀포시	-9.45%p
고성군(강원)	-3.51%p	장흥군	-6.97%p	-7%p 미만	72개 시·군

주: 20~39세 인구는 한국인 기준임

[부도 1] 소득수준



주 1: 지방세통계연감(2012년 기준 자료) 및 지방세정연감(2010년과 2011년 기준 자료)을 사용하여 시·군별 지표 값을 산출함

주 2: 1인당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 총인구 대비 지방소득세 총액을 의미함

[부표 14] 1인당 지방소득세 3개년 평균(201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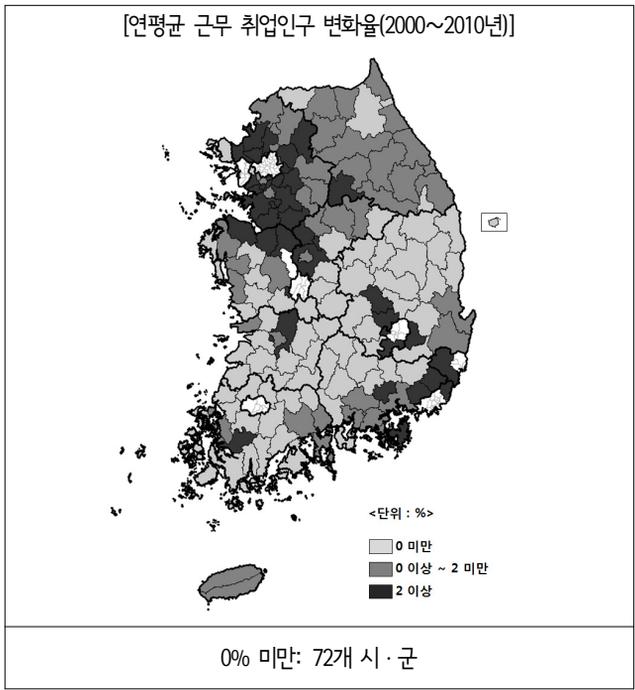
시·군	금액(천원)	시·군	금액(천원)	시·군	금액(천원)
전국 시·군 평균	112.3	양양군	72.8	강진군	31.3
기장군	147.9	청주시	104.5	해남군	41.7
달성군	113.3	충주시	96.7	영암군	437.8
강화군	67.7	제천시	73.6	무안군	51.1
용진군	146.9	청원군	256.9	함평군	40.4
울주군	359.7	보은군	77.8	영광군	89.0
수원시	202.4	옥천군	73.9	장성군	92.8
상남시	239.8	영동군	55.2	완도군	27.1
의정부시	52.0	진천군	271.0	진도군	48.1
안양시	121.6	괴산군	66.4	신안군	24.6
부천시	81.7	음성군	227.1	포항시	211.6
광명시	79.1	단양군	86.9	경주시	153.2
평택시	200.7	증평군	101.4	김천시	112.8
동두천시	56.5	천안시	191.0	안동시	68.9
안산시	137.5	공주시	107.3	구미시	338.7
고양시	100.9	보령시	94.3	영주시	92.8
과천시	317.6	아산시	501.2	영천시	108.8
구리시	83.3	서산시	315.9	상주시	49.0
남양주시	61.8	논산시	70.1	문경시	53.6
오산시	83.1	계룡시	59.6	경산시	92.9
시흥시	124.9	금산군	147.3	군위군	62.2
군포시	105.0	부여군	91.5	의성군	36.7
의왕시	134.7	서천군	80.5	청송군	48.3
하남시	152.4	청양군	62.9	영양군	33.5
파주시	238.5	홍성군	66.8	영덕군	41.6
이천시	147.2	예산군	70.5	청도군	53.6
이천시	237.5	태안군	91.2	고령군	91.8
안성시	180.4	당진시	261.9	성주군	55.1
김포시	138.0	전주시	81.9	철곡군	97.1
화성시	348.3	군산시	158.7	예천군	43.3
광주시	128.4	익산시	91.2	봉화군	82.1
양주시	93.7	정읍시	61.6	울진군	102.1
포천시	108.6	남원시	56.9	울릉군	45.1
여주시	134.6	김제시	76.8	진주시	79.9
연천군	66.2	완주군	262.9	통영시	81.1
가평군	104.6	진안군	37.3	사천시	116.7
양평군	93.5	무주군	51.2	김해시	117.2
춘천시	93.6	장수군	45.5	밀양시	66.5
원주시	98.1	임실군	47.7	거제시	405.4
강릉시	85.0	순창군	43.5	양산시	164.2
동해시	80.1	고창군	40.8	창원시	177.6
태백시	62.1	부안군	42.5	의령군	64.0
속초시	61.6	목포시	71.4	함안군	203.9
삼척시	74.8	여수시	316.1	창녕군	67.8
홍천군	75.1	순천시	75.6	고성군(경남)	95.9
횡성군	71.3	나주시	102.0	남해군	37.7
영월군	76.8	광양시	389.0	하동군	68.9
평창군	79.0	담양군	60.7	산청군	55.3
정선군	431.4	곡성군	69.0	함양군	44.4
철원군	41.4	구례군	40.3	거창군	46.0
화천군	51.7	고흥군	29.3	합천군	38.8
양구군	43.5	보성군	43.5	제주시	98.0
인제군	58.8	화순군	74.9	서귀포시	62.4
고성군(강원)	66.5	장흥군	34.0	7.5만원 미만	70개 시·군

주: 1인당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 총인구 대비 지방소득세 총액임

[부표 15]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2010~2012년)

시·군	금액(천원)	시·군	금액(천원)	시·군	금액(천원)
전국 시·군 평균	25,295,659.9	양양군	2,030,399	강진군	1,284,183
가장군	16,130,280	청주시	69,155,990	해남군	3,275,503
달성군	20,571,234	충주시	20,151,127	영암군	26,297,806
강화군	4,530,119	제천시	10,118,933	무안군	3,855,172
용진군	2,859,160	청원군	39,955,720	함평군	1,463,022
울주군	73,844,178	보은군	2,701,070	영광군	5,084,952
수원시	221,904,119	옥천군	3,959,012	장성군	4,301,951
상남시	234,838,517	영동군	2,794,167	완도군	1,463,113
의정부시	22,397,396	진천군	17,118,072	진도군	1,609,545
안양시	74,885,091	괴산군	2,476,960	신안군	1,093,798
부천시	71,303,108	음성군	20,892,405	포항시	109,379,065
광명시	27,836,367	담양군	2,742,460	경주시	40,663,677
평택시	85,704,122	증평군	3,435,032	김천시	15,335,208
동두천시	5,446,509	철안시	109,136,262	안동시	11,587,713
안산시	71,932,518	공주시	13,064,329	구미시	139,535,145
고양시	96,946,382	보령시	10,038,170	영주시	10,563,867
과천시	22,791,357	아산시	137,547,906	영천시	11,195,505
구리시	16,196,397	서산시	51,141,236	상주시	5,133,444
남양주시	35,979,674	논산시	8,923,189	문경시	4,106,013
오산시	15,971,486	계룡시	2,532,761	경산시	22,660,513
사흥시	50,127,795	금산군	8,263,495	군위군	1,515,198
군포시	30,162,725	부여군	6,778,578	의성군	2,117,748
의왕시	20,290,006	서천군	4,789,760	청송군	1,282,523
하남시	22,548,791	청양군	2,030,662	영양군	612,618
용인시	214,021,920	홍성군	5,890,072	영덕군	1,697,614
파주시	55,249,428	예산군	6,089,979	청도군	2,369,505
이천시	48,472,369	태안군	5,727,625	고령군	3,231,719
안성시	32,512,767	당진시	35,391,069	성주군	2,499,707
김포시	35,768,592	전주시	52,869,536	철곡군	11,583,703
화성시	180,052,949	군산시	43,811,786	예천군	2,016,014
광주시	33,896,783	익산시	28,071,163	봉화군	2,807,592
양주시	18,646,508	정읍시	7,418,900	울진군	5,315,040
포천시	17,153,058	남원시	4,976,702	울릉군	482,334
여주시	14,716,255	김제시	7,155,874	진주시	26,838,134
연천군	2,994,733	완주군	22,446,605	통영시	11,346,856
가평군	6,244,468	진안군	1,028,768	사천시	13,376,783
양평군	9,255,060	무주군	1,310,242	김해시	59,581,150
춘천시	25,455,020	장수군	1,057,640	밀양시	7,279,316
원주시	31,382,565	임실군	1,451,989	거제시	94,533,160
강릉시	18,520,063	순창군	1,299,211	양산시	43,674,862
동해시	7,610,648	고창군	2,465,182	창원시	193,791,740
태백시	3,115,297	부안군	2,519,382	의령군	1,931,799
속초시	5,162,341	목포시	17,510,804	함안군	13,705,686
삼척시	5,409,784	여수시	92,530,939	창녕군	4,235,780
홍천군	5,245,880	순천시	20,637,427	고성군(경남)	5,477,924
횡성군	3,166,965	나주시	9,050,854	남해군	1,853,311
영월군	3,090,539	광양시	58,062,759	하동군	3,602,812
평창군	3,446,897	담양군	2,898,890	산청군	1,972,623
철선군	17,419,633	곡성군	2,159,316	함양군	1,819,034
철원군	1,999,016	구례군	1,100,775	거창군	2,905,499
화천군	1,280,009	고흥군	2,132,589	함천군	1,966,262
양구군	970,275	보성군	2,085,148	제주시	41,516,554
인제군	1,889,880	화순군	5,160,733	서귀포시	9,589,728
고성군(강원)	2,002,251	장흥군	1,447,127	50억 원 미만	64개 시·군

[부도 2] 일자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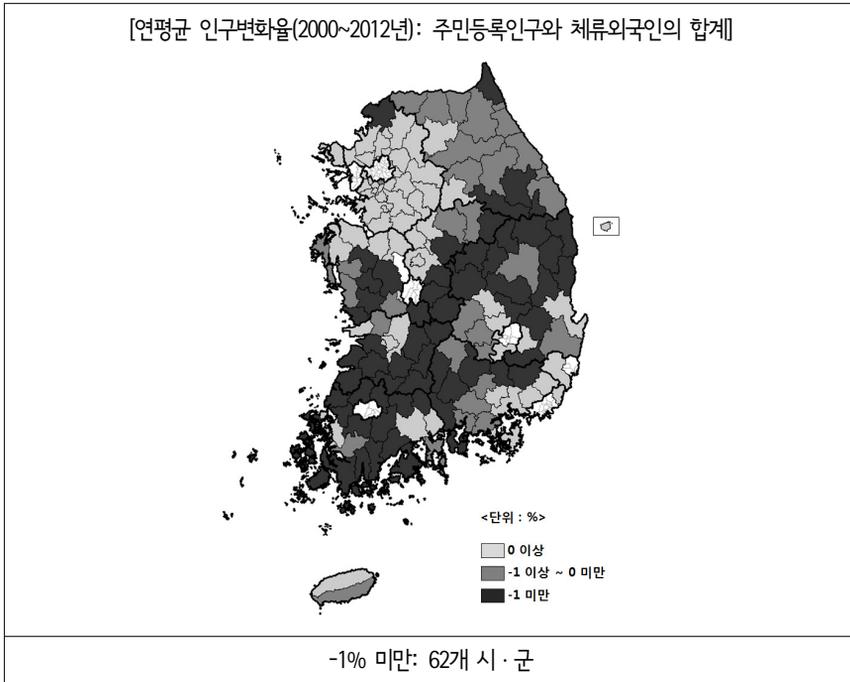
주: 인구주택 총조사 근무지 기준 취업인구 통계(2000년과 2010년)를 사용하여 시·군별 지표 값을 산출함

[부표 16] 연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1.86%	양양군	0.53%	강진군	-2.07%
기장군	2.97%	청주시	0.90%	해남군	-2.64%
달성군	2.07%	충주시	0.03%	영암군	3.06%
강화군	-0.05%	제천시	0.05%	무안군	0.03%
용진군	0.88%	청원군	5.22%	함평군	-2.68%
울주군	2.71%	보은군	-1.30%	영광군	-2.96%
수원시	1.04%	옥천군	-0.25%	장성군	-1.40%
성남시	2.15%	영동군	-1.35%	완도군	-3.20%
의정부시	1.89%	진천군	3.35%	진도군	-2.89%
안양시	0.41%	괴산군	-1.27%	신안군	-2.73%
부천시	-0.23%	음성군	1.28%	포항시	0.94%
광명시	1.20%	담양군	-1.28%	경주시	1.26%
평택시	3.32%	증평군	3.55%	김천시	-0.87%
동두천시	1.52%	천안시	2.01%	안동시	-0.19%
안산시	2.36%	공주시	0.68%	구미시	2.35%
고양시	3.03%	보령시	0.21%	영주시	-0.31%
과천시	2.83%	아산시	6.29%	영천시	-0.25%
구리시	1.52%	서산시	1.63%	상주시	-1.20%
남양주시	5.10%	논산시	-0.44%	문경시	-1.26%
오산시	2.89%	계룡시	5.56%	경산시	2.16%
사흥시	6.02%	고산군	-0.03%	군위군	-2.64%
군포시	3.21%	부여군	-1.14%	의성군	-2.19%
의왕시	4.87%	서천군	-0.19%	청송군	-1.29%
하남시	3.01%	청양군	-1.60%	영양군	-1.34%
용인시	5.09%	홍성군	0.08%	영덕군	-1.00%
파주시	7.23%	예산군	-0.63%	청도군	-0.79%
이천시	1.54%	태안군	-0.92%	고령군	-0.35%
안성시	4.36%	당진시	3.72%	성주군	-1.41%
김포시	2.71%	전주시	1.22%	철곡군	2.66%
화성시	9.85%	군산시	1.13%	예천군	-1.48%
광주시	4.54%	익산시	-0.07%	봉화군	-1.60%
양주시	4.84%	정읍시	-1.28%	울진군	-1.86%
포천시	1.59%	남원시	-1.34%	울릉군	-0.49%
여주시	1.34%	김제시	-1.14%	진주시	0.60%
연천군	0.17%	완주군	3.24%	통영시	1.45%
가평군	2.07%	진안군	-2.62%	사천시	0.89%
양평군	0.53%	무주군	-1.46%	김해시	3.95%
춘천시	1.87%	장수군	-1.26%	밀양시	-0.95%
원주시	2.43%	임실군	-1.17%	거제시	4.65%
강릉시	0.60%	순창군	-1.63%	양산시	2.47%
동해시	0.10%	고창군	-1.73%	창원시	0.42%
태백시	-0.18%	부안군	-1.98%	의령군	-3.03%
속초시	-0.34%	목포시	0.17%	함안군	2.12%
삼척시	0.38%	여수시	0.10%	창녕군	-1.12%
홍천군	0.49%	순천시	0.39%	고성군(경남)	0.07%
횡성군	0.54%	나주시	-1.66%	남해군	-1.70%
영월군	0.12%	광양시	1.87%	하동군	-0.59%
평창군	1.45%	담양군	-1.75%	산청군	-2.20%
정선군	0.12%	곡성군	-2.66%	함양군	-0.94%
철원군	-1.02%	구례군	-1.80%	거창군	-0.24%
화천군	0.17%	고흥군	-3.00%	함천군	-1.89%
양구군	0.33%	보성군	-2.32%	제주시	1.82%
인제군	-0.12%	화순군	-0.76%	서귀포시	0.11%
고성군(강원)	0.28%	장흥군	-2.21%	0% 미만	72개 시·군

주: 근무 취업인구는 시·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를 의미하며, 인구주택 총조사 근무지 기준 취업자 통계로부터 구득함

[부도 3] 연평균 인구변화율: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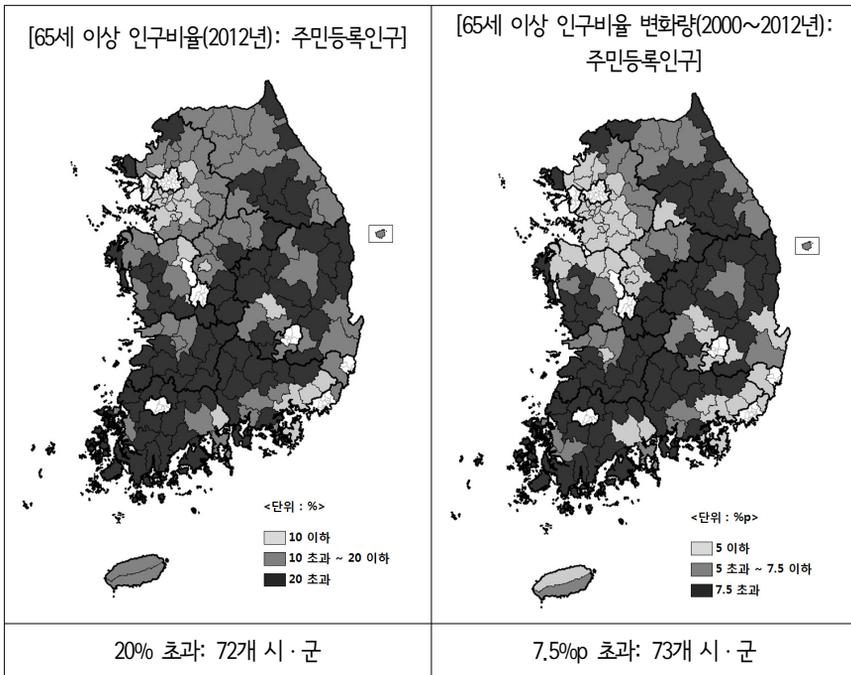
주: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2년)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주민등록인구와 체류 외국인 통계를 이용하여 시·군별 값을 산출함. 인구는 연말기준임

[부표 17]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2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전국	0.65%	양양군	-0.61%	강진군	-1.62%
기장군	3.73%	청주시	1.21%	해남군	-1.89%
달성군	1.53%	충주시	-0.26%	영암군	-0.19%
강화군	0.02%	재천시	-0.54%	무안군	0.76%
용진군	3.08%	청원군	1.97%	함평군	-1.84%
울주군	2.14%	보은군	-1.81%	영광군	-1.92%
수원시	1.58%	옥천군	-1.03%	장성군	-1.41%
성남시	0.57%	영동군	-1.14%	완도군	-1.71%
의정부시	1.49%	진천군	0.71%	진도군	-1.89%
안양시	0.49%	괴산군	-1.23%	신안군	-1.51%
부천시	1.07%	음성군	0.80%	포항시	0.10%
광명시	0.51%	단양군	-1.99%	경주시	-0.61%
평택시	1.85%	증평군	0.56%	김천시	-0.79%
동두천시	2.20%	천안시	2.85%	안동시	-0.68%
안산시	2.33%	공주시	-1.09%	구미시	1.80%
고양시	1.71%	보령시	-0.83%	영주시	-1.15%
과천시	-0.04%	아산시	3.83%	영천시	-1.24%
구리시	1.10%	서산시	0.84%	상주시	-1.44%
남양주시	4.43%	논산시	-0.79%	문경시	-1.35%
오산시	5.62%	계룡시	3.51%	경산시	1.30%
시흥시	2.24%	금산군	-1.09%	군위군	-2.39%
군포시	0.62%	부여군	-1.86%	의성군	-2.36%
의왕시	2.09%	서천군	-1.91%	청송군	-2.07%
하남시	1.50%	청양군	-1.93%	영양군	-1.81%
파주시	7.40%	홍성군	-0.50%	영덕군	-1.87%
이천시	1.06%	예산군	-1.26%	청도군	-1.37%
안성시	2.67%	태안군	-0.67%	고령군	-0.32%
김포시	5.06%	당진시	2.18%	성주군	-0.91%
화성시	9.02%	전주시	0.42%	철곡군	1.27%
광주시	6.03%	군산시	0.12%	예천군	-2.11%
양주시	4.64%	익산시	-0.68%	봉화군	-1.88%
포천시	1.06%	정읍시	-1.90%	울진군	-1.91%
여주시	0.61%	남원시	-1.38%	울릉군	0.44%
연천군	-1.12%	김제시	-1.75%	진주시	-0.03%
가평군	0.78%	완주군	0.37%	통영시	0.35%
양평군	1.85%	진안군	-1.16%	사천시	-0.11%
춘천시	0.77%	무주군	-1.13%	김해시	3.57%
원주시	1.56%	장수군	-2.05%	밀양시	-1.06%
강릉시	-0.53%	임실군	-1.79%	거제시	2.83%
동해시	-0.83%	순창군	-1.11%	양산시	2.92%
태백시	-1.14%	고창군	-1.62%	창원시	0.13%
속초시	-0.56%	부안군	-1.92%	의령군	-0.92%
삼척시	-0.97%	목포시	0.05%	함안군	0.63%
홍천군	-0.49%	여수시	-0.78%	창녕군	-1.07%
횡성군	-0.19%	순천시	0.15%	고성군(경남)	-0.70%
영월군	-1.49%	나주시	-1.61%	남해군	-1.67%
평창군	-0.60%	광양시	0.81%	하동군	-1.25%
정선군	-1.90%	담양군	-1.13%	산청군	-1.07%
철원군	-0.79%	곡성군	-2.28%	함양군	-1.02%
화천군	-0.01%	구례군	-1.74%	거창군	-0.79%
양구군	-0.16%	고흥군	-2.77%	함천군	-1.59%
인제군	-0.22%	보성군	-2.14%	제주시	1.15%
고성군(강원)	-1.25%	화순군	-1.08%	서귀포시	-0.35%
		장흥군	-1.80%	-1% 미만	62개 시·군

주: 연도별 인구는 연말기준이며,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임

[부도 4]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 주민등록인구



- 주 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시·군별 지표 값을 산출함
 주 2: 65세 이상 인구는 연말기준이고 한국인기준임
 주 3: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2년)의 평균은 7.21%p임

[부표 18] 65세 이상 인구비율(2012년): 주민등록인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11.74%	양양군	22.97%	강진군	28.17%
기장군	13.19%	청주시	8.62%	해남군	26.35%
달성군	10.32%	충주시	15.21%	영암군	21.66%
강화군	26.01%	제천시	15.78%	무안군	19.59%
용진군	19.98%	청원군	14.24%	함평군	30.96%
울주군	10.36%	보은군	28.36%	영광군	24.40%
수원시	7.52%	옥천군	22.44%	장성군	25.49%
성남시	9.47%	영동군	25.27%	완도군	27.38%
의정부시	10.77%	진천군	15.73%	진도군	29.50%
안양시	8.63%	괴산군	28.16%	신안군	30.27%
부천시	8.15%	음성군	16.39%	포항시	10.72%
광명시	8.80%	담양군	23.27%	경주시	16.28%
평택시	10.58%	증평군	13.61%	김천시	18.89%
동두천시	14.19%	천안시	8.27%	안동시	18.73%
안산시	6.93%	공주시	18.67%	구미시	6.42%
고양시	9.68%	보령시	19.38%	영주시	19.43%
과천시	10.21%	아산시	10.72%	영천시	22.05%
구리시	8.92%	서산시	14.81%	상주시	24.86%
남양주시	9.91%	논산시	20.31%	문경시	23.18%
오산시	6.58%	계룡시	7.71%	경산시	12.20%
시흥시	6.69%	군산군	23.97%	군위군	33.22%
군포시	8.40%	부여군	26.23%	의성군	33.25%
의왕시	8.82%	서천군	27.99%	청송군	30.12%
하남시	10.47%	청양군	29.55%	영양군	30.91%
용인시	9.52%	홍성군	21.19%	영덕군	30.27%
파주시	11.08%	예산군	23.25%	청도군	29.11%
이천시	10.84%	태안군	23.27%	고령군	23.02%
안성시	13.05%	당진시	15.68%	성주군	24.40%
김포시	10.23%	전주시	10.55%	철곡군	11.62%
화성시	7.97%	군산시	13.21%	예천군	30.68%
광주시	9.51%	익산시	13.78%	봉화군	29.38%
양주시	11.15%	정읍시	21.90%	울진군	23.57%
포천시	13.81%	남원시	21.98%	울릉군	18.87%
여주시	16.08%	김제시	25.23%	진주시	12.51%
연천군	20.50%	완주군	18.91%	통영시	12.75%
가평군	19.86%	진안군	28.69%	사천시	16.50%
양평군	19.37%	무주군	27.84%	김해시	7.71%
춘천시	14.00%	장수군	28.00%	밀양시	20.89%
원주시	11.62%	임실군	30.39%	거제시	7.47%
강릉시	15.45%	순창군	29.39%	양산시	9.57%
동해시	14.25%	고창군	27.56%	창원시	8.81%
태백시	16.19%	부안군	26.21%	의령군	30.58%
속초시	13.80%	목포시	11.32%	함안군	18.80%
삼척시	18.57%	여수시	13.58%	창녕군	25.13%
홍천군	19.87%	순천시	12.09%	고성군(경남)	23.78%
횡성군	23.03%	나주시	24.45%	남해군	31.74%
영월군	22.71%	광양시	9.65%	하동군	27.03%
평창군	20.61%	담양군	26.05%	산청군	30.38%
정선군	20.51%	곡성군	30.97%	함양군	28.55%
철원군	17.68%	구례군	28.75%	거창군	23.12%
화천군	18.40%	고흥군	33.79%	함천군	32.47%
양구군	17.05%	보성군	31.19%	제주시	11.66%
인제군	16.63%	화순군	21.44%	서귀포시	16.76%
고성군(강원)	21.91%	장흥군	28.62%	20% 초과	72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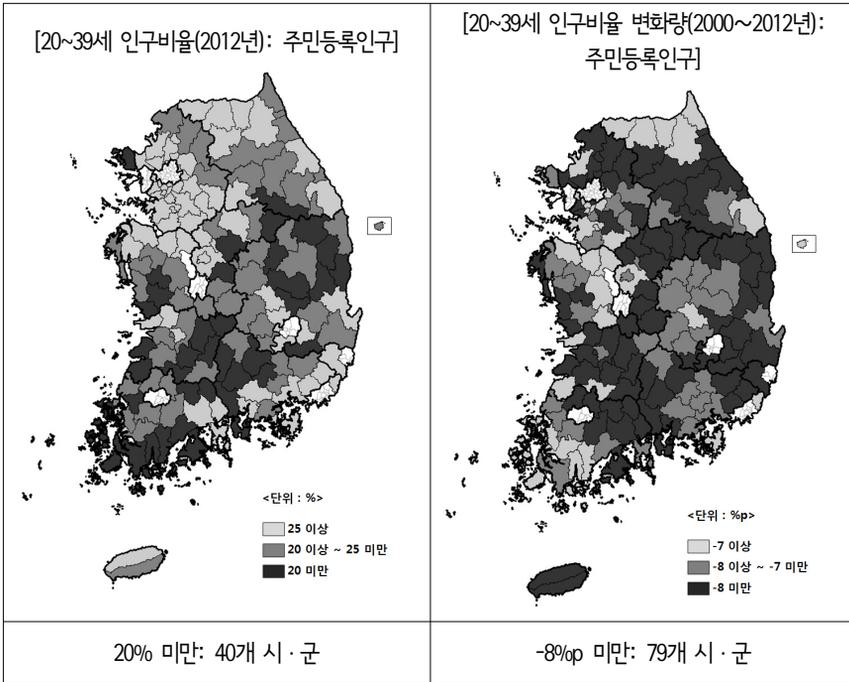
주: 65세 이상 인구는 연말기준임과 동시에, 한국인기준임

[부표 19]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년~2012년): 주민등록인구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전국	4.71%p	양양군	10.37%p	강진군	11.04%p
기장군	3.97%p	청주시	3.35%p	해남군	11.22%p
달성군	3.25%p	충주시	6.08%p	영암군	7.34%p
강화군	10.26%p	제천시	6.93%p	무안군	5.47%p
옹진군	1.24%p	청양군	2.14%p	함평군	12.57%p
울주군	2.96%p	보은군	11.00%p	영광군	11.05%p
수원시	3.25%p	옥천군	8.06%p	장성군	10.32%p
상남시	4.42%p	영동군	10.00%p	완도군	12.76%p
의정부시	5.42%p	진천군	4.63%p	진도군	13.04%p
안양시	3.59%p	괴산군	10.57%p	신안군	13.10%p
부천시	3.46%p	음성군	5.06%p	포항시	4.51%p
광명시	3.60%p	담양군	10.52%p	경주시	6.27%p
평택시	3.64%p	증평군	4.74%p	김천시	6.76%p
동두천시	6.39%p	천안시	2.09%p	안동시	6.54%p
안산시	3.01%p	공주시	6.17%p	구미시	1.59%p
고양시	3.96%p	보령시	7.84%p	영주시	7.74%p
과천시	3.75%p	아산시	1.31%p	영천시	9.01%p
구리시	3.98%p	서산시	4.70%p	상주시	8.85%p
남양주시	3.97%p	논산시	7.23%p	문경시	9.32%p
오산시	2.42%p	계룡시	2.35%p	경산시	4.68%p
사흥시	2.68%p	군산군	9.03%p	군위군	13.88%p
군포시	3.58%p	부여군	10.12%p	의성군	13.57%p
의왕시	3.45%p	서천군	11.20%p	청송군	13.34%p
하남시	4.66%p	청양군	11.61%p	영양군	12.78%p
용인시	4.10%p	홍성군	7.38%p	영덕군	12.83%p
파주시	2.06%p	예산군	9.19%p	철도군	10.20%p
이천시	3.71%p	태안군	10.34%p	고령군	7.30%p
안성시	3.23%p	당진시	3.46%p	성주군	7.83%p
김포시	3.33%p	전주시	4.36%p	철곡군	2.94%p
화성시	-1.33%p	군산시	5.13%p	예천군	11.90%p
광주시	2.95%p	익산시	5.23%p	봉화군	11.79%p
양주시	4.23%p	정읍시	8.66%p	울진군	8.98%p
포천시	5.38%p	남원시	8.41%p	울릉군	5.68%p
여주시	5.87%p	김제시	9.98%p	진주시	5.04%p
연천군	9.09%p	완주군	5.78%p	통영시	4.38%p
가평군	7.13%p	진안군	10.51%p	사천시	5.91%p
양평군	6.07%p	무주군	10.54%p	김해시	2.31%p
춘천시	5.69%p	장수군	11.20%p	밀양시	8.15%p
원주시	3.89%p	임실군	11.77%p	거제시	0.85%p
강릉시	6.85%p	순창군	10.24%p	양산시	3.99%p
동해시	6.54%p	고창군	10.89%p	창원시	3.72%p
태백시	8.92%p	부안군	10.45%p	의령군	9.74%p
속초시	6.30%p	목포시	5.18%p	함안군	4.91%p
삼척시	7.42%p	여수시	5.90%p	창녕군	9.20%p
홍천군	7.93%p	순천시	3.99%p	고성군(경남)	7.53%p
횡성군	9.17%p	나주시	9.20%p	남해군	10.82%p
영월군	9.75%p	광양시	2.96%p	하동군	9.81%p
평창군	9.02%p	담양군	10.37%p	산청군	11.58%p
정선군	9.83%p	곡성군	12.88%p	함양군	10.43%p
철원군	8.12%p	구례군	12.24%p	거창군	7.89%p
화천군	7.31%p	고흥군	14.86%p	함천군	13.06%p
양구군	6.34%p	보성군	12.41%p	제주시	4.28%p
인제군	6.70%p	화순군	8.92%p	서귀포시	7.36%p
고성군(강원)	9.98%p	장흥군	10.75%p	7.5%p 초과	73개 시·군

주: 65세 이상 인구는 연말기준임과 동시에, 한국인기준임

[부도 5]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주민등록인구



주 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시·군별 지표 값을 산출함

주 2: 20~39세 인구는 연말기준이고 한국인기준임

주 3: 시·군별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2년)의 평균은 -7.85%p임

[부표 20] 20~39세 인구비율(2012년): 주민등록인구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전국	29.04%	양양군	21.16%	강진군	19.06%
기장군	28.01%	청주시	30.53%	해남군	19.10%
달성군	28.60%	충주시	25.34%	영암군	23.54%
강화군	18.94%	제천시	24.02%	무안군	23.05%
용진군	25.56%	청원군	29.65%	함평군	17.75%
울주군	27.37%	보은군	17.95%	영광군	21.14%
수원시	32.48%	옥천군	21.50%	장성군	21.17%
상남시	31.29%	영동군	20.50%	완도군	19.30%
의정부시	28.29%	진천군	25.66%	진도군	18.36%
안양시	30.47%	괴산군	18.11%	신안군	18.63%
부천시	31.63%	음성군	24.88%	포항시	27.11%
광명시	31.98%	단양군	19.56%	경주시	24.63%
평택시	29.17%	증평군	28.14%	김천시	24.14%
동두천시	27.09%	천안시	32.35%	안동시	24.00%
안산시	30.98%	공주시	24.10%	구미시	34.11%
고양시	28.11%	보령시	23.04%	영주시	22.08%
과천시	26.69%	아산시	32.33%	영천시	22.52%
구리시	29.44%	서산시	26.31%	상주시	20.11%
남양주시	28.46%	논산시	23.22%	문경시	21.06%
오산시	35.57%	계룡시	25.75%	경산시	29.22%
사흥시	30.57%	금산군	21.04%	군위군	16.53%
군포시	31.35%	부여군	19.12%	의성군	16.57%
의왕시	30.31%	서천군	18.71%	청송군	17.30%
하남시	29.43%	청양군	18.43%	영양군	16.91%
용인시	29.27%	홍성군	22.31%	영덕군	17.49%
파주시	30.00%	예산군	21.31%	청도군	18.29%
이천시	29.60%	태안군	20.84%	고령군	21.60%
안성시	28.74%	당진시	27.71%	성주군	20.13%
김포시	28.54%	전주시	28.42%	철곡군	32.00%
화성시	31.91%	군산시	27.44%	예천군	18.15%
광주시	29.78%	익산시	26.53%	봉화군	17.50%
양주시	27.58%	정읍시	21.99%	울진군	20.47%
포천시	24.94%	남원시	21.32%	울릉군	23.61%
여주시	25.02%	김제시	20.90%	진주시	26.88%
연천군	23.59%	완주군	24.94%	통영시	27.22%
가평군	22.28%	진안군	19.12%	사천시	25.86%
양평군	22.11%	무주군	19.44%	김해시	28.57%
춘천시	26.69%	장수군	18.96%	밀양시	21.55%
원주시	27.56%	임실군	19.06%	거제시	31.92%
강릉시	25.03%	순창군	19.65%	양산시	28.61%
동해시	24.95%	고창군	19.17%	창원시	29.58%
태백시	24.45%	부안군	19.91%	의령군	18.76%
속초시	24.23%	목포시	28.40%	함안군	23.16%
삼척시	25.24%	여수시	25.89%	창녕군	20.44%
홍천군	22.06%	순천시	26.11%	고성군(경남)	21.70%
횡성군	20.15%	나주시	21.74%	남해군	17.12%
영월군	19.83%	광양시	27.22%	하동군	19.06%
평창군	21.03%	담양군	21.21%	산청군	17.19%
정선군	22.90%	곡성군	17.82%	함양군	17.82%
철원군	25.73%	구례군	18.24%	거창군	20.56%
화천군	29.20%	고흥군	15.90%	함천군	17.04%
양구군	27.63%	보성군	17.86%	계주시	26.99%
인제군	27.57%	화순군	21.82%	서귀포시	23.80%
고성군(강원)	24.24%	장흥군	18.69%	20% 미만	40개 시·군

주: 20~39세 인구는 연말기준임과 동시에, 한국인기준임

[부표 21]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2년): 주민등록인구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시·군	변화량
전국	-7.08%p	양양군	-8.93%p	강진군	-6.74%p
기장군	-5.92%p	청주시	-7.15%p	해남군	-7.69%p
달성군	-9.50%p	충주시	-8.58%p	영암군	-6.19%p
강화군	-7.82%p	제천시	-9.01%p	무안군	-5.34%p
용진군	-1.57%p	청원군	-4.15%p	함평군	-7.99%p
울주군	-11.24%p	보은군	-8.68%p	영광군	-7.98%p
수원시	-7.34%p	옥천군	-8.60%p	장성군	-9.18%p
상남시	-6.28%p	영동군	-8.06%p	완도군	-6.57%p
의정부시	-9.98%p	진천군	-8.31%p	진도군	-6.35%p
안양시	-6.14%p	괴산군	-8.78%p	신안군	-5.60%p
부천시	-5.91%p	음성군	-8.39%p	포항시	-7.04%p
광명시	-6.18%p	담양군	-10.54%p	경주시	-9.91%p
평택시	-7.83%p	증평군	-7.12%p	김천시	-7.64%p
동두천시	-8.76%p	천안시	-5.95%p	안동시	-7.64%p
안산시	-10.15%p	공주시	-6.81%p	구미시	-6.76%p
고양시	-8.62%p	보령시	-8.09%p	영주시	-8.87%p
과천시	-9.68%p	아산시	-3.93%p	영천시	-9.38%p
구리시	-7.72%p	서산시	-7.20%p	상주시	-7.37%p
남양주시	-9.00%p	논산시	-6.52%p	문경시	-7.32%p
오산시	-6.41%p	계룡시	-7.73%p	경산시	-9.15%p
시흥시	-10.54%p	군산군	-8.62%p	군위군	-9.64%p
군포시	-6.80%p	부여군	-7.31%p	의성군	-7.88%p
의왕시	-5.72%p	서천군	-8.24%p	청송군	-9.46%p
하남시	-6.51%p	청양군	-8.10%p	영양군	-8.77%p
용인시	-10.39%p	홍성군	-7.01%p	영덕군	-8.63%p
파주시	-5.02%p	예산군	-7.65%p	철도군	-8.34%p
이천시	-7.91%p	태안군	-8.37%p	고령군	-8.82%p
안성시	-5.58%p	당진시	-3.29%p	성주군	-7.77%p
김포시	-8.52%p	전주시	-7.34%p	철곡군	-7.48%p
화성시	-4.13%p	군산시	-7.00%p	예천군	-7.09%p
광주시	-7.26%p	익산시	-8.14%p	봉화군	-9.30%p
양주시	-9.07%p	정읍시	-8.88%p	울진군	-9.43%p
포천시	-9.66%p	남원시	-9.29%p	울릉군	-3.31%p
여주시	-8.13%p	김제시	-9.01%p	진주시	-7.83%p
연천군	-8.41%p	완주군	-8.53%p	통영시	-6.39%p
가평군	-8.52%p	진안군	-8.28%p	사천시	-8.47%p
양평군	-7.71%p	무주군	-7.54%p	김해시	-9.37%p
춘천시	-8.11%p	장수군	-8.29%p	밀양시	-8.67%p
원주시	-7.68%p	임실군	-8.06%p	거제시	-4.55%p
강릉시	-9.00%p	순창군	-5.67%p	양산시	-9.82%p
동해시	-9.48%p	고창군	-6.86%p	창원시	-7.41%p
태백시	-7.76%p	부안군	-8.08%p	의령군	-7.90%p
속초시	-10.16%p	목포시	-6.65%p	함안군	-7.93%p
삼척시	-6.42%p	여수시	-7.61%p	창녕군	-7.86%p
홍천군	-9.26%p	순천시	-8.08%p	고성군(경남)	-7.55%p
횡성군	-9.46%p	나주시	-7.59%p	남해군	-8.40%p
영월군	-10.07%p	광양시	-9.08%p	하동군	-9.93%p
평창군	-10.10%p	담양군	-8.62%p	산청군	-10.62%p
정선군	-7.57%p	곡성군	-9.50%p	함양군	-8.47%p
철원군	-6.73%p	구례군	-9.63%p	거창군	-7.62%p
화천군	-4.01%p	고흥군	-8.53%p	함천군	-8.88%p
양구군	-4.12%p	보성군	-7.33%p	제주시	-9.01%p
인제군	-5.73%p	화순군	-13.10%p	서귀포시	-10.69%p
고성군(강원)	-6.06%p	장흥군	-6.21%p	-8%p 미만	79개 시·군

주: 20~39세 인구는 연말기준임과 동시에, 한국인기준임

[부표 22]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전국 시·군 평균	166,523.28	양양군	25,475	강진군	34,204
기장군	93,783	청주시	666,924	해남군	66,042
달성군	169,227	충주시	203,212	영암군	58,748
강화군	56,633	제천시	134,698	무안군	68,462
용진군	14,550	청원군	143,762	함평군	30,995
울주군	189,038	보은군	30,509	영광군	48,663
수원시	1,071,913	옥천군	49,730	장성군	38,507
상남시	949,964	영동군	46,231	완도군	46,777
의정부시	417,412	진천군	61,915	진도군	28,565
안양시	602,122	괴산군	31,392	신안군	33,222
부천시	853,039	음성군	84,088	포항시	511,390
광명시	329,010	단양군	28,165	경주시	256,150
평택시	388,508	증평군	31,531	김천시	127,889
동두천시	91,828	천안시	574,623	안동시	166,197
안산시	728,775	공주시	122,153	구미시	402,607
고양시	905,076	보령시	97,770	영주시	108,888
과천시	66,704	아산시	278,676	영천시	95,256
구리시	185,550	서산시	156,843	상주시	98,103
남양주시	529,898	논산시	119,222	문경시	69,021
오산시	183,890	계룡시	41,528	경산시	266,036
시흥시	407,090	금산군	52,952	군위군	19,993
군포시	278,083	부여군	67,584	의성군	51,247
의왕시	144,501	서천군	53,914	청송군	24,008
하남시	138,829	청양군	29,755	영양군	16,540
용인시	856,765	홍성군	82,811	영덕군	36,428
파주시	328,128	예산군	77,830	청도군	38,228
이천시	195,175	태안군	53,888	고령군	31,817
안성시	179,782	당진군	137,006	성주군	36,859
김포시	224,350	전주시	649,728	철곡군	114,246
화성시	488,758	군산시	260,546	예천군	43,015
광주시	228,747	익산시	296,366	봉화군	31,242
양주시	187,911	정읍시	110,352	울진군	47,108
포천시	140,997	남원시	78,770	울릉군	7,764
여주시	101,203	김제시	83,302	진주시	337,896
연천군	41,770	완주군	83,408	통영시	129,366
가평군	50,879	진안군	20,446	사천시	107,524
양평군	82,802	무주군	21,827	김해시	494,510
춘천시	276,232	장수군	19,424	밀양시	99,128
원주시	311,449	임실군	23,663	거제시	231,271
강릉시	218,471	순창군	25,241	양산시	252,507
동해시	90,574	고창군	53,333	창원시	1,058,021
태백시	51,558	부안군	50,814	의령군	25,602
속초시	80,791	목포시	249,960	함안군	60,794
삼척시	67,454	여수시	269,937	창녕군	55,189
홍천군	62,888	순천시	258,670	고성군(경남)	51,703
횡성군	37,798	나주시	78,679	남해군	43,919
영월군	35,050	광양시	137,810	하동군	41,862
평창군	37,522	담양군	41,027	산청군	31,898
평안군	35,980	곡성군	27,272	함양군	38,002
철원군	43,271	구례군	22,419	거창군	57,323
화천군	22,119	고흥군	63,392	함천군	43,639
양구군	19,363	보성군	40,166	계주시	401,192
인제군	28,765	화순군	62,219	서귀포시	130,713
고성군(강원)	26,753	장흥군	35,763	5만인 미만	54개 시·군

[부표 23] 인구(2012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전국 시·군 평균	179,668.23	양양군	28,053	강진군	40,554
기장군	116,064	청주시	672,850	해남군	79,032
달성군	187,668	충주시	211,395	영암군	64,023
강화군	67,358	제천시	138,968	무안군	77,208
용진군	20,159	청원군	157,986	함평군	36,304
울주군	214,065	보은군	34,812	영광군	57,802
수원시	1,147,955	옥천군	53,916	장성군	47,404
상남시	994,271	영동군	51,180	완도군	54,516
의정부시	432,760	진천군	66,567	진도군	33,611
안양시	618,230	괴산군	38,316	신안군	44,280
부천시	885,949	음성군	98,279	포항시	523,345
광명시	360,004	담양군	31,482	경주시	270,663
평택시	447,337	증평군	34,707	김천시	137,052
동두천시	99,666	천안시	595,726	안동시	169,720
안산시	758,573	공주시	119,157	구미시	422,292
고양시	981,220	보령시	107,438	영주시	114,374
과천시	71,378	아산시	291,727	영천시	103,969
구리시	193,745	서산시	166,214	상주시	104,992
남양주시	604,864	논산시	129,921	문경시	76,470
오산시	205,245	계룡시	41,703	경산시	252,818
사흥시	420,445	금산군	56,804	군위군	24,553
군포시	292,201	부여군	74,126	의성군	57,533
의왕시	156,003	서천군	59,836	청송군	26,697
하남시	147,890	청양군	32,537	영양군	18,383
용인시	930,058	홍성군	89,990	영덕군	40,795
파주시	402,126	예산군	87,298	청도군	44,638
이천시	209,339	태안군	63,436	고령군	36,789
안성시	188,919	당진군	159,005	성주군	46,267
김포시	299,119	전주시	654,040	칠곡군	122,984
화성시	550,649	군산시	282,762	예천군	46,425
광주시	284,762	익산시	310,206	봉화군	34,183
양주시	207,321	정읍시	121,234	울진군	52,681
포천시	168,145	남원시	87,797	울릉군	10,797
여주시	111,929	김제시	93,970	진주시	341,221
연천군	46,328	완주군	88,101	통영시	143,039
가평군	61,788	진안군	27,253	사천시	117,968
양평군	103,331	무주군	25,510	김해시	528,730
춘천시	276,131	장수군	23,490	밀양시	109,967
원주시	326,321	임실군	30,264	거제시	245,972
강릉시	219,274	순창군	30,343	양산시	274,770
동해시	94,440	고창군	61,048	창원시	1,106,081
태백시	49,756	부안군	59,353	의령군	31,027
속초시	84,279	목포시	247,215	함안군	70,443
삼척시	73,194	여수시	295,215	창녕군	64,297
홍천군	70,401	순천시	275,451	고성군(경남)	58,553
횡성군	45,104	나주시	89,675	남해군	48,899
영월군	40,439	광양시	152,224	하동군	51,235
평창군	43,912	담양군	48,361	산청군	36,079
정선군	40,240	곡성군	31,299	함양군	41,155
철원군	48,469	구례군	27,282	거창군	63,536
화천군	25,194	고흥군	72,152	함천군	50,713
양구군	23,039	보성군	47,382	제주시	435,413
인제군	32,769	화순군	69,216	서귀포시	157,036
고성군(강원)	30,516	장흥군	43,014	5만인 미만	48개 시·군

주: 인구는 연말기준임

[부표 24] 행정구역 면적

시·군	면적(km ²)	시·군	면적(km ²)	시·군	면적(km ²)
전국 시·군 평균	602.4	양양군	629.9	강진군	500.5
기장군	218.3	청주시	153.5	해남군	1012.8
달성군	426.6	충주시	983.7	영암군	603.5
강화군	411.4	제천시	883.2	무안군	448.9
용진군	172.0	청원군	786.8	함평군	392.3
울주군	757.1	보은군	584.2	영광군	475.0
수원시	121.0	옥천군	537.1	장성군	518.5
상남시	141.7	영동군	845.4	완도군	396.2
의정부시	81.5	진천군	407.3	진도군	439.9
안양시	58.5	괴산군	841.9	신안군	655.5
부천시	53.4	음성군	520.3	포항시	1129.6
광명시	38.5	담양군	781.0	경주시	1324.5
평택시	457.5	증평군	81.8	김천시	1009.2
동두천시	95.7	철안시	636.1	안동시	1521.9
안산시	149.1	공주시	864.3	구미시	615.4
고양시	267.4	보령시	569.3	영주시	669.0
과천시	35.9	아산시	542.2	영천시	919.3
구리시	33.3	서산시	740.8	상주시	1254.8
남양주시	458.0	논산시	554.8	문경시	911.6
오산시	42.8	계룡시	60.7	경산시	411.8
사흥시	135.0	금산군	576.7	군위군	614.2
군포시	36.5	부여군	624.6	의성군	1175.3
의왕시	54.0	서천군	358.1	청송군	846.1
하남시	93.0	청양군	479.2	영양군	815.1
파주시	591.4	홍성군	444.0	영덕군	741.1
이천시	461.3	예산군	542.3	청도군	693.9
안성시	553.4	태안군	516.1	고령군	384.1
김포시	276.6	당진군	694.9	성주군	616.1
화성시	689.6	전주시	206.0	철곡군	450.9
광주시	431.0	군산시	394.9	예천군	661.1
양주시	310.3	익산시	506.6	봉화군	1201.5
포천시	826.6	정읍시	692.8	울진군	989.4
여주시	608.0	남원시	752.4	울릉군	72.9
연천군	676.0	김제시	544.9	진주시	712.8
가평군	843.6	완주군	820.8	통영시	239.2
양평군	877.8	진안군	789.2	사천시	398.6
춘천시	1116.4	무주군	631.9	김해시	462.8
원주시	872.4	장수군	533.4	밀양시	798.6
강릉시	1040.2	임실군	597.2	거제시	402.0
동해시	180.2	순창군	495.9	양산시	485.4
태백시	303.5	고창군	607.7	창원시	745.3
속초시	105.6	부안군	493.1	의령군	482.9
삼척시	1186.7	목포시	50.2	함안군	416.9
홍천군	1819.7	여수시	503.8	창녕군	532.8
횡성군	997.6	순천시	907.4	고성군(경남)	517.7
영월군	1127.6	나주시	608.6	남해군	357.6
평창군	1463.6	광양시	458.9	하동군	675.2
정선군	1219.7	담양군	455.0	산청군	794.8
철원군	889.4	곡성군	547.4	함양군	725.5
화천군	908.7	구례군	443.2	거창군	803.2
양구군	702.2	고흥군	776.5	합천군	983.5
인제군	1645.6	보성군	663.6	계주시	977.8
고성군(강원)	664.6	화순군	786.8	서귀포시	871.0
		장흥군	622.4	500km ² 미만	61개 시·군

[부표 25] 주민등록인구(2012년)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전국 시·군 평균	176,276.48	양양군	27,802	강진군	40,241
기장군	114,566	청주시	666,852	해남군	78,150
달성군	184,366	충주시	208,447	영암군	59,997
강화군	66,752	제천시	137,521	무안군	75,741
용진군	20,039	청원군	154,780	함평군	35,780
울주군	207,840	보은군	34,438	영광군	57,224
수원시	1,120,258	옥천군	53,244	장성군	46,289
상남시	978,615	영동군	50,663	완도군	53,871
의정부시	429,147	진천군	63,458	진도군	33,208
안양시	611,412	괴산군	37,713	신안군	43,898
부천시	869,944	음성군	92,980	포항시	518,913
광명시	355,560	담양군	31,253	경주시	264,091
평택시	434,305	증평군	34,279	김천시	135,504
동두천시	97,175	천안시	581,988	안동시	168,302
안산시	715,108	공주시	117,298	구미시	416,949
고양시	969,916	보령시	105,559	영주시	113,547
과천시	71,068	아산시	280,490	영천시	101,798
구리시	192,341	서산시	163,315	상주시	104,182
남양주시	599,539	논산시	126,653	문경시	75,899
오산시	200,291	계룡시	41,550	경산시	246,358
사흥시	399,485	금산군	55,715	군위군	24,119
군포시	286,841	부여군	73,259	의성군	57,043
의왕시	154,757	서천군	58,920	청송군	26,481
하남시	146,269	청양군	32,087	영양군	18,208
영인시	915,959	홍성군	88,415	영덕군	40,257
파주시	394,201	예산군	85,876	청도군	43,968
이천시	204,917	태안군	62,548	고령군	35,343
안성시	181,608	당진군	155,104	성주군	45,127
김포시	287,432	전주시	648,863	칠곡군	119,786
화성시	525,490	군산시	278,341	예천군	46,027
광주시	275,656	익산시	306,469	봉화군	33,934
양주시	200,310	정읍시	119,392	울진군	51,844
포천시	157,559	남원시	87,000	울릉군	10,673
여주시	109,550	김제시	92,317	진주시	337,314
연천군	45,599	완주군	86,164	통영시	139,347
가평군	60,794	진안군	26,963	사천시	115,321
양평군	102,193	무주군	25,321	김해시	513,260
춘천시	273,364	장수군	23,191	밀양시	108,755
원주시	323,885	임실군	29,956	거제시	236,944
강릉시	217,741	순창군	30,055	양산시	270,460
동해시	93,897	고창군	60,440	창원시	1,091,471
태백시	49,493	부안군	58,869	의령군	30,329
속초시	83,579	목포시	245,073	함안군	67,425
삼척시	72,463	여수시	292,217	창녕군	62,966
홍천군	69,727	순천시	273,798	고성군(경남)	56,906
횡성군	44,615	나주시	88,067	남해군	48,223
영월군	40,155	광양시	150,837	하동군	50,806
평창군	43,627	담양군	47,612	산청군	35,691
정선군	39,915	곡성군	30,878	함양군	40,714
철원군	47,968	구례군	27,077	거창군	63,103
화천군	25,020	고흥군	71,560	함천군	50,279
양구군	22,799	보성군	47,050	제주시	429,656
인제군	32,456	화순군	68,378	서귀포시	154,057
고성군(강원)	30,124	장흥군	42,672	5만인 미만	48개 시·군

주: 인구는 연말기준임

[부표 26] 체류외국인(2012년)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전국 시·군 평균	3,391.75	양양군	251	강진군	313
기장군	1,498	청주시	5,998	해남군	882
달성군	3,302	충주시	2,948	영암군	4,026
강화군	606	제천시	1,447	무안군	1,467
용진군	120	청원군	3,206	함평군	524
울주군	6,225	보은군	374	영광군	578
수원시	27,697	옥천군	672	장성군	1,115
상남시	15,656	영동군	517	완도군	645
의정부시	3,613	진천군	3,109	진도군	403
안양시	6,818	괴산군	603	신안군	382
부천시	16,005	음성군	5,299	포항시	4,432
광명시	4,444	담양군	229	경주시	6,572
평택시	13,032	증평군	428	김천시	1,548
동두천시	2,491	천안시	13,738	안동시	1,418
안산시	43,465	공주시	1,859	구미시	5,343
고양시	11,304	보령시	1,879	영주시	827
과천시	310	아산시	11,237	영천시	2,171
구리시	1,404	서산시	2,899	상주시	810
남양주시	5,325	논산시	3,268	문경시	571
오산시	4,954	계룡시	153	경산시	6,460
사흥시	20,960	금산군	1,089	군위군	434
군포시	5,360	부여군	867	의성군	490
의왕시	1,246	서천군	916	청송군	216
하남시	1,621	청양군	450	영양군	175
파주시	14,099	홍성군	1,575	영덕군	538
파주시	7,925	예산군	1,422	청도군	670
이천시	4,422	태안군	888	고령군	1,446
안성시	7,311	당진군	3,901	성주군	1,140
김포시	11,687	전주시	5,177	철곡군	3,198
화성시	25,159	군산시	4,421	예천군	398
광주시	9,106	익산시	3,737	봉화군	249
양주시	7,011	정읍시	1,842	울진군	837
포천시	10,586	남원시	797	울릉군	124
여주시	2,379	김제시	1,653	진주시	3,907
연천군	729	완주군	1,937	통영시	3,692
가평군	994	진안군	290	사천시	2,647
양평군	1,138	무주군	189	김해시	15,470
춘천시	2,767	장수군	299	밀양시	1,212
원주시	2,436	임실군	308	거제시	9,028
강릉시	1,533	순창군	288	양산시	4,310
동해시	543	고창군	608	창원시	14,610
태백시	263	부안군	484	의령군	698
속초시	700	목포시	2,142	함안군	3,018
삼척시	731	여수시	2,998	창녕군	1,331
홍천군	674	순천시	1,653	고성군(경남)	1,647
횡성군	489	나주시	1,608	남해군	676
영월군	284	광양시	1,387	하동군	429
평창군	285	담양군	749	산청군	388
정선군	325	곡성군	421	함양군	441
철원군	501	구례군	205	거창군	433
화천군	174	고흥군	592	함천군	434
양구군	240	보성군	332	제주시	5,757
인제군	313	화순군	838	서귀포시	2,979
고성군(강원)	392	장흥군	342	1000인 미만	73개 시·군

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체류외국인통계(등록 외국인수)를 사용함

[부표 27] 인구밀도(2010년):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시·군	밀도(인/km ²)	시·군	밀도(인/km ²)	시·군	밀도(인/km ²)
전국	484.79	양양군	40.5	강진군	68.4
기장군	430.1	청주시	4,346.2	해남군	65.7
달성군	396.3	충주시	206.6	영암군	97.7
강화군	137.7	제천시	152.5	무안군	152.9
용진군	84.7	청원군	176.6	함평군	79.0
울주군	250.0	보은군	52.2	영광군	102.7
수원시	8,858.1	옥천군	92.6	장성군	74.3
상남시	6,703.1	영동군	54.7	완도군	118.1
의정부시	5,119.1	진천군	152.0	진도군	64.9
안양시	10,299.7	괴산군	37.3	신안군	50.7
부천시	15,962.6	음성군	161.6	포항시	453.0
광명시	8,545.7	담양군	36.1	경주시	193.4
평택시	852.5	증평군	385.3	김천시	126.7
동두천시	959.9	철안시	903.2	안동시	109.2
안산시	4,889.1	공주시	129.9	구미시	654.1
고양시	3,384.6	보령시	171.8	영주시	162.8
과천시	1,860.1	아산시	514.0	영천시	103.5
구리시	5,572.1	서산시	211.8	상주시	78.2
남양주시	1,156.9	논산시	214.9	문경시	75.7
오산시	4,299.5	계룡시	683.3	경산시	646.2
사흥시	3,014.8	금산군	91.9	군위군	32.5
군포시	7,648.0	부여군	108.2	의성군	43.6
의왕시	2,675.4	서천군	150.6	청송군	28.4
하남시	1,491.7	청양군	62.1	영양군	20.3
파주시	1,448.8	홍성군	186.5	영덕군	49.2
이천시	487.7	예산군	143.5	청도군	55.1
이천시	423.1	태안군	106.7	고령군	82.8
안성시	324.8	당진군	197.4	성주군	59.8
김포시	810.9	전주시	3,153.9	철곡군	253.4
화성시	709.1	군산시	659.7	예천군	65.1
광주시	530.8	익산시	585.0	봉화군	26.0
양주시	605.7	정읍시	159.3	울진군	47.6
포천시	170.6	남원시	104.7	울릉군	106.6
여주시	166.5	김제시	152.9	진주시	474.0
연천군	61.9	완주군	101.6	통영시	541.6
가평군	60.3	진안군	25.9	사천시	270.0
양평군	94.3	무주군	34.5	김해시	1067.5
춘천시	247.4	장수군	36.4	밀양시	124.1
원주시	356.9	임실군	39.6	거제시	575.9
강릉시	210.1	순창군	50.9	양산시	520.4
동해시	502.7	고창군	87.8	창원시	1421.6
태백시	169.9	부안군	103.1	의령군	53.0
속초시	766.8	목포시	4,991.2	함안군	145.8
삼척시	56.9	여수시	536.9	창녕군	103.6
홍천군	34.6	순천시	285.2	고성군(경남)	99.95
횡성군	37.9	나주시	129.3	남해군	122.8
영월군	31.1	광양시	302.0	하동군	62.0
평창군	25.6	담양군	90.2	산청군	40.1
정선군	29.5	곡성군	49.8	함양군	52.4
철원군	48.2	구례군	50.6	거창군	71.3
화천군	24.4	고흥군	81.7	함천군	44.4
양구군	27.6	보성군	60.5	제주시	410.3
인제군	17.5	화순군	79.1	서귀포시	150.1
고성군(강원)	40.5	장흥군	57.9	100인/km ² 미만	63개 시·군

[부표 28] 인구밀도(2012년): 행정구역 면적 대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시·군	밀도(인/㎢)	시·군	밀도(인/㎢)	시·군	밀도(인/㎢)
전국	517.43	양양군	44.54	강진군	81.03
기장군	531.75	청주시	4,384.82	해남군	78.03
달성군	439.92	충주시	214.90	영암군	106.09
강화군	163.75	제천시	157.34	무안군	171.98
용진군	117.21	청원군	200.79	함평군	92.55
울주군	282.74	보은군	59.59	영광군	121.68
수원시	9,485.66	옥천군	100.39	장성군	91.43
상남시	7,018.71	영동군	60.54	완도군	137.61
의정부시	5,307.33	진천군	163.45	진도군	76.41
안양시	10,575.27	괴산군	45.51	신안군	67.55
부천시	16,578.39	음성군	188.88	포항시	463.32
광명시	9,345.90	단양군	40.31	경주시	204.35
평택시	977.85	증평군	424.14	김천시	135.81
동두천시	1,041.88	천안시	936.56	안동시	111.52
안산시	5,089.04	공주시	137.87	구미시	686.19
고양시	3,669.35	보령시	188.71	영주시	170.95
과천시	1,990.46	아산시	538.06	영천시	113.10
구리시	5,816.42	서산시	224.37	상주시	83.67
남양주시	1,320.75	논산시	234.18	문경시	83.88
오산시	4,798.81	계룡시	687.03	경산시	613.96
사흥시	3,113.72	금산군	98.50	군위군	39.97
군포시	8,014.29	부여군	118.68	의성군	48.95
의왕시	2,888.41	서천군	167.12	청송군	31.55
하남시	1,589.53	청양군	67.90	영양군	22.55
용인시	1,572.72	홍성군	202.69	영덕군	55.05
파주시	597.81	예산군	160.97	청도군	64.33
이천시	453.80	태안군	122.90	고령군	95.78
안성시	341.35	당진군	228.82	성주군	75.09
김포시	1,081.26	전주시	3,174.49	철곡군	272.73
화성시	798.53	군산시	716.13	예천군	70.22
광주시	660.72	익산시	612.31	봉화군	28.45
양주시	668.11	정읍시	175.00	울진군	53.25
포천시	203.42	남원시	116.69	울릉군	148.17
여주시	184.09	김제시	172.46	진주시	478.68
연천군	68.54	완주군	107.34	통영시	597.94
가평군	73.24	진안군	34.53	사천시	295.94
양평군	117.72	무주군	40.37	김해시	1,142.41
춘천시	247.33	장수군	44.04	밀양시	137.70
원주시	374.04	임실군	50.68	거제시	611.82
강릉시	210.80	순창군	61.19	양산시	566.13
동해시	524.08	고창군	100.45	창원시	1,484.04
태백시	163.96	부안군	120.37	의령군	64.25
속초시	798.25	목포시	4,923.62	함안군	168.98
삼척시	61.68	여수시	585.94	창녕군	120.68
홍천군	38.69	순천시	303.55	고성군(경남)	113.10
횡성군	45.21	나주시	147.35	남해군	136.76
영월군	35.86	광양시	331.72	하동군	75.88
평창군	30.00	담양군	106.30	산청군	45.39
정선군	32.99	곡성군	57.17	함양군	56.73
철원군	54.49	구례군	61.55	거창군	79.11
화천군	27.73	고흥군	92.92	함천군	51.56
양구군	32.81	보성군	71.41	제주시	445.32
인제군	19.91	화순군	87.97	서귀포시	180.30
고성군(강원)	45.92	장흥군	69.11	100인/㎢ 미만	56개 시·군

주: 인구는 연말기준임

[부표 29] 65세 이상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전국 시·군 평균	20,812.49	양양군	5,932	강진군	11,027
기장군	12,610	청주시	53,982	해남군	19,730
달성군	17,082	충주시	30,470	영암군	12,719
강화군	15,468	제천시	21,057	무안군	14,274
용진군	3,257	청원군	22,123	함평군	11,000
울주군	19,233	보은군	9,887	영광군	13,510
수원시	74,258	옥천군	12,209	장성군	11,301
상남시	80,850	영동군	12,488	완도군	14,406
의정부시	41,721	진천군	9,806	진도군	9,579
안양시	47,819	괴산군	10,433	신안군	12,231
부천시	63,789	음성군	13,953	포항시	53,078
광명시	26,727	단양군	7,161	경주시	41,526
평택시	39,284	증평군	4,390	김천시	25,495
동두천시	12,777	천안시	44,420	안동시	32,007
안산시	45,805	공주시	23,182	구미시	24,233
고양시	84,359	보령시	19,575	영주시	22,143
과천시	6,132	아산시	27,235	영천시	22,370
구리시	14,868	서산시	22,958	상주시	26,049
남양주시	49,928	논산시	25,169	문경시	17,711
오산시	11,029	계룡시	2,895	경산시	28,800
사흥시	24,587	금산군	13,362	군위군	7,805
군포시	21,582	부여군	19,690	의성군	19,663
의왕시	12,025	서천군	16,485	청송군	7,974
하남시	13,199	청양군	9,635	영양군	5,804
용인시	75,988	홍성군	18,095	영덕군	12,119
파주시	36,296	예산군	19,187	청도군	12,759
이천시	20,486	태안군	12,870	고령군	8,108
안성시	22,421	당진시	22,470	성주군	10,745
김포시	23,143	전주시	63,176	철곡군	13,257
화성시	36,267	군산시	33,332	예천군	14,809
광주시	20,802	익산시	39,564	봉화군	10,261
양주시	19,963	정읍시	25,854	울진군	12,148
포천시	19,186	남원시	18,477	울릉군	1,619
여주시	16,510	김제시	23,091	진주시	40,306
연천군	8,756	완주군	15,941	통영시	16,513
가평군	10,568	진안군	7,349	사천시	18,086
양평군	17,442	무주군	6,861	김해시	36,503
춘천시	35,367	장수군	6,292	밀양시	22,268
원주시	35,093	임실군	8,859	거제시	15,941
강릉시	31,619	순창군	8,867	양산시	22,814
동해시	12,885	고창군	16,913	창원시	87,067
태백시	8,028	부안군	15,008	의령군	9,251
속초시	10,760	목포시	26,489	함안군	12,268
삼척시	13,043	여수시	36,043	창녕군	16,073
홍천군	13,199	순천시	31,169	고성군(경남)	13,143
횡성군	9,342	나주시	21,564	남해군	15,064
영월군	8,708	광양시	13,454	하동군	13,272
평창군	8,269	담양군	12,321	산청군	10,710
정선군	7,592	곡성군	9,368	함양군	11,706
철원군	7,728	구례군	7,376	거창군	14,169
화천군	4,205	고흥군	24,129	함천군	16,194
양구군	3,642	보성군	14,578	제주시	44,843
인제군	4,968	화순군	14,740	서귀포시	22,965
고성군(강원)	6,031	장흥군	11,952	2만인 초과	58개 시·군

주: 65세 이상 인구는 한국인기준임

[부표 30] 65세 이상 인구(2012년): 주민등록인구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시·군	인구 수
전국	22,359,07	양양군	6,387	강진군	11,335
기장군	15,114	청주시	57,500	해남군	20,593
달성군	19,033	충주시	31,704	영암군	12,994
강화군	17,363	제천시	21,701	무안군	14,839
용진군	4,003	청원군	22,037	함평군	11,077
울주군	21,532	보은군	9,766	영광군	13,965
수원시	84,211	옥천군	11,950	장성군	11,798
상남시	92,664	영동군	12,805	완도군	14,751
의정부시	46,222	진천군	9,980	진도군	9,796
안양시	52,773	괴산군	10,621	신안군	13,288
부천시	70,920	음성군	15,243	포항시	55,602
광명시	31,301	담양군	7,273	경주시	42,997
평택시	45,938	증평군	4,665	김천시	25,603
동두천시	13,791	천안시	48,155	안동시	31,527
안산시	49,523	공주시	21,894	구미시	26,773
고양시	93,853	보령시	20,453	영주시	22,065
과천시	7,258	아산시	30,079	영천시	22,447
구리시	17,158	서산시	24,195	상주시	25,903
남양주시	59,429	논산시	25,728	문경시	17,591
오산시	13,189	계룡시	3,203	경산시	30,060
사흥시	26,709	금산군	13,357	군위군	8,012
군포시	24,089	부여군	19,214	의성군	18,965
의왕시	13,657	서천군	16,491	청송군	7,977
하남시	15,315	청양군	9,481	영양군	5,629
용인시	87,192	홍성군	18,735	영덕군	12,186
파주시	43,695	예산군	19,970	청도군	12,797
이천시	22,216	태안군	14,557	고령군	8,136
안성시	23,692	당진시	24,328	성주군	11,009
김포시	29,408	전주시	68,434	철곡군	13,914
화성시	41,897	군산시	36,763	예천군	14,123
광주시	26,215	익산시	42,234	봉화군	9,971
양주시	22,338	정읍시	26,141	울진군	12,218
포천시	21,753	남원시	19,121	울릉군	2,014
여주시	17,619	김제시	23,295	진주시	42,193
연천군	9,347	완주군	16,294	통영시	17,772
가평군	12,076	진안군	7,736	사천시	19,024
양평군	19,794	무주군	7,049	김해시	39,588
춘천시	38,278	장수군	6,493	밀양시	22,721
원주시	37,620	임실군	9,104	거제시	17,710
강릉시	33,639	순창군	8,832	양산시	25,896
동해시	13,379	고창군	16,659	창원시	96,199
태백시	8,014	부안군	15,431	의령군	9,274
속초시	11,532	목포시	27,753	함안군	12,675
삼척시	13,454	여수시	39,671	창녕군	15,821
홍천군	13,852	순천시	33,101	고성군(경남)	13,532
횡성군	10,277	나주시	21,535	남해군	15,308
영월군	9,120	광양시	14,549	하동군	13,735
평창군	8,992	담양군	12,402	산청군	10,844
정선군	8,185	곡성군	9,562	함양군	11,624
철원군	8,479	구례군	7,784	거창군	14,591
화천군	4,603	고흥군	24,183	합천군	16,324
양구군	3,887	보성군	14,675	계주시	50,099
인제군	5,396	화순군	14,662	서귀포시	25,826
고성군(강원)	6,600	장흥군	12,211	2만인 초과	63개 시·군

주: 65세 이상 인구는 연말기준임과 동시에, 한국인기준임

[부표 31] 인구과소지역 세부요건 B-1 충족 시·군

시·군	요건 충족	시·군	요건 충족	시·군	요건 충족
전국	74개 시·군	양양군	1	강진군	1
기장군	0	청주시	0	해남군	1
달성군	0	충주시	0	영암군	0
강화군	1	제천시	0	무안군	1
용진군	0	청원군	0	함평군	1
울주군	0	보은군	1	영광군	1
수원시	0	옥천군	1	장성군	1
상남시	0	영동군	1	완도군	1
의정부시	0	진천군	0	진도군	1
안양시	0	괴산군	1	신안군	1
부천시	0	음성군	0	포항시	0
광명시	0	단양군	1	경주시	0
평택시	0	증평군	0	김천시	1
동두천시	0	천안시	0	안동시	1
안산시	0	공주시	0	구미시	0
고양시	0	보령시	1	영주시	1
과천시	0	아산시	0	영천시	1
구리시	0	서산시	0	상주시	1
남양주시	0	논산시	0	문경시	1
오산시	0	계룡시	0	경산시	0
사천시	0	금산군	1	군위군	1
군포시	0	부여군	1	의성군	1
의왕시	0	서천군	1	청송군	1
하남시	0	청양군	1	영양군	1
용인시	0	홍성군	0	영덕군	1
파주시	0	예산군	0	청도군	1
이천시	0	태안군	0	고령군	0
안성시	0	당진시	0	성주군	1
김포시	0	전주시	0	철곡군	0
화성시	0	군산시	0	예천군	1
광주시	0	익산시	0	봉화군	1
양주시	0	정읍시	1	울진군	1
포천시	0	남원시	1	울릉군	1
여주시	0	김제시	1	진주시	0
연천군	0	완주군	0	통영시	0
가평군	0	진안군	1	사천시	0
양평군	0	무주군	1	김해시	0
춘천시	0	장수군	1	밀양시	0
원주시	0	임실군	1	거제시	0
강릉시	0	순창군	1	양산시	0
동해시	0	고창군	1	창원시	0
태백시	1	부안군	1	의령군	1
속초시	0	목포시	0	함안군	0
삼척시	1	여수시	0	창녕군	0
홍천군	1	순천시	0	고성군(경남)	0
횡성군	1	나주시	1	남해군	1
영월군	1	광양시	0	하동군	1
평창군	1	담양군	1	산청군	1
정선군	0	곡성군	1	함양군	1
철원군	1	구례군	1	거창군	1
화천군	1	고흥군	1	합천군	1
양구군	1	보성군	1	제주시	-
인제군	1	화순군	1	서귀포시	-
고성군(강원)	1	장흥군	1	-	-

주: 1은 요건 충족; 0은 요건 미충족, 자료 구득 상의 한계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세부요건 B-1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부표 32] 인구과소지역 세부요건 B-2 총족 시·군

시·군	요건 총족	시·군	요건 총족	시·군	요건 총족
전국	71개 시·군	양양군	1	강진군	1
기장군	0	청주시	0	해남군	1
달성군	0	충주시	0	영암군	0
강화군	1	제천시	0	무안군	0
용진군	0	청원군	0	함평군	1
울주군	0	보은군	1	영광군	1
수원시	0	옥천군	1	장성군	1
상남시	0	영동군	1	완도군	1
의정부시	0	진천군	0	진도군	1
안양시	0	괴산군	1	신안군	1
부천시	0	음성군	0	포항시	0
광명시	0	단양군	1	경주시	0
평택시	0	증평군	0	김천시	0
동두천시	0	천안시	0	안동시	0
안산시	0	공주시	0	구미시	0
고양시	0	보령시	0	영주시	1
과천시	0	아산시	0	영천시	1
구리시	0	서산시	0	상주시	1
남양주시	0	논산시	0	문경시	1
오산시	0	계룡시	0	경산시	0
사천시	0	금산군	1	군위군	1
군포시	0	부여군	1	의성군	1
의왕시	0	서천군	1	청송군	1
하남시	0	청양군	1	영양군	1
용인시	0	홍성군	0	영덕군	1
파주시	0	예산군	1	청도군	1
이천시	0	태안군	1	고령군	1
안성시	0	당진시	0	성주군	1
김포시	0	전주시	0	철곡군	0
화성시	0	군산시	0	예천군	1
광주시	0	익산시	0	봉화군	1
양주시	0	정읍시	1	울진군	1
포천시	0	남원시	1	울릉군	1
여주시	0	김제시	1	진주시	0
연천군	1	완주군	0	통영시	0
가평군	0	진안군	1	사천시	0
양평군	0	무주군	1	김해시	0
춘천시	0	장수군	1	밀양시	1
원주시	0	임실군	1	거제시	0
강릉시	0	순창군	1	양산시	0
동해시	0	고창군	1	창원시	0
태백시	0	부안군	1	의령군	1
속초시	0	목포시	0	함안군	0
삼척시	0	여수시	0	창녕군	1
홍천군	1	순천시	0	고성군(경남)	0
횡성군	1	나주시	1	남해군	1
영월군	1	광양시	0	하동군	1
평창군	1	담양군	1	산청군	1
정선군	1	곡성군	1	함양군	1
철원군	0	구례군	1	거창군	1
화천군	0	고흥군	1	함천군	1
양구군	0	보성군	1	계주시	0
인제군	0	화순군	1	서귀포시	0
고성군(강원)	1	장흥군	1	-	-

주: 1은 요건 총족; 0은 요건 미총족

[부표 33] 인구과소지역 세부요건 B-3 총족 시·군

시·군	요건 총족	시·군	요건 총족	시·군	요건 총족
전국	41개 시·군	양양군	0	강진군	0
가장군	0	청주시	0	해남군	1
달성군	0	충주시	0	영암군	0
강화군	0	제천시	0	무안군	0
용진군	0	청원군	0	함평군	1
울주군	0	보은군	1	영광군	1
수원시	0	옥천군	0	장성군	1
상남시	0	영동군	1	완도군	1
의정부시	0	진천군	0	진도군	1
안양시	0	괴산군	1	신안군	1
부천시	0	음성군	0	포항시	0
광명시	0	단양군	1	경주시	0
평택시	0	증평군	0	김천시	0
동두천시	0	천안시	0	안동시	0
안산시	0	공주시	0	구미시	0
고양시	0	보령시	0	영주시	0
과천시	0	아산시	0	영천시	0
구리시	0	서산시	0	상주시	0
남양주시	0	논산시	0	문경시	1
오산시	0	계룡시	0	경산시	0
사천시	0	금산군	0	군위군	1
군포시	0	부여군	0	의성군	0
의왕시	0	서천군	1	청송군	1
하남시	0	청양군	1	영양군	1
용인시	0	홍성군	0	영덕군	0
파주시	0	예산군	1	청도군	1
이천시	0	태안군	1	고령군	1
안성시	0	당진시	0	성주군	1
김포시	0	전주시	0	철곡군	0
화성시	0	군산시	0	예천군	0
광주시	0	익산시	0	봉화군	0
양주시	0	정읍시	0	울진군	1
포천시	0	남원시	1	울릉군	1
여주시	0	김제시	0	진주시	0
연천군	0	완주군	0	통영시	0
가평군	0	진안군	1	사천시	0
양평군	0	무주군	1	김해시	0
춘천시	0	장수군	0	밀양시	1
원주시	0	임실군	0	거제시	0
강릉시	0	순창군	0	양산시	0
동해시	0	고창군	0	창원시	0
태백시	0	부안군	0	의령군	1
속초시	0	목포시	0	함안군	0
삼척시	0	여수시	0	창녕군	1
홍천군	0	순천시	0	고성군(경남)	0
횡성군	1	나주시	0	남해군	0
영월군	1	광양시	0	하동군	1
평창군	1	담양군	1	산청군	1
정선군	0	곡성군	1	함양군	0
철원군	0	구례군	1	거창군	0
화천군	0	고흥군	1	합천군	1
양구군	0	보성군	1	계주시	0
인제군	0	화순군	0	서귀포시	0
고성군(강원)	0	장흥군	0	-	-

주: 1은 요건 총족; 0은 요건 미총족

4. 공공시설 관련 우리나라 법적 용어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동법 제2조제6호)의 범주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범주는 개별 시설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포함한다.

[부표 34]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범주	개별 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주민공동이용시설(동법 제2조 제5호)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도정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기초생활인프라를 국민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기초서비스시설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공간이 될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한다.

[부표 3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부문	기초생활인프라
교통시설	공공주차장
공간시설	생활권공원, 근린광장
유통·공급시설	상수도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재시설	저류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5.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의 규정

우리나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표 36]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p>1. 공연시설</p> <p>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p> <p>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p> <p>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p> <p>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p> <p>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p> <p>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p>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p> <p>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p> <p>2. 전시시설</p> <p>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p> <p>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p> <p>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p> <p>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p> <p>3. 도서시설</p> <p>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p> <p>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문고</p>

(계속)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부표 37]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

1. 특별자치도·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부표 38]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

2. 사군

시설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 ~ 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동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 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 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레인 수	8 ~ 10레인	8 ~ 10레인	8 ~ 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주: 상기의 설치기준은 해당 사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 결과

본문 제3장에 수록되지 않은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표 39] 보건의료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상위그룹			
		병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이용여부	이용함	95	95	11	95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0	0	84	0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84	95	0	85
	면소재지	2	0	11	10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인근 시·군	8	0	0	0
	기타	1	0	0	0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71	62	11	80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24	10	0	18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35	4	0	10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이 저렴하다	11	70	9	10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28	29	1	37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27	41	9	26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3	9	2	36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5	4	1	4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0	2	0	0
	모름	0	0	0	0

[부표 40] 유통판매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상위그룹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이용여부	이용함	34	95	35	95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61	0	60	0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0	83	34	84
	면소재지	0	10	1	10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인근 시·군	0	2	0	1
	기타(인근 대도시)	34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0	81	28	74
이용 이유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7	45	8	61
	물건의 품질이 좋다	19	13	0	16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	11	34	0	42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2	23	9	22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품질이 낮지만, 기본적인 물건은 구입할 수 있다	0	13	14	8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6	15	0	12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0	4	2	9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1	0	1	0
	모름	0	0	0	0

[부표 41] 공중위생 관계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상위그룹		
		공중목욕장	이·미용원	세탁소
이용여부	이용함	37	95	90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58	0	5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24	83	79
	면소재지	12	11	10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인근 시·군	1	1	1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30	72	66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1	4	6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2	3	4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2	10	5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8	43	42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18	32	33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12	23	25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4	10	9
	기타: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다	0	1	0

[부표 42] 문화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상위그룹			
		영화관	문예회관 /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용여부	이용함	22	58	24	18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73	37	71	77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0	58	23	13
	면소재지	0	0	0	5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인근 시·군(안동시)	9	0	1	0
	기타(인근 대도시)	13	0	0	0
	거주지 인근이다	0	33	19	7
이용 이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	4	5	4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20	2	5	7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0	6	9	12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0	6	9	12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0	5	9	3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17	2	1	0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0	31	1	5
	기타: 군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	0	32	0	1
	기타	1	0	1	0
	모름	0	4	0	0

[부표 43]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상위그룹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용여부	이용함	50	40	16	22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45	55	79	73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50	39	15	19
	면소재지	0	0	0	2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1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0
	인근 시·군	0	1	1	0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40	32	10	18
	다양한 운동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6	5	6	6
	운동시설·장비의 질적 수준이 높다	1	4	2	3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12	8	3	0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11	11	2	9
	시설·장비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도 낮지만, 기초적 수준의 시설장비는 이용할 수 있다	10	9	9	9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	2	0	1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40	30	7	12
	기타: 군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한다	14	9	0	0
	모름	4	2	0	0

[부표 44] 복지시설 이용실태: 상위그룹

		상위그룹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 포함)	종합복지관
이용여부	이용함	58	92	39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37	3	56
이용시설 소재지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47	81	39
	면소재지	11	1	0
	인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0	0
	현재 거주 마을 (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0	10	0
	인근 시·군	0	0	0
이용 이유	거주지 인근이다	31	73	27
	다양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41	5	27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9	2	6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29	13	9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9	6	18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2	18	3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3	2	2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14	81	11

[부표 45] 현지면담 결과: 순창군 공공체육시설 공급·활용 실태

- 순창군의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각각 1997년과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공설운동장은 2008년에 준공되었고 공설운동장의 부대시설인 테니스코트(16면)도 같은 연도에 준공됨
 - 공설운동장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실내다목적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음
 -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코트는 순창군 주민이 이용하며, 특히 공설운동장내 축구장은 순창군내 축구부, 동호회가 이용함
 -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지방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실내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순창군내 동호인을 중심으로 연중 이용됨(일평균 이용객 30~40명; 동호회의 경우 사용료가 월 15만~20만 원 정도)
 -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10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순창군이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을 2008년에 주민이용시설로서 설치하였지만, 테니스·정구대회 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보강함
 - 2008년 이후 매년 15~20개 정도의 테니스·정구 대회가 순창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다수의 테니스·정구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순창군을 방문하여 체류함
 - 다수의 테니스·정구 대회가 순창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천 시에 대비하기 위해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코트 일부(4면)를 실내 경기장으로 개조하였고, 순창읍내 순창제일고등학교의 테니스코트도 확충함(4면에서 8면으로)
 - 한편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코트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산림청 임야 부지를 임차하여 테니스코트(5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음

-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도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대회 개최장소로도 활용함
 - 배구, 세팍타크로, 배드민턴, 유도, 펜싱, 검도 등 종목의 대회가 다수 개최됨

[부표 46] 현지면담 결과: 괴산군 공공체육시설 공급·활용 실태

- 괴산읍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문화체육센터), 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 등이 입지해 있는데, 괴산군은 콤플렉스 형태의 집적화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체육경기대회, 군청 개최 행사, 동호회 활동에 이용되는데, 공설운동장의 경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 동절기에는 폐쇄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의 경우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배구 국가대표 상비군이 괴산군 실내체육관을 하절기(1개월 기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도 함

[부표 47] 현지면담 결과: 서천군 공공체육시설 공급·활용 실태

- 서천군의회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건립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가 비교적 늦게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임
 - 서천군은 그간 공설운동장 또는 육상경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는 서천여고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2014년 3월에 마서면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2015년 말에 완공할 목표로 착공함
 - 2013년 10월에 서천국민체육센터를 마서면에 조성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조성 이전에는 실내체육 행사를 장항읍에 1991년에 건립된 서천국민체육관에서 개최함
 - 또한 공연이나 기념식은 1989년에 개관한 서천읍 소재 서천문예의전당(군민회관)에서 개최해옴
- 한편 서천군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은 체육경기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개최 시 지자체가 경기단체에 대략 3000~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므로, 체육경기단체 주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활용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오히려 같은 예산을 관광객 유치에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부표 48] 현지면담 결과: 청송군 면소재지 공중목욕장

- 청송군은 부동, 부남, 안덕, 현서, 현동면에 면사무소 소유의 복지회관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청송읍, 진보면에는 개인이 공중목욕장을 소유·운영 중이고, 청송군 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현재 청송읍과 진보면에 각각 2개소와 3개소의 공중목욕장이 입지해 있음
 - 한편 파천면의 경우 공중목욕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진보면과 청송읍에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해당 두 읍·면의 공중목욕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면사무소 복지회관에 설치된 공중목욕장 간에는 이용률에 차이가 있는데,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공중목욕장을 폐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청송군 안덕면사무소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면사무소 복지회관에 설치된 공중목욕장의 이용률이 낮지만, 이용자가 주로 고령자이므로 공공재원 투입의 효율성만을 보고 폐쇄할 수는 없음
 - 안덕면사무소 복지회관의 공중목욕장은 청송군이 소유하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고(주 6일 개장, 입욕료 2500원), 연간 12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함
 - 한편 안덕면 인근의 현서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공중목욕장은 청송군 인접 지자체 주민까지 이용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함

[부도 6] 청송군 안덕면 복지회관



[부표 49] 현지면담 결과: 순창군 동계면 공중목욕장

- 2007년에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에 공공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면서, 해당 센터 내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는 면사무소와 공중목욕장 외에도 어린이집, 소방파출소, 중대본부, 보건지소,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서 공공시설의 통합설치를 시행한 것임
 - 우체국, 농협, 파출소가 센터에 입주해 있지는 않지만,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는 위치해 있음
 - 2011년에는 순창군 풍산면에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와 같이 공공시설의 통합설치가 이루어졌으나,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는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중목욕장은 순창군청 동계면사무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동계면 주민뿐만 아니라 순창군의 인근 읍·면, 또는 인근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용한다고 함
 - 공중목욕장은 11월~5월까지만 운영되며, 주 3회(수요일: 남자, 화·목요일: 여자) 개장됨(입욕료는 2500원, 경로우대 1000원, 학생이 2000원)
 -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연간 400만원, 난방비가 연간 4000만원 소요되고, 순창군청에서 해당 비용을 보조함
 - 한편 순창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중목욕장이 순창읍, 쌍치면, 동계면 각각에 3개소, 1개소, 1개소가 입지해 있음

[부도 7] 순창군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계속)

- 순창군 동계면에서와 같이,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통합 설치·운영은 과소지역 주민의 면소재지 소재 공공시설 이용 편이를 제고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설 통합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공중목욕장의 설치·운영을 시도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면소재지에서 면사무소 주변에 도보로 단시간에 도달 가능한 거리에 공공시설(보건 지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중대본부, 농협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순창군 동계면에서와 같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물론 공공시설이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시설별로 담당 조직이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통합 설치·운영 시 시설 관리·운영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임
 - 하지만 면사무소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실제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의 입주기관은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면사무소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목욕장의 기계설비 가동 및 유지·보수 등 센터 건물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므로 입주기관 간의 센터건물 관리·운영비용 분담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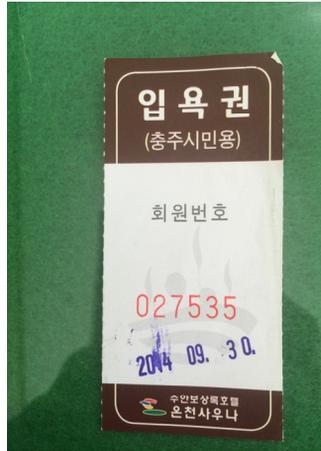
[부표 50] 현지면담 결과: 서천군, 봉화군, 괴산군에서의 공중목욕장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

- 서천군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최소한 면소재지에 지자체가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무엇보다도 관리·운영 주체의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욕쿠폰의 배부가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물론 기산면과 비인면에서 각각 복지회관과 건강증진센터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비인면의 건강증진센터에 설치된 공중목욕장은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여 연중 개장되며, 기산면 복지회관의 공중목욕장은 주 2회 개장됨
 - 서천군 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15개의 목욕장이 관내에 소재해 있지만, 13개 읍·면 중 7개 읍·면에 입지해 있고, 특히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에 11개가 집중되어 있음
- 봉화군 공무원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패턴을 감안할 경우 공중목욕장을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간주하여 이용자, 특히 고령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자체가 설치하고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필요성은 낮음
 - 주민이 면소재지를 통과하여 군청소재지 또는 인근 도시까지 통행하는 패턴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버스요금 단일화가 이러한 패턴을 강화시킬 것임
 - 실제로 봉화군 소천면소재지에 위치한 민간 소유·운영 공중목욕장의 경우, 이용객의 제약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개장된다고 함
 - 봉화군에는 2012년 현재 공중목욕장이 총 6개소가 있고 모두 민간이 소유·운영하는데, 군청소재지 인 봉화읍에 4개소와 과거 군청소재지였던 춘양면에 1개소, 그리고 소천면에 1개소가 위치함

(계속)

- 괴산군 현지 면담 결과, 공중목욕장을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볼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주민, 특히 고령자의 접근성을 위해 공중목욕장을 최소한 면소재지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었음
 - 괴산군청에서 공중목욕장 또는 찜질방 설치·운영을 추진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비용부담,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관리·운영주체 미흡, 낮은 이용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단함
 - 이와 관련하여 청천면 덕평출장소의 보건진료소와 사리면의 보건진료소 각각의 건물 신축 시 찜질방, 샤워실을 설치하여 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운영했지만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자활사업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운영비용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됨
 - 무엇보다도 괴산군의 특성상 면소재지별로 공중목욕장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는데, 괴산군이 충주시의 수안보 온천, 청원군의 미원 온천, 초정 온천에 근접해 있으며, 특히 수안보 온천의 경우 타 지역 거주 노인이 이용하더라도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고 이용 쿠폰도 배부 받을 수 있다고 함

[부도 8] 수안보 온천 입욕권



- 실제로 괴산읍에만 2012년 현재 4개소의 민간 소유 목욕탕이 운영 중이고, 게다가 주민의 통행패턴에 따라 괴산읍·면간에 또는 인접 시·군과 몇 개의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점도 지자체가 최소한 면소재지에는 공중목욕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떨어뜨림
- 면담결과, 대체로 괴산읍, 칠성면, 문광면, 소수면 등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며, 장연면과 연풍면은 충주시와, 청안면과 사리면은 증평군과, 청천면은 청주시 및 청원군, 불정면은 충주시 또는 음성군과 생활권을 형성한다고 함

7. 설문지

ID			
----	--	--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이번 조사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한국리서치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주민대표인 이장님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시설이용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인구과소화에 대응하여 주민복지와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시면서 설문문항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주관기관 :  KRIHS 국토연구원

주관기관 담당자 : 임상연 책임연구원 ☎ 031-380-0230 / 변필성 연구위원 ☎ 031-380-0146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관 담당자: 여론조사2부 신성현 수석부장 / 임상철 과장 ☎ 02-3014-0081

자료조사부 장희숙 수석팀장 ☎ 02-3014-0120

* 응답자 정보

선문1. 거주지역	① 괴산군 ② 서천군 ③ 순창군 ④ 청송군 ⑤ 봉화군
선문2. 상세주소	()읍/면 ()리
선문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선문4. 연령	① 만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세 이상

* 면접원 기재 사항

리스트 번호	<input type="text"/>	지역구분	① 가군 ② 나군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__월 __일 __시 __분
면접시간	__분 동안	검증 결과	

문3.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다음의 '보건의료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3-1.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보건의료시설'의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4]

※ 조사원 ☞ 문3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3-2. 해당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5]

※ 조사원 ☞ 문3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3-3. 주민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카드6]

※ 조사원 ☞ 문3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시설	문3. 이용 여부	문3-1. 이용시설 소재지	문3-2. 이용하는 이유(3가지)			문3-3. 이용 시 만족도
1) 병·의원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2) 보건의료원/보건소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4) 약국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보기카드4]

문3-1. 주민들의 이용시설 소재지	
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② 면소재지
③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④ 현재 거주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⑤ 인근 시·군(_____시/군)	⑥ 기타(_____시/군)

[보기카드5]

문3-2.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	
① 거주지 인근이다	②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④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이 저렴하다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⑥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⑦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⑨ 기타()	

[보기카드6]

문3-3. 주민들의 이용 시 만족도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만족한다

문4.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다음의 '유통판매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4.1.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유통판매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유통판매시설'의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4]

※ 조사원 ☞ 문4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4.2. 해당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7]

※ 조사원 ☞ 문4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4.3. 주민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카드6]

※ 조사원 ☞ 문4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시설	문4. 이용 여부	문4.1. 이용시설 소재지	문4.2. 이용하는 이유(3가지)	문4.3. 이용 시 만족도
1) 백화점/쇼핑센터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2) 마트/슈퍼마켓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3) 편의점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4) 재래시장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보기카드4]

문4.1. 주민들의 이용시설 소재지	
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② 면소재지
③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④ 현재 거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⑤ 인근 시·군(_____시/군)	⑥ 기타(_____시/군)

[보기카드7]

문4.2.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	
① 거주지 인근이다	②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③ 물건의 품질이 좋다	④ 물건 가격이 저렴하다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⑥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품질이 낮지만, 기본적인 물건은 구입할 수 있다	
⑦ 이용하려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하려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⑨ 기타()	

[보기카드6]

문4.3. 주민들의 이용 시 만족도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만족한다

문5.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다음의 '공중위생 관계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5-1.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공중위생 관계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공중위생 관계시설'의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4]

※ 조사원 ☞ 문5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5-2. 해당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8]

※ 조사원 ☞ 문5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5-3. 주민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카드6]

※ 조사원 ☞ 문5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시설	문5. 이용 여부	문5-1. 이용시설 소재지	문5-2. 이용하는 이유(3가지)			문5-3. 이용 시 만족도
1) 공중목욕장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2) 이·미용원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3) 세탁소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보기카드4]

문5-1. 주민들의 이용시설 소재지	
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② 면소재지
③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④ 현재 거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⑤ 인근 시·군(_____시/군)	⑥ 기타(_____시/군)

[보기카드8]

문5-2.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	
① 거주지 인근이다	②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④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⑥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⑦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⑨ 기타()	

[보기카드6]

문5-3. 주민들의 이용 시 만족도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만족한다

문6.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다음의 '문화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6-1.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문화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문화시설'의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4]

※ 조사원 ☞ 문6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6-2. 해당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8]

※ 조사원 ☞ 문6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6-3. 주민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카드6]

※ 조사원 ☞ 문6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시설	문6. 이용 여부	문6-1. 이용시설 소재지	문6-2. 이용하는 이유(3가지)			문6-3. 이용 시 만족도
1) 영화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2) 문예회관/군민회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3) 공공도서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4) 박물관/미술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보기카드4]

문6-1. 주민들의 이용시설 소재지	
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② 면소재지
③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④ 현재 거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⑤ 인근 시·군(_____시/군)	⑥ 기타(_____시/군)

[보기카드8]

문6-2.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	
① 거주지 인근이다	②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④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⑥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⑦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⑨ 기타()	

[보기카드6]

문6-3. 주민들의 이용 시 만족도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만족한다

문7.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다음의 ‘공공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7-1.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공공체육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4]

※ 조사원 ⇨ 문7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7-2. 해당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9]

※ 조사원 ⇨ 문7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7-3. 주민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카드6]

※ 조사원 ⇨ 문7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시설	문7. 이용 여부	문7-1. 이용시설 소재지	문7-2. 이용하는 이유(3가지)			문7-3. 이용 시 만족도
1) 종합운동장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2) 실내체육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3) 축구장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4) 게이트볼장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보기카드4]

문7-1. 주민들의 이용시설 소재지	
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② 면소재지
③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④ 현재 거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⑤ 인근 시·군(_____시/군)	⑥ 기타(_____시/군)

[보기카드9]

문7-2.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	
① 거주지 인근이다	② 다양한 운동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운동시설·장비의 질적 수준이 높다	④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⑥ 시설·장비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도 낮지만, 기초적 수준의 시설·장비는 이용할 수 있다	
⑦ 이용하려 할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하려 할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⑨ 기타()	

[보기카드6]

문7-3. 주민들의 이용 시 만족도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만족한다

문8.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다음의 '복지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8-1. 최근 1년간(2013년 9월~2014년 8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4]

※ 조사원 ⇨ 문8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8-2. 해당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기카드10]

※ 조사원 ⇨ 문8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문8-3. 주민들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카드6]

※ 조사원 ⇨ 문8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

시설	문8. 이용 여부	문8-1. 이용시설 소재지	문8-2. 이용하는 이유(3가지)			문8-3. 이용 시 만족도
1) 노인복지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2)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 포함)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3) 종합복지관	① 이용함 ② 거의 또는 전혀 이용 안함		(1)	(2)	(3)	

[보기카드4]

문8-1. 주민들의 이용시설 소재지	
① 군청소재지(또는 읍소재지)	② 면소재지
③ 인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④ 현재 거주 마을(군청소재지도 읍·면소재지도 아님)
⑤ 인근 시·군(_____시/군)	⑥ 기타(_____시/군)

[보기카드10]

문8-2.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유	
① 거주지 인근이다	② 다양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③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다	④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⑥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⑦ 이용하러 갈 경우, 인근의 다양한 타 용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하러 갈 경우, 다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⑨ 기타(_____)	

[보기카드6]

문8-3. 주민들의 이용 시 만족도			
①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만족한다

향후 공공시설 공급 방안

* 다음 문항부터는 이장님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10.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의 주민 수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 ② 마을의 주민 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 ③ 마을의 주민 수가 감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절반 수준 이상은 될 것이다.
- ④ 마을의 주민 수가 감소할 것이고, 현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⑤ 마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 ⑥ 기타 (_____)

문11. 귀하께서는 “과소지역에서 앞으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주민이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인근 도시 등의 시설에 원활히 방문할 수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시·군 간에 대규모 공공시설(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 ③ 군청소재지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 ④ 면소재지는 공공시설의 추가 설치 없이 공공행정 및 긴급대응 서비스 거점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 ⑤ 마을 수준의 핵심적 공공시설(예: 경로당)에 주거기능 또는 생활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 ⑥ 마을이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⑦ 기타 (_____)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토연 2014-2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지 은 이 변필성, 임상연, 김명수

발 행 인 김경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44-2호

인 쇄 2014년 12월 26일

발 행 2014년 12월 3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7,000원

ISBN 979-11-85948-18-8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101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인지도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도를 위한 가족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식정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5, E-mail : skkim@krihs.re.kr)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II 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 동향

제 III 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활용의 과제

제 IV 장 외국의 관련제도 및 사례 고찰

제 V 장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 VI 장 결론 및 향후과제

